

연구총서 12-B-10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연쇄강력범죄 실태조사(I) - 연쇄방화 -

Research on Serial Felony(I)
- Serial Arson -

박형민 · 최수형 · 김재운

■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학 박사

■ 최수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학 박사

■ 김재운

경정(경찰청 파견), 경찰학 박사

■ 이은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턴연구원

■ 장신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발간사

방화범죄는 짧은 시간에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범죄자가 의도한 것 보다 훨씬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피해의 범위가 구체적인 대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의 범죄의 두려움을 크게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연쇄방화는 의도성, 계획성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수사및재판기록의 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연쇄방화 범죄 및 연쇄방화 범죄자의 특성과 실태를 살펴본 것입니다. 또한 외국 주요국가의 수사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 방화수사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화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실증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그 자체로도 의미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향후 연쇄방화의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연쇄방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박형민 박사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며, 함께 연구를 수행하신 최수형 박사님과 김재운 경정님의 수고와 노력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록조사와 면접조사과정에서 큰 힘이 되어주신 이은주 인턴 연구원과 장신영 연구보조원, 그리고 여러 조사보조원들의 수고도 함께 치하드립니다.

2012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 일 수

CONTENTS

국문요약	19
제1장 서론(박형민)	27
제1절 문제제기	29
1. 연쇄 강력범죄 연구의 의의	29
2. 연쇄 방화범죄 연구의 의의	30
제2절 연구방법	32
1. 기록 조사	32
2. 면접조사	35
제3절 연구의 구성	36
제2장 선행연구 검토(최수형)	37
제1절 연쇄 방화범죄의 이론적 논의	39
1. 연쇄방화의 개념 및 정의	39
2. 연쇄방화의 유형 및 형태	42
가. 방화범죄자의 유형	42
나. 연쇄방화범의 유형 및 특징	44
제2절 연쇄방화의 특성에 관한 실증 연구	55
1. 연쇄방화범의 특성	55
가. 연쇄방화범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가정 환경	55
나. 연쇄방화범의 장애 여부	57
다. 연쇄방화범의 전과 경력	57

2. 연쇄방화사건의 특성	58
가. 연쇄방화의 범행대상 및 관련 특성	58
나. 연쇄방화의 범행 수법 및 범행 동기	59
다. 연쇄방화의 범행 지역적 특성	59
라. 연쇄방화범의 범행 후 행동	60
제3장 기록조사에서 나타난 연쇄성 방화의 특성(최수형)	61
제1절 주요 변인의 측정	63
1. 방화범의 일반적 특성	64
가. 성별 및 국적, 연령	64
나. 범행 당시 실 거주지 및 주거형태	65
다. 교육 수준	65
라. 범행 당시 직업 및 직업의 안정성, 월평균 수입	65
마. 동거 여부 및 동거인의 유형	66
바. 혼인 상태	66
사. 범행 당시 장애 여부 및 장애 유형	66
아. 성장 시 가족환경	67
자. 범죄 경력	67
2. 방화사건의 특성	68
가. 범죄 처리 특성	68
나. 범행 내용	73
다. 피해 내용	79
제2절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징	82
1. 범행 횟수	82
2. 사건 발생 연도	85
제3절 연쇄성 방화범의 일반적 특징	87
1. 연쇄성 방화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87
가. 성별 분포	87
나. 연령별 분포	89

다. 국적별 분포	93
라. 주거 형태	93
마. 범행 당시 직업 유무 및 직업 유형	95
바. 교육 정도	99
사. 범행 당시 동거 여부 및 동거인 유형	101
아. 혼인 상태	103
2. 연쇄성 방화범의 장애 유무 및 장애 유형	105
3. 연쇄성 방화범의 가족환경	107
가. 성장 시 부모와 동거 여부 및 주 양육자	107
나. 성장 시 가족 간 관계	109
다. 성장 시 학대 경험	110
라. 성장 시 가출 경험	113
4. 연쇄성 방화범의 범죄 경력	115
제4절 연쇄성 방화사건의 특성	122
1. 범죄 처리 특성	122
가. 구체적 죄명	122
나. 경합 범죄 여부 및 유형	124
다. 범인 검거 경위	125
라. 검거까지의 기간	128
마. 구속 여부	130
바. 검찰 처리 결과	131
사. 최종 판결 심급	133
아. 구형량	134
자. 항소 여부 및 항소 결과	141
차. 변호사 유무 및 종류	145
2. 범행 내용	147
가. 범죄 발생 시간 및 범죄 발생 시간 간격	147
나. 범행 대상	150
다. 범행 장소	155

라. 범행의 계획성 여부	166
마. 방화 수법 및 방화 도구	167
바. 범행 시 음주 및 약물 사용 여부	171
사. 범행의 동기	174
아. 범행 후 행동	179
자. 범행의 자백 여부 및 자백 동기(경찰, 검찰, 법원)	181
차. 범행 후 반성 및 후회 정도(경찰, 검찰, 법원)	185
카. 공범의 유무 및 공범간의 관계	189
3. 피해 내용	194
가.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194
나. 피해 금액	197
다. 인명 피해 정도	199
제5절 소결	202
1. 연쇄성 방화범의 일반적 특성	202
2. 연쇄성 방화사건의 특징	203
3. 연쇄성 방화유형별 특징	205
제4장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연쇄성 방화의 특성(박형민)	207
제1절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9
제2절 범죄 특성	212
1. 범행 시간과 공간	212
가. 시간	212
나. 범행 장소	212
다. 출발점	218
라. 이동	222
2. 범행 유발요인	225
가. 범행 동기	225
나. 스트레스 요인	235
다. 불결심 시점	241

3. 범행 전후 행적	246
가. 범행 직전 행적	246
나. 범행 직후 행적	251
다. 체포 과정	256
4. 범행 전후의 감정	260
가. 범행 전후의 느낌	260
나. 처벌 두려움	267
다. 중화 내용	271
제3절 범피자 특성	273
1. 경제적 상황	273
가. 실직	273
나. 저임금 비숙련 노동	275
다. 숙련노동	279
2. 지지체계	279
가. 가정상황	279
나. 사회관계	282
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	287
3. 성장 배경	290
가. 어린시절 가족 상황	290
나. 학력	295
다. 폭력경험	301
4. 성격 및 정신질환	303
가. 성격	303
나. 음주습관	307
다. 정신질환	309
제4절 소결	311

제5장 방화수사체계 개선방안(김재운)	315
제1절 방화범죄의 의의와 특성	317
1. 방화범죄의 의의	317
2. 방화사건의 수사절차 개요	318
가. 화재조사와 방화수사	318
나. 화재조사 절차	318
다. 방화범죄의 수사절차	319
3. 화재사건의 특성	320
가. 화재사건의 조사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320
나. 화재현장의 증거물은 소훼되어 범인을 특정하기 매우 어렵다	320
다.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320
라. 장기간 화재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어렵다	321
제2절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및 방화수사체계	321
1.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체계	321
가. 경찰의 화재조사	321
나. 소방의 화재조사	322
다. 화재원인감정 및 연구기관	324
라. 민간기관의 화재조사	324
2. 우리나라의 방화수사 체계	325
가. 방화수사의 의의	325
나. 경찰의 방화수사	325
다. 검찰의 방화수사	326
제3절 우리나라 화재조사 및 방화수사체계의 문제점	327
1. 화재조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327
2. 민간부문의 화재조사 취약	327
3. 화재조사기관간 협조체계 부족	328
4. 화재조사요원의 전문성 부족	328
5. 화재조사관련 연구 및 감정기능 취약	330
6. 화재통계의 부정확	330

제4절 주요국가의 방화범죄 수사체제	331
1. 일본	331
가. 일본의 경찰과 소방조직	331
나. 일본의 화재조사	332
다. 일본의 방화수사	333
라. 화재조사에 있어서 소방과 경찰의 관계	333
2. 미국	334
가. 미국의 경찰과 소방조직	334
나. 연방의 화재사건 수사	335
다. 지방의 화재사건 수사 : 뉴욕시	336
라. 화재사건 연구·감정기관 : 국립화재연구원	339
마. 화재관련 통계관리	339
3. 영국	340
가. 영국의 경찰과 소방조직	340
나. 영국의 화재사건 수사체제	341
다. 화재조사관 교육훈련	343
4. 독일	343
가. 독일의 경찰과 소방조직	343
나. 화재발생시 소방과 경찰의 역할분담	344
다. 화재사건의 수사(Brandurshchenermittlung)	345
라. 화재사건 증거의 전문감정	346
5. 프랑스	346
가. 프랑스의 경찰과 소방조직	346
나. 일반적인 화재조사 및 방화수사체계	347
다. 일부 도(département)의 소방관에 의한 화재조사	348
6. 주요국의 방화수사체계 종합	348
제5절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및 방화수사체계 개선방안	349
1. 민간의 전문화재조사제도 도입	349
가. 화재조사 전문교육 활성화	350

나. 민간화재조사관 자격제도 법제화	350
다. 사설 화재전문감정업의 도입	351
라. 공공·민간기관 화재조사 인력의 인적교류 활성화	351
2. 경찰과 소방의 화재조사 협력체계 구축	352
가. 화재조사 전문교육 공동실시	353
나. 화재조사에 관한 세부적 공동규칙 마련	353
다. 화재사건의 경중에 따른 합동감식 T/F팀 구성	354
라. 화재 및 방화범죄에 관한 자료의 상호연동	354
마. 학회·세미나 등을 통한 최신 정보교류	355
3. 화재조사 조직의 광역화	355
4. 화재감정 및 연구기관의 확충	356
제6절 소결	357
제6장 요약 및 결론(박형민, 최수형, 김재운)	359
제1절 요약	361
1. 연쇄성 방화범의 일반적 특성	361
2. 연쇄성 방화사건의 특징	362
3. 연쇄성 방화유형별 특징	365
4. 방화수사체계 개선방안	366
제2절 결론	368
참고문헌	373
Abstract	379
부록1: 기록조사표	387
부록2: 통계청 표준직업분류표	410

〈표 차례〉

〈표 1-1-1〉 사건 기록 조사 일정 및 열람 사건 기록 수	34
〈표 2-1-1〉 방화의 횡수와 성격에 따른 분류	40
〈표 2-1-2〉 방화범죄의 유형별 분류	43
〈표 3-1-1〉 기록 조사표의 주요 변수	81
〈표 3-2-1〉 조사 대상의 방화횡수	82
〈표 3-2-2〉 연쇄성 여부에 따른 빈도	83
〈표 3-2-3〉 연쇄성 방화범 유형에 따른 빈도	84
〈표 3-2-4〉 연쇄성 여부에 따른 사건 수	84
〈표 3-2-5〉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사건 수	85
〈표 3-2-6〉 사건 발생 연도	86
〈표 3-2-7〉 연쇄성 방화 유형별 사건 발생연도	87
〈표 3-3-1〉 성별 분포	88
〈표 3-3-2〉 연쇄성 방화 유형별 성별 분포	88
〈표 3-3-3〉 연령대별 분포	90
〈표 3-3-4〉 성별에 따른 연령대 분포	91
〈표 3-3-5〉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연령대별 분포	93
〈표 3-3-6〉 국적별 분포	93
〈표 3-3-7〉 범행 당시 주거 부정 여부	94
〈표 3-3-8〉 범행 당시 주거 형태	95
〈표 3-3-9〉 범행 당시 직업 유무	95
〈표 3-3-10〉 성별에 따른 직업 유무	96
〈표 3-3-11〉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직업 유무	97
〈표 3-3-12〉 범행 당시 직업 유형	97
〈표 3-3-13〉 직업의 안정성 여부	98
〈표 3-3-14〉 교육 정도	99
〈표 3-3-15〉 성별에 따른 교육 정도	100
〈표 3-3-16〉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교육 정도	101
〈표 3-3-17〉 범행 당시 동거 여부	101

〈표 3-3-18〉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범행 당시 동거 여부	102
〈표 3-3-19〉 범행 당시 동거인 유형	102
〈표 3-3-20〉 혼인 상태	103
〈표 3-3-21〉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혼인 상태	104
〈표 3-3-22〉 혼인 상태(상세)	104
〈표 3-3-23〉 장애 유무 및 장애 유형	105
〈표 3-3-24〉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장애유형	106
〈표 3-3-25〉 성별에 따른 장애 유형	107
〈표 3-3-26〉 성장 시 부모와의 동거 여부	108
〈표 3-3-27〉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성장 시 부모와의 동거 여부	108
〈표 3-3-28〉 주 양육자	109
〈표 3-3-29〉 성장 시 가족 간 관계	109
〈표 3-3-30〉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성장 시 가족 간 관계	110
〈표 3-3-31〉 성장 시 학대 경험 여부	111
〈표 3-3-32〉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성장 시 학대 경험여부	111
〈표 3-3-33〉 성별에 따른 성장 시 학대 경험	112
〈표 3-3-34〉 성장 시 가출 경험	113
〈표 3-3-35〉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가출 경험	114
〈표 3-3-36〉 성별에 따른 성장 시 가출 경험	114
〈표 3-3-37〉 범죄 경력	115
〈표 3-3-38〉 성별에 따른 범죄 경력	116
〈표 3-3-39〉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범죄 경력	117
〈표 3-3-40〉 실형 전과 유무 및 정도	117
〈표 3-3-41〉 첫 실형 연령	118
〈표 3-3-42〉 동종 전과 유무 및 정도	119
〈표 3-3-43〉 이종 전과 유무 및 정도	119
〈표 3-3-44〉 체포 경험	120
〈표 3-3-45〉 첫 체포 연령	121
〈표 3-3-46〉 수감 경험 유무 및 정도	121
〈표 3-4-1〉 구체적 죄명	123

〈표 3-4-2〉 연쇄성 방화 유형별 구체적 죄명	123
〈표 3-4-3〉 경합 범죄 여부 및 유형	124
〈표 3-4-4〉 연쇄성 방화 유형별 경합 범죄 여부 및 유형	125
〈표 3-4-5〉 범인 검거 경위	126
〈표 3-4-6〉 성별에 따른 범인 검거 경위	127
〈표 3-4-7〉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범인 검거 경위	128
〈표 3-4-8〉 검거까지의 기간	129
〈표 3-4-9〉 연쇄성 방화 유형별 범행 후 검거까지의 시간	130
〈표 3-4-10〉 구속 여부	131
〈표 3-4-11〉 연쇄성 방화 유형별 구속 여부	131
〈표 3-4-12〉 검찰 처리 결과	132
〈표 3-4-13〉 연쇄성 방화 유형별 검찰 처리 결과	133
〈표 3-4-14〉 최종 판결 심급	133
〈표 3-4-15〉 연쇄성 방화 유형별 최종 판결 심급	134
〈표 3-4-16〉 구형량	135
〈표 3-4-17〉 유기징역의 형량	136
〈표 3-4-18〉 성별에 따른 구형량	137
〈표 3-4-19〉 성별에 따른 유기징역의 형량	138
〈표 3-4-20〉 연쇄성 방화 유형별 구형량	140
〈표 3-4-21〉 연쇄성 방화유형에 따른 유기징역의 형량	141
〈표 3-4-22〉 항소 여부(1심)	142
〈표 3-4-23〉 연쇄성 방화 유형별 항소 여부(1심)	142
〈표 3-4-24〉 항소 여부(2심)	143
〈표 3-4-25〉 연쇄성 방화 유형별 항소 여부(2심)	144
〈표 3-4-26〉 항소결과(1심)	144
〈표 3-4-27〉 항소 결과(2심)	145
〈표 3-4-28〉 연쇄성 방화 유형별 항소 결과(2심)	145
〈표 3-4-29〉 변호사 유무 및 종류	145
〈표 3-4-30〉 범죄 발생 시간	147
〈표 3-4-31〉 사건 발생 시간 간격(일)	146

〈표 3-4-32〉 사건 발생 시간 간격(분) - 연속방화	149
〈표 3-4-33〉 범행 대상(실내/실외)	150
〈표 3-4-34〉 성별에 따른 범행 대상	151
〈표 3-4-35〉 연쇄성 방화 유형별 범행대상(실외/실내)	151
〈표 3-3-36〉 구체적 범행 대상	152
〈표 3-4-37〉 연쇄성 방화 유형별 구체적 범행 대상	154
〈표 3-4-38〉 범행 장소(피해자/가해자 관련 여부)	156
〈표 3-4-39〉 범행 장소와의 친밀성 정도	158
〈표 3-4-40〉 성별에 따른 범행 장소와의 친밀성 정도	158
〈표 3-4-41〉 연쇄성 방화 유형별 범행 장소와의 친밀성	159
〈표 3-4-42〉 범행 장소까지의 이동 수단	160
〈표 3-4-43〉 연쇄성 방화 유형별 범행 장소까지의 이동 수단	161
〈표 3-4-44〉 범행 장소와 가해자 주거지 간의 거리	162
〈표 3-4-45〉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범행 장소와 가해자 주거지간의 거리	162
〈표 3-4-46〉 가해자 연령대별 범행 장소와 가해자 주거지간 거리	164
〈표 3-4-47〉 범행 장소들 간의 거리	165
〈표 3-4-48〉 연쇄성 방화 유형별 범행 장소간의 거리	165
〈표 3-4-49〉 범행의 계획성 여부	166
〈표 3-4-50〉 연쇄성 방화 유형별 범행의 계획성 여부	166
〈표 3-4-51〉 방화 수법	167
〈표 3-4-52〉 연쇄성 방화 유형별 방화 수법	168
〈표 3-4-53〉 방화 도구	169
〈표 3-4-54〉 연쇄성 방화 유형별 방화 도구	169
〈표 3-4-55〉 방화 도구 처리	170
〈표 3-4-56〉 연쇄성 방화 유형별 방화 도구 처리	171
〈표 3-4-57〉 범행 당시 음주 여부	172
〈표 3-4-58〉 연쇄성 방화 유형별 범행 당시 음주 여부	172
〈표 3-4-59〉 성별에 따른 범행 당시 음주 여부	173
〈표 3-4-60〉 범행 시 약물 사용 여부	174
〈표 3-4-61〉 연쇄성 방화 유형별 약물 사용 여부	174

〈표 3-4-62〉 범행 동기	176
〈표 3-4-63〉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범행 동기	177
〈표 3-4-64〉 범행 동기에 따른 범행 관련 특징(연쇄성 방화사건)	178
〈표 3-4-65〉 범행 후 행동	180
〈표 3-4-66〉 연쇄성 방화 유형별 범행 후 행동	181
〈표 3-4-67〉 범행의 자백 여부(경찰)	182
〈표 3-4-68〉 범행의 자백 동기(경찰)	182
〈표 3-4-69〉 범행의 자백 여부(검찰)	183
〈표 3-4-70〉 범행의 자백 동기(검찰)	184
〈표 3-4-71〉 범행의 자백 여부(법원)	184
〈표 3-4-72〉 범행의 자백 동기(법원)	185
〈표 3-4-73〉 범행 후 반성 및 후회 정도(경찰)	186
〈표 3-4-74〉 연쇄성 방화 유형별 범행 후 반성 및 후회정도(경찰)	186
〈표 3-4-75〉 범행 후 반성 및 후회 정도(검찰)	187
〈표 3-4-76〉 연쇄성 방화 유형별 범행 후 반성 및 후회 정도(검찰)	187
〈표 3-4-77〉 범행 후 반성 및 후회 정도(법원)	188
〈표 3-4-78〉 연쇄성 방화 유형별 범행 후 반성 및 후회 정도(법원)	189
〈표 3-4-79〉 공범 유무 및 공범의 수	189
〈표 3-4-80〉 공범자의 성별	190
〈표 3-4-81〉 연쇄성 방화 유형별 공범 유무 및 공범자 수	191
〈표 3-4-82〉 연쇄성 방화 유형별 공범자의 성별	191
〈표 3-4-83〉 공범과의 관계	192
〈표 3-4-84〉 연쇄성 방화 유형별 공범과의 관계	193
〈표 3-4-85〉 가해자의 역할	193
〈표 3-4-86〉 연쇄성 방화 유형별 가해자의 역할	194
〈표 3-4-87〉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195
〈표 3-4-88〉 성별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196
〈표 3-4-89〉 연쇄성 방화 유형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197
〈표 3-4-90〉 피해 금액	198
〈표 3-4-91〉 연쇄성 방화 유형별 피해 금액	199

〈표 3-4-92〉 인명 피해 유무	200
〈표 3-4-93〉 인명 피해자의 총 수	200
〈표 3-4-94〉 인명 피해 유형	201
〈표 3-4-95〉 2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 간의 관계	202
〈표 4-1-1〉 면접 대상 방화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209
〈표 4-1-2〉 면접 대상 방화 사건의 일반적 특성	210
〈표 5-4-1〉 주요국의 방화수사체계	349

〈기록조사에서 나타난 연쇄성 방화의 특성〉

1. 연쇄성 방화범의 일반적 특성

연쇄성 방화범은 남성이 절대 다수이고 30대 이하의 비율이 약 60% 이상이며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무학에서부터 중졸 이하의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하여 교육 수준이 낮은 편이다. 그리고 연쇄성 방화범은 범행 당시 신체장애와 정신 질환 및 정신장애가 없는 정상인으로 결혼은 하지 않았고 일정한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며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연쇄성 방화범의 어릴 적 경험을 살펴본 결과, 친부모에 의해 양육된 비율이 50% 이상이라는 하였지만 가족 간 관계에 있어서는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학대 경험과 가출 경험이 있는 비율이 약 10% 정도였다. 그리고 연쇄성 방화범의 범죄경력을 살펴보면 과거 이종 전과를 가진 경우가 전체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종 전과 4범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연쇄성 방화범 가운데 방화와 같은 동종 전과를 가진 비율은 약 13%에 불과했다.

한편, 연쇄성 방화범과 비연쇄성 방화범과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연령과 혼인상태 그리고 어릴 적 학대 경험이었다. 즉, 연쇄성 방화범은 비연쇄성 방화범에 비해 연령이 낮았고 미혼 상태와 어릴 적 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2. 연쇄성 방화사건의 특징

연쇄성 방화사건의 특징은 크게 범죄처리의 과정과 결과, 범행 내용 그리고 피해 내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연쇄성 방화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연쇄성 방화사건은 경찰이 인지하거나 탐문 수사를 통해 3일 이내 범인이 검거되는 경우가 많았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검찰처리 결과의 약 90%가 구공판이었다. 공판 결과, 최종판결이 1심에서 나오는 경우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았고 구형량을 살펴보면 유기징역이 90%이상이었고 징역 3년이 가장 많았다. 특히, 이러한 특징들은 비연쇄성 방화사건과 차이가 커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연쇄성 방화사건은 비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범인을 검거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 해당 기간 동안 연쇄성 방화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과 긴장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피의자 구속 수사와 구공판의 비율이 더 높았고 2심과 3심까지 공판이 진행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두 번째, 연쇄성 방화사건의 범행관련 내용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연쇄성 방화사건은 사전에 범행에 대한 계획 없이 술을 먹고 단독으로 새벽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서 불을 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범행 대상은 실내인 경우(50.6%)가 실외인 경우(49.4%)보다 약간 많았으며 실외에서 주로 범행 대상이 되는 경우는 쓰레기통이나 버려진 물건이나 자동차, 거리의 현수막이나 플랜카드 등이었고 실내에서는 주거지와 상가 및 가게, 화장실과 같은 공공시설 등이었다. 그리고 사건 발생장소는 피의자의 주거지로부터 2km이내인 경우가 약 70%였고 범행 장소들 간 거리 역시 2km이내가 약 90%를 차지하여 평소 친밀성이 있는 장소로 범행 당시 걸어서 이동하였고 범행 후에는 방화 도구를 가지고 바로 현장을 빠져나오는 경우가 약 70%를 차지하였다. 한편, 범행의 동기로는 개인적 원한과 자신의 처지 비관, 사회적 열등감 등의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 이었고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로 인한 방화도 15.6%를 차지하였다.

특히, 연쇄성 방화사건과 비연쇄성 방화사건 간의 차이가 사건 발생 시간과 범행 대상이 실내인지 실외인지의 여부, 범행 장소의 친밀성, 범행 장소까지의 이동

수단, 가해자 주거지로부터 방화 장소까지의 거리, 범행 시 음주여부, 범행 후 행동, 반성 및 후회 정도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즉, 연쇄성 방화사건에서는 비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새벽에 발생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범행 당시 술을 먹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고 범행 장소가 피의자의 주거지로부터 더 가깝고 친밀한 장소로 범행 대상이 실외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범행 당시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범행 후에는 현장에서 바로 벗어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비연쇄성 방화범에 비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

세 번째, 연쇄성 방화사건의 피해 내용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르는 관계인 경우가 약 70%로 불특정인에 대한 방화의 비율이 높았고 피해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약 4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3. 연쇄성 방화유형별 특징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2회 이상의 방화가 발생한 경우를 ‘연쇄성 방화’라 규정하고 이를 다시 범행 사이의 심리적 냉각기가 없이 하루 동안 지속적으로 방화가 발생한 경우인 ‘연속방화’와 하루 이상의 심리적 냉각기를 두고 발생하는 방화인 ‘연쇄방화’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연쇄성 방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심리적 냉각기 여부에 따라 방화범과 방화범죄 관련 특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분석 과정은 향후 연쇄범죄 관련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쇄에 대한 표준화된 개념 제안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쇄성 방화유형별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쇄성 방화범의 개인적 특성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방화범의 범행 당시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쇄방화범의 경우는 70%이상을 차지한 반면 연속방화범의 경우는 절반 정도로 연쇄방화범의 연령이 연속방화범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특히, 연쇄방화범의 경우에서 나타난 10대와 20대의 높은 비율은 청소년과 젊은 청년들에 의한 연쇄방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심각성이 더 하다. 그리고 연쇄방화범 가운데 어릴 적 학대경험과 가

출경험이 있는 경우가 연속방화범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과 사회 내 경험과 연쇄방화간의 관계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두 번째, 연쇄성 방화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난 특성이다. 연쇄 방화사건은 연속방화사건에 비해 범인을 검거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어 연쇄방화가 발생하였을 때 겪는 우리 사회의 불안감과 위기감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예상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쇄방화사건의 경우 최종 판결이 1심에서 내려지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연속방화사건에 비해 많았다.

세 번째, 연쇄성 방화사건에 대한 범행 내용에서 나타난 특성이다. 연속방화사건의 경우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연쇄방화사건에 비해 많았고 범행 후 행동에 있어서 연속방화의 경우 범행 후 도주한 비율이 연쇄방화에 비해서는 낮았으며 범행에 대한 반성과 후회정도에 있어서 후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즉, 연속방화사건은 술을 먹고 술김에 새벽 내내 불을 지르며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었다.

〈기록조사에서 나타난 연쇄성 방화의 특성〉

연쇄방화 범죄자에 대한 면접조사에서 방화 사건들은 대부분 밤에서 새벽 사이의 시간에 집 근처 또는 자주 지나다녀 익숙한 곳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하였다. 이때 많은 범죄자들은 거주지 혹은 술집에서 출발하여 범행 장소까지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동시간은 도보로 약 5분 정도가 가장 많았다. 이것은 방화 범죄자들이 불을 지르는 장소가 범죄자들의 생활환경 안에서 선택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방화 동기를 살펴보면 분노나 화가 동기가 되었던 방화와 충동적인 방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분노의 내용은 구체적 대상을 향한 분노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 등이 있었다. 구체적 대상을 향한 분노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금전적 피해나 정서적 모욕감을 주었다는 생각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으며,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는 평소에 느끼고 있던 추상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충동적인 방화는 정신질환이나 자극을 추구하려는 욕망 등의 이유로 방화의 충동이 생겨 불

을 지른 것이다. 그런데 분노와 충동이 서로 무관한 요소는 아닌데, 평소 자기 처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방화 충동을 증가시키는 모습도 발견되었던 것이다.

방화 범죄자들은 평소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이로 인해 일상적인 긴장상태에서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은 다양한 경로로 방화와 연결되고 있었다. 방화범죄자들이 겪고 있던 스트레스는 빈곤, 실직 등의 경제적 곤란, 가정불화, 애정문제 등의 정서적 곤란, 기타 관계적인 문제 등이 발견되었다.

이들이 불을 질러야겠다고 결심한 시점은 촉발요인이 될 수 있는 갈등상황이 발생할 당시, 갈등 후 음주 상황, 일상적인 음주상황 등 다양하게 발견되며, 갈등이나 음주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방화 충동을 가지고 있는 사례들도 있었다.

방화 범죄자들의 방화 직전 행적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음주상태였으며, 범행 직후에는 불이 완전히 타는 것을 보고 나서 도피한 사례보다는 불이 붙는 도중에 집이나 다른 장소로 도피하는 사례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범죄자들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CCTV라 할수 있는데, 조사된 사례 중 반 이상이 CCTV에 범행 내용이 찍힌 것이 체포에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방화범죄자들의 경우 CCTV 존재 여부를 살피거나, CCTV의 시야를 피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방화범죄자의 체포에 있어 CCTV에 의존하기 보다는 다양한 수사 기법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그 밖에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에 의해 체포된 사례들도 다수 있었다.

범죄자들 중에는 불을 지른다는 것에 재미 또는 만족을 느끼는 사례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느낀 사례들도 있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범죄자들이 느낀 두려움은 오히려 스릴을 제공해 주는 새로운 자극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방화 범죄자들 중 범행당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체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사례가 많았는데, 이것은 방화가 그리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행위 자체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이후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죄의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와 연관하여 범죄자들 가운데에는 ‘술때문’, ‘큰 피해가 있을지 몰랐음’, ‘불을 낼 생각이 아니었음’, ‘당시 상황은 어쩔 수 없었음’ 등의 정당화 기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례도 있었다.

면접 대상이 된 연쇄 방화 범죄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범행 당시 실직상태이거나 일거리가 없어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있었고,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 노무직이나 저임금 비숙련 노동에 종사하고 있어서 어려운 생활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미혼이거나 이혼한 상태였으며, 사회관계에 있어서도 평소 교류 하던 친구가 거의 없거나 표면적인 사회관계만을 유지하고 있어서 사회적 지지체가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주로 ‘술을 마시는 것’이었으며,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혼자 하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다.

범죄자들은 어린 시절에 불우한 경험을 가진 경우가 많았는데, 조손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방임된 환경에서 성장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하였거나, 가출등의 경험으로 인해 가족 내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례들도 있었다.

또한 많은 범죄자들이 학교를 중퇴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못하는 등의 학업 중단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많은 이유는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들 중에는 학창시절에 폭력피해경험 또는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범죄자들도 다수 있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성격 특성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소심한 성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다혈질적인 성격도 내성적인 측면과 결합하여 분노는 표출하지만 자신의 감정은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연쇄 방화 범죄자들 중에는 술을 마실 때도 혼자 마시는 음주 습관이 다수 발견되며, 간혹 술을 먹으면 폭력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사례들도 있었다.

면접 대상자 중에는 정신지체, 정신분열, 우울증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례들도 있었다.

〈방화수사체계 개선방안〉

우리나라 방화수사체계는 민간의 화재조사 기능이 취약하며, 공공조사기관 상호간의 협조체계가 부족하고, 화재조사 전문요원의 조사능력과 과학적 연구가 부족하여 화재조사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화재조사체계는 공공 조사체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화재원인과 피해액 산정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 비중이 크고, 민간 화재조사체계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민간의 조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연구기관의 화재조사 전문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민간 화재조사관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민간 화재조사관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조사관의 탐정활동을 허용하는 법률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하에서 보험사고 등과 관련된 각종 화재사건의 법률적, 행정적 업무를 대행할 사설 화재전문감정업체가 도입된다면 화재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화재조사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 화재조사기관의 상호 협조와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과 소방기관의 화재조사업무의 협조를 위해서는 경찰 화재조사와 소방 화재조사의 업무한계와 상호협력, 업무가 경합하는 경우의 협력관계 등을 상세히 명시한 경찰·소방의 공조규약을 양해각서(MOU)형태로 체결하여 화재조사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화재사건의 경중에 따라 테스트포스팀(T/F팀)을 운영하여 화재현장에 동시에 합동으로 감식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화재조사의 상호협력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화재조사관들의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교류를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다. 따라서 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 화재조사요원전문화과정 등 화재조사와 관련된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경찰수사연수원, 중앙소방학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여 유대감을 넓힌다면 현장조사에 있어서 상호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화재조사 전문요원의 조사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론위주의 화재조사요원양성단계의 교육훈련을 사례와 실습중심의 교육훈련으로 전환하고, 학회, 세미나 등을 통해 경험한 다양한 화재조사 사례를 발표하

고, 특이한 사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 최신 화재감식 기법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선 화재조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단위의 화재조사보다는 시·도 중심의 광역단위 화재조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순화재를 제외한 피해가 심각하거나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등 중요한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지방경찰청 단위의 화재감식반에서 화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화재조사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화재관련 감정 및 연구기관을 확충하고 최신 기자재, 온라인망 등을 통한 과학적 화재조사기법의 발전을 통해 화재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제한된 연구 인력으로 늘어나는 화재잔해물의 감정의뢰건수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연구실은 인원을 증원해 화재분석과로 확대·개편되어야 하며, 각 분원에도 화재감정 인력을 증원하여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중앙소방학교 산하의 소방과학연구실은 방염제품 성능실험, 소방시설과 설비의 성능실험 등과 함께 화재현장의 증거물 감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의 형태로 운영되는 소방과학연구소로의 설립이 요망된다. 한편, 화재조사결과 수집된 자료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전국의 경찰기관과 소방기관이 온라인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화재조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양기관의 화재조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1장 서론

박형민

제1절 문제제기

1. 연쇄 강력범죄 연구의 의의

강도, 강간, 방화 등의 강력범죄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야기할 뿐아니라(김지영, 박형민, 2009), 일반인들에게도 범죄의 두려움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최선의 해결책은 예방활동을 통해 강력범죄의 발생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다. 특히 연쇄 강력범죄의 경우 범죄의 지속성 및 강도에 있어서 일반 강력범죄보다 더 중요한 형사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쇄강력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실태파악과 각 범죄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연쇄 강력범죄에 대한 실태파악의 유용성은 수사실무적 측면, 교정실무적 측면, 학술적 측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경찰의 수사실무적 측면에서 연쇄강력범죄는 일회성범죄와 달리 범죄동기와 수법에 있어 일관성을 지니기 때문에 연쇄강력범죄 및 범죄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교정실무와 보호관찰의 차원에서 연쇄강력범죄자가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회심리적 원인을 파악하여 재범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지막으로 학술적 측면에서 연쇄강력범죄에 대한 실태 파악은 학문적 연구의 기초자료로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연쇄강력범죄의 실태 및 연쇄강력범죄자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거의 없는 상황이다. 기존에 수행된 연쇄 강력 범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연쇄 살인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쇄방화나 연쇄강간, 연쇄강도범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연쇄 강력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위험성에 비하여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극히 미약한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연쇄강력범죄의 수법 및 동기, 범죄발생의 상황적 특성, 연쇄강력범죄자의 사회심리학적 특성, 피해자 특성 등을 파악하여 교정강력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기능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총 3년동안 수행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3년차 보고서의 제1년차 보고서로서 ‘연쇄 방화의 실태 및 특성’을 다루도록 할 것이다.

2. 연쇄 방화범죄 연구의 의의

방화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청, 검찰청의 실무에서 강력범죄로 분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살인 등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이 기울여 진 것이 사실이다. 방화범죄는 짧은 시간에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범죄자가 의도한 것 보다 훨씬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방화에 대한 연구 및 전문가가 극히 부족한 실정인 것이다. 방화의 경우 피해의 범위가 구체적인 대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연쇄방화는 의도성, 계획성 등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연구와 대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연쇄 방화의 경우 수사단서를 남기지 않는 사례가 많아 범죄자 체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수사실무상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는 학술적,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많은 선행연구들은 외국의 연구성과를 정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국내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연쇄 방화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에 비해 실증적 연구는 미약한 실태라는 점을 인정하

여야 한다. 또한 방화에 대한 수사체계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경찰과 소방의 협조체계가 부족하며, 민간조사(보험회사 사회조사팀 등)와의 협력 관계 역시 구축되어있지 않음으로 인해 필요한 자원을 적절히 공유하고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방화에 대해서는 잠복위주의 수사관행을 가지고 있어 효과적이지 않으며, 전문 방화 수사인력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연쇄방화 및 연쇄방화범죄자에 대한 자료 축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차분히 기본적인 연구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화사건 중 개별 방화 사건이 2회 이상인 경우를 ‘연쇄성 방화’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 중 2회 이상의 방화가 심리적 냉각기 없이 하루 동안 발생한 것이라면 ‘연속방화’로, 2회 이상의 방화가 하루 이상의 심리적 냉각기를 두고 발생한 경우는 ‘연쇄방화’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쇄범죄 관련 연구에서 아직은 ‘연쇄’를 규정하는 기준이 완전하게 합의된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연쇄살인을 규정하는 경우, FBI와 ‘사건 사이에 냉각기를 둔 채 세 곳 이상에서 세 차례 이상의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정의하기도 하지만 (Brantley & Kosky, 2005; Davies, 2007 재인용), 에거(Eggar, 1990)가 정의내린 바와 같이 2건 이상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최근에는 FBI에서도 ‘같은 범죄자에 의해서 발생한 2건 이상의 구분된 살인’으로 연쇄살인을 정의하고 있다(Davies, 2007:209). 또 한편으로는 4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연쇄살인으로 규정하기도 한다(Jenkins, 1994). 그리고 ‘연쇄’범죄를 규정짓는 ‘냉각기’에 대해서도 학자마다 그 기간이 최소 수 일, 혹은 몇 년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Douglas et al., 1992).

본 연구에서는 연쇄범죄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형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보고, 넓은 의미에서 연속방화를 포함하는 연쇄방화를 ‘연쇄성 방화’라 정의하여 이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심리적 냉각기를 하루로 보아 연속방화와 연쇄방화를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 구분은 ‘연쇄 방화’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부여한 범주이며, 다른 연쇄범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연쇄의 규정과 분류방식이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방법

1. 기록 조사

경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1 범죄통계」에 따르면 방화범죄는 지난해 2,003건 발생하였다(경찰청·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이 가운데 연쇄적으로 발생한 방화사건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사건 수를 정확히 추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도 연쇄 방화범죄의 발생 실태보다는 연쇄성 방화사건과 연쇄성 방화범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주목하였다.¹⁾ 본 연구진은 대검찰청의 협조로 지난 10년간 방화관련 사건 목록(약 2만건)을 제공받아 그 가운데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건을 확인하여 해당 지방검찰청에 사건기록 열람을 신청하고 기록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대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지방검찰청, 사건번호와 죄명에 대한 목록으로 해당 방화사건의 연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즉, 지난 10년간 발생한 방화사건기록들 가운데 연쇄방화사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지방검찰청에 지금까지의 모든 방화사건기록에 대해 열람 신청을 하고 직접 각 사건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방화사건 가운데 연쇄방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사건 기록을 살펴보는 것은 제한된 조사 기간과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진은 제공 받은 방화사건 목록 가운데 연쇄방화사건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우선적으로 표집하여 열람 신청을 하고 기록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연쇄방화사건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추리기 위해 지난 10년간 연쇄 방화관련 기사검색으로 연쇄방화가 발생한 년도²⁾와 지방검찰청, 그리고 죄명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뽑아 방화범죄 사건 기

1) 경찰청 및 전국지방검찰청에서 운용하는 강력범죄자의 프로파일링을 지원하는 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s, SCAS)의 경우에도 연쇄범죄 여부에 대한 별도의 검색이 불가능하여 연쇄방화의 발생율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제한적 수준에서 범행 입력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연쇄방화 관련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실제로 김경옥(2009), 유원석·황성현(2011)은 SCAS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대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건 정보는 지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사건발생년도 또한 해당 사건번호의 앞 4자리로 추정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해당 사건번호의 앞 4자리가 사건발생연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된 사건 정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록에서 연쇄방화사건기록을 열람할 확률을 높였다. 한편, 연쇄방화범죄 및 범죄자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비연쇄성 방화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비연쇄성 방화사건은 연쇄사건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목록에서 연쇄사건으로 추정되는 사건의 발생년도, 지방검찰청, 죄명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뽑았다. 이러한 과정과 함께 현실적인 조사여건³⁾을 고려하여 총 810건에 대한 사건기록을 해당지방검찰청에 열람 신청을 하고 기록조사 협조 요청을 하였다.

본 연구진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방화관련 사건기록을 해당지방검찰청에 방문하여 2012년 6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사전에 준비된 조사표에 사건기록에 대한 내용을 코딩하는 방법으로 기록조사를 진행하였다. 연쇄성 방화사건과 비연쇄성 방화사건 기록을 조사함에 있어서 연구진에게 허용된 시간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쇄성 방화사건 기록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일회성 방화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기록조사 결과, 열람을 신청한 사건기록 가운데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한 문서나, 다른 청으로 옮겨간 기록을 제외하고 총 410건이었다. 사건 기록 수는 범죄자 수와 일치하여 410건의 사건기록은 결국 방화 범죄자 410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연쇄성 방화범 262명, 연쇄성 방화범 148명이다.⁴⁾ 즉, 연쇄성 방화범 148명이 방화사건을 2회씩 저질렀다고 가정하면 본 연구에서 분석 가능한 연쇄성 방화사건 건수는 296건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기록조사표는 연쇄성 방화사건 여부와는 상관 없이 동일한 조사표를 사용하여 비연쇄성 방화사건기록 조사에서는 연쇄성 방화사건 관련 변수 항목을

3) 현실적인 조사여건 가운데 중요한 변수는 본 연구를 포함하여 총 6명의 기록조사원이 제한된 조사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기록 가능 건수였다. 특히, 연쇄범죄의 경우 기록조사 원칙상 개별 사건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사전 예비기록조사를 실시한 결과 2회인 연쇄성 범죄사건을 기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시간이었다.

4) 목표 표본 수는 연쇄성 방화사건 기록 405건, 비연쇄성 방화사건 기록 405건으로 동일한 비율을 예상했지만 기록조사 결과 실제 열람 가능한 사건 기록 건수 자체가 부족하였고, 본 연구진이 연쇄성 방화로 추정된 사건이 연쇄성 방화가 아닌 경우가 상당 부분 나타나 결과적으로 비연쇄성 방화사건 기록의 수가 더 많다. 하지만, 비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이미 무작위표집을 통해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비연쇄성 방화사건을 연쇄성 방화사건 기록 수만큼만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5) 본 연구진의 조사일정과 창원지방검찰청의 내부 일정이 겹치는 관계로 조사 협조를 받지 못했다.

표 1-2-1 사건 기록 조사 일정 및 열람 사건 기록 수

일자	기관명	열람신청 사건기록수	열람 사건 기록 수		
			비연쇄성 방화사건기록	연쇄성 방화사건기록	총
6월 20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2건	11건	2건	13건
6월 21일 ~ 6월 2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44건	26건	6건	32건
6월 25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18건	12건	5건	17건
6월 26일 ~ 6월 29일	대구지방검찰청	88건	35건	9건	44건
7월 5일	창원지방검찰청 ⁵⁾	12건	-	-	-
7월 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8건	9건	6건	15건
7월 6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건	10건	3건	13건
7월 11일	청주지방검찰청	30건	11건	8건	19건
7월 12일	대전지방검찰청	22건	9건	8건	17건
7월 17일	울산지방검찰청	24건	12건	4건	16건
7월 18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2건	12건	3건	15건
7월 19일 ~ 7월 20일	부산지방검찰청	52건	15건	9건	24건
7월 24일 ~ 7월 25일	광주지방검찰청	40건	18건	12건	30건
7월 26일 ~ 7월 27일	인천지방검찰청	68건	8건	10건	18건
7월 31일 ~ 8월 1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14건	2건	5건	7건
8월 2일 ~ 8월 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46건	11건	8건	19건
8월 6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8건	6건	4건	10건
8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	30건	0건	9건	9건
8월 9일 ~ 8월 10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4건	13건	3건	16건
8월 13일 ~ 8월 1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46건	7건	10건	17건
8월 16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6건	5건	6건	11건
8월 23일	의정부지방검찰청	24건	2건	8건	10건
8월 27일 ~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92건	28건	10건	38건
전체 사건기록 수		810건	262건	148건	410건

건너뛰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연쇄성 방화범이 저지른 개별 사건마다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하나의 조사표에 3회까지의 사건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건의 범행을 저지른 방화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사표 4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연쇄성 방화범이 저지른 개별 사건 모두를 조사하는 이유는 동일한 사람에 의해 범행이 저질러졌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건의 발생시간, 범행대상, 범행수법, 범행 후 행동, 범행동기 등의 특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기록조사는 다수의 조사원을 통해 이루어져 조사원에 의한 오류 즉, 기입하는 주체가 달라 상이한 조사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모든 조사원은 기록조사표에 대한 조사 지침 내용을 숙지하였고 조사원들 간 조사표를 이중으로 점검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기록조사표에 대한 조사 지침 내용은 주요 변수 측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도록 하겠다.

2. 면접조사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교정보부를 통해 총 41명의 연쇄방화범죄자로 추정되는 수용자의 수용현황 파악하였고, 수용현황 파악 이후 각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정기관의 협조를 얻어 면접대상자의 면접동의 여부를 알아보았다. 이렇게 하여 총 22명의 수용자가 면접조사에 동의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가 분포되어 있는 구체적인 소별 현황은 심층면접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여기에서 밝히지는 않겠다.

면접은 교정기관의 상황에 따라 상담실, 변호인 접견실, 회의실 등 면접조사에 적절한 공간을 협조받아 반구조화된 면접지를 가지고 일대일 개별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교정직원의 배석 하에 이루어졌으며,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보조원이 면접 내용을 컴퓨터에 그대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면접내용을 기록하였다.

면접 시간은 가장 짧은 면접은 약 1시간 정도, 가장 긴 면접은 약 2시간 10분 정도 등으로 개인별로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면접 내용은 ‘범행 시간’, ‘범행 장소’, ‘범행 시 이동경로’, ‘범행 동기’, ‘스트레스 요인’, ‘불 선택요인’, ‘범행전후 행적’, ‘범행 전후 감정’, ‘처벌에 대한 두려움’, ‘체포과정’ 등의 ‘범죄행위의 특성’ 관련 질문과 ‘범죄자의 경제적 상황’, ‘가족상황’,

‘사회관계’, ‘스트레스 해소방법’, ‘어린 시절 성장배경’, ‘학력’, ‘폭력경험’, ‘성격’, ‘음주습관’ 등 ‘범죄자의 특성’ 관련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3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연쇄방화의 개념을 재검토하고 방화 및 연쇄방화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하여 연구의 기초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제3장 ‘기록조사에서 나타난 연쇄성 방화의 특성’에서는 방화범 410명의 수사및 재판기록에 포함된 총 978건의 방화사건을 조사하여, 연쇄성 방화 범죄자 및 방화 범죄 행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4장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연쇄성 방화의 특성’에서는 총 22명의 연쇄성 방화 범죄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연쇄성 방화 범죄자 및 방화 범죄 행위의 보다 구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5장 ‘방화 수사체계 개선방안’에서는 우리나라 방화 수사 절차와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주요 외국의 방화수사체계를 참조하여 향후 우리나라 방화수사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최수형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연쇄 방화범죄의 이론적 논의

1. 연쇄방화의 개념 및 정의

방화(arson)는 의도적(willful)이고 악의적(malicious)인 목적으로 재산을 태우는 행위이다(Douglas et al., 1992). 즉, 방화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을 저지르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Bennett & Hess, 2001; Dempsey, 1996; Brogan, 2009:351에서 재인용). 한편, 우리나라에서 방화죄는 고의로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 일반물건을 소훼함으로써 성립하는 공공의 위험 범죄이다(최승복최돈묵, 2009:185). 불의 속성상 불을 저지른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변의 물리적 환경요인만으로도 범행 대상 뿐 아니라 그 주변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아 피해 대상이 광범위하고 경제적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방화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은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방화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위기감은 극도에 다다른다. 일반적으로 연쇄방화는 반복적으로 불을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데 학자마다 ‘연쇄’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어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검거된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기준으로 만든 범죄 분류 매뉴얼(Crime

Classification Manual: CCM)에 따르면 방화 형태는 불을 놓은 횟수, 범행의 수, 범행 장소의 수, 냉각기에 따라 구분된다. 즉, 불을 놓은 횟수, 범행의 수와 범행 장소의 수, 냉각기에 따라 단일방화(single arson), 이중방화(double arson), 삼중방화(triple arson), 대량방화(mass arson), 연속방화(spree arson)⁶⁾, 연쇄방화(serial arson)로 구분된다. 즉, 연쇄방화는 3곳 이상의 장소에서 3회 이상의 방화를 저지르며 심리적 냉각기(emotional cooling-off period)를 가지는데 이 기간은 몇 일, 몇 주, 몇 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사이에 간격을 전혀 예상할 수 없고 희생자 선택에 있어서도 무작위적이며 방화의 동기도 분명치 않다(Douglas et al., 1992).⁷⁾ 한편, Douglas 등(1992)에 따르면 연속방화(spree arson)는 범행 사이의 심리적 냉각기가 없이 3곳 이상의 장소에서 불을 놓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로 Detroit 나 Michigan 지역에서 할로윈 전날인 Hell night 동안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수 차례 불을 지르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대량방화(mass arson)은 제한된 시간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3번 이상의 불을 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빌딩에서 각 층마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Douglas et al., 1992).

표 1-1-4 방화의 횟수와 성격에 따른 분류

형태	single	double	triple	mass	spree	serial
불을 놓은 횟수	1	2	3	3회 이상	3회 이상	3회 이상
범행의 수	1	1	1	1	1	3회 이상
범행장소의 수	1	1	1	1	3곳 이상	3곳 이상
냉각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출처: www.interfire.org⁸⁾

박철현(2004)에 의하면 연쇄방화는 방화 중 가장 심각한 유형으로 보통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방화를 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피해자나 피해물의 선택이 보통 무작위적으로 행해지며, 사건사이의 시간적 거리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한편,

- 6) 홍성열(2009)은 ‘spree arson’을 간헐방화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 7) 한편, 홍성열(2007)은 하루, 이틀, 혹은 삼일 간격을 두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것은 연속방화로 봐야 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냉각기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8) 화재조사를 위한 사이트로 FBI에서 수행한 연쇄방화 관련 연구내용을 온라인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진은 해당 사이트에서 ‘serial arson’으로 검색한 후 관련 연구 내용을 참고하였다.

최승복최돈묵(2009)은 방화범이 스틸이나 흥분, 희열 등을 얻기 위해 3회 이상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방화를 하며 각각의 방화간격사이에 특이한 심리적 냉각기를 가지면서 저지르는 방화라고 정의하였다. 즉, 연쇄방화는 연쇄살인과 유사하여 일정 기간 안에 냉각기를 포함하여 회를 거듭할수록 범죄의 잔인성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더 심각한 방화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홍성열, 2007).

한편, 지금까지 연쇄범죄 관련 연구에서 사용한 ‘연쇄(serial)’ 개념을 살펴보면 Holmes와 Holmes(1996)은 3명 이상의 희생자가 있을 때 연쇄살인이라고 하였고 Jenkins(1994)는 4명이나 그 이상으로 보기도 했다. 그리고 Lundrigan와 Canter(2001), 박형민(2009)은 연쇄살인을 규정함에 있어서 2건 이상의 범죄로 확장하여 사건 사이에 냉각기를 둔 채 두 차례 이상의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연쇄강간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Canter와 Larkin(1993)은 범행이 알려지기 전에 여성들에 대해 2번 이상의 폭행으로 기소된 사람들을 연쇄강간범으로 규정하였다. 1988년부터 2003년까지 발생한 연쇄방화범을 대상으로 범죄자의 거주지와 범행 장소간의 거리를 살펴본 Edward와 Grace(2006), 연쇄방화범에 대한 유형분류를 시도한 Kocsis와 Cooksey(2002)에서는 3회 이상의 방화사건을 저지른 경우를 연쇄방화범으로 보았고, 여성연쇄방화범을 대상으로 한 연구(Wachi et al., 2007)에서는 일반방화범 가운데 방화 전과가 5회 이상인 경우를 연쇄방화범이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김경옥(2011)과 유완석황성현(2011)의 국내 연구에서는 1건의 방화범은 비연쇄방화범으로, 2건 이상 방화범은 연쇄방화범으로 구분하였다. 유완석황성현(2011)은 일선 수사현장에서 2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반복되는 범죄를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사 방향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연쇄범죄로 수사하는 국내 수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연쇄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상이하다. 이는 연쇄란 개념 정의에 있어서 범행의 횟수 기준과 심리적 냉각기라는 개념이 지니는 모호성으로 인해 이를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실증적 연구의 경우에는 제한된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해당 변수에 대한 한계성을 지닐 수 밖에 없다. 즉, 지금까지 진행된 연쇄방화관련 연구 가운데 연쇄방화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연쇄를 규정함에 있어서 범행 사건의 횟수를 기준으로 2회나 3회, 혹은 그 이상으로 정의하는 등 연구자와 연구 내용에 따라서 상이하여 일반화되지 않았다.

2. 연쇄방화의 유형 및 형태

방화범죄자의 유형은 정신의학적·심리학적 연구들 뿐 아니라 동기론적 유형 분류를 지향하는 범죄학적 관점에서 수행되었다(Geller, 1992; Lewis & Yarnell, 1951; 이수정, 2010:463에서 재인용). 연쇄방화 유형에 대한 구분은 연쇄방화범에 대한 프로파일링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시도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전체 방화범에 대한 유형 구분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에 본 절에서는 일반적인 방화범죄자의 유형을 간단히 살펴본 후 연쇄방화범을 대상으로 한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방화범죄자의 유형

Lewis와 Yarnell(1951)은 불을 지른 사람들을 6가지 범주로 구별했는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우연인지, 의도가 있는지, 성적인 동기인지, 복수가 목적인지 등으로 분류했으며 Bradford(1982)는 Lewis와 Yarnell(1951)의 범주에 ‘복합적 동기’와 ‘전문적’, ‘도움을 요청’ 했는지 등을 추가하여 유형화하였다(Doley, 2003).

범죄유형분류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Douglas 등(1992)의 유형 분류는 6가지로 ①반달리즘 방화, ②흥분형 방화, ③복수형 방화, ④범죄은폐형 방화, ⑤이익추구형 방화, ⑥극단주의형 방화이다.⁹⁾ 이 유형의 경우 범죄특징과 범행자의 다양한 개인적 성격을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범죄자의 특징, 수사방향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고 연쇄범죄 관련 연구에서도 지지받고 있다(Canter, 1994; Holmes, 1996a, 1996b; Pinizzotto & Finkel, 1990; Wood, 2000; Doley, 2003:349에서 재인용).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범죄자 프로파일을 만드는 데 기초자료로 제공됨에 따라 그 의의가 크다(Bartol & Bartol, 1994; Douglas, Ressler, Burgess & Hartman, 1986; Turco, 1990; Doley, 2003:349에서 재인용).

그러나 동기에 따른 유형 분류는 범죄자가 검거된 이후에 확인 가능한 것이고 때로는 범죄자조차 자신의 동기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분류의

9) 본 유형에 대한 설명은 이후 ‘연쇄방화범의 유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겠다.

기준으로서 한계가 지적되었다(Hill et al., 1982; O' Sullivan & Kelleber, 1987; Hkknen et al., 2004; 이수정, 2010:463에서 재인용). 이에 범행 현장 행동에 따른 유형분류가 Canter와 Fritzon(1998)에 의해 제시되었다. Canter와 Fritzon(1998)은 영국에서 발생한 175건의 방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 4가지 행동방식-① 절망적 방화, ②파괴적 방화, ③과시적방화, ④손해적 방화-을 만들었는데 이 분류방식은 기존의 범행동기를 통한 유형분류 방식이 아닌 범죄현장행동과 범행자의 개인적 특성 사이의 관계를 기반으로 분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Doley, 2003). 국내에서도 범죄 현장 행동적 특성을 중심으로 방화범을 살펴본 이수정(2010)은 한국의 방화는 ①좌절에 의한 방화, ②보복적 방화, ③알콜 의존에 의한 방화, ④이익 추구적 방화, ⑤자기 과시적 방화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Turney(2001)은 불을 지를 때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단순 방화(fire setting), 의도적 방화(intentional setting)으로 구분하였다(홍성열, 2011:309). 한편, Doley(2003)는 모든 방화분류체계가 결점이 있다고 하면서 그 원인으로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지적하였다. 즉, 방화범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상당 부분이 지극히 제한적인 표본으로 전체 방화범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방화유형의 구분이 명확한 것만은 아니어서 개별 유형들의 특징이 서로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유형에 따른 특징 분석을 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2-1-2〉 방화범죄의 유형별 분류

연구자	유형분류
Lewis & Yarnell(1951)	①동기에 의한 방화범, ②방화광에 의한 방화, ③의용소방대형, ④영웅심리형방화범, ⑤부랑자형방화, ⑥정신이상자에 의한 방화
Boudreau(1977)	①보복 원한 질투에 의한 방화, ②반달리즘 고의적 기물파괴, ③범죄은닉주의 확산전략방법의 방화, ④이득목적보험사기를 위한 방화, ⑤합박 공장 테러파괴공작을 위한 방화, ⑥방화벽 및 그 밖의 심리적 동기에 의한 방화
Rosenbauer(1981)	①반달리즘에 의한 방화, ② 원한에 의한 방화, ③방화광에 의한 방화, ④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방화, ⑤범죄은닉을 위한 방화
Bradford(1982)	①우연적인 방화, ②정신이상 및 정신착락에 의한 방화, ③ 복수를 위한 방화, ④성적 만족을 위한 방화, ⑤관심 끌기 및 도움요청을 위한 방화, ⑥ 전문적인 방화, ⑦어린이들의 방화, ⑧복합적인 동기에 의한 방화
Inciardi & Binder(1983)	①복수를 위한 방화, ② 반달리즘에 의한 방화, ③ 범죄은폐 목적 방화, ④보험금목적방화, ⑤흥분방화, ⑥ 방화광에 의한 방화, ⑦ 시설 내 수용자에 의한 방화, ⑧ 복지사기방화, ⑨공명심을 위한 방화

연구자	유형분류
Sakheim & Osborn(1986)	①호기심 또는 우연에 의한 방화범, ②도움을 갈구하는 방화범,③ 관심을 끌고자 하는 방화범, ④영웅이 되고자 하는 방화범,⑤ 흥분이나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방화범, ⑥정신병적 방화범
Geller et al(1992)	① 정신생물학적 장애관련방화, ②정신적 문제관련 방화, ③의학적 ,신경학적 장애와 관련된 방화, ④청소년방화
Doulas et al(1992)	①반달리즘방화 ②흥분형 방화 ③ 복수형방화,④ 범죄은폐형 방화 ⑤이익추구형방화 ⑥극단주의형 방화
Baker(1994)	①이윤을 위한 방화,②양심을 품은 방화(질투나 복수),③도구적 방화(범죄은폐, 도움을위한 방화, 자기따괴,어린이,영웅형),④순수한방화(성적 만족, 즐거움, 흥분,반달리즘, 지루함),⑤명백한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방화
White(1996)	①방화광에 의한 방화, ②복수를 위한 방화,이득을 얻기 위한 방화,③영웅심,허영심을 위한 방화,④ 스킵추구,파괴를 위한 방화,⑤ 청소년방화,⑥ 범죄은닉을 위한 방화,⑦ 테러,사회적 항거를 위한 방화
Harris & Rice의 정신장애인 방화범분류(1996)	①정신병자형,② 바자기주장자형, ③다중 방화범형, ④ 범죄자형
Canter & Fritzon(1998)	①절망적 방화, ②파괴적 방화, ③과사적방화, ④손해적 방화
박형민(2004)	①위협방화②살수방화③보복/복수/친양방화④화풀이방화⑤충동방화⑥자살을 위한 방화⑦다른 범행을 위한 방화
김상균(2009)	①경제적 이익에 의한 방화, ②범죄은폐를 목적으로 한 방화,③ 원한,복수 미움에 의한 방화, ④스릴·장난·사회불만에 의한 방화,⑤방화광에 의한 방화, ⑥ 직업적 보상을 위한 방화
이수정(2010)	①좌절에 의한 방화, ②보복적 방화, ③알콜의존에 의한 방화, ④이익추구적 방화, ⑤자기과사적 방화

출처: 박형민, 2004; 이수정, 2010, 이하섭, 2011:116, Fritzon, 2001; Doley, 2003; lowenstein, 2003 재구성

나. 연쇄방화범의 유형 및 특징

연쇄방화범의 유형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FBI의 방화와 폭력물범죄 수사반(Arson and Bombing Investigative Service Subunit : ABIS)이 수행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연쇄방화범(n=83)이 저지른 방화사건(n=1,474)을 범죄 분류 메뉴얼(Crime Classification Manual: CCM)의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¹⁰⁾ 즉, ①반달리즘 방화, ②흥분형 방화, ③복수형 방화, ④범죄은폐형 방화, ⑤이익추구형 방화, ⑥극단주의형 방화에 따른 연쇄방화범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아래는 6가지 유형별 연쇄방화범의 특징과 주요 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¹¹⁾

10) 방화유형 분류는 Douglas 등(1992)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FBI의 폭력범죄분석센터(National Center for the Analysis of Violent Crime: NCAVC)에서 채택하여 범죄분류메뉴얼(Crime Classification Manual: CCM)에서 소개되고 있다(임준태, 2009:375).

1) 반달리즘형 방화(Vandalism-Motivated Arson)

반달리즘은 파괴와 피해를 목적으로 하는 사악한 의도에 기반한 방화이다.

① 반달리즘형 방화에 속하는 연쇄방화범의 개인적 특성

반달리즘 연쇄방화범은 전형적으로 백인에 남성, 문신이나 상처나 흉터가 있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은 결혼하지 않았으며 군에 복무하지도 않았다. 평균 교육 수준은 11년이고 학업 성적은 나빴다. 이들은 평균이거나 이하의 아이큐를 보이고 성적취향은 이성애자이다. 직업은 비숙련직이고 대체로 안정적으로 근무했으며 대부분 중산층가정이나 안정적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자랐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엄마와는 좋으나 아빠와는 다소 멀거나 나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어린 시절을 친부모와 보냈으며, 가족은 지역교회에 충실히 다니며 지역 활동에도 참여했다. 한편, 반달리즘형 연쇄방화범은 여러 가지 경범죄와 중죄로 체포되어 소년원이나 감옥에서 머문 기간이 길다. 정신 병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신보호시설에 한번 이상 입원했고 자살시도나 우울증 등의 병력이 있다.

② 반달리즘형 방화에 속하는 연쇄방화범의 범행 관련 특성

연쇄방화범 가운데 반달리즘형의 경우는 재산에 피해를 일으키려는 악의적인 화재로 충동적이고 무계획적이고 우연히 일어난다. 범행 대상으로 학교나 학교재산, 교육시설이 가장 일반적인 목표이고 버려진 건물이나 초목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범행 도구로는 성냥이나ライター같은 물품을 이용하고 현장에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으며 불을 내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불이 나는 광경을 지켜보거나 진압에 참여하지 않는다. 반달리즘 연쇄방화범들은 체포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방송에서 자신의 사건을 확인하며 경찰이나 미디어와 접촉하려한다. 그러나 자신이 사건에 끼어들거나 그들의 방화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은 방화 후에 특별한 변화 없이 현재의 생활방식을 유지한다. 체포 후에도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며 무죄를 주장하거나, 유죄를 인정하지 않다가 재판 전에 유죄를 인정한다.

11) 해당 내용은 화재조사 사이트인 www.interfire.org 에서 'serial arson'으로 검색한 결과 온라인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FBI의 NCAVC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③ 반달리즘형 범행과정

첫 방화가 평균 8살로 어린 시기부터 불을 지르기 시작한다. 반달리즘은 그가 익숙한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며 혼자서 활동한다. 쓰레기 더미 등이 첫 목표이며 빈 건물이나 사람이 없는 곳에서 범행을 하다가 문이 열려있으면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지르기도 하지만 상업시설은 거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을 지르며 주말에 학교나 근무시간에 끝난 후에 대부분한다. 여기서 기회는 특별한 선택이 아니고 시간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현장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집이나 직장에서 0.5-1마일내이며 이동이 필요하다면 자동차를 이용한다. 반달리즘형 연쇄방화범은 방화전에 술이나 약물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으나 평상시와 비슷한 정도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범행 빈도는 안정적이거나 심각성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다.

④ 반달리즘형 방화의 주요 사례

19살로 학교를 중퇴했고 미국 북동부도시들에서 방화를 했다. 그는 라이터로 이용 가능한 재료들에 불을 붙였다. 그는 빈 건물이나 차고에 31건의 방화를 했음을 인정했다. “내가 쓰레기통이나 더미 등에 얼마나 방화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난 그냥 태웠어요. 그건 단지 해야 할 것이었어요. 그런 집들과 더미들은 어쨌든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라고 말했다. 그는 체포 되기 전에 2번 의심받고 난후 9채의 집을 태운 혐의로 기소되었다. 10학년 때 학교를 중퇴한 후에 비숙련 직업에 드문드문 종사했으며 할머니와 살았는데 그녀는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신경 쓴 유일한 것은 내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내 친구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라고 말했다. 그의 부모는 그가 2살 때 이혼했으며 엄마와 할머니와 번갈아 가면서 살았고 아빠와는 교류가 없었다. “엄마는 2-3번 재혼했는데 엄마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할머니한테 나를 보냈어요.”라고 말했다.

2) 흥분형 방화(Excitement-Motivated)

흥분형 방화는 다시 스틸을 위한 방화, 성적 흥분을 위한 방화, 인정(recognition)

받기 위한 방화, 관심받기 위한 방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흥분형 방화의 일반적인 경우는 스틸을 위한 방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25건중 17명(68%)이며 4명(16%)은 인정받기 위해 방화를 했고 4명(16%)은 관심(attention)추구자들이다.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방화범들은 주로 화재현장에 남아있으면서 진압을 도와주 기도 한다. 또한 관심을 받기 위한 방화범들은 주변으로부터 관심을 얻거나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불을 지른다.

① 흥분형 방화에 속하는 연쇄방화범의 개인적 특성

흥분형 연쇄방화범은 대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숙련이나 비숙련 직업에 고용되어 있고, 중산층에서 자랐으며 엄마와의 관계는 좋으나 아빠와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의 대부분은 위탁가정이나 소년원, 교도소 등의 시설에 머물렀던 기록이 있으며 또한 이들의 대다수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고 과거에 정신보호시설에 머물렀던 이들은 자살 미수 기록도 가지고 있다.

② 흥분형 방화에 속하는 연쇄방화범의 범행관련 특성

연쇄방화범 가운데 흥분형 방화의 경우는 자신이 익숙한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른다. 즉, 일반적으로 걸어서 현장에 가며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데 관심이 없고 대부분의 범행의 목적은 사소한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스틸을 위한 방화는 대형화재나 상업시설, 거주지등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의 정도가 클 수도 있다.

흥분형 방화에서 사용하는 촉진제로는 주변에서 이용 가능한 재료이며, 성냥이나 라이터로 불을 붙인다. 불이 난후에 현장에 남아있거나 불을 보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을 구경한다. 이들은 24시간이내에 현장에 다시 돌아오며 잡힐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알았더라도 멈추지 않는다. 이는 방화 형태에서 충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불이 소화되면 곧 흥미를 잃으며, 미디어를 통해 현장을 추적하지도 않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는다. 범행 후에도 자신의 생활 방식이 변하지 않으며 방화전에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는다. 술을 마신다고 해도 일상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화재의 빈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지고 심각성도 증가한다. 특히, 스틸을 위한 방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범행 내용이 대담해진다.

③ 흥분형 방화의 주요 사례

25살의 창고지기는 방화로 가석방된 후 3년 동안 자신이 저지른 수백건의 화재에 대해 자백했다. 그는 미혼이며 비숙련노동일을 하고 있다. 그는 불을 지르는 것이 가능한 모든 곳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라이터를 사용하여 쓰레기더미, 초목, 세탁물, 빈집, 창고등에 불을 질렀다. 현장에 걸어가기도 하고 종종 차를 타고 가기도 했다. 왜 불을 질렀냐는 질문에 그냥 불을 보고 싶어서 소방차가 오는 것을 보면 너무 흥분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을 해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지 않기 위해 조심했다고 말했다.

3) 복수형 방화(Revenge-Motivated Arson)

복수형 방화는 실제로 잘못이거나, 잘못됐다고 인식하는 일의 보복의 형태로 나타나며, 잘못됐다고 인지하는 상황이나 사건은 방화가 발생하기 몇 달 전 아니면 몇 년 전일수도 있다(Icove & Horbert, 1990). 복수형 방화는 보복의 목표에 따라 개인적 복수, 사회적 보복, 기관에 대한 보복, 단체에 대한 보복 등의 하위 차원으로 분류된다(Doulgas et al., 1992:261). 연쇄방화범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유형이 바로 복수형 방화이다. 이 유형의 연쇄방화범들은 단체나 개인 보다는 기관이나 사회에 좀 더 직접적으로 보복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ABIS에 의한 연구에서 보복형 방화의 59%가 사회에 대한 것이고, 7명(20.6%)은 기관에 대한 복수, 5명(4.7%)은 개인에 대한 복수, 2명(5.9%)이 단체에 대한 것이었다.¹²⁾

① 복수형 방화에 속하는 연쇄방화범의 개인적 특성

복수형 방화에 속하는 연쇄방화범들은 주로 남성이며 백인이고, 10년 정도 교육 받았고, 학교성적은 좋지 않았으며, 지능은 평균정도에 성적취향은 이성애자이며, 문신이나 흉터가 있다. 군대에 복무하지 않았고, 노동자계층이다. 이들은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으며 부모님이 둘 다 있지만 그다지 안정적이지는 않고 첫째나 둘째

12) www. interfire. org에서 ABIS의 연구결과 가운데 복수형 방화의 하위범주 기관, 개인, 사회, 단체에 해당하는 특징과 사례를 정리하여 해당 내용을 온라인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로 태어났으며 집안분위기는 차갑고 냉담했을 것이다. 한편, 이들은 보호시설경험이 많고 경범죄나 중죄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고 소년원이나 감옥에 있었던 기록들이 있다. 한편, 이들의 상당 부분이 정신질환기록이 있으며 한번이상 정신보호시설에 입원한 경험이 있다.

② 복수형 방화에 속하는 연쇄방화범의 범행관련 특성

연쇄방화범 가운데 복수를 위해 불을 지르는 경우, 처음 방화를 시작하는 평균 나이는 15살로 다른 연쇄방화범보다 늦은 나이이다. 범행 장소는 그의 집이나 직장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로 술이나 약물을 한 후 불을 지를 가능성이 높고 불을 지르기 위해 건물이나 자동차 등의 실내로 침입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범행이 반복될 때 마다 범행의 심각성은 커진다. 복수로 인한 방화는 가끔 충동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이 의도적이며 미리 예측하여 목표를 설정한다. 한편, 복수형 연쇄방화에서는 단독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범행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으며 현장에 걸어가서 불을 지르고 불이 나자마자 떠나 현장에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한편, 이들이 사용하는 범행 도구로는 현장에서 이용 가능한 도구로 성냥이나 종이나 나무이다. 사용한 증거물을 현장에 두지는 않지만 성냥은 보통 남겨둔다. 또한 복수형 연쇄방화범들은 자신의 범행임을 숨기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잡힐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은 체포되면 저항하지 않고 불을 낸 것을 쉽게 자백하며 불을 내도록 만든 다른 사람(집단, 사회등의 복수의 대상)을 비난한다.

③ 복수형 방화의 주요 사례

뉴잉글랜드지역에서 23살의 접시닻이가 16건의 화재를 저질렀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9살 때부터 성적 학대를 경험하였고 학교생활도 적응하지 못했고 항상 자살을 생각했다고 한다. 3년 전에 아버지가 죽은 후에 심하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으며 3년 동안 3번 실직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의 이웃들은 그를 친구이며 친절한 친구라고 말했다. 그는 운동에도 공부에도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성장 한 뒤에는 열심히 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가 접시닻이 말고 다른 직업을 해본적은 많지 않다. 그가 체포 되었을때도 지역레스토랑에서

접시닦이였다. 그는 6군데의 초목, 2개의 헛간.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별장 등의 건물에 불을 지르긴 했지만 대부분 건물 뒤의 쓰레기 더미나 종이를 쌓아둔 곳에서 주로 일어났다. 범행 대상은 임의적이었고 특정 개인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다.

4) 범죄은닉형 방화(Crime Concealment-Motivated Arson)

방화는 2차적 범죄로 초기 범죄활동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83명의 연쇄방화범 가운데 4명이 범죄은닉형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들은 가게나 가정집에서 물건을 훔친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① 범죄은닉형 방화에 속하는 연쇄방화범의 개인적 특성

범죄은닉형 연쇄방화범은 모두 남자이고 2명은 백인, 2명은 흑인이며, 4명다 문신을 했다. 4명 가운데 3명은 결혼한 적이 없으며 1명은 결혼했으나 이혼했다. 범행 당시에 3명은 함께 사는 사람이 있었고 1명은 혼자 살았으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4명은 평균 11년의 교육을 받았고 학업성적은 중간정도였다. 그리고 이들 모두 중산층 가정에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은 어린 시절에 시설에 있었던 기록은 없지만, 범죄은닉형 방화를 저지르기 전 이미 여러 가지 중죄를 지었고 경범죄의 경력도 가지고 있다. 한편, 4명 가운데 3명은 정신질환 기록이 있었다.

② 범죄은닉형 방화에 속하는 연쇄방화범의 범행 대상 및 범행 방법

방화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으며 집에서 10마일을 넘지 않았다. 현장에 걸어갔으며 공범과 함께 자신들이 잘 아는 장소에서 종이나 쓰레기 같이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했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모든 증거물품을 현장에서 없앴다. 이들 모두 범행 후 1-2일이내에 현장에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나타났다. 이들은 방송에서 사건을 추적하려하지 않으며 피해자나 경찰, 미디어와 접촉하려하지도 않는다. 공범을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사건을 털어놓지 않으며 범행이후 행동 변화도 없다. 체포된 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기도 한다. 범행 당시에 술이나 약물을 하기도 하지만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범행의 빈도는 일관되었으나 강도는 강해졌다.

③ 범죄은닉형 방화의 주요 사례¹³⁾

그는 31살로 7개월 동안 12건의 방화를 인정했다. 안정적인 직업은 없으며 노동일에 종사했다. 각 사건에서 방화당시에 집에 사람이 있지 않았다. 그는 방화가 시작되기 3주전에 감옥에서 출소했다. “나는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비어있는 집인지 신문이나 다른 물건으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돈이나 보석을 훔치고 불을 질렀어요. 모든 물건에 석유를 부었고 촛불을 이용해서 불을 냈어요”. 그는 강도로 이전에 기소된 적에 있었다. “나는 불이냐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여러 건의 범행으로 붙잡혔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져간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5) 이익추구형 방화(Profit-Motivated Arson)

이익추구형 방화는 직·간접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것이다 (Icove, Schroeder and Wherry, 1979; Douglas et al., 2006). 방화범죄를 유발하는 동기 중에서 가장 상업적인 범행으로 보험사기나 사업 파산을 위한 사기, 손실을 숨기기 위한 사기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Douglas et al., 2006).

① 이익추구형 방화에 속하는 연쇄방화범의 개인적 특성

이익추구형 연쇄방화범 4명 모두 백인 남성이고 범행당시에 안정적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명은 미혼이었고 한명은 별거중이고 다른 2명은 이혼상태였다. 그들의 평균 교육기간은 9년이었고 학업성적은 평균보다 낮았으며 2명은 군대에서 복무했으나, 둘 다 군대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3명은 하층가정이고 1명은 중산층에서 자랐지만 모두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은 어릴 때 시설에 머무른 경험이 길지 않았다. 한명만 위탁가정에서 지냈고 2명은 소년원이나 소년보호시설에 짧게 있었다. 4명 가운데 3명은 경범죄와 중죄기록이 있고 한명은 방화로 인한 중죄경력이 있다. 한편, 누구도 정신병력 기록은 없다.

13) 국내 사례로는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에 의한 연쇄방화사건이 이 유형에 속한다(유완석·황성현, 2011:145).

② 이익추구형 방화에 속하는 연쇄방화범의 범행 관련 특징

범행 장소까지는 자동차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했으며 몇 건의 경우에는 걸어가기도 했다. 범행의 대상은 사전에 선택되는 경우가 많고 라이터를 이용해 석유에 불을 붙이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였다. 이익추구형 연쇄방화사건의 경우는 대개 공범이 있으며 불이 난후에 현장에 남아있지 않으며, 1-2일 이내에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범행 기념 해당 물건을 가져가기도 하고 범행 후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지켜보기도 하지만 미디어나 경찰과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 이들은 범행이후에 행동방식에 변화는 없었다. 범행이 지속되는 빈도는 변하지 않았으나 강도는 증가했다.

③ 이익추구형 연쇄방화의 주요 사례

아놀드(가명)는 전문적인 방화범으로 그는 35-40채의 빈집을 불태웠다. 아놀드, 부동산업자, 전문 폭파범이 한 팀이 되었다. 부동산업자는 목표를 정하고 비어 있는지 확인하며, 폭파범은 아놀드에게 어떻게 방화를 하는지 가르쳤고 그가 처음 몇 건을 하는데 따라다녔다. 아놀드는 그의 기술을 언급하면서 어떤 누구도 방화로 확신할 수 없다고 자랑했다. 그는 집의 천정에 냄새가 나지 않는 백색 석유를 10톤 정도 붓고 화학적 성분을 가진 조그만 연소장치에 타이머를 부착한다. 시간이 되면 화학물질이 가스를 연소시켜서 결과는 천정에서부터 불이나 빠르게 번진다. 그리고 건물은 붕괴된다. 고무 덩어리나 냄새가 나지 않는 가스가 현장에서 발견되어 의심을 받지만 증거를 발견할 수는 없다. 아놀드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은 없다고 말한다. 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불을 내지 않았다. 아놀드는 자신도 방화의 피해자라고 말한다. “나는 상처를 가지고 있고 저임금을 받아요. 한 건당 700-800불을 받는데 부동산업자는 보험회사에서 만불 가까이 벌죠.”라고 말했다. 아놀드가 2년형을 받은 반면 부동산업자는 교사협의로 가석방을 받았다.

6) 극단주의형 방화(Extremist-Motivated Arson)

극단주의형 방화는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방화를 한다. 낙태시술소, 동물실험실, 모피공장 등이 범행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유형의 경우는 대개 여러 명이 함께 범행을 저지르며 범행 장소에 메시지를 남기고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폭

력적 행동들에 대해 정당화하려 한다. 한편, FBI의 ABIS에 의한 연구결과에서는 극단주의형 연쇄방화가 한건도 없었다.

① 극단주의형 방화의 주요 사례(Douglas et al., 1996:185-186)

낙태 클리닉 빌딩에 화재가 2번 발생했다. 최초의 화재는 누군가 우편물 투입구에 종이 뭉치를 쌓아서 성냥으로 불을 붙였다. 3개월 뒤 같은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메일함을 열고 석유를 부어서 불을 질렀다. 매우 빠른 속도로 타서 15만불의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병원의 매니저가 지목한 용의자는 백인여성으로 종교적이고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매니저와 다른 사무실직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종종 차로 매니저를 미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지금까지 범죄 분류 메뉴얼(Crime Classification Manual: CCM)의 유형별 연쇄방화범의 특징을 정리해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동기론적 유형 구분에 대해 동기의 중첩성 등의 한계를 지적되면서 Canter와 Heritage(1989)는 범죄현장 행동에 따른 유형구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Kocsis & Cooksey, 2002). 이에 Kocsis와 Cooksey(2002)는 연쇄방화범죄자 대상으로 하여 현장행동에 근거하여 유형을 분류하였는데 ①스릴추구(thrill)에 의한 방화 ②분노형(anger) 방화 ③악의(wanton)에 의한 방화 ④성적욕구(sexual)에 의한 방화가 그것이다.¹⁴⁾

먼저, 스릴 추구의 방화의 경우는 돌발적으로 방화를 하고 다수를 목표로 불을 지르지는 않으며 특정한 적대감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은 일반적으로 방화를 하기 위해서 1마일 정도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동성이 높은 편이며 가시성이 높은 장소와 대상을 선택한다. 또한 스릴추구를 위해 불을 연쇄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자백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유형은 Douglas 등(1992)이 제시한 ‘홍분형 방화’ 유형과 비슷하여 화재를 레크레이션의 하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¹⁵⁾ 두 번째, 분노로 인하여 방화를 하는 유형은 적대감으로 인해서 방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자신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분노로 인해 불을 지르지만 범행 대상이 불만의 원인과 동일하지 않다. 즉, 이 유형의 범행

14) 본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연구인 Kocsis와 Cooksey(2002)를 참고하기 바란다.

15) 1998년 10월 구로동에서 발생한 연쇄방화사건의 경우 가출 청소년이 재미삼아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이 불을 놓고 다녔다고 한다(홍성열, 2011:310에서 소개한 사례를 재인용).

대상은 자신의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익숙하고 친숙한 경우가 많아 불만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 불을 지르는 경우는 적다. 세 번째, 악의에 의한 방화는 목표가 정확하지 않다. 교육시설 등이 범행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유형의 범피자는 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으며 주말에 방화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유형은 Douglas와 그의 동료들(1992)이 제시한 ‘반달리듬형 방화’ 또는 Canter와 Fritzon(1998)이 제시한 ‘목적에 의한 수단적 방화’와 비슷하다. 네 번째, 성적 유형은 기존의 방화범에 대한 정신질병 또는 심리학적 연구에서 제시한 성적 도착증과 비슷한 것으로 이러한 방화범은 성적 흥분과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불을 지른다. 이 유형의 독특한 행동은 사건 현장 근처에서 범피자의 성적 행동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일반적인 목표는 휴지통, 우체통, 공중화장실 또는 접근 용이한 공공시설과 같은 곳이다. 이들 유형의 대부분의 화재는 심각한 손해를 유발할 만큼의 것은 아니다. 성적 방화의 특이한 점은 범죄 현장에 남아서 자신의 저지른 방화를 구경함으로써 만족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 유형은 Douglas 등(1992)이 제시한 ‘흥분형 방화’와 Canter와 Fritzon(1998)이 제시한 ‘목적에 의한 표출적 방화’와 비슷하다.

한편, 김경옥과 공은경(2011)은 국내 연쇄방화범을 대상으로 그 유형을 분석하여 4 가지 유형- ①이익추구적 방화 ②자기과시적 방화 ③보복적 방화 ④좌절로 인한 방화-을 제시하였다. 즉, 김경옥과 공은경(2011)에 따르면 국내의 방화사건 중에서 좌절에 의한 방화가 가장 많았고 보복형 방화는 사전 계획, 대상 특정 등 명확한 행동 패턴이 있는 반면, 관심추구적 혹은 자기과시적 유형은 대상물이 문화재 등 국가 시설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결과를 통해 국내 연쇄방화범의 경우에도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경옥·공은경, 2011: 257).

지금까지 연쇄방화의 유형과 그 특징을 살펴봄에 있어서 실제 연쇄방화범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아직까지 연쇄방화범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풍부하지는 않지만 연쇄방화범의 제한적 자료를 통해 연쇄방화 유형 구분의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다양한 맥락의 이론적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연쇄방화의 특성에 관한 실증 연구

방화범의 일반적인 특징을 조사한 Bradford(1982)는 다른 범죄자 집단에 비해 방화범은 연령이 대체로 낮고 미혼자가 더 많으며 정신장애 및 성격장애의 비율이 더 높고 직업적 지위 및 학력은 더 낮고 친부모 밑에 양육된 비율도 더 낮음을 발견하였고 White(1996)는 방화범의 성별을 보면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나이가 젊고 지능이 평균이하이고 결혼가정 출신이 많고 대체로 범죄전력이 있고 정상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특징을 제시하였다(성한기·박순진, 2003:61). 국내 연구로 박형민(2004)는 방화범자의 특징으로 낮은 자존감, 충동성, 집착적 성격이며 방화범죄자의 많은 경우가 폭력의 피해자이거나 가해자로 어린 시절의 폭력 피해나 성장 이후의 가정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 방화범의 특징에는 반복적으로 불을 지른 연쇄방화범의 특징도 포함되어 연쇄방화범만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연쇄방화에 초점을 두고 연쇄방화범의 개인적 특성과 연쇄방화사건에 대한 특성을 살펴본 연구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연쇄방화범의 특성

가. 연쇄방화범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가정 환경

연쇄방화의 종합적 연구라 할 수 있는 ATF/FBI의 연쇄방화범에 대한 연구결과¹⁶⁾에 의하면 연쇄방화범의 대부분 젊고 백인(82%)이고 남성(94%)이며 미혼(65.9%)이다. 연쇄방화범 절반 이상이 노동자였고 2/3는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하였고 1/3은 하층이라고 하였으며 절반 정도가 결혼가정으로 한 부모 가정이 대부분이었다(Rossmo, 2000:47). 그리고 주거 형태에 있어서는 단독주택(single family house)인 경우가 42.9%로 가장 일반적이었고 그 다음으로 아파트(23.8%)

16) 연쇄방화의 종합적인 연구는 미국의 ATF와 FBI(Sapp et al.,1994;Sapp,Huff,Gary & Icové & Horbert,1994;Wright & Gary,1995)에서 시행되었다(Rossmo.2000:45). 이 연구는 83명의 연쇄방화범이 저지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로 앞서 언급한 www.interfire.org 에서 제공하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였다.

였다(Rossmo, 2000:47).

국내 연쇄방화범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¹⁷⁾ 남자는 총 119명 중 단일방화 72명, 연속방화 25명, 연쇄방화 22명이고 여자는 총 8명으로 단일방화 4명, 연속방화 1명, 연쇄방화 3명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는 단일방화의 경우 20대, 30대, 40대가 유사한 비율이고 연속방화의 경우는 40대가 연쇄방화는 20대와 30대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에 있어서는 연쇄방화, 단일방화, 연속방화 모두 미혼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며 학력에 있어서는 단일, 연속 및 연쇄방화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낮고 직업은 무직의 비율이 높고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 서비스직 등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옥·공은경, 2011).

한편,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성에 초점을 맞추어 방화 행동을 연구하기 때문에 남성의 결과를 여성에 추정하여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남녀 방화범의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접근방식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Brogan, 2009). 즉,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범죄자의 특수성을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Wachi와 그의 동료들(2007)은 여성연쇄방화범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3명의 여성연쇄방화범의 평균나이는 37.6세(표준편차는 14.2)이고 연령의 분포는 14세에서 78세까지였다. 이는 이전의 연구결과에 비해 여성의 연쇄방화범의 연령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연쇄방화범의 41%는 초,중학교를 마쳤으며(의무교육) 7%는 중퇴였고, 43%는 실업자였으며, 19%는 미숙련 노동자로, 일본에서 연구된 남성 방화범과 비교해 볼 때 범행 당시 실업상태가 많기는 하지만 낮은 교육수준과 실업상태의 비율은 기존의 여성방화범에 대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Harmon, Rosner, & Wiederlight, 1985; Stewart, 1983). 또한 결혼이나 생활 지위에 있어서는 그들의 49%가 결혼했고 25%가 혼자 살았으며 29%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김경옥과 공은경(2011)은 국내 연쇄 방화사건 자료를 통한 실증 연구가 미비하다며 2006년부터 2009년 국내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을 분석하여 연쇄성 방화범죄와 비연쇄성 방화범자의 범죄 행동에서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해당 자료는 경찰청 및 전국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과학적 범죄분석 시스템(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 SCAS)에서 2006년 1월부터 2009년 6월 범위에서 '방화' 죄명으로 검색된 127건이다. 총 127건의 방화범죄 중에서 단일방화는 76건(59.8%), 연속방화는 26건(20.5%), 연쇄방화는 25건(19.7%)로 나타났다.

나. 연쇄방화범의 장애 여부

기존의 방화연구의 상당부분이 임상적 관점에서 행해지면서 이러한 경향은 연쇄방화연구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의 연구는 범죄 자체에 대한 학문적 이해보다는 범죄자에 대한 치료에 주목하여 진행된다. 연쇄방화범의 절반 이상이 정신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ourget & Bradford, 1989; Harmon et al., 1985; Wachi et al., 2007:32에서 재인용). 한편, 미국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83명 가운데 절반이 우울증이나 뇌손상, 정신병적 폭발, 경계성 인격장애, 스트레스성 장애등의 심리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알콜 중독이거나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app et al., 1996; 임준태, 2009:385에서 재인용). 국내 김경옥과 공은경(2011)의 연구에 의하면 단일 및 연속방화는 정신적 치료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지만 연쇄방화의 경우 정신적 치료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한편, Wachi와 그의 동료들(2007)에 의하면 여성연쇄방화범 83명중에서 15명(18%)은 정신지체였고, 10(12%)명은 정신질환 장애가 있었고, 2명은 둘 다 가지고 있었다.

다. 연쇄방화범의 전과 경력

미국의 연쇄방화범 83명의 범죄이력 등을 조사해본 결과 전체 63.4%가 여러 건의 중범죄를 저질러서 체포된 경험이 있고 방화범 전과자는 23.9%로 전체의 86%이상이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처음 방화를 저질렀던 평균 연령은 15세로 방화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는 28%였다(Sapp et al., 1996; Rossmo, 2000:47; 임준태, 2009:382에서 재인용). 하지만 국내의 연쇄방화범의 범죄경력의 경우는 단순방화범과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최초 입건 경력에서 연쇄방화범의 경우 최초 범죄 유형이 방화인 비율이 단순방화범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과가 많을수록 연쇄방화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지만 최초 방화로 체포된 경험이 있다면 이후 다시 방화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완석 · 황성현, 2011). 일본의 여성연쇄방화범의 범죄경력을 살펴본 결과 전체의 22%는 적어도 방화 이전에 한번은 체포된 경력(절도 19%, 방화5%, 사기 2%)이 있었다(Wachi et al., 2007).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전의 여성방화범을 대

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Stewart(1993)의 경우에는 방화관련 범행이 가장 많았고 Harmon 등(1985)의 연구에서는 폭행이었다.

2. 연쇄방화사건의 특성

가. 연쇄방화의 범행대상 및 관련 특성

미국의 연쇄방화범(83명, 1,450건)들이 저지른 방화 사건들의 범행대상을 살펴 보면 쓰레기통이나 대형쓰레기 수납고, 매트리스, 옷가지 등에 불을 지른 경우가 전체의 2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상가건물과 상업지역에 불을 지른 경우(18.1%), 수풀에 불을 지른 경우(16.5%), 자동차에 불을 지른 경우(16.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Sapp et al., 1996; 임준태, 2009:387에서 재인용). 이들의 경우 목표를 선택함에 있어서 특정 패턴을 보이지 않았고 무작위적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목표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대개 목표에 열려있는 입구를 통해서 들어간 경우가 많아 강제적인 침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계획성 여부에 있어서는 화재를 미리 예상하고 계획한 경우가 전체의 46.2%로 가장 많았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경우도 35.0%였다. 그리고 연쇄사건 가운데 공범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약 20%로 공범이 있는 16명중 14명이 남성이 공범이었고 1명은 여성, 1명은 둘 다였다. 이들은 혼자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평균 범행횟수 33건)에 비해 평균 범행 횟수(평균 범행횟수 6건)가 더 적었다(Rossmo, 2000:48).

연쇄방화범 가운데 절반이상이 범행 전에 술을 마셨고 26%가 불을 지를 때 술을 마신 것으로 기록했다. 3명중 1명이 방화전에 약물을 사용했고 5%는 방화 당시에도 약물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연쇄방화범 17%가 불을 내고 난후에 술이나 약물 사용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방화의 빈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바뀌지 않았으나 심각성은 증가했다. 연구에서 65%가 방화의 심각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경옥과 공은경(201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화의 계획성에 있어서 단일방화는 계획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비율의 큰 차이는 없었고, 연속방화는 계획이 없는 게 더 많고, 연쇄방화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한편 범행대상 선정에 있어서 연속과 연쇄방

화는 우발적으로 대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단일방화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피자와 피해자의 관계의 면식여부에 있어서 단일방화는 지속적인 면식관계가 많았지만 연속과 연쇄방화는 비면식 관계에서 범위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구체적 관계를 보면 단일방화의 경우 지인, 가족, 애인이 많고 연속과 연속방화는 가족인 경우는 한건도 없고 피해자와 무관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나. 연쇄방화의 범행 수법 및 범행 동기

미국의 ATF/FB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쇄방화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성냥이나 라이터, 종이 등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는 경향(92.1%)이 많아 직접 연소장치를 만든 사람은 없고 대부분 한 장소에 한 번의 불을 지른다(Rossmo, 2000:47). 그리고 연쇄방화범의 61%가 걸어서 현장에 갔고 70%가 거주지의 반경 1마일 이내에서 범행을 하여 자신들이 익숙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며 연쇄방화의 강도(severity of the fire)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졌으며 연쇄방화범이 성인인 경우가 연쇄방화범이 청소년인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수의 방화를 저질렀다(Rossmo, 2000:48).

한국의 연쇄방화범의 경우 범행 시 이동수단에 있어서 단일방화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연속, 연쇄 모두 도보를 많이 사용하였다. 방화를 위한 건물 혹은 주거 침입여부에서는 단일방화의 경우 건물 내부 방화의 비율이 높고 연속과 연쇄방화는 비침입의 경우가 많다. 한편, 범행동기에 있어서도 다양한 유형을 보이는데 단일방화는 보복, 개인스트레스, 범피은닉이 유사한 비율이며 연속방화는 개인 스트레스로 인한 방화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연쇄방화는 심리적 긴장감 해소의 비율이 높았다(김경옥·공은경, 2011).

다. 연쇄방화의 범행 지역적 특성

연쇄방화사건의 95.1%가 방화범에게 익숙한 지역에서 발생하며 사건의 20.3%가 거주지에서 0.5마일 이내, 50%가 1마일 이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그들의 거주지에서 반경 1마일 이내의 지역에 불을 지르는 경우가 70%이다(Rossmo, 2000:47). 한편, 범행 장소와 가해자 주거지간 거리와 범행 장소들 간의 거리는

일반적으로 연쇄방화범에 대한 지리적 프로파일링(geographical profiling) 기법을 이용한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인디애나폴리스(Indianapolis)에서 일어난 481건의 범죄사건으로 범행 장소와 범인의 거주지간의 거리를 분석한 White(1932)의 연구를 시작으로 Canter와 Larkin(1993)이 연쇄강간범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연쇄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지리적 프로파일링 연구가 본격화되었다(Edward & Grace, 2006). 연구 결과 연쇄범죄자의 상당부분이 주거지와 범행 장소의 공간이 비슷하게 나타났다(Canter & Larkin, 1993; Kocsis & Irwin, 1997; Lundrigan & Canter, 2001; Edward & Grace, 2006).

한편, Wachi와 그의 동료들(2007)이 여성연쇄방화범의 거리패턴을 살펴본 결과 50%의 여성방화범들이 그들의 연쇄범죄를 100m이내의 거리를 이동하면서 저지른 반면, 일본의 남성연쇄방화범을 대상으로 한 Suzuki(2006)의 연구는 연쇄방화범의 절반 정도가 평균 1km이상의 거리를 이동하면서 불을 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연쇄방화범들이 남성들보다 더 짧은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연쇄방화범의 범행 후 행동

미국의 ATF/FBI의 연구결과 연쇄방화범의 절반 이상이 현장에 다시 돌아오는 데 현장에 돌아온 방화범들 중 97%가 24시간이내에 돌아왔으며 방화이후의 행동에 있어서는 18.1%는 방송에서 사건을 보고 있었으며 20.4%가 경찰이나 희생자 또는 미디어와 교류했으며, 13.3%는 같은 장소에 추가로 불을 질렀고, 6%는 이사 갔고 4.8%는 마을을 떠났다(Rossmo, 2000:48). 한편, 국내 연쇄방화범의 경우에는 단일방화와 연속방화는 범행 후 현장관찰이 없는 경우가, 연쇄방화의 경우는 범죄현장 관찰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김경옥 · 공은경, 2011:252).

제3장

기록조사에서 나타난
연쇄성 방화의 특성

최수형

기록조사에서 나타난 연쇄성 방화의 특성

제1절 주요 변인의 측정

사건 기록을 조사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사건 기록에 나와 있는 정보만을 이용하고 근거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내용을 기입하도록 하여 조사원의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였다. 기록조사표의 주요 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방화범의 일반적 특성 관련 내용이고 두 번째가 방화사건의 특성 관련 내용이다¹⁸⁾.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뿐 아니라 어릴 적 가정 환경과 장애 여부, 그리고 범죄경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건의 특성 관련 내용은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범죄 처리 특성, 범행 내용, 피해 내용이 그것이다. 기록 조사표의 주요 변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8) 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록조사표 문항에 대해 수 차례 자문 회의를 진행하였고 연쇄성 방화 및 비연쇄성 방화에 해당하는 총 10건의 사건기록에 대해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사건기록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기입할 수 있도록 조사표를 수정·보완하였다.

1. 방화범의 일반적 특성

범죄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과 연령, 교육정도, 직업 등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이외에 장애여부, 성장 시 부모관계, 범죄경력 등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연쇄성 방화범과 연쇄성 방화범의 특징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조사표에서는 범죄자의 실거주지와 범행 지역에 대한 상세 정보를 파악하여 실거주지와 범행 지역 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성별 및 국적, 연령

방화 뿐 아니라 전통적 범죄에서 성별은 가장 강력한 범죄예측 변수이다. 전체 범죄에서 남성 범죄자의 비율은 약 82%를 차지하고 있고 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 같은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남성범죄자의 비율이 전체의 95%이상이다(경찰청·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이에 범죄문제가 남성들만의 것으로 간주되어 여성 범죄자는 연구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통제변수들 중 하나로 사용되어 기존의 범죄학은 남성 중심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성(gender) 중심의 범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Le Blanc, 2002; Heimer & Kruttschnitt, 2006 재인용: 최수형, 2007:17에서 재인용). 방화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범행 관련 특성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여성에 추정하여 적용하기 보다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Brogan, R., 2009). 이에 본 연구는 성별이란 변수를 통해 연쇄방화사건이 남성들에 의해 주로 저질러지고 있다는 식의 해석을 넘어 성별에 따라 연쇄방화사건의 범행 관련 특성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여성이 저지른 연쇄방화범죄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의 목적도 지니고 있다. 또한, 성별이란 변수와 함께 연령이라는 변수도 함께 사용하여 연쇄방화사건의 보다 풍부한 분석적 내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¹⁹⁾ 연령의 경우에는 범행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기입하였고 만일 개별적 사건이 2회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범행 당시 연령이 기준이 되었다. 한편, 연쇄방화범의 국적을 기입하도록 하였는데 외국인이면 구체적으로 해당 국가명을 적는 것으로 하였다.

19) 실제 분석에서 살펴보면 나타나듯이 여성연쇄방화범은 10명으로 사례수가 많지 않아서 성별에 따른 상세분석을 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나. 범행 당시 실 거주지 및 주거형태

범행 당시 주거형태를 살펴보기 위해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사글세, 친척·친구집, 숙박업소, 주거부정 가운데 사건 기록 내용을 기준으로 기입하였다.²⁰⁾ 만일, 사건수사과정에서 주거형태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이 다를 경우에는 최초로 언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고 신문조서를 통해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반성문이나 가족이나 친구 등이 작성한 탄원서를 참고하기도 하였다. 범행 당시 주거형태 역시 사건기록을 통해 알 수 없을 경우는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다. 교육 수준

연쇄성 방화범의 학업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무학,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졸이하, 대학원이상으로 구분하여 기입하였고, 사건기록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연쇄방화범의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결과가 대부분으로 과연 비연쇄성 방화범과 연쇄성 방화범의 교육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연쇄성 방화범 유형별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라. 범행 당시 직업 및 직업의 안정성, 월평균 수입

범행 당시 방화범의 직업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표준 직업 분류표²¹⁾에 따라 해당 직업에 속하는 항목에 표시하였다. 사건기록에서 범행 당시 방화범의 직업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범행 당시 방화범의 직업유형과 함께 직업의 안정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용직인지 임시직인지 정규직인지를 기입하였다.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내용은 사건기록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는 범행 당시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입하였다. 가령, 공사장 막노동을 하는 경우는 일용직으로 기입하였고 일반 사무직이나 농림어업 종사의 경우는 정규직으로 기입하였다. 한편, 직업의 안정성과 함께 범행당시 월

20) 자가의 경우는 부모집과 자녀집, 친형제와 친자매집을 포함하였다.

21) 통계청의 표준 직업 분류표는 부록으로 첨부하도록 한다.

평균 수입을 직접 기입하였는데 일용직의 경우는 제외하였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는 국가 지원금을 월 평균 수입에 포함하여 기입하였다.²²⁾

마. 동거 여부 및 동거인의 유형

연쇄방화범의 경우 혼자 살고 있는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연구결과(Harmon, Rosner & Wiederlight, 1985; Stewart, 1993; Watch et al., 2007:31에서 재인용; Rossmo, 1999)에 따라 과연 우리나라 연쇄성 방화범 역시 그러한지 살펴보기 위해 범행 당시 동거 여부와 동거인의 유형을 구분하여 기입하였다. 즉, 범행당시 동거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기입하였고 동거자가 있다면 그 대상이 부모,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 동료 및 친구 가운데 누구인지 표시하였으며 항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거인을 중복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건기록에서 동거여부나 동거인의 유형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바. 혼인 상태

본 연구에서는 연쇄방화범의 혼인상태에 있어서 미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Bradford, 1982; Rossmo, 1999; 김경옥·공은경, 2011)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함께 비연쇄성 방화범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방화범의 혼인상태를 파악하였다. 즉, 혼인상태를 미혼, 동거, 기혼(초혼), 재혼이상, 별거, 이혼, 사별로 구분하고 해당하는 혼인상태를 기입하였으며 기록조사에서 알 수 없는 경우는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사. 범행 당시 장애 여부 및 장애 유형

방화 관련 연구의 상당부분은 방화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방화범의 정신적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Koson and Dvoskin, 1982; Doley, 2003:347에서 재인용; Akimoto, 2004; Kageyama, 2000; Nakata, 1977; Tamura and

22)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월 평균 수입에 포함하여 기입하였다.

Suzuki, 1997; Watch et al., 2007:32에서 재인용; Schlesinger, 2000; Loewenstein, 2003). 이에 국내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에도 정신 이상적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지 살펴보고 비연쇄성 방화범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범행 당시 장애 유형에 있어서 정신장애 이외에 행동장애, 정신지체, 신체장애, 알코올중독을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범행 당시 장애유형을 기입하기 위해 사건기록에 첨부된 장애인복지카드나, 감정 진단서, 혹은 진료기록사본 등을 참고하였다.²³⁾

아. 성장 시 가족환경

방화범의 가족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성장 시 부모관계, 어릴 적 주 양육자, 가족 간의 관계, 학대 경험, 가출 경험을 살펴보았다. 성장 시 부모관계에 있어서는 부모가 모두 생존하여 함께 살았는지, 부모가 이혼을 했는지, 부모가 사망했는지 살펴봄과 동시에 어릴 적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성장 시 가족 간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성장 시 학대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로부터 학대를 당하였는지 기입하였고 가출 경험에 있어서는 가출을 한 경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표시하고 있었다면 최초 가출 연령은 몇 세인지, 총 가출 횟수는 몇 회인지 기입하였다. 이는 방화범의 성장 과정을 알아 볼 수 있는 것으로 사건기록에서 신문 조서나 판결전조사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기입하였다. 이 변수의 경우는 기존의 연쇄방화관련 연구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연쇄방화범을 이해하고 연쇄방화사건을 해석하는데 사회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 범죄 경력

방화범의 전과유무와 범죄경력을 살펴보았다. 범죄경력에 경우 본 건 이전의 전과만을 기록하였고 처분결과가 ‘협의 없음’이나 ‘공소 기각’인 경우는 전과 수에서

23) 신체장애는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를 의미하고 정신지체는 18세 이전에 시작하는 발달 장애로 지적장애를 의미하며 행동장애는 지속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나이에 걸맞지 않게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다(출처: 두산백과).

제외하였으며 소년보호 사건도 제외하였다. 기록 조사표에 범죄범의 총 전과는 물론 실형 전과, 동종 전과, 이종 전과, 총 체포 횟수, 총 교도소 수감 횟수를 구분하여 기입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첫 체포연령, 첫 실형 연령을 직접 적었다.

2. 방화사건의 특성

사건의 특성은 크게 범죄 처리 과정과 결과, 범행 내용, 피해 내용으로 구분된다. 사건의 특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변수는 다음과 같다.

가. 범죄 처리 특성

범죄 처리 특성에서는 해당 사건에서의 방화횟수, 죄명을 비롯하여 범인 검거 경위, 검거까지의 기간, 검찰처리 결과, 최종 판결 심급, 구형량 등을 살펴본다. 이러한 변수의 경우에는 공식통계에서 나타나는 일반 강력범죄와의 특성 비교가 가능한 것으로 연쇄방화 범죄에 대한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방화 횟수 - 연쇄성 여부, 연쇄성 방화유형(연속/연쇄)

본 연구에서 연쇄성 방화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사건에서의 방화 횟수를 기입하였다. 즉, 해당 사건 기록의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방화 횟수를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가운데 선택하여 적고 5회 이상인 경우는 해당 사건 건수를 직접 기입하였다. 만일, 사건기록에서 개별 방화사건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표의 모든 항목에서 사건 발생 시간 순으로 기입하였다. 또한 사건기록에서 개별 방화사건이 4회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표를 덧붙여서 모든 사건 내용을 기입하였다. 이렇게 기입한 방화 횟수를 기준으로 연쇄성 여부를 판단하고 사건 발생 시간 간격을 고려하여 연쇄성 방화유형을 구분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개별 사건의 방화가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연쇄성 방화'로 정의하고 연쇄성 방화는 다시 연속방화와 연쇄방화로 구분된다. 연속방화는 범행사이의 심리적 냉각기(cooling off period) 없이 하루 동안 장소를 이동해가며 반복적으로 불을 지르는

경우를 의미하고 연쇄방화는 최소 1일 이상의 심리적 냉각기를 가지고 불을 지르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쇄범죄 관련 연구를 보면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연쇄’의 개념이 다르다. 연쇄살인 연구에서 Jenkins(1994)는 희생자가 4명이상이 있을 경우를, Holmes와 Holmes(1996)는 3명 이상의 희생자가 있을 때 연쇄살인으로 규정하였고 Lundrigan와 Canter(2001)와 박형민(2009)은 2명 이상의 희생자가 있고 각 사건사이에 냉각기가 있는 경우를 연쇄살인으로 이해하였다. 연쇄강간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Canter와 Larkin(1993)은 범행이 알려지기 전에 여성들을 2번 이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을 연쇄강간범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1988년부터 2003년까지 발생한 연쇄방화범을 대상으로 범죄자의 거주지와 범행 장소간의 거리를 살펴본 Edward와 Grace(2006)는 3회 이상의 방화사건을 저지른 경우를 연쇄방화범으로 보았고, 여성연쇄방화범을 대상으로 한 연구(Wachi et al., 2007)에서는 일반방화범 가운데 방화전과가 5회 이상인 경우를 연쇄방화범이라고 보았다. 한편, 국내 연쇄방화 연구인 김경옥(2011)과 유완석·황성현(2011)은 2건 이상의 방화를 저지른 경우를 연쇄방화범으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아직까지 연쇄범죄관련 연구에서 ‘연쇄’를 규정하는 기준이 통일되지 않고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상이하다. 특히, Douglas와 그의 동료들(1992)에 따르면 심리적 냉각기는 학자마다 그 기간이 최소 수 일, 혹은 몇 년까지 그 범위가 다양할 수 있어 일관된 개념적 정의가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연쇄범죄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형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연속방화를 포함하는 연쇄방화를 ‘연쇄성 방화’라 규정하였다.²⁴⁾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연쇄범죄를 규정함에 있어서 심리적 냉각기 범위에 대한 합의된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쇄범죄를 심리적 냉각기 여부를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실증적 연구도 부재하기 때문에 향후 연쇄방화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준에 따른 연쇄범죄에 대한 유형별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

24) 국내 일선 수사현장에서는 2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반복되는 범죄를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사 방향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연쇄범죄로 수사한다(유완성·황성현, 2011:143). 즉, 한국의 연쇄범죄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론적 논의의 차원을 넘어 일선의 수사기준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유완성·황성현, 2011:143).

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연쇄성 방화’를 다시 ‘연속방화’와 ‘연쇄방화’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연속방화와 연쇄방화를 구분하는 기준은 심리적 냉각기 여부인데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냉각기를 사건 발생 시간 간격으로 이를 측정하였으며 심리적 냉각기의 범위는 최소 1일 이상이다. 심리적 냉각기의 범위를 최소 1일 이상으로 삼은 이유는 본 연구에서 진행한 기록조사에서 접한 사례들을 통해 하루 동안 발생한 방화사건의 형태와 하루 이상의 간격을 두고 발생한 방화사건의 형태가 상이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에서 개별 방화 사건이²⁵⁾ 2회 이상인 경우는 ‘연쇄성 방화’로 보고 심리적 냉각기 없이 하루 동안 발생한 것이라면 ‘연속방화’이고 하루 이상의 심리적 냉각기를 두고 발생하는 방화는 ‘연쇄방화’로 규정하였다.

2) 구체적 죄명

방화는 고의로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 또는 일반 물건을 소훼하는 것으로 실수로 위와 같은 결과를 낳는 실화와는 구분된다(박형민, 2004:37). 이에 구체적 죄명으로는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공용건조물등에서의 방화’,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일반물건에의 방화’ 가운데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을 기준으로 해당 죄명에 표시를 하고 기타의 경우는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3) 경합범죄 여부

본 조사에서는 죄명과 함께 경합범죄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절도방화, 살인방화 등 다른 범죄를 수반하는 경합범인지, 아닌지를 기입하고 경합범이라면 동종 범죄 경합인지 이종 범죄 경합인지, 동종과 이종범죄 모두 경합된 사건인지를 알아보았다. 경합범일 경우 해당 범죄명을 직접 기입하였다.

25) 개별 방화 사건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공소사실에 해당 범죄내용이다.

4) 범인 검거 경위

범인 검거 경위에 있어서는 범죄자가 자수를 한 것인지, 현행범으로 검거가 된 것인지, 피해자 신고를 통해서인지, 아니면 타인의 신고 때문에 검거되었는지, 고소/고발이나 경찰인지(탐문정보) 혹은 불심검문을 통해서 검거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사건기록에서 현행범 체포 신고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다면 타인 신고로 기입하였으며, 경찰인지는 사건발생 신고 전화 후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수상히 여기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해당 항목으로 기입하였다. 그리고 만일, 범인 검거 경위가 제시된 항목 이외의 것이라면 범인의 검거 경위를 직접 기입하였으며, 사건 기록에서 범인의 검거 경위를 알 수 없다면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5) 범행 후 검거까지의 기간

범행 후 검거까지의 기간의 경우 범행 후 24시간 이내, 3일 이내, 10일 이내,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1년 초과로 구분하여 해당 항목에 기입하였고 사건 기록에서 범인 검거까지의 기간을 알 수 없다면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만일, 개별적 사건이 2회 이상일 경우 첫 범행을 기준으로 검거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입하였다. 즉, 범인 검거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범인 검거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첫 범행을 기준으로 한 것은 연쇄성 방화 범죄로 인한 두려움의 지속 기간을 알아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즉, 연쇄성 방화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과 위기감은 범행이 발생하고 범인이 검거되어야만 해소되는 것으로 첫 범행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범인 검거까지의 기간 동안 연쇄성 방화범과 해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예상 할 수 있다. 물론, 연쇄성 방화범이 언제 검거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 자체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범죄 발생으로 인한 불안정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추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6) 구속 여부 및 검찰 처리 결과

구속 여부는 불구속, 구속 가운데 해당 항목에 표시하였고, 피의자 구속 여부를 사건기록에서 알 수 없다면 ‘미상’으로 표시하고, 피의자 사망 등으로 인한 것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하였다.

방화 범죄는 범인이 체포되더라도 단독범이고 증거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소 유지와 유죄판결을 내리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정기성, 2005; 최승복 최돈묵, 2009:186에서 재인용).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쇄방화의 검찰의 처리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구공판, 구약식, 기소중지,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타 관송치, 죄안됨 가운데 해당 항목에 표시하였다.

7) 최종 판결 심급 및 구형량

최종 판결 심급을 직접 기입하였고 구공판이 아닌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하였다. 구형량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집행유예, 보호관찰, 수감명령, 사회봉사, 치료감호, 벌금에 체크하고 해당 형량은 직접 기입하였다. 만일, 유기징역과 치료감호가 동시에 구형되는 경우는 기타에 직접 기입하였다.

8) 항소 여부 및 항소 결과

항소 여부와 항소 결과는 1심과, 2심을 구분하여 항소하지 않았는지, 항소하였다면 피고인이 하였는지, 검사가 하였는지, 쌍방이 하였는지를 알아보았고 이 역시 항소 여부를 알 수 없다면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항소 결과에서는 1심에 대한 항소가 기각 되었는지 항소가 받아들여져 2심을 진행하였는지를 표시하였고 2심에 대한 항소 역시 기각되었는지, 항소가 받아들여져 3심이 진행되었는지를 기입하였다. 항소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하였다.

9) 변호사 유무 및 종류

변호사 유무와 종류에 있어서도 1심과 2심, 3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국선 변호인인지 사선변호인인지 혹은 변호인 없이 공판을 진행하였는지를 기입하였다.

변호사의 종류가 피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연쇄방화범의 경제적 상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만한 변수로 판단된다.

나. 범행 내용

범행 내용에 대한 특성으로는 사건발생일시 및 범행사이의 시간간격을 알아보았고, 범행 장소와 대상, 범행 수법, 범행 도구, 범행 후 행동을 파악함으로써 연쇄성 방화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범죄내용에 대한 특성으로 범행의 계획성 여부, 범행 동기, 범행 시 음주 및 약물사용 여부, 범행 자백여부, 공범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사건 발생 일시 및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

연쇄성 방화범죄의 사건 발생 년, 월, 일을 기입하고 시간은 24시간기준으로 적었다. 사건기록 가운데 공소사실에서 사건발생 일시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를²⁶⁾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기입하였다. 또한 사건기록에서 정확한 사건시간 추정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2회 이상의 범행인 경우에는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계산하여 기입하였다.

2) 범행 대상

범행 대상을 크게 실내·외를 구분하고, 실내·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범행대상을 선택하여 기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범행대상은 사건 기록의 범죄내용에서 파악할 수 있었는데 가령, 노상의 쓰레기나 노점상의 상품, 천막 현수막, 노상 주차장 등은 실외로 구분하였다. 단, 범행 당시 범행 대상이 2개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응답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는 동시에 2개의 범행대상에 불을 지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령, 동일한 사건 발생일시에 지하주차장이라는 동일한 발생

26) 사건 발생 해당 월의 특정 날짜 뿐 아니라 사건 발생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장소에서 주차장 내 버려진 물건과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 바퀴에 동시에 불을 낸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개별 사건으로 기입하지 않고 범행 대상을 두 가지로 표시하였다. 하지만 만일, 본래 범행의 의도와는 달리 불이 번져서 다른 물건이 불에 탄 경우는 제외하였다.²⁷⁾ 가령, 쓰레기에만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옆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에 불이 붙었다면 자동차는 범행 대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3) 범행 장소(친밀성 정도/이동 수단/거주지로부터의 거리/범행 장소간 거리)

범행 장소 특징으로는 피해자관련 장소인지 가해자관련 장소인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동 주거지나 함께 일하는 사업장 등과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관련 장소인지, 공공시설물과 같은 제 3의 장소인지를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범행 장소의 친밀성 여부는 가해자 기준으로 기입하였다. 즉, 범행지역이 가해자의 거주지나 직장인 경우, 거주지나 직장은 아니지만 평소 자주 다니던 곳으로 그곳 지리에 능한 경우는 친밀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고, 과거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장소의 친밀성은 중간정도, 전혀 모르는 장소는 친밀성이 낮은 ‘하’로 기입하였다. 범행 장소의 친밀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건기록의 신문조서를 참고로 하였고 사건기록에서 알 수 없는 경우는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방화범의 범행 장소까지의 이동수단을 기입함에 있어서는 이동안함, 도보, 본인차량, 버스나 지하철,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기타 가운데 해당 내용에 표시하였다. ‘이동 안함’의 경우는 범행 장소와 피의자가 있었던 이전 장소가 동일한 경우이다. 가령, 집에서 술을 마시고 불을 지른 경우 즉, 해당 장소에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이동 안함’으로 기입하였다. 범행 장소까지의 이동 수단 역시 사건기록에서 알 수 없는 경우는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범행 장소와 가해자 주거지간 거리와 범행 장소들 간의 거리는 일반적으로 연쇄 방화범에 대한 지리적 프로파일링(geographical profiling) 기법을 이용한 연구의 중심개념이다. 인디애나폴리스(Indianapolis)에서 일어난 481건의 범죄사건으로

27) 실제로 연쇄방화의 경우 주로 쓰레기더미나 폐자재가 쌓여있는 곳, 그리고 주차된 차량 바퀴에서 발화가 시작된 경우가 많고 주택가에 있는 쓰레기 봉투에 불을 붙이는 경우 주거 방화로 진행되어 대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 2004:110).

범행 장소와 범인의 거주지간의 거리를 분석한 White(1932)의 연구를 시작으로 Canter와 Larkin(1993)가 연쇄강간범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연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지리적 프로파일링 연구가 본격화되었다(Edward & Grace, 2006). 이들의 연구 결과 연쇄범죄자의 상당부분이 범죄자의 주거지와 범행 장소간의 공간이 비슷하게 나타났다(Canter & Larkin, 1993; Kocsis & Irwin, 1997; Lundrigan & Canter, 2001; Edward & Grace,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인의 주거지와 범죄 발생 장소간의 거리와 발생 장소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²⁸⁾ 만일, 범죄자가 주거 부정 등의 이유로 주거지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범행 장소에 대한 주소가 없는 경우는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4) 범행의 계획성 여부

연쇄방화사건의 경우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 역시 연쇄방화사건의 범죄 내용의 특성을 보다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사건 기록의 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사전에 불을 지를 맘을 먹고 장소와 범행대상을 선정하였다면 계획성 있는 것으로 기입하였다.

5) 방화 수법/방화 도구/방화 도구 처리

범행 시 현장에 있는 도구를 사용하였는지 소지하고 있는 도구를 사용하였는지를 통해 방화 수법을 파악하였다. 여기서 ‘도구’는 방화를 하는데 이용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범행 대상인 경우는 방화 도구로 보지 않는다. 즉, 자신이 소지한 라이터를 이용해 길거리 쓰레기에 불을 붙인 경우에서 방화 수법은 소지하고 있는 도구를 사용한 것이지만 만일, 길거리의 버려진 휴지와 자신의 라이터를 이용해서 길거리 현수막을 태운 경우라면 현장에 있는 도구(길거리의 버려진 휴지)와 소지하고 있는 도구(라이터) 모두를 사용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에 방화 수법의 경우에도 중복응답을 허용하였다. 사건 기록상에서 범행의 계획성 여부와 방화 수법을

28) 해당 거리 계산의 경우는 인터넷사이트의 지도 프로그램(네이버지도)을 이용하여 출발지와 도착지 지점을 입력하고 길찾기 옵션을 통해 나온 거리를 기입하였다.

알 수 없는 경우는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FBI의 NCAVC(national center for the analysis of violent crime)에 의하면 대부분의 방화범들은 방화도구에 있어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ouglas et al., 1992; Rossmo, 1999). 즉,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특정 방화도구를 만드는 등의 일은 하지 않으며 대부분 쓰레기, 종이, 성냥, 라이터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ogan, R., 2009). 이에 본 조사표에서도 방화도구로 라이터, 종이류나 형짚, 축진제(휘발류, 시너), 점화장치(성냥, 양초, 담배, 타이머 등 전자장치) 가운데 선택하여 기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방화도구 역시 방화수법에서처럼 방화대상과 방화도구를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순전히 범행을 저지르는데 사용된 도구만을 기입하였고 중복응답을 허용하였으며 사건기록에서 방화도구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는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연쇄성 방화범이 방화 도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방화도구를 소장하였는지, 현장에 방치하였는지, 현장주변에 투기하였는지, 가져갔다가 은닉하였는지 등을 사건기록에서 찾아 기입하였다. 방화도구처리에서 처리된 방화도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중복응답을 허용하였다. 다만, 사건기록에서 방화도구 처리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6) 범행 시 음주, 약물여부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범행당시 음주와 약물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음주 여부와 약물사용 여부를 기입하였다. 사건기록 가운데 경찰이나 검찰과의 신문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거나 약물이 검출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있으면 음주나 약물을 한 것으로 기입하였고, 사건기록에서 특별히 음주와 약물에 대한 언급을 없을 경우는 술을 마시지 않았거나 약물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입하였다.

7) 범행 동기

방화범죄의 유형구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범행동기이다. 실제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방화 동기를 기준으로 방화범죄의 유형을 구분하기도 하였다(Lewis & Yanell, 1951; 이하섭, 2011:115에서 재인용).²⁹⁾ 본 연구에서는 범행

동기를 크게 5 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 범죄은폐와 같이 다른 목적을 위한 방화, 원한·복수·사회적 불만 등 분노 표출을 위한 방화, 호기심이나 쾌락 만족을 위한 욕구 충족 방화, 정신적 문제로 인한 방화가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 범행의 동기에서 경제적 이득에는 가령, 목욕탕 건물에 방화한 후 손님이 대피하는 과정을 틈타 손님의 소지품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방화하거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포함된다. 두 번째는 범죄은폐와 같이 다른 목적을 위한 방화의 경우로 실제 본 연구의 기록조사 과정에서는 많지 않았다. 세 번째, 분노 표출을 위한 방화는 개인적 원한/보복/분노, 자신의 처지 비관/사회적 열등감,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불만, 가정불화, 사회부적응이 하위차원으로 포함된다. 개인적 원한과 보복은 가령, 애인(내연관계의 자)의 결별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가지게 되는 원한이나 직장 상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어 생긴 분노 등을 의미한다. 네 번째, 자신의 호기심이나 쾌락 만족을 위한 욕구충족 방화로는 호기심, 스트레스 해소, 성욕이 하위차원이다. 다섯 번째 정신적 문제로 인한 방화의 하위차원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나 음주 후 습관이다. 만일 피의자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화 범행간의 연관성이 없으면 해당 동기로 기입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범행동기가 있다면 기타에 직접 기입하였다.³⁰⁾ 실제 방화에 대한 이유는 하나이기보다는 여러 개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Fineman, 1995; Prins, Tennent & Trick, 1985; Rider, 1980; Wood, 2000; Doley, 2003:347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범행의 동기의 경우 중복응답을 허용하였다.

8) 범행 후 행동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범행 후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현장체류, 도주, 소화 후 도주, 신고 후 도주, 도주 후 현장방문, 도주 후 자수로 구분하여 기입하였다. 범행 후 행동에 해당하는 항목 이외의 다른 형태의 행동이라면 기타에 직

29) 방화 동기에 의한 방화범죄의 유형과 관련된 내용은 본 보고서의 선행연구 검토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겠다.

30) 범행동기의 기타 내용 가운데 사례수가 많은 것은 별도의 항목으로 코딩하였다.

접 기입하였다.³¹⁾ 범행 후 행동의 경우는 피의자의 진술내용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별도로 처리하였고, 사건기록의 신문조서나 공판내용 등을 통해서도 범행 후 행동을 알 수 없거나 피의자가 술을 먹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경우는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9) 범행의 자백 여부 및 자백 동기

범행 자백여부의 경우는 경찰, 검찰, 법원의 단계로 자백, 일부자백, 전면 부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사건기록에서 알 수 없는 경우는 ‘미상’으로 처리하였고, 피의자 사망 등과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하였다. 자백의 경우는 범행동기부터 범행 후 행동까지 범행 관련 내용 모두를 자백한 경우를 의미하며, 일부자백의 경우는 2건 이상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모든 범행을 자백하지 않았거나 특정 범죄관련 내용에 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다는 등의 진술을 하는 경우이다. 한편, 자백의 동기에 있어서도 경찰과 검찰, 법원을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자백한 동기를 기입하였다. 자백동기로 증거제시, 죄책감, 혹은 기타 이유를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사건기록에서 알 수 없는 경우는 ‘미상’으로, 자백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하였다.

10) 범행 후 반성 및 후회 정도

연쇄범죄자의 경우는 범행 후에도 별다른 죄의식이 없고 반성이나 후회를 하지 않는다(Schlesinger, 2000). 연쇄방화범의 경우에도 범행 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후회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수사과정, 검찰의 수사과정, 공판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신에 범행에 대한 반성과 후회를 하는지 사건기록에서 신문조서나 반성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만일,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에 기입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사건기록상에서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31) 실제 기록조사 결과 기타에 해당 하는 내용 가운데 빈도가 많은 것은 별도로 코딩하여 범행 후 행동 유형으로 추가하였다.

11) 공범 여부 및 공범간의 관계

연쇄방화관련 연구에 의하면 연쇄방화범죄사건의 경우는 공범 없이 단독으로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Rise and Harisi, 1996; Lowenstein, 2003:196에서 재 인용; 김경옥, 2009).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연쇄성 방화사건이 비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지 살펴보기 위해 공범 유무를 확인하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공범의 성별과 공범간의 관계와 가해자의 역할을 기입하였다. 공범의 성별에 있어서는 공범이 남자만 있는지, 여자만 있는지, 아니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지 알아보았다. 한편, 공범간의 관계는 모르는 사람, 가족, 친척, 친구 및 선배, 동네사람, 애인, 안면만 있는 사람 가운데 선택하였고 이외의 경우에는 기타에 직접 기입하였다. 사건 기록을 통해 공범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가해자의 역할에 있어서는 주도적 역할인지, 보조적 역할인지, 단순가담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고, 관련 정보를 사건기록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는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여기서 주도적 역할은 범행대상에 불을 붙이거나 범행을 저지르도록 시키는 등의 행위이며, 보조적 역할은 범행도구를 가져다주는 등의 행위이고, 단순가담은 불을 붙이는 행위를 지켜만 보는 등의 행위로 보았다.

다. 피해 내용

피해내용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금액, 해당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 유무 및 정도, (피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1)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연쇄방화사건은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모르는 관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그러한지 살펴보기로 하였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는 가해자 기준으로 기입하는 것으로 모르는 사람인지 가족인지 친척인지 친구인지 회사동료인지 이웃인지 고용주자 직장상사 등의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안면만 있는 사람인지 해당 관계에 표시하였고, 이 외

의 경우에는 기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³²⁾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피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응답을 허용하였고,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역시 사건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2) 피해 금액

연쇄방화사건의 경우는 길거리의 쓰레기나 재산적 가치가 낮은 물건이 주로 범행대상이 된다(Douglas et al., 1992; Rossmo, 199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제적 재산피해가 비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낮은지 살펴보기 위해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 금액을 직접 기입하였고 해당 내용이 파악할 수 없을 때는 ‘미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3) 인명 피해 여부 및 유형

해당 범행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부상자와 사망자 발생에 따라 인명 피해 유형을 기입하였다.³³⁾ 한편, 피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피해자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변수에서 사용한 항목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해당 관계에 표시하였다.

32) 기타에 기입한 내용 가운데 사례수가 많은 것은 별도의 항목으로 기입하였다.

33) 인명피해내용에서는 본인의 피해도 포함해서 기입하였다.

표 3-1-1 기록 조사표의 주요 변수

구 분	측정변수
방화범의 일반적 특성	성별 / 국적 (범행 당시) 연령/교육 정도/직업 유무 및 유형, 직업의 안정성 여부 (범행 당시) 거주 지역/주거 형태/동거 여부 및 동거인 유형/혼인 상태 (범행 당시) 장애 여부 및 장애 유형 성장 시 가족환경(부모와의 동거 여부/ 가족 간 관계/ 학대 및 가출 경험) 범죄 경력
방화사건의 특성	범죄 처리 (해당사건에서의) 범행 횟수 - 연쇄성여부, 연쇄성방화유형(연속/연쇄) 구체적 죄명 및 경합 범죄 여부 범인 검거관련(범인 검거경위/범행 후 검거까지의 기간) 구속 여부 검찰처리 결과 최종 판결 심급/구형량 항소 여부 및 결과 변호사 유무 및 종류
	범행 내용 범행 지역 및 사건 발생 일시/ 사건발생 간격 범행 대상 범행 장소(친밀성/이동 수단/피의자 거주지로부터의 거리/범행 장소 간 거리) 범행 계획성 여부 방화 수법/ 방화 도구/방화 도구 처리 (범행 당시) 음주 및 약물사용 여부 범행 동기 범행 후 행동 범행 자백 여부 및 자백 동기(경찰, 검찰, 법원) 범행 후 반성 및 후회 정도(경찰, 검찰, 법원) 공범 여부 및 공범간의 관계
	피해 내용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경제적 피해금액 인명 피해 여부 및 유형

제2절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징

1. 범행 횟수

본 연구에서는 방화범 410명의 방화 사건기록 978건을 조사하였다. 먼저, 방화범의 방화 횟수를 살펴보면 한번 저지른 경우부터 33회를 저지른 경우까지 있었다. 방화횟수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방화범행을 1회 저지른 경우가 전체 410명 가운데 262명으로 가장 많았고 2회가 58명(14.1%), 3회가 27명(6.6%), 4회가 14명(3.4%), 5회가 9명(2.2%), 6회가 9명(2.2%), 11회가 7명 1.7%, 10회와 7회가 각 5명(1.2%) 등의 순이었다.

표 3-2-1 조사 대상의 방화횟수

(단위: 명, %)

방화횟수		빈도	백분율
비연쇄성	1회	262	63.9
연쇄성	2회	58	14.1
	3회	27	6.6
	4회	14	3.4
	5회	9	2.2
	6회	9	2.2
	7회	5	1.2
	8회	4	1.0
	9회	1	.2
	10회	5	1.2
	11회	7	1.7
	12회	2	.5
	13회	1	.2
	14회	1	.2
	15회	1	.2
	18회	1	.2
	19회	1	.2
	25회	1	.2
	33회	1	.2
합계		410	100.0

본 연구에서는 앞서 주요변수에서도 설명하였듯이 개별사건의 방화가 심리적 냉각기(cooling off period)와는 상관없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연쇄성 방화’로 정의하고 연쇄성 방화는 다시 연속방화와 연쇄방화로 구분된다. 즉, 연속방화는 범행사이의 심리적 냉각기 없이 하루 동안 지속적으로 불을 지르는 경우를 의미하고 연쇄방화는 최소 1일 이상의 심리적 냉각기를 가지고 불을 지르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본 연구에서 기록조사의 조사대상자 410명 가운데 262명이 비연쇄성 방화범으로 1회의 방화를 저지른 경우이고 148명이 연쇄성 방화범으로 2회 이상의 방화를 저지른 경우이며 전체의 36.1%를 차지하고 있다.³⁴⁾

표 3-2-2 연쇄성 여부에 따른 빈도

(단위: 명, %)

연쇄유무	빈도	비율
비연쇄성 방화범	262	63.9
연쇄성 방화범	148	36.1
전체	410	100.0

한편, 연쇄성 방화범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연속방화범은 67명으로 전체 147명 가운데 45.6%이고 연쇄방화범은 80명으로 54.4%이다.³⁵⁾ 여기에서 연쇄방화범의 경우는 2회 이상의 방화사건을 하루 이상의 냉각기를 두고 저지른 경우를 의미하지만 저지른 사건 가운데 연속방화인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 연쇄방화범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연쇄방화범은 각 사건동안 연속방화(spree arson)를 함께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Douglas et al., 1992). 가령, 3건의 방화사건을 저지른 연쇄성 방화범이 있다고 하자. 그가 저지른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은 새벽에 한 시간 간격으로 발생했고 이후 세 번째 사건은 2일 후에 발생했다면 이 방화범은 연속방화와 연쇄방화를 번갈아 가면서 저지른 것으로 본 연구

34) 이 비율은 일반 방화범죄에서의 연쇄성 방화범죄 발생율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연쇄성 방화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비교집단으로 비연쇄성 방화범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 예상했던 비율은 비연쇄성 방화사건과 연쇄성 방화사건의 비율은 1:1이었다.

35) 앞서 살펴본 연쇄성 방화범이 148명이었는데 심리적 냉각기를 고려한 연쇄성 방화유형이 147건으로 1건의 결측치가 발생한다. 이는 사건기록지에서 심리적 냉각기를 측정하는 사건발생시간이 정확히 기재 되어있지 않아 미상인 경우로 연쇄성 방화범유형 구분에 있어서는 해당 사례가 제외되었다.

에서는 연쇄방화범으로 구분하였다. 즉, 냉각기를 두고 2회 이상의 방화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범행을 저지른 경험과는 상관없이 연쇄방화로 분류된다.

표 3-2-3 연쇄성 방화범 유형에 따른 빈도

(단위: 명, %)

연쇄성 방화범		빈도	비율
연쇄성 방화범	연속방화범	67	45.6
	연쇄방화범	80	54.4
전체		147	100.0

한편, <표 3-2-4>에서 나타나듯이 기록 조사 결과 전체 방화사건은 총 978건이고 이 가운데 비연쇄성 방화사건은 262건, 연쇄성 방화사건은 716건이었다. 즉, 148명의 연쇄성 방화범이 저지른 사건은 716건이었고 148명의 연쇄성 방화범이 저지른 평균 방화건수는 4.83회였다(표준편차 4.510).

표 3-2-4 연쇄성 여부에 따른 사건 수

(단위: 건, %)

연쇄성 여부	빈도	비율
비연쇄성 방화사건	262	26.8
연쇄성 방화사건	716	73.2
전체	978	100.0

한편,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연속방화사건은 354건, 연쇄방화사건은 218건이다(표 3-2-5 참고).³⁶⁾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방화범들이 저지른 평균 범행 횟수를 살펴보면, 67명의 연속방화범이 저지른 평균방화횟수는 2.94회(표

36) 개념적으로 연쇄성 방화사건수가 연쇄방화사건과 연속방화사건을 합한 수와 동일해야 하지만 실제 데이터에서는 결측치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즉, <표 3-2-4>에서 연쇄성 방화사건이 716건인데 <표 3-2-5>에서 연속방화(n=354)와 연쇄방화(n=218)를 합하면 572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결측치 값(n=144)이 발생하는데 이는 연속과 연쇄를 구분하는 조건식에 사건발생시간변수에 해당하는 값이 없는 경우로 사건기록에서 사건발생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준편차 1.575), 80명의 연쇄방화범이 저지른 평균방화횟수는 6.45회(표준편차 5.481)이다³⁷⁾. 일정 기간 동안의 냉각기 없이 발생하는 연속방화에 비해 연쇄방화의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불을 지르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³⁸⁾

표 3-2-5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사건 수

(단위: 건 %)

연쇄성 방화사건		빈도	비율
연쇄성 방화사건	연속방화	354	61.9
	연쇄방화	218	38.1
전체		572	100.0

2. 사건 발생 연도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방화사건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사건으로 비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2008년에 발생한 경우가 50건으로 전체의 1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10년(16.1%), 2007년(14.6%), 2009년(14.2%), 2011년(13.4%), 2006년(11.9%) 등의 순으로 나타나 비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70% 이상이 2006년 이후에 발생한 것이었다. 연쇄성 방화의 경우는 전체 716건 가운데 134건이 2007년에 발생하여 전체의 18.7%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2008년(17.2%), 2009년(14.9%), 2010년(13.8%), 2005년(11.0%), 2006년(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에도 70% 이상이 2006년 이후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각 해당년도의 사건발생건수 비율이 비연쇄성 방화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df=10$, $\chi^2=57.201^{***}$). 연쇄성 방화의 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비교집단인 비연쇄성 방화와 범의자 관련 주요변수와 범행관련 변수를

37) 연속방화범과 연쇄방화범이 저지른 평균 범행횟수의 차이에 대한 T값이 -5.464로 .000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38) 한편, FBI가 연쇄방화자 83명을 대상으로 방화범 한 명당 평균화재건수를 살펴본 결과 31.5건으로 나타났다(Rossmo, 2000). 본 연구 결과에 비해서는 연쇄방화범의 평균 범행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한 변인의 통제가 필요하다. 그 변인 가운데 하나가 사건의 발생연도인데 본 조사의 여건 상 사건 발생연도를 통제하기는 쉽지 않았다. 물론, 표집과정에서는 사건 발생연도와 해당지역, 죄명을 고려하였지만 실제 조사과정에서 해당사건이 연쇄성 방화가 아니거나 해당 자료가 폐기되는 등의 연쇄성 방화사건의 표본 수를 확보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록조사에서 제외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진은 해당 사건의 발생연도가 연쇄성 방화와 비연쇄성 방화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쇄성 방화 특성을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다.³⁹⁾

표 3-2-6 사건 발생 연도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사건 발생 연도	2000년	1	0.4	-	-	1	0.1
	2001년	1	0.4	1	0.1	2	0.2
	2002년	-	-	-	-	-	-
	2003년	4	1.5	28	3.9	32	3.3
	2004년	10	3.8	46	6.4	56	5.7
	2005년	12	4.6	79	11.0	91	9.3
	2006년	31	11.9	78	10.9	109	11.2
	2007년	38	14.6	134	18.7	172	17.6
	2008년	50	19.2	123	17.2	173	17.7
	2009년	37	14.2	107	14.9	144	14.7
	2010년	42	16.1	99	13.8	141	14.4
2011년	35	13.4	21	2.9	56	5.7	
합계	261	100.0	716	100.0	977	100.0	

* 미상(비연쇄성 1건제외)

(df=10) $\chi^2 = 57.201^{***}$ ***p<.000

한편, 연쇄성 방화유형별로 연속방화의 사건발생연도 분포와 연쇄방화의 사건 발생연도 분포의 비율은 차이가 없었다. 즉, 연속방화와 연쇄방화 모두 2007년에

39) 현재, 실제 발생하는 연쇄방화사건이 전체 방화사건 가운데 얼마나 차지하는 지 추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실제로 특정 연도에 연쇄성 방화사건이 비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발생연도가 다르다는 점 역시 특정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되어 발생한 연쇄 방화의 특징으로 파악 가능하므로 본 조사의 표본의 문제라고만 볼 수도 없다.

발생한 사건이 연속방화는 70건으로 전체의 19.8%, 연쇄방화는 41건으로 전체의 18.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08년(연속방화: 17.2%, 연쇄방화: 15.6%), 2009년(연속방화: 15.3%, 연쇄방화: 15.1%), 2010년(연속방화: 13.8%, 연쇄방화: 12.8%)등의 순으로 연속방화와 연쇄방화 모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60%이상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표 3-2-7 연쇄성 방화 유형별 사건 발생연도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방화		연쇄방화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사건 발생 연도	2003년	14	5.1	6	2.8	24	4.2
	2004년	20	5.6	19	8.7	39	6.8
	2005년	39	11.0	31	14.2	70	12.2
	2006년	35	9.9	21	9.6	56	9.8
	2007년	70	19.8	41	18.8	111	19.4
	2008년	61	17.2	34	15.6	95	16.6
	2009년	54	15.3	33	15.1	87	15.2
	2010년	49	13.8	28	12.8	77	13.5
	2011년	8	2.3	5	2.3	13	2.3
합계		354	100.0	218	100.0	572	100.0

* 미상(144건제외)

(df=8) $\chi^2 = 5.133$ n.s.

제3절 연쇄성 방화범의 일반적 특징

1. 연쇄성 방화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가. 성별 분포

연쇄성 방화범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148명 가운데 남성이 138명으로 93.2%, 여성은 10명으로 6.8%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분포는 비연쇄성 방화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체 262명 가운데 239명(91.2%)이 남성이었고 23명(8.8%)만이 여성

이었다.

표 3-3-1 성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239	91.2	138	93.2	377	92.0
	여성	23	8.8	10	6.8	33	8.0
전체		262	100.0	148	100.0	410	100.0

(df=1) $\chi^2 = .522$ n.s.

연쇄성 방화범을 범행 사이의 심리적 냉각기가 없는 연속방화와 범행 사이의 심리적 냉각기가 하루 이상인 연쇄방화와 구분하여 살펴보더라도 연속방화범 67명 가운데 64명(95.5%)이 남성이고 연쇄방화범 80명 가운데 73명(91.3%)이 남성으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다.

표 3-3-2 연쇄성 방화 유형별 성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64	95.5	73	91.3	137	93.2
	여성	3	4.5	7	8.8	10	6.8
전체		67	100.0	80	100.0	147	100.0

(df=1) $\chi^2 = 1.050$ n.s.

「2011 범죄통계」에 따르면 살인의 피의자가 남성인 비율이 86.9%, 폭력에서는 84.7%, 강도에서는 89.6%로 강력범죄의 대부분이 남성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즉, 앞서 살펴본 <표 3-3-1>에서 나타나듯이 연쇄성 방화 역시 비연쇄성 방화나 다른 유형의 강력범죄와 마찬가지로 남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단순히 연쇄성 방화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적게 저지른다는 식의 설명보다는 성별에 따라 범행관련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연쇄성 방화범과 방화사건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⁴⁰⁾

연쇄성 방화범 148명이 저지른 범행 횟수는 2회부터 33회까지로 평균 범행 횟수는 4.83회(표준편차 4.510)이다. 한편, 여성인 연쇄성 방화범(10명)의 평균 범행 횟수는 4.50회이고(표준편차 3.535), 남성인 연쇄성 방화범(138명)의 평균 범행 횟수는 4.86(표준편차 4.582)으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평균 범행 횟수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수의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⁴¹⁾ 한편, 연쇄성 방화유형에 따라 살펴보다라도 연쇄방화범 여성(7명)이 저지른 평균 범행 횟수는 5.42회(표준편차 3.909)이고 남성(73명)이 저지른 평균 범행 횟수는 6.54회(표준편차 5.620)이며, 연속방화범 여성(3명)이 저지른 평균 범행 횟수는 2.33(표준편차 .577)이고, 남성(64명)이 저지른 평균 범행 횟수는 2.96회(표준편차 1.603)이다.⁴²⁾ 즉, 1일 이상의 냉각기를 두고 범행을 저지르는 연쇄방화의 경우는 범행 사이의 냉각기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연속방화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평균 범행 횟수를 보이고 있고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이 역시 여성보다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나. 연령별 분포

방화범의 범행 당시 연령별 분포를 보면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30대가 28.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20대(23.0%)와 40대(23.0%), 10대 이하(11.5%)와 50대(11.5%), 60대(2.7%)의 순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5.57세이다(표준편차:11.987).⁴³⁾

40) 다만, 여성인 연쇄성 방화범이 10명에 불과하여 해당 연구결과를 여성 연쇄성 방화의 특징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본 연구는 향후 여성 연쇄방화 연구를 위한 탐색적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41) 성별에 따른 평균 범행 횟수에 대한 T값은 .245로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여성 연쇄성 방화범(n=10)이 저지른 범행횟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회가 3명, 3회가 4명, 5회가 1명, 11회가 2명이었으며 남성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는 2회가 55명, 3회가 23명, 4회가 14명, 5회가 8명, 6회가 9명, 7회가 5명, 8회가 4명, 9회가 1명, 10회가 5명, 11회가 5명, 12회가 2명, 13회 1명, 14회 1명, 15회 1명, 18회 1명, 19회 1명 25회 1명, 33회 1명이었다.

42) 연속방화 내 성별 차이에서 T값은 .680이었고 연쇄방화 내 성별차이 T값은 .514였다.

43) 연쇄성 방화범의 연령분포는 15세부터 65세까지이며 비연쇄성 방화범의 연령분포는 14세부터 77세까지이다. 연쇄성 방화범의 평균 연령과 비연쇄성 방화범의 평균 연령의 차이에 대한 T값은 3.444

한편, 비연쇄성 방화범의 경우는 40대가 32.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19.1%), 50대(18.3%), 20대(13.4%), 10대 이하(10.3%), 60대(5.7%), 70대이상(1.1%)의 순으로 평균 연령은 40.36세이다(표준편차:14.315). 즉,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30대 이하’의 비율이 60%이상인 반면 단일성 방화범은 약 43%로 연쇄성 방화범이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았다($\chi^2=18.018^{**}$, $df=6$). FBI에서 수행한 연쇄방화범 조사에서도 1,474건의 방화 중 59%가 18세 이전에 행해지고 80%가 30세 이전에 행해져 연쇄방화범의 낮은 연령이 연쇄방화범의 특징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김상균, 2008:258).

표 3-3-3 연령대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연령	10대	27	10.3	17	11.5	44	10.7
	20대	35	13.4	34	23.0	69	16.8
	30대	50	19.1	42	28.4	92	22.4
	40대	84	32.1	34	23.0	118	28.8
	50대	48	18.3	17	11.5	65	15.9
	60대	15	5.7	4	2.7	19	4.6
	70대	3	1.1	-	-	3	0.7
전체		262	100.0	148	100.0	410	100.0

($df=6$) $\chi^2 = 18.018^{**}$ $^{***}p < .01$

한편, 연쇄성 방화범의 성별에 따른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는 전체 138명 가운데 30대가 37명(26.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40대(33건, 23.9%) 20대(33건, 23.9%), 50대(15건, 10.9%), 60대(4건, 2.9%)의 순으로 나타났고, 남성 연쇄성 방화범의 평균 연령은 35.45세이다(표준편차:12.104). 연쇄성 방화범이 여성인 경우에는 30대가 전체 10명 가운데 5명이 30대(50.0%)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명(20.0%), 10대, 20대, 40대가 각 1명(10%)으로 범행 당시 평균 연령은 37.30세이다(표준편차:10.636). 성별에 따른 연령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로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여성인 연쇄성 방화범의 연령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인 연쇄방화범을 대상으로 Wachi와 그의 동료들(2007)이 진행한 연구결과에서도 그들의 평균 나이가 37.6세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면, 비연쇄성 방화범의 성별에 따른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연쇄성 방화범 가운데 남성의 경우는 40대가 전체 239건 가운데 76건으로 31.8%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30대와 40대가 각 18.4%, 20대가 13.4%, 10대 이하가 10.5% 등의 순으로 범행 당시 평균 연령은 40.56세(표준편차:14.570)였다. 여성인 비연쇄성 방화범은 40대가 전체의 3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26.1%), 50대(17.4%), 20대(13.0%) 등의 순으로 평균 범행 당시 연령은 38.26세(표준편차:11.379)였다.⁴⁴⁾ 다시 말해서, 범행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높았고 비연쇄성 방화범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

표 3-3-4 성별에 따른 연령대 분포

(단위: 명, %)

연쇄성 방화사건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연령대	10대	16	11.6	1	10.0	17	11.5
	20대	33	23.9	1	10.0	34	23.0
	30대	37	26.8	5	50.0	42	28.4
	40대	33	23.9	1	10.0	34	23.0
	50대	15	10.9	2	20.0	17	11.5
	60대	4	2.9	-	-	4	2.7
전체		138	100.0	10	100.0	148	100.0

(df=5) $\chi^2 = 4.325$ n.s.

44) 비연쇄성 방화범의 성별에 따른 범행 당시 평균 연령의 차이에 대한 T값은 .90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비연쇄성 방화사건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연령대	10대	25	10.5	2	8.7	27	10.3
	20대	32	13.4	3	13.0	35	13.4
	30대	44	18.4	6	26.1	50	19.1
	40대	76	31.8	8	34.8	84	32.1
	50대	44	18.4	4	17.4	48	18.3
	60대	15	6.3	-	-	15	5.7
	70대 이상	3	1.3	-	-	3	1.1
전체		239	100.0	23	100.0	262	100.0

(df=6) $\chi^2 = 2.516$ n.s.

연쇄성 방화범 유형에 따라 연령대별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 결과, 연속범죄자의 경우 전체 67명 가운데 21명(31.3%)이 40대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28.4%), 20대(16.4%), 50대(11.9%), 10대(6.0%), 60대(6.0%)의 순으로 나타났고 평균 연령은 38.90세(표준편차 12.059)이다. 한편, 하루 이상의 냉각기가 있는 연쇄범죄자의 경우는 전체 80명 가운데 30대가 23명으로 전체의 28.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대(27.5%), 10대(16.3%), 40대(16.3%), 50대(11.3%)의 순으로 나타났고 평균 연령은 32.88세(표준편차:11.340)이다.⁴⁵⁾ 이처럼, 연쇄범죄자의 경우 연속범죄자에 비해 10대와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연속방화:22.4%, 연쇄방화:43.8%)이 높았고 그 차이도 .05수준에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df=5 $\chi^2 = 13.711^*$). 즉, 연쇄방화를 저지른 방화범의 경우 범행 당시 연령이 연속방화를 저지른 방화범에 비해 낮아 청소년과 젊은 청년들에 의한 범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쇄방화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범죄를 기준으로 본 범죄자 연령별 구성비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약 5%)에 비해 높은 수치로 그 심각성이 더하다(경찰청-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청소년의 경우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로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게 됨으로써 겪어야 할 사회적 위험이 상당하여 이들에 대한 집중적 논의와 함께 이에 대한 예방 정책이 긴급해 보인다.

45) 연쇄성 방화범 유형에 따른 연령대별 분포의 T값이 3.114로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표 3-3-5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연령대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연령대	10대	4	6.0	13	16.3	17	11.6
	20대	11	16.4	22	27.5	33	22.4
	30대	19	28.4	23	28.8	42	28.6
	40대	21	31.3	13	16.3	34	23.1
	50대	8	11.9	9	11.3	17	11.6
	60대	4	6.0	-	-	4	2.7
	70대 이상	-	-	-	-	-	-
전체		67	100.0	80	100.0	147	100.0

(df=5) $\chi^2 = 13.711^* *p < .05$

다. 국적별 분포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148명 모두 내국인에 의해 저질러졌고 비연쇄성 방화범의 경우는 전체 262명 가운데 4명이 외국인이었다. 해당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미국이 1명, 중국이 1명, 조선족이 2명이었다.

표 3-3-6 국적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국적	내국인	258	98.5	148	100.0	406	99.0
	외국인	4	1.5	-	-	4	1.0
전체		262	100.0	148	100.0	410	100.0

(df=1) $\chi^2 = 2.282$ n.s.

라. 주거 형태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범행당시 주거 부정의 비율은 전체의 20.6%(26명), 주거지가 있는 경우는 79.4%(100명)로 주거지가 있는 비율이 더 많았다. 이러한 경향

은 비연쇄성 방화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거지가 있는 방화범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3-3-7 범행 당시 주거 부정 여부

(단위: 명,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주거부정여부	주거지 있음	180	85.3	100	79.4	280	83.1
	주거 부정	31	14.7	26	20.6	57	16.9
전체		211	100.0	126	100.0	337	100.0

(df=1) $\chi^2 = 1.983$ n.s.

연쇄성 방화범의 범행 당시 주거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가인 경우가 전체의 3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주거 부정이 20.6%였고 보증부월세(14.3%), 월세사글세(12.7%), 친척집이나 친구집(7.1%) 등의 순이었다. 비연쇄성 방화범의 경우도 자가의 형태가 전체의 33.6%, 보증부월세가 15.2%, 주거 부정은 14.7%, 월세사글세는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연쇄성 방화범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여기서 자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온 이유는 ‘자가’에 부모집과 자녀 집, 친형제/자매집이 포함되어 앞서 살펴본 연쇄성 방화범의 연령에서 나타나듯이 낮은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많아 부모집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방화범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표 3-3-3, 표 3-3-8 참고).

표 3-3-8 범행 당시 주거 형태

(단위: 명,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행 당시 주거 형태	자가	71	33.6	41	32.5	112	33.2
	전세	22	10.4	8	6.3	30	8.9
	보증부월세	32	15.2	18	14.3	50	14.8
	월세사글세	25	11.8	16	12.7	41	12.2
	친척집친구집	11	5.2	9	7.1	20	5.9
	숙박업소	9	4.3	4	3.2	13	3.9
	주거부정	31	14.7	26	20.6	57	16.9
	기타	10	4.7	4	3.2	14	4.2
합계		211	100.0	126	100.0	337	100.0

* 미상(비연쇄성 51건, 연쇄성22건)제외

(df=7) $\chi^2=4.441$ n.s.

마. 범행 당시 직업 유무 및 직업 유형

연쇄성 방화범의 범행 당시 직업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3%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직업이 있는 경우가 전체 134명 가운데 69명으로 51.5%, 직업이 없는 경우가 65명으로 48.5%를 차지하였다. 비연쇄성 방화범의 경우도 범행 당시 직업이 있는 경우가(54.1%) 직업이 없는 경우(45.9%)에 비해 더 많았다.

표 3-3-9 범행 당시 직업 유무

(단위: 명,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직업 유무	직업 있음	124	54.1	69	51.5	193	53.2
	직업 없음	105	45.9	65	48.5	170	46.8
전체		229	100.0	134	100.0	363	100

* 학생(비연쇄성 27건, 연쇄성 14건)과 미상(비연쇄성 6건)제외

(df=1) $\chi^2 = .239$ n.s.

한편, 연쇄성 방화범과 비연쇄성 방화범의 성별에 따라 직업의 유무가 다른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3-3-10>과 같다. 즉,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남성은 직업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52.0%였고 여성은 직업이 없는 경우가 55.6%였으며 비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남성은 직업이 있는 경우가 57.9%였고 여성은 직업이 없는 경우가 85.0%였다. 다시 말해서 여성인 비연쇄성 방화범은 남성과는 달리 직업이 없는 경우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업이 있는 경우보다 높았고 연쇄성 방화범에서도 직업이 없는 여성이 직업이 있는 여성에 비해 불을 지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0 성별에 따른 직업 유무

(단위: 명, %)

연쇄성 방화범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직업 유무	직업 있음	65	52.0	4	44.4	69	51.5
	직업 없음	60	48.0	5	55.6	65	48.5
전체		125	100.0	9	100.0	134	100.0

(df=1) $\chi^2 = .192$ n.s.

비연쇄성 방화범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직업 유무	직업 있음	121	57.9	3	15.0	124	54.1
	직업 없음	88	42.1	17	85.0	105	45.9
전체		209	100.0	20	100.0	229	100.0

(df=1) $\chi^2 = 13.527^{***}$ ****p<.001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라 직업의 유무의 비율을 보면 .05수준에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연속방화의 경우는 직업이 있는 경우가 전체 65명 가운데 38명으로 58.5%로 직업이 없는 경우(41.5%)에 비해 많았고 연쇄방화의 경우에는 직업 없는 경우가 전체 68명 가운데 38명으로 55.9%로 직업이 있는 경우(44.1%)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연쇄방화범의 경우 직업이 없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연속방화범의 경우는 직업이 있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냉각기를 두고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방화범의 경우 범행 당시 무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1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직업 유무

(단위: 명,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직업유무	직업 있음	38	58.5	30	44.1	68	51.1
	직업 없음	27	41.5	38	55.9	65	48.9
전체		65	100.0	68	100.0	133	100.0

(df=1) $\chi^2 = 2.736$ n.s.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범죄분석실에 따르면, 연쇄방화범의 경우 범행 당시 실직 상태인 경우가 많고 직업이 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직종이나 사람을 접촉하는 빈도가 낮은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고 직장을 자주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분석실, 2004b:109). 이에 연쇄성 방화범의 구체적인 직업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표 3-3-12 범행 당시 직업 유형

(단위: 명,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행 당시 직업	관리자	4	3.2	2	2.9	6	3.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9	7.3	4	5.8	13	6.7
	사무 종사자	5	4.0	3	4.3	8	4.1
	서비스 종사자	8	6.5	3	4.3	11	5.7
	판매 종사자	15	12.1	1	1.4	16	8.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5.6	1	1.4	8	4.1
	기능 관련 종사자	12	9.7	6	8.7	18	9.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	3.2	8	11.6	12	6.2
	단순 노무 종사자	59	47.6	40	58.0	99	51.3
	기타	1	0.8	1	1.4	2	1.0
전체		124	100.0	69	100.0	193	100.0

* 미상(비연쇄성 6건)제외

(df=9) $\chi^2 = 14.605$ n.s.

연쇄성 방화범의 직업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3-12>에서 나타나듯이 단순 노무 종사자가 전체 69명 가운데 40명(58.0%)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8명, 11.6%), 기능 관련 종사자(6명, 8.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4명, 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연쇄성 방화범의 직업에서도 단순노무종사자(47.6%)가 가장 많았고 판매 종사자(12.1%), 기능 관련 종사자(9.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7.3%)등의 순으로 나타나 연쇄성 방화범 가운데 단순노무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비연쇄성 방화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⁴⁶⁾

한편, 직업이 있는 경우 해당 직업의 안정성 여부를 살펴본 결과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는 일용직이 전체 69명 가운데 34명으로 49.3%였고 정규직은 29명으로 42.0%였다. 비연쇄성 방화범의 경우에도 일용직의 비율이(46.0%) 정규직(41.1%)에 비해 높았다. 한편, 연쇄성 방화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연속방화의 경우는 일용직이 전체 38명 가운데 22명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하였고 정규직은 14명으로 36.8%이지만 연쇄방화는 정규직이 전체의 절반을, 일용직은 약 37%를 차지하였다. 즉, 연쇄방화범의 경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3-3-13 직업의 안정성 여부

(단위: 명,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직업의 안정성	일용직	57	46.0	34	49.3	91	47.2
	임시직	16	12.9	6	8.7	22	11.4
	정규직	51	41.1	29	42.0	80	41.5
전체		124	100.0	69	100.0	193	100.0

* 직업없음(비연쇄성 132건, 연쇄성 79건)과 미상(비연쇄성 6건)을 제외 (df=2) $\chi^2 = .800$ n.s.

46) 사건기록에 나타난 월평균수입의 경우 전체 133건으로 비연쇄성 방화범의 월평균수입은 평균 약 142만원 정도였고 연쇄성 방화범의 월평균수입은 약 135만원으로 두 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연쇄성 방화범 가운데 연쇄방화범은 약 131만원, 연속방화범은 137만원으로 이 또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직업의 안정성	일용직	22	57.9	11	36.7	33	48.5
	임시직	2	5.3	4	13.3	6	8.8
	정규직	14	36.8	15	50.0	29	42.6
전체		38	100.0	30	100.0	68	100.0

(df=2) $\chi^2 = 3.475$ n.s.

바. 교육 정도

연쇄성 방화범의 교육 정도를 살펴보면 고등학교까지 정규교육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39.9%(55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은 경우가 22.5%(31명),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은 경우는 19.6%(27명),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대학원까지 교육을 받은 경우는 18.1%(25명)로 나타났다. 비연쇄성 방화범의 경우에는 고졸 이하가 39.3%, 중졸 이하가 28.6%, 초졸 이하가 16.2%, 대졸 이상이 15.8%로 나타났다. 즉, 연쇄성 방화범 가운데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무학에서 초졸 이하의 경우가 22.5%로 고졸 이하의 경우(39.9%)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비율은 비연쇄성 방화범(16.2%)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3-14 교육 정도

(단위: 명,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교육 정도	초졸 이하	38	16.2	31	22.5	69	18.5
	중졸 이하	67	28.6	27	19.6	94	25.3
	고졸 이하	92	39.3	55	39.9	147	39.5
	대졸 이상	37	15.8	25	18.1	62	16.7
전체		234	100.0	138	100.0	372	100.0

* 미성(비연쇄성 28건, 연쇄성 10건)을 제외

(df=3) $\chi^2 = 4.920$ n.s.

한편, 연쇄성 방화범의 성별에 따라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남성인 경우 고졸 이하가 전체 129명 가운데 51명으로 39.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초졸 이하

(22.5%), 중졸 이하(20.2%), 대졸 이상(17.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인 경우에도 고졸 이하가 전체의 4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초졸 이하와 대졸 이상이 각 22.2%, 중졸 이하가 11.1%로 나타났다. 물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여성인 연쇄성 방화범이 남성인 연쇄성 방화범에 비해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연쇄성 방화범의 성별에 따라 나타난 특성과는 반대였다. 즉, 비연쇄성 방화범의 성별에 따라 교육정도를 살펴 본 <표 3-3-15>에 따르면 비연쇄성 방화범에서 정규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무학에서부터 중졸 이하의 비율이 남성(약 44%)에 비해 여성(약 55%)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여성인 비연쇄성 방화범이 남성에 비해 교육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비율은 여성인 연쇄성 방화범의 교육 수준과 비교해 보더라도 비연쇄성 방화를 저지르는 여성에 비해 연쇄성 방화를 저지르는 여성의 평균 교육 연수가 상대적으로 더 길게 나타났다음을 알 수 있다.

표 3-3-15 성별에 따른 교육 정도

(단위: 명, %)

연쇄성 방화범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교육 정도	초졸 이하	29	22.5	2	22.2	31	22.5
	중졸 이하	26	20.2	1	11.1	27	19.6
	고졸 이하	51	39.5	4	44.4	55	39.9
	대졸 이상	23	17.8	2	22.2	25	18.1
전체		129	100.0	9	100.0	139	100.0

(df=3) $\chi^2 = 4.92$ n.s.

비연쇄성 방화범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교육 정도	초졸 이하	32	15.0	6	30.0	38	16.2
	중졸 이하	62	29.0	5	25.0	67	28.6
	고졸 이하	86	40.2	6	30.0	92	39.3
	대졸 이상	34	15.9	3	15.0	37	15.8
전체		214	100.0	20	100.0	234	100.0

(df=3) $\chi^2 = 4.920$ n.s.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라서는 교육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보면, 연속방화의 경우 고졸 이하가 전체의 38.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초졸 이하가 24.2%, 대졸 이상이 19.4%, 중졸이하가 17.7%였고 연쇄방화의 경우도 고졸 이하가 41.3%로 가장 많고 중졸 이하가 21.3%, 초졸 이하가 20.0%, 대졸 이상이 17.3%였다. 즉, 연쇄성 방화유형에 따른 교육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연속방화범의 경우 무학에서 초졸 이하(24.2%)가 고졸 이하 다음으로 높았고 그 비율은 연쇄방화범(20.0%)에 비해 높았다.

표 3-3-16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교육 정도

(단위: 명,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교육 정도	초졸 이하	15	24.2	15	20.0	30	21.9
	중졸 이하	11	17.7	16	21.3	27	19.7
	고졸 이하	24	38.7	31	41.3	55	40.1
	대졸 이상	12	19.4	13	17.3	25	18.2
전체		62	100.0	75	100.0	137	100.0

(df=3) $\chi^2 = .629$ n.s.

사. 범행 당시 동거 여부 및 동거인 유형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범행 당시 동거자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63.9%로 동거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많았다. 이러한 분포는 비연쇄성 방화범의 경우에도 비슷하여 동거자가 있는 경우가 전체 245명 가운데 154명으로 62.9%였다.

표 3-3-17 범행 당시 동거 여부

(단위: 명,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동거 여부	동거자 있음	154	62.9	94	63.9	248	63.3
	동거자 없음	91	37.1	53	36.1	144	36.7
전체		245	100.0	147	100.0	392	100.0

* 미상(비연쇄성 17건, 연쇄성 1건)을 제외

(df=1) $\chi^2 = .047$ n.s.

한편,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라 범행 당시 동거 여부가 다른지 살펴본 결과 연속 범죄와 연쇄범죄 모두 동거자가 있는 경우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다만, 연속방화범의 경우 범행 당시 동거자가 없이 혼자 생활하는 비율이 32.82%로 연쇄방화범의 경우(39.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연속 방화와 연쇄방화간의 동거 여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연쇄 방화범이 연속방화범에 비해 범행 당시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3-3-18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범행 당시 동거 여부

(단위: 명,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동거 여부	동거자 있음	45	67.2	48	60.8	93	63.7
	동거자 없음	22	32.8	31	39.2	53	36.3
전체		67	100.0	79	100.0	146	100.0

(df=1) $\chi^2 = .643$ n.s.

연쇄성 방화범의 동거인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부모가 전체의 36.0%로 가장 많았고 형제·자매(21.7%), 자녀(15.5%), 배우자(14.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19 범행 당시 동거인 유형

(단위: 명, %)

구분		연쇄성 방화	
		빈도	백분율
동거인 유형	부모	58	36.0
	형제/자매	35	21.7
	자녀	25	15.5
	배우자	23	14.3
	동료 및 친구	3	1.9
	친척	5	3.1
	동거남·녀	7	4.4
	조부모	5	3.1
전체		161	100.0

* 중복응답허용

아. 혼인 상태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미혼(동거포함)의 경우가 66.9%(89명), 기혼이 17.3%(23명), 별거이거나 이혼, 사별인 경우가 15.8%(21명)로 나타났다. 한편, 비연쇄성 방화범의 경우는 미혼이 50.5%, 이혼(별거)이나 사별인 경우가 26.4%, 기혼이 23.1%로 연쇄성 방화범에 비해 미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df=2, \chi^2=9.352^{**}$). 즉,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비연쇄성 방화범에 비해 결혼을 하지 않은 비율이 높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연쇄성 방화범의 연령 분포에서 나타나듯이 10대와 2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표 3-3-3, 3-3-20 참고).

표 3-3-20 혼인 상태

(단위: 명,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혼인 상태	미혼(동거)	107	50.5	89	66.9	196	56.8
	기혼	49	23.1	23	17.3	72	20.9
	별거·이혼·사별	56	26.4	21	15.8	77	22.3
전체		212	100.0	133	100.0	345	100.0

($df=2$) $\chi^2=9.352^{**}$ $^{***}p<.01$

한편,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혼인 상태의 경우는 연속방화에서 미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61.7%, 연쇄방화에서 미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72.2%로 일정기간의 냉각기를 두고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연쇄방화범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3-21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혼인 상태

(단위: 명,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혼인 상태	미혼(동거)	37	61.7	52	72.2	89	67.4
	기혼	14	23.3	8	11.1	22	16.7
	별거·이혼·사별	9	15.0	12	16.7	21	15.9
	전체	60	100.0	72	100.0	132	100.0

(df=2) $\chi^2 = 3.531$ n.s.

연쇄성 방화범의 보다 구체적인 혼인 상태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3-22>와 같다. 즉, 미혼이 전체의 61.7%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기혼(초혼)이 15.8%, 이혼(9.8%), 별거가 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연쇄성 방화범의 경우에도 미혼이 전체의 41.0%로 가장 많기는 하지만 연쇄성 방화범에 비해서는 기혼과 이혼 별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가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df=6, $\chi^2 = 15.548^*$).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심리과 범죄분석실(2004a)에 따르면 방화 피의자의 결혼관계를 보면 70% 이상이 미혼이고 20%가 결혼, 5% 정도는 이혼 후 동거와 미혼인 상태로 동거, 2%는 이혼하여 혼자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로 방화 범죄는 미혼의 남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표 3-3-22 혼인 상태(상세)

(단위: 명,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혼인 상태	미혼	87	41.0	82	61.7	169	49.0
	동거	20	9.4	7	5.3	27	7.8
	기혼(초혼)	43	20.3	21	15.8	64	18.6
	재혼이상	6	2.8	2	1.5	8	2.3
	별거	25	11.8	8	6.0	33	9.6
	이혼	29	13.7	13	9.8	42	12.2
	사별	2	0.9	-	-	2	0.6
전체	212	100.0	133	100.0	345	100.0	

* 미상(비연쇄성 50건, 연쇄성 15건)제외

(df=6) $\chi^2 = 15.548^*$ *p<.05

2. 연쇄성 방화범의 장애 유무 및 장애 유형

연쇄성 방화범의 약 60% 가까이가 아무런 장애가 없는 정상인이지만 약 40%가 정신분열이나 우울증, 정신장애,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그 가운데 정신장애와 정신지체와 같은 정신적 문제를 지닌 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⁴⁷⁾

표 3-3-23 장애 유무 및 장애 유형

(단위: 명,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장애 유무 및 유형	정상	186	67.9	95	59.4	281	64.7
	정신분열	17	6.2	7	4.4	24	5.5
	우울증	9	3.3	7	4.4	16	3.7
	신체장애	12	4.4	8	5.0	20	4.6
	정신장애	17	6.2	21	13.0	38	8.8
	행동장애	-	-	3	1.9	3	0.7
	정신지체	13	4.7	12	7.5	25	5.8
	알코올중독	20	7.3	7	4.4	27	6.2
전체		274	100.0	160	100.0	434	100.0

* 중복응답허용

한편, 연쇄성 방화범을 연속방화범과 연쇄방화범으로 구분하여 장애유무 및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연속방화범의 경우 장애를 가지지 않은 정상인이 69.0%로 장애를 지닌 경우는 31%로 나타났고 장애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신장애가 11.3%, 정신지체가 8.5%, 정신분열이 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쇄방화범의 경우는 정상인 경우가 51.1%로 상대적으로 연속방화범에 비해 낮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이 많은 순으로 살펴보면 연쇄방화범 역시 정신장애가 1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신체장애, 정신지체 알코올중독이 6.8%로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비연쇄성 방화범에 비해 장애를 지닌

47) 사건기록에서 불을 지르라는 계시를 받고 불을 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의 정신적 문제를 보이는 피의자도 있었다.

사람의 비율이 더 높고 연쇄성 방화범을 연속방화범과 연쇄방화범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연쇄방화범의 경우가 연속방화범에 비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에 향후 정신적인 문제나 장애를 가진 연쇄성 방화범에 대한 정신병리학적 관점의 설명 뿐 아니라 범죄사회학적 관점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표 3-3-24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장애유형

(단위: 명,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장애 유무 및 유형	정상	49	69.0	45	51.1	94	59.1
	정신분열	3	4.2	4	4.5	7	4.4
	우울증	2	2.8	5	5.7	7	4.4
	신체장애	2	2.8	6	6.8	8	5.0
	정신장애	8	11.3	13	14.8	21	13.2
	행동장애	-	-	3	3.4	3	1.9
	정신지체	6	8.5	6	6.8	12	7.5
알코올중독	1	1.4	6	6.8	7	4.4	
전체		71	100.0	88	100.0	159	100.0

* 중복응답허용

여성 방화범의 경우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적 문제를 가진 경우가 많다 (Blumberg, 198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심리과 범죄분석실, 2003:127에서 재인용; Bourget & Bradford, 1989; Harmon et al., 1985; Wachi et al., 2007:45에서 재인용). 즉, 방화범의 성별에 따라 장애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성별에 따른 장애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 결과,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남성은 60.5%가 정상이었고 여성은 46.2%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즉, 여성인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남성에 비해 장애를 가진 자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신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 여성이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더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비연쇄성 방화범에서도 나타나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3-3-25 성별에 따른 장애 유형

(단위: 명, %)

연쇄성 방화범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장애 유무 및 유형	정상	89	60.5	6	46.2	95	59.4
	정신분열	6	4.1	1	7.7	7	4.4
	우울증	5	3.4	2	15.4	7	4.4
	신체장애	8	5.4	-	-	8	5.0
	정신장애	19	12.9	2	15.4	21	13.0
	행동장애	3	2.0	-	-	3	1.9
	정신지체	10	6.8	2	15.4	12	7.5
	알코올중독	7	4.8	-	-	7	4.4
전체		147	100.0	13	100.0	160	100.0
비연쇄성 방화범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장애 유무 및 유형	정상	174	70.7	12	42.9	186	67.9
	정신분열	13	5.3	4	14.3	17	6.2
	우울증	7	2.8	2	7.1	9	3.3
	신체장애	11	4.5	1	3.6	12	4.4
	정신장애	14	5.7	3	10.7	17	6.2
	정신지체	17	4.1	3	10.7	13	4.7
	알코올중독	7	6.9	3	10.7	20	7.3
	전체		246	100.0	28	100.0	274

* 중복응답허용

3. 연쇄성 방화범의 가족환경

가. 성장 시 부모와 동거 여부 및 주 양육자

연쇄성 여부에 따라 성장 시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살펴보면 비연쇄성 방화범과 연쇄성 방화범 모두 부모와 모두 생존하여 동거한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즉, 연쇄성 방화범 집단에서 부모 모두 생존하고 함께 산 경우가 전체 109명 가운데 58명으로 53.2%를 차지하였고 어릴 적 부모가 사망했거나(28.4%) 부모가 별거하였거나 이혼하여 함께 살지 못한 경우(18.4%)는 모두 51명으로 46.8%였다.

그리고 비연쇄성 방화범집단에서도 어릴 적 부모와 함께 보낸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6 성장 시 부모와의 동거 여부

(단위: 명,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부모와 동거	부모생존동거		69	55.2	58	53.2	127	54.3
	부모비 동거	부모별거이혼	56	14.4	20	18.4	38	16.2
		부모사망	38	30.4	31	28.4	69	29.5
	전체		125	100.0	109	100.0	234	100.0

* 미상(비연쇄성 137건, 연쇄성 39건)제외 (df=2) $\chi^2 = .677$ n.s.

한편,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연속방화와 연쇄방화 모두 어릴 적 부모 모두 생존하여 함께 산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3-3-27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성장 시 부모와의 동거 여부

(단위: 명,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부모와 동거	부모생존동거		25	53.2	33	53.2	58	53.2
	부모비 동거	부모별거이혼	8	17.0	12	19.4	20	18.3
		부모사망	14	29.8	17	27.4	31	28.4
	전체		47	100.0	62	100.0	109	100.0

(df=2) $\chi^2 = .132$ n.s.

한편, 방화범의 어릴 적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살펴본 결과, 연쇄성 방화범 집단과 비연쇄성 방화범 집단 모두 부모인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한부모(연쇄성 방화범:26.7%, 비연쇄성 방화범:30.6%), 조부모와 친척(연쇄성 방화범:11.9%, 비연쇄성 방화범: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28 주 양육자

(단위: 명,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주 양육자	부모	64	57.7	53	52.5	117	55.2
	한부모	34	30.6	27	26.7	61	28.8
	조부모친척	6	5.4	12	11.9	18	8.5
	형제자매	4	3.6	3	3.0	7	3.3
	기타	2	1.8	2	2.0	4	1.9
	시설	1	0.9	4	4.0	5	2.4
전체		111	100.0	101	100.0	212	100.0

* 미성(비연쇄성 151건, 연쇄성 47건)제외

(df=5) $\chi^2 = 5.320$ n.s.

나. 성장 시 가족 간 관계

성장 시 가족 간 관계를 보면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95명 가운데 49명으로 51.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원만한 편(33.7%), 보통(14.7%)의 순이었으며 비연쇄성 방화범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3-3-29 성장 시 가족 간 관계

(단위: 명,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가족 간 관계	원만한 편	35	31.0	32	33.7	67	32.2
	보통	19	16.8	14	14.7	33	15.9
	원만하지 않음	59	52.2	49	51.6	108	51.9
전체		113	100.0	95	100.0	208	100.0

*미성(비연쇄성 147건, 연쇄성 52건), 해당사항없음(비연쇄 2건, 연쇄 1건)제외 (df=2) $\chi^2 = .877$ n.s.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라 가족 간 관계를 살펴보면 연속방화범 집단에서 가족 간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경우가 전체 35명 가운데 16명(45.7%)이었고 원만한 편이 11명(31.4%), 8명(22.9%)이 보통이었다. 연쇄방화범 집단에서도 가족 간 관

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경우가 전체 60명 가운데 33명(55.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비율은 연속방화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였다.

표 3-3-30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성장 시 가족 간 관계

(단위: 명,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가족 간 관계	원만한편	11	31.4	21	35.0	32	33.7
	보통	8	22.9	6	10.0	14	14.7
	원만하지 않음	16	45.7	33	55.0	49	51.6
전체		35	100.0	60	100.0	95	100.0

(df=2) $\chi^2 = 2.933$ n.s.

다. 성장 시 학대 경험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성장 시 가정 내 학대경험이 있었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148명 가운데 14명(전체의 9.5%)이 학대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연쇄성 방화범보다(3.4%)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로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단일 방화범에 비해 성장 시 가정 내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았다. 한편, 어릴 적 학대경험이 있는 연쇄성 방화범(n=14)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우가 10명이었고 어머니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있는 경우는 3명, 고모부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경우는 1명이었다.⁴⁸⁾

48) 비연쇄성 방화범의 경우는 부모 모두로부터의 학대(1명), 아버지로부터 학대(6명), 고아원 선생님들로부터의 학대(1명), 계부로부터의 학대(1명)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31 성장 시 학대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대 경험	경험 없음	253	96.6	134	90.5	387	94.4
	경험 있음	9	3.4	14	9.5	23	5.6
전체		262	100.0	148	100.0	410	100.0

(df=1) $\chi^2 = 6.482^* *p < .05$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라 학대 경험을 보면 연속방화범은 연쇄성 방화범 67명 가운데 1명만이 학대 경험이 있고 연쇄방화범은 80명 가운데 13명이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쇄방화범의 경우 연속방화범에 비해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혹은 어머니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많았다. 향후 어릴 적 학대의 경험이 이후 연쇄 방화를 저지르는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보다 집중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표 3-3-32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성장 시 학대 경험여부

(단위: 명,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대 경험	경험 없음	66	98.5	67	83.8	133	90.5
	경험 있음	1	1.5	13	16.3	14	9.5
전체		67	100.0	80	100.0	147	100.0

(df=1) $\chi^2 = 9.216^{**} **p < .01$

어릴 적 겪은 학대 경험과 범죄와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그 영향력이 더 크며 그로 인해 또 다시 범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Comack, 1996; Ferraro, 1997; Johnson · Li · Websdale, 1998; Jutik & Winn, 1990; Moe, 2004 재인용; Chesney-Lind & Shelden, 2004c; 최수형, 2007:33에서 재인용). 가령, 남성을 살해한 여성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그 남성에 의해 계속적으로 학대와 폭력, 억압을 당하여 자기 방어적 대응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남성 살인이 가지는 특징과 분명히 다름을 보여준다(Browne, 1987; Brown & Williams, 1989; Gauthier & Bankston, 1997; Moe, 2004 재인용; Steffensmeier, 1996; 한인섭, 2005; 최수형, 2007:18에서 재인용). 이에 방화범의 성별에 따라서 학대경험 여부가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표 3-3-33 성별에 따른 성장 시 학대 경험

(단위: 명, %)

연쇄성 방화범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대 경험	경험 없음	126	91.3	8	80.0	134	90.5
	경험 있음	12	8.7	2	20.0	14	9.5
전체		138	100.0	10	100.0	148	100.0

(df=1) $\chi^2 = 1.391$ n.s.

비연쇄성 방화범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대 경험	경험 없음	231	96.7	22	95.7	253	96.6
	경험 있음	8	3.3	1	4.3	9	3.4
전체		238	100.0	23	100.0	262	100.0

(df=1) $\chi^2 = .630$ n.s.

그 결과,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남성이 성장 시 학대경험이 있었던 경우는 전체 138명 가운데 12명(8.7%)이었으나 여성은 10명 가운데 2명(20%)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연쇄성 방화범에서 남성은 238명 가운데 8명(3.3%)이, 여성은 23명 가운데 1명(4.3%)이 학대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여성 방화범의 수가 남성 방화범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는 것이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향후 방화범의 성별에 따른 어릴 적 경험과 범행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는 충분해 보인다.

라. 성장 시 가출 경험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어릴 적 가출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면, 가출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148건 가운데 14명으로 9.5%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가출 경험이 있는 경우(n=9) 가운데 최초 가출 연령을 살펴보면, 6살(1명), 10살(2명), 15살(1명), 16살(1명), 18살(3명), 20살(1명)이었다.⁴⁹⁾ 비연쇄성 방화범의 경우에 가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262명 가운데 14명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하여 연쇄성 방화범에 비해 어릴 적 가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05수준에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3-3-34 성장 시 가출 경험

(단위: 명,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가출 경험	경험 없음	248	94.7	134	90.5	382	93.2
	경험 있음	14	5.3	14	9.5	28	6.8
전체		262	100.0	148	100.0	410	100.0

(df=1) $\chi^2 = 2.518$ n.s.

한편,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라 살펴본 결과 연속방화범에 비해 연쇄방화범 집단에서 어릴 적 가출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 80명 가운데 12명으로 전체의 15.0%를 차지하여 연속방화범(3.0%)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df=1, $\chi^2 = 9.216^*$). 즉, 연쇄방화범이 연속방화범에 비해 어릴 적 가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이 또한 앞서 살펴본 성장 시 학대경험과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라 그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화범의 성별에 따라 성장 시 가출경험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49) 가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4건으로 나타났지만 사건기록 상 최초 가출 연령을 알 수 없는 경우가 5건이 포함되어 최초 가출 연령을 알 수 있는 경우는 9건이다.

표 3-3-35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가출 경험

(단위: 명,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가출경험	경험 없음	65	97.0	68	85.0	133	90.5
	경험 있음	2	3.0	12	15.0	14	9.5
전체		67	100.0	80	100.0	147	100.0

(df=1) $\chi^2 = 9.216^{**}$ $^{**}p < .01$

<표 3-3-36>에서 나타나듯이 성별에 따라 가출 경험의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남성 방화범보다는 여성 방화범이 가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향후 방화범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논의가 진행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표 3-3-36 성별에 따른 성장 시 가출 경험

(단위: 명, %)

연쇄성 방화범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가출 경험	경험 없음	126	91.3	8	80.0	134	90.5
	경험 있음	12	8.7	2	20.0	14	9.5
전체		138	100.0	10	100.0	148	100.0

(df=1) $\chi^2 = .560$ n.s..

비연쇄성 방화범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가출 경험	경험 없음	227	95.0	21	91.3	248	94.7
	경험 있음	12	5.0	2	8.7	14	5.3
전체		239	100.0	23	100.0	262	100.0

(df=1) $\chi^2 = 1.391$ n.s.

4. 연쇄성 방화범의 범죄 경력

연쇄성 방화범의 전과 유무를 살펴본 결과,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가 전체 148명 가운데 58명(39.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과 4범 이상이 53명으로 35.8%, 전과 2범 내지 3범이 19명으로 12.8%, 전과 1범이 18명으로 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연쇄성 방화범 집단에서는 전과 4범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37.4%(98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31.7%, 83명), 전과 2범 내지 3범(19.1%, 50명), 전과 1범(11.8%, 31명)의 순이었다. 즉,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비연쇄성 방화범에 비해 초범이 범행을 지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2011 범죄통계」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강력범죄에서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지만 절반 이상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과 1범의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전과가 있는 연쇄성 방화범 가운데에서는 전과 4범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37 범죄 경력

(단위: 명,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죄 경력	초범	83	31.7	58	39.2	141	34.4
	전과 1범	31	11.8	18	12.2	49	12.0
	전과 2,3범	50	19.1	19	12.8	69	16.8
	전과 4범 이상	98	37.4	53	35.8	151	36.8
전체		262	100.0	148	100.0	410	100.0

(df=3) $\chi^2 = 3.817$ n.s.

한편, 성별에 따른 범죄경력을 살펴보면 여성이 비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초범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과 1범(17.4%), 전과 2범내지 3범(17.4%), 전과 4범 이상(13.0%)로 나타났다. 남성이 비연쇄성 방화범의 경우에는 전과 4범의 비율이 전체의 39.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초범(29.7%), 전과 2범 내지 3범(19.2%), 전과 1범(11.3%)의 순으로 나타

나 여성의 범죄 경력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df=3, \chi^2=8.040^*$). 즉, 일회성 방화범죄를 저지르는 남성의 경우는 이미 동일한 유형의 혹은 다른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있는 사람이 많은데 반해 일회성 방화범죄를 저지르는 여성의 경우는 초범인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에도 비슷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즉, 연쇄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남성의 경우에는 전과 4범 이상이 전체의 37.7%, 초범이 37.0%, 전과 2범과 3범이 13.8%, 전과 1범이 11.6%의 순이었고 여성은 초범이 70.0%, 전과 1범이 20.0%, 전과 4범 이상이 10.0%로 연쇄성 방화범 가운데 여성은 과거 범죄를 전혀 저지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표 3-3-38 성별에 따른 범죄 경력

(단위: 명 %)

연쇄성 방화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죄 경력	초범	51	37.0	7	70.0	58	39.2
	전과 1범	16	11.6	2	20.0	18	12.2
	전과 2,3범	19	13.8	-	-	19	12.8
	전과 4범 이상	52	37.7	1	10.0	53	35.8
전체		138	100.0	10	100.0	148	100.0

($df=3$) $\chi^2=6.512$ n.s.

비연쇄성 방화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죄 경력	초범	71	29.7	12	52.2	83	31.7
	전과 1범	27	11.3	4	17.4	31	11.8
	전과 2,3범	46	19.2	4	17.4	50	19.1
	전과 4범 이상	95	39.7	3	13.0	98	37.4
전체		239	100.0	23	100.0	262	100.0

($df=3$) $\chi^2=8.040^*$ $p<.05$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라 범죄경력을 보면 연속범죄는 전과 4범 이상인 경우가 전체 67명 가운데 26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전과가 없는 경우가 21명(31.3%), 전과 1범(16.4%), 전과 2범 내지 3범(13.4%)로 나타났다. 연쇄범죄는 전과가 없는

경우가 전체 80명 가운데 37명으로 전체의 46.3%였고 그 다음으로 전과 4범 이상(32.5%), 전과 2범 내지 3범(12.5%), 전과1범(8.8%)이었다. 즉, 연쇄방화범의 경우 연속방화범에 비해 초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표 3-3-39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범죄 경력

(단위: 명,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죄 경력	초범	21	31.3	37	46.3	58	39.5
	전과 1범	11	16.4	7	8.8	18	12.2
	전과 2,3범	9	13.4	10	12.5	19	12.9
	전과 4범 이상	26	38.8	26	32.5	52	35.4
전체		67	100.0	80	100.0	147	100.0

(df=3) $\chi^2 = 4.239$ n.s.

연쇄성 방화범의 실행 전과 유무를 살펴보면 전체 148명 가운데 실행전과가 없는 경우가 101명(68.2%)으로 가장 많았고 실행 1범이 21명(14.2%), 실행 2, 3범이 15명(10.1%), 실행 4범이상 11명(7.4%)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비연쇄성 방화범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비연쇄성 방화범 집단에서도 실행전과가 없는 경우가 전체의 71.4%, 실행 4범 이상이 11.1%, 실행 1범이 10.7%, 실행 2범 내지 3범이 6.9%였다. 다만, 실행 전과가 있는 경우 연쇄성 방화범에서는 실행 1범의 비율이 높은 반면 비연쇄성 방화범에서는 실행 4범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3-3-40 실행 전과 유무 및 정도

(단위: 명,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실행 전과	실행전과없음	187	71.4	101	68.2	288	70.2
	실행1범	28	10.7	21	14.2	49	12.0
	실행2,3범	18	6.9	15	10.1	33	8.0
	실행4범 이상	29	11.1	11	7.4	40	9.8
전체		262	100.0	148	100.0	410	100.0

(df=3) $\chi^2 = 3.637$ n.s.

한편, 연쇄성 방화범의 첫 실행연령을 보면 47명 가운데 20대가 25명(53.2%), 30대가 12명(25.5%), 10대가 6명(12.8%), 40대가 4명(8.5%)이었고, 비연쇄성 방화범의 첫 실행 연령을 보아도 20대가 32명으로 전체의 4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23.3%), 10대(19.2%), 40대(9.6%), 50대(4.1%)의 순이었다. 즉,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비연쇄성 방화범에 비해 20대 이하의 젊은 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표 3-3-41 첫 실행 연령

(단위: 명,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첫 실행 연령	10대	14	19.2	6	12.8	20	16.7
	20대	32	43.8	25	53.2	57	47.5
	30대	17	23.3	12	25.5	29	24.2
	40대	7	9.6	4	8.5	11	9.2
	50대	3	4.1	-	-	3	2.5
전체		73	100.0	47	100.0	120	100.0

(df=4) $\chi^2 = 3.260$ n.s.

공정식과 김경하(2008) 연구에서는 방화범죄자 가운데 35% 이상이 동종범죄로 재범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습적 방화범죄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고 이렇게 상습성 높은 방화범죄자는 연쇄방화를 할 위험성도 높다(김경옥·공은경, 2011:238). 이에 본 연구에서도 동종 전과유무와 그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쇄성 방화범과 비연쇄성 방화범의 동종전과 유무와 정도에 있어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비연쇄성 방화범에 비해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는 하다. 즉,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148명 가운데 130명(87.8%)이 동종전과가 없었고 그 다음으로 동종전과 1범(7.4%), 동종전과 4범 이상(2.7%), 동종전과 2범 내지 3범(2.0%)의 순으로 동종전과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의 12.2%이고 비연쇄성 방화범 집단에서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가 91.6%로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는 8.4%에 불과했다.

표 3-3-42 동종 전과 유무 및 정도

(단위: 명,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동종 전과	동종전과없음	240	91.6	130	87.8	370	90.2
	동종1범	16	6.1	11	7.4	27	6.6
	동종2,3범	5	1.9	3	2.0	8	2.0
	동종4범이상	1	0.4	4	2.7	5	1.2
전체		262	100.0	148	100.0	410	100.0

(df=3) $\chi^2 = 4.586$ n.s.

한편, 연쇄성 방화범의 이중 전과 여부를 보면 이중전과가 없는 경우가 전체의 4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중전과 4범이 상이 32.4%, 이중전과 2,3범이 14.2%, 이중전과 1범이 11.5%의 순이었다. 비연쇄성 방화범의 경우에는 이중전과 4범이상인 35.9%, 이중전과가 없음이 33.2%, 이중전과 2범 내지 3범이 18.7%, 이중전과 1범이 12.2%였다. 즉, 연쇄성 여부에 따라 이중전과 유무와 그 정도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연쇄성 방화에서 과거 다른 유형의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던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동종전과 유무와 그 정도에서 나타난 결과와는 반대로 이중 전과를 가진 사람은 연쇄적으로 불을 지르기 보다는 일회성 방화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표 3-3-43 이중 전과 유무 및 정도

(단위: 명,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이중 전과 유무	이중전과없음	87	33.2	62	41.9	149	36.3
	이중1범	32	12.2	17	11.5	49	12.0
	이중2,3범	49	18.7	21	14.2	70	17.1
	이중4범이상	94	35.9	48	32.4	142	34.6
전체		262	100.0	148	100.0	410	100.0

(df=3) $\chi^2 = 3.458$ n.s.

연쇄성 방화범의 체포 경험을 살펴보면 체포 경험이 4회 이상인 경우가 전체 148명 가운데 64명으로 43.2%로 가장 많았고 체포경험이 없는 경우는 43명으로 30%가 채 되지 않았으며 체포경험이 2회 내지 3회인 경우는 19.6%, 체포 경험이 1회인 경우는 8.1%였다. 또한 비연쇄성 방화범의 경우에도 체포경험이 4회 이상이 전체의 44.7%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체포경험 없음(26.0%), 체포경험 2회 내지 3회(18.3%), 체포경험 1회(11.1%)였다. 즉, 방화범의 경우 이전의 이미 다양한 불법행위로 인해 체포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3-3-44 체포 경험

(단위: 명,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체포 경험 정도	없음	68	26.0	43	29.1	111	27.1
	1회	29	11.1	12	8.1	41	10.0
	2,3회 이상	48	18.3	29	19.6	77	18.8
	4회 이상	117	44.7	64	43.2	181	44.1
전체		262	100.0	148	100.0	410	100.0

(df=3) $\chi^2 = 1.289$ n.s.

한편, 연쇄성 방화범의 첫 체포연령을 보면 다음의 <표 3-3-45>와 같다. 즉, 20대가 전체 103명 가운데 42명으로 전체의 4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대 이하가 34.0%, 30대가 17.5%, 40대가 5.8%, 50대가 1.9%의 순으로 20대 이하가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젊었을 때 체포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연쇄성 방화범의 경우에도 연쇄성 방화범과 마찬가지로 20대 이하가 전체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3-3-45 첫 체포 연령

(단위: 명,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첫 체포 연령	10대	54	28.1	35	34.0	89	30.2
	20대	85	44.3	42	40.8	127	43.1
	30대	37	19.3	18	17.5	55	18.6
	40대	12	6.3	6	5.8	18	6.1
	50대	4	2.1	2	1.9	6	2.0
전체		192	100.0	103	100.0	295	100.0

(df=4) $\chi^2 = 1.094$ n.s.

수감 경험유무 및 정도를 보면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교도소 수감 경험 없음이 69.6%(103명), 수감경험 한번이 12.8%(19명), 수감경험 2회 내지 3회가 10.8%(16명), 수감경험 4회 이상이 6.8%(10명)였다. 비연쇄성 방화범의 경우는 수감경험 없음이 전체 262명 가운데 197명으로 전체의 75.2%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수감경험 1회(9.9%), 수감경험 4회 이상(9.2%), 수감경험 2회 내지 3회(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비연쇄성 방화범에 비해 수감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 서 살펴본 실험 전과자의 비율과 동종 전과자의 비율에 있어서 연쇄성 방화범이 비연쇄성 방화범에 비해 높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표 3-3-40, 표 3-3-42, 표 3-3-46 참고).

표 3-3-46 수감 경험 유무 및 정도

(단위: 명,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수감 경험 정도	없음	197	75.2	103	69.6	300	73.2
	1회	26	9.9	19	12.8	45	11.0
	2,3회 이상	15	5.7	16	10.8	31	7.6
	4회 이상	24	9.2	10	6.8	34	8.3
전체		262	100.0	148	100.0	410	100.0

(df=3) $\chi^2 = 5.031$ n.s.

제4절 연쇄성 방화사건의 특성

본 절에서는 연쇄성 방화사건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연쇄성 방화범 148명이 저지른 사건 716건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⁵⁰⁾ 본 절에서는 연쇄성 방화사건이 비연쇄성 방화사건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와 함께 연쇄성 방화유형별로 그 특징의 차이는 없는지 알아볼 것이다.

1. 범죄 처리 특성

가. 구체적 죄명

연쇄성 방화사건의 구체적 죄명을 살펴보면, 전체 716건 가운데 일반 물건에의 방화가 291건으로 전체의 40.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현주 건조물 등에의 방화(20.1%), 방화 미수(18.0%), 일반 건조물 등에의 방화(14.8%)등의 순이었다. 비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에는 현주 건조물 등에의 방화가 전체 262건 가운데 131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물건에의 방화(22.9%), 방화 미수(13.7%), 일반 건조물 등에의 방화(7.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⁵¹⁾ 이처럼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해당 죄명이 일반 물건에의 방화가 가장 많았고 비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에는 현주 건조물 등에의 방화가 가장 많았다. 즉, 비연쇄성 방화의 경우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기차, 자동차 등 포함)에 불을 지른 경우가 많았다.

50) 다만, 범인검거 경위, 범인 검거까지의 기간, 구속여부, 검찰처리 결과, 최종판결 심급, 구형량, 항소 여부 및 항소결과, 변호사 유형 등의 범죄 처리 특성 관련 분석에 있어서는 연쇄성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된 것으로 148건이 전체가 된다.

51) 구체적 죄명의 상세분류를 보면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119건(16.6%), 현존건조물등에의 방화 18건(2.5%),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15건(2.1%),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106건(14.8%), 일반물체에의 방화 291(40.6%), 현주건조물방화예비 3건(0.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45건(6.3%), 현주건조물방화치사 3건(0.4%), 현주건조물방화치상 4건(0.6%), 현존건조물방화예비 5건(0.7%), 현존건조물방화미수 35건(4.9%), 공용건조물방화미수 15(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건(2.8%), 일반건조물방화미수 34건(4.7%), 일반건조물방화예비 3건(0.4%) 있었다. 한편, 비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98건(37.4%), 현존건조물등에의 방화 16건(6.1%),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9건(3.4%),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20건(7.6%), 일반물건에의 방화 60(22.9%), 현주건조물방화예비 4건(1.5%), 현주건조물방화미수 13건(5.0%), 현주건조물방화치사 5건(1.9%), 현주건조물방화치상 6건(2.3%), 현존건조물방화미수 5건(1.9%), 현존건조물방화치상 6(2.3%), 공용건조물방화미수 9(3.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건(0.8%), 일반건조물방화미수 9건(3.4%) 있었다.

표 3-4-1 구체적 죄명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구체적 죄명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131	50.0	144	20.1	275	28.1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9	3.4	15	2.1	24	2.5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20	7.6	106	14.8	126	12.9
	일반물건에의 방화	60	22.9	291	40.6	351	35.9
죄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0.8	20	2.8	22	2.2
	미수	36	13.7	129	18.0	165	16.9
	예비	4	1.5	11	1.5	15	1.5
전체	262	100.0	716	100.0	978	100.0	

(df=6) $\chi^2 = 92.412^{***}$ $^{***}p < .001$

연쇄성 방화 유형별로 죄명을 살펴보면,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즉, 연속방화의 경우 전체 354건 가운데 145건이 일반 물건에의 방화(41.0%)이고 73건이 현주 건조물 등에의 방화(20.6%), 63건이 미수(17.8%), 54건이 일반 건조물 등에의 방화(15.3%) 등이다. 연쇄방화의 경우에도 일반 물건에의 방화가 전체의 45.0%(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현주 건조물 등에의 방화(19.7%), 일반 건조물 등에의 방화(15.6%), 미수(14.7%) 등의 순이었다. 죄명에 따른 연쇄성 방화의 특성 보다는 본 절에서 이후 살펴보는 범행 내용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3-4-2 연쇄성 방화 유형별 구체적 죄명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구체적 죄명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73	20.6	43	19.7	116	20.3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8	2.3	2	0.9	10	1.7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54	15.3	34	15.6	88	15.4
	일반물건에의 방화	145	41.0	98	45.0	243	42.5
죄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2.8	4	1.8	14	2.4
	미수	63	17.8	32	14.7	95	16.6
	예비	1	0.3	5	2.3	6	1.0
전체	354	100.0	218	100.0	572	100.0	

(df=6) $\chi^2 = 8.493$ n.s.

나. 경합 범죄 여부 및 유형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합 범죄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716건 가운데 91.3%가 경합범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범죄 경합인 경우는 43건(6.0%), 동종 범죄 경합인 경우는 19건(2.7%)이었다. 한편,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 경합범이 아닌 경우는 전체의 83.1%였고 이중범죄경합은 13.4%, 동종범죄경합은 3.1%, 이중과 동종범죄 경합은 1.5%를 차지하였고 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경합범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df=3, $\chi^2=25.905^{***}$).⁵²⁾ 즉,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불을 지를 때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르는 비율이 비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적다는 것이다.

표 3-4-3 경합 범죄 여부 및 유형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경합 범죄 여부	경합범아님	215	82.1	654	91.3	869	88.9
	동종범죄경합(방화)	8	3.1	19	2.7	27	2.8
	이중범죄경합(방화외)	35	13.4	43	6.0	78	8.0
	이중+동종범죄경합	4	1.5	-	-	4	.4
전체		262	100.0	716	100.0	978	100.0

(df=3) $\chi^2=25.905^{***}$ ***p<.001

한편, 연쇄성 방화유형별로 경합 범죄 여부를 살펴본 결과, 연속범죄사건에서 경합범이 아닌 경우가 전체의 92.4%로 절대 다수였으며 이중 범죄 경합이 4.2% 동종 범죄 경합이 3.4%였다. 연쇄범죄사건에서도 역시 ‘경합범 아님’이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이중 범죄 경합이 7.8%, 동종 범죄 경합이 1.4%로 연속범죄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2)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이중범죄경합인 경우 절도가 18건, 단순주거침입이 11건, 사기가 6건, 손괴가 3건, 공무집행방해가 3건, 폭행상해가 2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 이중범죄경합은 살인 1건, 강도 1건, 절도 14건, 사기 1건, 폭행상해 7건, 단순주거침입 1건, 손괴 7건, 병역법위반 2건, 공무집행방해 1건 이다.

표 3-4-4 연쇄성 방화 유형별 경합 범죄 여부 및 유형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경합 범죄 여부	경합범이님	327	92.4	198	90.8	525	91.8
	동종범죄경합(방화)	12	3.4	3	1.4	15	2.6
	이종범죄경합(방화외)	15	4.2	17	7.8	32	5.6
전체		354	100	218	100	572	100

(df=2) $\chi^2 = 5.179$ n.s.

다. 범인 검거 경위

범인 검거 경위는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실제, 살인(기수)의 경우는 ‘타인신고’가 가장 많고 강도나 폭력범죄(상해나 폭행 등)는 ‘피해자 신고’가 가장 많고 사기나 횡령과 같은 지능범죄는 ‘고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경찰청·한국형 사정책연구원, 2012). 즉, 연쇄성 방화사건의 범인 검거 경위를 통해 연쇄성 방화사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연쇄성 방화사건의 범인 검거 경위를 보면, 경찰인지(탐문정보)가 4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현행범(21.6%), 타인 신고(16.9%), 피해자 신고(14.9%)등의 순이었다. 비연쇄성 방화사건의 범인 검거 경위는 현행범이 전체의 256건 가운데 80건으로 전체의 31.3%를 차지하였고 경찰인지(탐문정보)가 28.1%, 타인신고가 16.8%, 피해자신고가 13.3%, 자수가 9.0% 등이었다. 즉, 비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는 현행범으로 검거되는 비율이 높았지만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는 경찰이 해당 범행지역 주변으로 탐문수사를 하거나 용의자 관련 정보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f=6, $\chi^2 = 15.301^*$). 그리고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범인이 자수하는 경우가 비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적었다. 다시 말해서, 방화를 한번 저지른 사람이 검거되는 경위와 여러 번의 방화를 저지른 사람이 검거되는 경위는 차이가 있었다.

표 3-4-5 범인 검거 경위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인 검거 경위	자수	23	9.0	5	3.4	28	6.9
	현행범	80	31.3	32	21.6	112	27.7
	피해자신고	34	13.3	22	14.9	56	13.9
	타인신고	43	16.8	25	16.9	68	16.8
	고소/고발	3	1.2	-	-	3	0.7
	경찰인지(탐문정보)	72	28.1	63	42.6	135	33.4
	불심검문	1	0.4	1	0.7	2	0.5
전체		256	100.0	148	100.0	404	100.0

* 미상(비연쇄성 방화: 6건) 제외

(df=6) $\chi^2 = 15.301^* * p < .05$

한편, 연쇄성 방화사건을 저지른 사람의 성별에 따라 범인의 검거 경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 결과 여성이 연쇄성 방화를 저지른 전체 10건 가운데 4건이 피해자 신고(40.0%)였고 자수와 경찰인지 및 탐문정보가 각 2건씩(20.0%), 그리고 현행범과 타인신고가 각 1건씩이었다. 그리고 남성이 연쇄성 방화를 저지른 138건 가운데 경찰인지 및 탐문정보를 통한 검거가 61건으로 전체의 4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현행범(22.5%), 타인신고(17.4%), 피해자 신고(13.0%) 등의 순이었다. 즉, 여성이 연쇄성 방화사건을 저지른 경우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여 검거된 비율이 남성이 연쇄성 방화사건을 저지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df=5, $\chi^2 = 15.656^{***}$). 이는 여성과 남성이 저지르는 사건 내용의 차이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후 연쇄성 방화사건의 범행 내용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비연쇄성 방화사건을 저지른 남성의 경우, 검거된 경위를 살펴보면, 현행범이 31.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찰인지 및 탐문정보(26.9%), 타인신고(17.5%), 피해자신고(13.7%) 등의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경찰인지 및 탐문정보가 전체의 40.9%로 가장 높았고 현행범 31.8%, 자수와 피해자신고, 타인신고가 각 9.1%였다. 즉,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 범인의 성별에 따라 검거 경위가 다른지 살펴본 결과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여성이 일회성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 경찰이 인지하거나 탐문정보를 통해 검거되는 비율이 남성이 일회성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3-4-6 성별에 따른 범인 검거 경위

(단위: 건 %)

연쇄성 방화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인 검거 경위	자수	3	2.2	2	20.0	5	3.4
	현행범	31	22.5	1	10.0	32	21.6
	피해자신고	18	13.0	4	40.0	22	14.9
	타인신고	24	17.4	1	10.0	25	16.9
	경찰인지(탐문정보)	61	44.2	2	20.0	63	42.6
	불심검문	1	0.7	-	-	1	0.7
전체		138	100.0	10	100.0	148	100.0

(df=5) $\chi^2 = 15.656^{**}$ $^{***}p < .01$

비연쇄성 방화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인 검거 경위	자수	21	9.0	2	9.1	23	9.0
	현행범	73	31.2	7	31.8	80	31.3
	피해자신고	32	13.7	2	9.1	34	13.3
	타인신고	41	17.5	2	9.1	43	16.8
	고소/고발	3	1.3	-	-	3	1.2
	경찰인지(탐문정보)	63	26.9	9	40.9	72	28.1
	불심검문	1	0.4	-	-	1	0.4
전체		234	100.0	22	100.0	256	100.0

(df=6) $\chi^2 = 2.947$ n.s.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범인 검거 경위를 보면 연속방화의 경우 경찰인지 및 탐문정보가 전체 67건 가운데 25건으로 37.3%이고 타인신고 23.9%, 현행범 19.4%, 피해자신고 13.4%등으로 나타났다. 연쇄방화의 경우는 전체 80건 가운데 38건이 경찰인지 및 탐문정보(47.5%), 현행범(22.5%), 피해자신고(16.3%), 타인신고(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연쇄방화의 경우 경찰인지 및 탐문정보를 통해 검거되는 비율이 연속방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3-4-7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범인 검거 경위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인 검거 경위	자수	3	4.5	2	2.5	5	3.4
	현행범	13	19.4	18	22.5	31	21.1
	피해자신고	9	13.4	13	16.3	22	15.0
	타인신고	16	23.9	9	11.3	25	17.0
	경찰인자(탐문정보)	25	37.3	38	47.5	63	42.9
	불심검문	1	1.5	-	-	1	0.7
전체		67	100.0	80	100.0	147	100.0

(df=5) $\chi^2 = 6.276$ n.s.

라. 검거까지의 기간

연쇄성 방화범의 검거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범행 후 24시간 이내가 전체의 31.5%, 3일 이내(18.5%), 1개월 이내(14.4%), 3개월 이내(11.0%)등의 순이었다. 비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는 범행 후 24시간 이내가 전체의 72.8%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3일 이내(6.6%), 1개월 이내(6.2%), 10일 이내(5.8%), 3개월 이내(4.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⁵³⁾ 즉,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범인의 검거까지 기간은 첫 범행 발생 시점부터 검거까지의 기간으로 실제 사건발생의 시간적 간격이 1년 이상인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연쇄성 방화 사건의 경우 검거까지의 기간이 비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길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향은 연쇄성 방화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다. 즉, 연속방화의 경우는 1일 이내 여러 번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이고 연쇄방화는 1일 이상의 냉각기를 두고 여러 번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첫 범행을 기준으로 범인 검거까지의 기간을 살펴 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를 통해 연쇄성 방화로 인한 두려움 지속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즉, 연쇄성 방화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과 위기감은 범인이 검거되어야만 해소되는 것으로 검거까지의 기간 동안 혼란스러운 사회적 분위기는 지

53) 다른 유형의 강력범죄의 경우도 사건 발생 1일 이내 범인이 검거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경찰청·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256)

속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방화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과 긴장이 한 달 이상 지속된 경우는 연쇄성 방화사건에서는 약 30%,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는 약 10%로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불안감이 더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표 3-4-8 검거까지의 기간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검 거 까 지 의 기 간	범행 후 24시간 이내	187	72.8	46	31.5	233	57.8
	3일 이내	17	6.6	27	18.5	44	10.9
	10일 이내	15	5.8	12	8.2	27	6.7
	1개월 이내	16	6.2	21	14.4	37	9.2
	3개월 이내	12	4.7	16	11.0	28	6.9
	6개월 이내	1	0.4	12	8.2	13	3.2
	1년 이내	2	0.8	9	6.2	11	2.7
	1년초과	7	2.7	3	2.1	10	2.5
전체		257	100.0	146	100.0	403	100.0

(df=7) $\chi^2 = 80.041^{***}$ ***p<.001

연쇄성 방화 유형별 범행 후 검거까지의 시간을 살펴보면 연속방화의 경우 ‘범행 후 24시간 이내’가 전체 66건 가운데 45건(68.2%)으로 가장 많았고 ‘3일 이내’는 15.2%,(10건) ‘1개월 이내’는 9.1%(6건), ‘10일 이내’는 4.5%(3건), ‘3개월 이내’(1건)와 ‘6개월 이내’(1건)가 각 1.5%의 순이었다. 연쇄방화의 경우에는 ‘3일 이내’가 21.5%(17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개월 이내’(15건)와 ‘3개월 이내’(15건)가 각 19.0%씩 차지하였으며 ‘6개월 이내’가 13.9%(11건), ‘1년 이내’(9건)가 11.4%, ‘1년 초과’(3건)가 3.8%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사회는 범죄가 발생하면서부터 그로 인한 불안감을 겪게 되고 이러한 상황은 범인이 검거되어야만 종료된다. 즉, 연쇄방화를 저지른 범인이 검거될 때 까지 연쇄 방화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과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해 보면, 일반 시민이 연쇄방화 발생으로 인하여 가지게 되는 두려움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전체의 6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연속방화에 비해 연쇄방화가 발생하였을 때 겪는 우리 사회의 불안감과 위기감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표 3-4-9 연쇄성 방화 유형별 범행 후 검거까지의 시간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행후 검거까지 의 시간	범행 후 24시간이내	45	68.2	-	-	45	31.0
	3일 이내	10	15.2	17	21.5	27	18.6
	10일 이내	3	4.5	9	11.4	12	8.3
	1개월 이내	6	9.1	15	19.0	21	14.5
	3개월 이내	1	1.5	15	19.0	16	11.0
	6개월 이내	1	1.5	11	13.9	12	8.3
	1년 이내	-	-	9	11.4	9	6.2
	1년 초과	-	-	3	3.8	3	2.1
전체	66	100.0	79	100.0	145	100.0	

(df=7) $\chi^2 = 85.779^{***}$ $^{***}p < .001$

마. 구속 여부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피의자 구속의 경우가 전체 148건 가운데 125건으로 전체의 84.5%로 불구속(23건, 15.5%)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단일 방화인 경우는 불구속과 구속의 비율이 각 5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df=1, $\chi^2 = 47.473^{***}$). 즉, 개별사건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3-4-10 구속 여부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구속 여부	불구속	127	50	23	15.5	150	37.3
	구속	127	50	125	84.5	252	62.7
전체		254	100.0	148	100.0	402	100.0

(df=1) $x^2=47.473^{***}$ $^{***}p<.001$

연쇄성 방화 유형별로 피의자 구속 여부를 보면, 연속방화사건의 경우 전체의 79.1%가 구속이고 20.9%가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연쇄방화사건의 경우에는 전체의 88.8%가 구속으로 연쇄방화사건의 경우에 피의자가 구속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3-4-11 연쇄성 방화 유형별 구속 여부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구속여부	불구속	14	20.9	9	11.3	23	15.6
	구속	53	79.1	71	88.8	124	84.4
전체		67	100.0	80	100.0	147	100.0

(df=1) $x^2=2.570$ n.s.

바. 검찰 처리 결과

연쇄성 방화사건의 검찰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148건 가운데 132건이 ‘구공판’으로 전체의 8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소유예’인 경우는 10건(6.8%), ‘협의를 없음’이 4건(3.7%), ‘공소권 없음’과 ‘타관 송치’가 각 1건(0.7%)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전체 262건 가운데 ‘구공판’이 166건으로 전체의 63.4%(166건)였고 그 다음으로 ‘기소유예’(58건, 22.1%), ‘협의 없음’(23건, 8.8%), ‘공소권 없음’(11건, 4.2%)등의 순이었다. 즉,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구공판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비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연쇄성 방화

사건의 경우에는 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기소유예와 협의없음, 공소권 없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df=6, $\chi^2=32.623^{***}$).

표 3-4-12 검찰 처리 결과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검찰 처리 결과	구공판	166	63.4	132	89.2	298	72.7
	기소중지	1	0.4	-	-	1	0.2
	기소유예	58	22.1	10	6.8	68	16.6
	협의없음	23	8.8	4	2.7	27	6.6
	공소권없음	11	4.2	1	0.7	12	2.9
	타관송치	2	0.8	1	0.7	3	0.7
	죄안됨	1	0.4	-	-	1	0.2
전체		262	100.0	148	100.0	410	100.0

(df=6) $\chi^2=32.623,^{***} p<.001$

즉, <표 3-4-12>에서 나타나듯이 방화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범행과정에서 이미 증거물이 타버리기 때문에 특히, 일회성으로 그친 방화의 경우에는 범행 입증에 있어서 어려움이 더 클 수 밖에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 기소 유예인 경우 가운데 가장 많은 경우가 나이 어린 청소년이 순간적인 호기심에 한번 불을 붙인 것으로 피의자가 나이가 어리다는 점과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주변의 별 다른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쇄성 방화 유형별 검찰 처리 결과를 보면 연속방화의 경우 '구공판'이 전체 67건 가운데 60건으로 89.6%, '기소유예'가 5건(7.5%), '협의없음'과 '공소권 없음'이 각 1건이었다. 연쇄방화의 경우도, '구공판'의 경우가 전체 80건 가운데 72건으로 90.0%를 차지하고 있고 '기소유예' 6.3%, '협의없음' 2.5%, '타관송치' 1.3%의 순으로 연속방화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3-4-13 연쇄성 방화 유형별 검찰 처리 결과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검찰 처리 결과	구공판	60	89.6	72	90.0	132	89.8
	기소유예	5	7.5	5	6.3	10	6.8
	혐의없음	1	1.5	2	2.5	3	2.0
	공소권없음	1	1.5	-	-	1	0.7
	타관송치	-	-	1	1.3	1	0.7
전체		67	100.0	80	100.0	147	100.0

(df=4) $x^2 = 2.293$ n.s.

사. 최종 판결 심급

연쇄성 여부에 따라 최종판결 심급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 결과, 연쇄성 사건의 경우 전체 132건 가운데 62건(47.0%)이 1심이었고 2심이 55건(41.7%), 3심이 15건(11.4%)이었다. 한편, 비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에는 1심이 전체의 66.3%, 2심이 15.3%, 3심이 8.4%로 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1심에서 최종판결이 내려지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f=2, $x^2 = 11.442^{**}$). 즉,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비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항소율이 높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표 3-4-14 최종 판결 심급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최종 판결	1심	110	66.3	62	47.0	172	57.7
	2심	42	15.3	55	41.7	97	32.6
	3심	14	8.4	15	11.4	29	9.7
전체		166	100.0	132	100.0	298	100.0

(df=2) $x^2 = 11.442^{**}$ $^{***}p < .01$

한편, 연쇄성 방화사건 유형별 최종 판결 심급을 보면, 연쇄방화사건에서 1심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2심이 30.6%, 3심이 15.3%였으며 연

속방화사건의 경우에는 2심이 5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심이 38.3%, 3심이 6.7%를 차지하였다. 즉, 1일 이내 벌어진 연쇄성 방화사건이 그렇지 않은 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2심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연속방화 사건의 높은 항소율을 보여주는 것이다(df=2, $\chi^2=8.576^*$).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속방화의 범행 관련 특성을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3-4-15 연쇄성 방화 유형별 최종 판결 심급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최종 판결 심급	1심	23	38.3	39	54.2	62	47.0
	2심	33	55.0	22	30.6	55	41.7
	3심	4	6.7	11	15.3	15	11.4
전체		60	100.0	72	100.0	132	100.0

(df=2) $\chi^2=8.576^*$ *p<.05

아. 구형량

연쇄성 방화사건의 구형량을 보면 유기징역이 전체 132건 가운데 119건으로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유기징역과 치료감호가 동시에 구형된 경우는 6건으로 4.5%, 집행유예가 3건으로 2.3%를 차지하였다.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는 유기징역의 비율이 전체의 81.3%, 집행유예 9.0%, 치료감호가 3.0%등이었다. 연쇄성 여부에 따라 구형량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유기징역이 구형된 경우(90.2%)와 치료감호가 구형된 경우(5.3%)⁵⁴⁾가 비연쇄성 방화사건(유기징역:81.3%, 치료감호:4.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집행유예의 비율(연쇄성 방화사건:2.3%, 비연쇄성 방화사건:9.0%)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연쇄성 방화사건 가운데 정신적 이상 등으로 인하여 치료감호가 함께 구형된 경우가 비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많기는 하지만 전체 132건 가운데 7건으로 검찰 수

54) 치료감호만 구형된 경우와 유기징역과 함께 구형된 경우를 합한 비율이다.

사 결과 실제 연쇄성 방화를 저지른 피의자의 정신적 문제를 인정한 경우는 상당히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3-4-16 구형량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구형량	사형	155)	0.6	-	-	1	0.3
	무기징역	2	1.2	1	0.8	3	1.0
	유기징역	135	81.3	119	90.2	254	85.2
	집행유예	15	9.0	3	2.3	18	6.0
	치료감호	5	3.0	1	0.8	6	2.0
	기타 ⁵⁶⁾	5	3.0	2	1.5	7	2.3
	유기징역+치료감호	3	1.8	6	4.5	9	3.0
전체	166	100.0	132	100.0	298	100.0	

(df=6) $\chi^2 = 11.565$ n.s.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유기징역인 경우 징역 1년부터 징역 15년까지의 형량으로 징역 3년이 전체 119건에서 40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징역 2년(20명, 16.8%), 징역 5년(19명, 16.0%), 징역 7년(12명, 10.1%), 징역 4년(9명, 7.6%) 등의 순이었다. 비연쇄성 방화의 경우에는 징역 6개월부터 징역 20년까지의 형량으로 전체 135건 가운데 44건(32.7%)이 징역 3년이었고 그 다음으로 징역 2년(29명, 21.5%), 징역 1년(17명, 12.7%), 징역 1년 6개월(12명, 8.9%)와 징역 5년(12명, 8.9%) 등의 순이었다. 물론, 징역 2년과 3년의 비율이 연쇄성 방화사건과 비연쇄성 방화사건 모두 많지만 비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2년 미만의 형량이 구형된 경우가 전체의 약 22%였고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2년 미만은 6.7%에 불과해 비연쇄성 방화사건의 구형량이 낮았다. 그리고 징역 7년 이상의 비율에서도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는 15.7%였지만 비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는 7.2%에 불과했

55)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 사형 1건의 경우는 살인과 함께 방화를 저지른 사건이다.

56) 비연쇄성의 기타로는 ‘유기징역과 벌금’, ‘집행유예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집행유예와 보호관찰과 수감명령’이 있었고 연쇄성의 기타로는 ‘유기징역과 벌금’이 있었다.

다. 즉, 2회 이상의 방화사건을 저지를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구형량이 높았다. 특히,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경합범이 아닌 경우가 90%이상으로 비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해당 비율이 높았던 점까지 고려해 본다면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비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구형량이 높음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결과이다(표 3-4-3, 표 3-4-17 참고).

표 3-4-17 유기징역의 형량

(단위: 건, %)

유기징역 형량	비연쇄성 방화		연쇄성 방화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징역 6개월	1	0.7	-	-
징역 1년	17	12.7	3	2.5
징역 1년 6개월	12	8.9	5	4.2
징역 2년	29	21.5	20	16.8
징역 2년 6개월	2	1.5	3	2.5
징역 3년	44	32.7	40	33.6
징역 3년 6개월	2	1.5	1	0.8
징역 4년	5	3.7	9	7.6
징역 4년 6개월	-	-	1	0.8
징역 5년	12	8.9	19	16.0
징역 6년	1	0.7	-	-
징역 7년	5	3.7	12	10.1
징역 8년	1	0.7	1	0.8
징역 9년	1	0.7	1	0.8
징역 10년	1	0.7	2	1.7
징역 15년	1	0.7	2	1.7
징역 20년	1	0.7	-	-
전체	135	100.0	119	100.0

성별에 따른 범죄율의 차이에 있어서 초기의 범죄학적 관점 가운데 실제 여성들이 범죄를 적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보호적이고 호의적인 문화 때문에 경찰에 의해 체포될 가능성도, 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낮아서라는 기사도 가설(chivalry hypothesis)이 있다(Siegel, 2008:63). 물론 이러한 시각은 이후 별다른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실제 여성과 남성 사이에 형량의 차이가 있는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에 성별에 따른 구형량을 보면 비연

쇄성 방화사건에서 피의자가 여성인 경우는 전체 13건 가운데 10건이 유기징역(76.9%)이었고 3건이 집행유예(23.1%)였으며 남성인 경우는 전체 123건 가운데 112건이 유기징역(81.7%), 집행유예 12건(7.8%) 등 이었다.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여성이 피의자인 경우는 전체 9건 가운데 유기징역 7건(77.8%), 집행유예 1건(11.1%), 유기징역+벌금 1건(11.1%)이고 남성인 경우는 유기징역 91.1%, ‘유기징역+치료감호’ 4.9%, 집행유예 1.6% 등으로 나타났다. 즉, 비연쇄성 방화사건과 연쇄성 방화사건 모두 성별에 따라 유기징역의 비율은 남성이 높고 집행유예의 비율은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3-4-18 성별에 따른 구형량

(단위: 건 %)

비연쇄성 방화사건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구 형 량	사형	1	0.7	-	-	1	0.6
	무기징역	2	1.3	-	-	2	1.2
	유기징역	125	81.7	10	76.9	135	81.3
	집행유예	12	7.8	3	23.1	15	9.0
	치료감호	5	3.3	-	-	5	3.0
	기타	5	3.3	-	-	5	3.0
	유기징역+치료감호	3	2.0	-	-	3	1.8
전체		153	100.0	13	100.0	166	100.0

(df=6) $\chi^2 = 4.470$ n.s.

연쇄성 방화사건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구 형 량	무기징역	1	0.8	-	-	1	0.8
	유기징역	112	91.1	7	77.8	119	90.2
	집행유예	2	1.6	1	11.1	3	2.3
	치료감호	1	0.8	-	-	1	.8
	기타	1	0.8	1	11.1	2	1.5
	유기징역+치료감호	6	4.9	-	-	6	4.5
전체		123	100.0	9	100.0	132	100.0

(df=5) $\chi^2 = 9.939$ n.s.

표 3-4-19 성별에 따른 유기징역의 형량

(단위: 건, %)

연쇄성 방화사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징역 1년	3	2.6	-	-
징역 1년 6개월	5	4.5	-	-
징역 2년	19	17.0	1	14.3
징역 2년 6개월	3	2.7	-	-
징역 3년	36	32.1	4	57.1
징역 3년 6개월	1	0.9	-	-
징역 4년	9	8.0	-	-
징역 4년 6개월	1	0.9	-	-
징역 5년	19	17.0	-	-
징역 7년	11	9.8	1	14.3
징역 8년	1	0.9	-	-
징역 9년	1	0.9	-	-
징역 10년	2	1.8	-	-
징역 15년	1	0.9	1	14.3
전체	112	100.0	7	100.0

비연쇄성 방화사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징역 6개월	-	-	1	10.0
징역 1년	17	13.6	-	-
징역 1년 6개월	11	8.8	1	10.0
징역 2년	27	21.6	2	20.0
징역 2년 6개월	2	1.6	-	-
징역 3년	41	32.8	3	30.0
징역 3년 6개월	2	1.6	-	-
징역 4년	4	3.2	1	10.0
징역 5년	10	8.0	2	20.0
징역 6년	1	0.8	-	-
징역 7년	5	4.0	-	-
징역 8년	1	0.8	-	-
징역 9년	1	0.8	-	-
징역 10년	1	0.8	-	-
징역 15년	1	0.8	-	-
징역 20년	1	0.8	-	-
전체	125	100.0	10	100.0

이러한 경향은 유기징역의 형량을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성별에 따른 유기징역의 형량을 보면 여성의 경우는 징역 2년에서부터 징역 15년까지, 남성은 징역 1년에서부터 징역 15년까지 구형되었다. 여성(n=7)은 징역 2년은 1명(14.3%), 징역 3년은 4명(57.1%), 징역 7년은 1명(14.3%), 징역 15년은 1명(14.3%)이었고 남성의 경우는 징역 3년이 전체 112건 가운데 36건(32.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징역 5년(19건, 17.0%), 징역 2년(19건, 17.0%), 징역 7년(11건, 9.8%), 징역 4년(9건, 8.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⁵⁷⁾ 즉, 중형이라 할 수 있는 징역 7년 이상인 비율이 여성은 28.6% 남성은 14.3%로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형이 구형되었다. 한편, 비연쇄성 방화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남성인 경우 징역 1년부터 징역 20년까지 구형되었고 징역 3년이 전체의 32.8%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인 경우는 징역 6개월부터 징역 5년까지 구형되었고 징역 3년의 비율(30.0%)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성별에 따른 형량의 차이는 초기 범죄학적 관점인 ‘기사도 가설’이 맞다기 보다는 여성과 남성이 저지른 범행의 질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후 범행 내용 관련 특성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한편, 연쇄성 방화유형에 따라 구형량을 살펴보면 연속방화사건의 경우 전체 60건 가운데 55건(91.7%)이 유기징역이었고 집행유예와 유기징역+치료감호가 각 2건으로 3.3%, 치료감호가 1건으로 1.7%였다. 연쇄방화사건의 경우에는 전체 72건 가운데 64건이 유기징역(88.9%), 4건(5.6%)이 유기징역과 함께 치료감호가 구형되었다. 즉, 연쇄방화사건과 연속방화사건 모두 유기징역의 비율이 가장 많다.

57) 연쇄성 방화사건 가운데 남성은 징역 1년이 3건, 징역 1년 6개월이 5건, 징역 2년이 19건, 징역 2년 6개월이 3건, 징역 3년이 36건, 징역 3년 6개월이 1건, 징역 4년이 9건, 징역 4년 6개월이 1건, 징역 5년이 19건, 징역 7년이 11건, 징역 8년이 1건, 징역 9년이 1건, 징역 10년이 2건, 징역 15년이 1건이었다. 여성은 징역 2년이 1건, 징역 3년이 4건, 징역 7년이 1건, 징역 15년이 1건이었다.

표 3-4-20 연쇄성 방화 유형별 구형량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구형량	무기징역	—	—	1	1.4	1	.8
	유기징역	55	91.7	64	88.9	119	90.2
	집행유예	2	3.3	1	1.4	3	2.3
	치료감호	1	1.7	—	—	1	.8
	기타	—	—	2	2.8	2	1.5
	유기징역+치료감호	2	3.3	4	5.6	6	4.5
전체		60	100.0	72	100.0	132	100.0

(df=5) $\chi^2 = 4.628$ n.s.

연속방화사건에서 유기징역인 경우 해당 형량은 징역 1년부터 징역 10년까지로 나타났고 징역 3년이 전체 55건 가운데 20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징역 2년(9건, 16.5%), 징역 5년(7건, 12.7%), 징역 7년(5건, 9.0%) 등이었다. 그리고 연쇄방화사건에서 유기징역인 경우 해당 형량은 징역 1년부터 징역 15년까지이며 징역 3년이 전체 64건 가운데 20건(31.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징역 5년이 12건(18.7%), 징역 2년은 11건(17.2%), 징역 7년은 7건(10.9%) 등이었다. 즉, 하루 동안 발생한 반복된 사건의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비율이 65.5%였고 일정 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사건의 경우에는 54.7%로 연쇄방화사건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21 연쇄성 방화유형에 따른 유기징역의 형량

(단위: 건, %)

유기징역 형량	연속방화		연쇄방화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징역 1년	2	3.6	1	1.6
징역 1년 6개월	3	5.4	2	3.1
징역 2년	9	16.5	11	17.2
징역 2년 6개월	2	3.6	1	1.6
징역 3년	20	36.5	20	31.2
징역 3년 6개월	-	-	1	1.6
징역 4년	4	7.3	5	7.8
징역 4년 6개월	1	1.8	-	-
징역 5년	7	12.7	12	18.7
징역 7년	5	9.0	7	10.9
징역 8년	1	1.8	-	-
징역 9년	-	-	1	1.6
징역 10년	1	1.8	1	1.6
징역 15년	-	-	2	3.1
전체	55	100.0	64	100.0

자. 항소 여부 및 항소 결과

1) 항소 여부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항소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132건에서 58건으로 전체의 43.9%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가 전체의 42.4%, 검사가 항소한 경우와 쌍방이 항소한 경우가 각 6.8%였다. 비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에는 항소하지 않음이 전체의 65.7%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피고인이 항소(25.9%), 쌍방이 항소(4.8%), 검사가 항소(3.6%)의 순이었다. 즉, 앞서 살펴본 최종 판결 심급 결과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표 3-4-14 참고) 연쇄성 방화사건이 비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항소한 비율이 높고, 특히 피고인만 항소한 비율이 더 높았다($df=3$, $\chi^2=14.247^{**}$). 이러한 피고인의 높은 항소율은 범행 내용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은 범행 내용 관련 특징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⁵⁸⁾

표 3-4-22 항소 여부(1심)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항소 여부 1심	항소하지 않음	109	65.7	58	43.9	167	56.0
	피고인인 항소	43	25.9	56	42.4	99	33.2
	검사가 항소	6	3.6	9	6.8	15	5.0
	쌍방이 항소	8	4.8	9	6.8	17	5.7
전체		166	100.0	132	100.0	298	100.0

(df=3) $\chi^2 = 14.247^{****} p < .01$

연쇄성 방화 유형별 1심의 항소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3-4-23>과 같다. 연속방화의 경우는 전체 60건 가운데 29건이 피고인이 항소한 것으로 전체의 4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항소하지 않은 비율이 35.0%(21건), 검사가 항소한 비율이 11.7%(7건), 쌍방이 항소한 비율은 5.0%(3건)였다. 연쇄방화의 경우는 전체 72건 가운데 37건이 항소하지 않았고(51.4%), 27건은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며(37.5%), 6건은 쌍방이 항소하였고(8.3%), 2건은 검사가 항소(2.8%)하였다. 즉, 연쇄방화의 경우 항소하지 않은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연속방화의 경우는 피고인이 항소한 비율이 50% 가까이 차지하였다.

표 3-4-23 연쇄성 방화 유형별 항소 여부(1심)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항소 여부 1심	항소하지 않음	21	35.0	37	51.4	58	43.9
	피고인인 항소	29	48.3	27	37.5	56	42.4
	검사가 항소	7	11.7	2	2.8	9	6.8
	쌍방이 항소	3	5.0	6	8.3	9	6.8
전체		60	100.0	72	100.0	132	100.0

(df=3) $\chi^2 = 7.232$ n.s.

58) 방화사건에 대한 재판에서의 항소율의 경우, 일반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재판에서의 항소율(66.9%)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율(쌍방 항소 포함)은 59.8%, 검사의 항소율(쌍방 항소한 경우 포함)은 19.6%이었다(법원행정처, 2011).

한편, 2심에 대한 항소 여부에 있어서는 연쇄성 방화사건과 비연쇄성 방화사건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연쇄성 방화사건에서도 항소하지 않은 비율인 전체 70건 가운데 53건으로 75.7%를 차지하고 있고 피고인이 항소한 비율은 17.9%, 검사가 항소한 비율은 5.4%, 쌍방이 항소한 비율은 3.8%였다.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도 항소하지 않은 비율이 전체 56건 가운데 41건으로 73.2%를 차지하였고 피고인이 항소한 비율은 21.4%, 검사가 항소하거나 쌍방이 항소한 비율은 각 1.4%였다.

표 3-4-24 항소 여부(2심)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항소 여부 2심	항소하지 않음	41	73.2	53	75.7	94	74.6
	피고인인 항소	10	17.9	15	21.4	25	19.8
	검사가 항소	3	5.4	1	1.4	4	3.2
	쌍방이 항소	2	3.8	1	1.4	3	2.4
전체		56	100.0	70	100.0	126	100.0

(df=3) $\chi^2 = 2.339$ n.s.

연쇄성 방화 유형별로 2심에 대한 항소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속방화의 경우는 항소하지 않은 비율이 전체의 86.5%, 피고인이 항소한 비율이 10.8%, 쌍방이 항소한 비율이 2.7%였고 연쇄방화의 경우에는 항소하지 않은 비율인 전체의 63.6%였고 그 다음이 피고인 항소(33.3%), 검사항소(3.0%)의 순이었다. 앞서 살펴본 1심에서의 항소 여부(표 3-4-23 참고)와는 달리 연쇄방화사건이 연속방화사건보다 2심에서 항소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표 3-4-25 연쇄성 방화 유형별 향소 여부(2심)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향소 여부 2심	향소하지 않음	32	86.5	21	63.6	53	75.7
	피고인이 향소	4	10.8	11	33.3	15	21.4
	검사가 향소	-	-	1	3.0	1	1.4
	쌍방이 향소	1	2.7	-	-	1	1.4
전체		37	100.0	33	100.0	70	100.0

(df=3) $\chi^2 = 7.345$ n.s.

2) 향소 결과

1심의 향소 결과를 살펴보면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향소가 받아들여 2심이 진행된 경우가 94.6%로 절대적이었고 이는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연쇄성 방화 유형별로 살펴보다라도 향소결과는 범행 사이의 생각기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연속방화에서 2심이 진행된 경우가 전체 39건에서 37건(94.9%)이었고 연쇄방화사건에서도 전체 35건 가운데 33건(94.3%)이 2심이 진행되었다.

표 3-4-26 향소결과(1심)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향소 결과	향소 기각	1	1.8	4	5.4	5	3.8
	2심 진행	56	98.2	70	94.6	126	96.2
전체		57	100.0	74	100.0	131	100.0

(df=1) $\chi^2 = 1.169$ n.s.

2심의 향소 결과도 1심의 향소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2심의 향소에 대해 기각한 비율은 11.8%, 3심이 진행 되는 비율은 88.2%였고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는 향소가 기각된 비율은 6.7%, 3심이 진행 된 비율은 93.3%로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향소가 기각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4-27 항소 결과(2심)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항소 결과 2심	항소기각	1	6.7	2	11.8	3	9.4
	3심진행	14	93.3	15	88.2	29	90.6
전체		15	100.0	17	100.0	32	100.0

(df=1) $\chi^2 = .244$ n.s

한편,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연속방화의 경우에는 항소가 기각된 비율이 20.0%, 3심이 진행된 비율이 80.0%로 나타났고, 연쇄방화의 경우에는 항소가 기각된 비율이 8.3%, 3심이 진행된 비율이 91.7%로 연속방화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기는 하지만 그 차이 역시 .05수준에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3-4-28 연쇄성 방화 유형별 항소 결과(2심)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항소결과 2심	항소기각	1	20.0	1	8.3	2	11.8
	3심진행	4	80.0	11	91.7	15	88.2
전체		5	100.0	12	100.0	17	100.0

(df=1) $\chi^2 = .463$ n.s.

차. 변호사 유무 및 종류

1심에서의 변호사 유무와 종류를 살펴보면 연쇄성 방화사건 132건 가운데 83.3%가 국선변호인으로 나타났고 16.7%가 사선변호인이었다. 이러한 비율은 비연쇄성

방화사건(국선변호인 91.6%, 사선변호인 7.8%))에 비해 국선변호인 비율이 낮고 사건변호인의 비율이 높다(df=1, $\chi^2=6.249^*$). 이러한 경향은 2심에서도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았고(연쇄성 방화에서 국선변호인 비율: 85.7%, 비연쇄성 방화에서 국선변호인 비율:87.5%), 3심에서는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의 비율이 85.7%로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이 차지하는 비율(80.0%)에 비해 높기는 했지만 그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3-4-29 변호사 유무 및 종류

(단위: 명,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심	국선 변호인	152	91.6	110	83.3	262	87.9
	사선 변호인	13	7.8	22	16.7	35	11.7
	없음	1	0.6	-	-	1	0.3
전체		166	100.0	132	100.0	198	100

(df=1) $\chi^2 = 6.249^* *p<.05$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2심	국선 변호인	49	87.5	60	85.7	109	86.5
	사선 변호인	7	12.5	10	14.3	17	13.5
	전체	56	100.0	70	100.0	126	100.0

(df=1) $\chi^2 = .085$ n.s.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3심	국선 변호인	12	80.0	12	85.7	24	82.8
	사선 변호인	3	20.0	2	14.3	5	17.2
	전체	15	100.0	14	100.0	29	100.0

(df=1) $\chi^2 = .168$ n.s.

2. 범행 내용

가. 범죄 발생 시간 및 범죄 발생 시간 간격

1) 사건 발생 시간

연쇄성 방화사건의 발생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714건 가운데 자정에서부터 새벽 3시 이전까지 전체의 33.1%가 발생하였고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이전까지가 25.4%, 저녁 9시부터 자정 이전까지가 21.0%등의 순으로 새벽에 발생하는 사건이 약 60% 가까이를 차지하였다. 한편, 비연쇄성 방화범죄의 경우 자정에서부터 새벽 3시 이전(23.1%)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그 다음이 저녁 6시부터 밤 9시 이전(14.6%), 밤 9시부터 자정 이전까지(14.6%)등의 순으로 나타나 연쇄성 방화사건이 비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새벽에 발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df=7, $\chi^2=81.865^{***}$).

표 3-4-30 범죄 발생 시간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죄 발생 시간대	00:00~02:59	60	23.1	236	33.1	296	30.4
	03:00~05:59	35	13.5	181	25.4	216	22.2
	06:00~08:59	17	6.5	16	2.2	33	3.4
	09:00~11:59	25	9.6	24	3.4	49	5.0
	12:00~14:59	24	9.2	22	3.1	46	4.7
	15:00~17:59	23	8.8	41	5.7	64	6.6
	18:00~20:59	38	14.6	44	6.2	82	8.4
	21:00~23:59	38	14.6	150	21.0	188	19.3
	256	100.0	714	100.0	974	100	

(df=7) $\chi^2=81.865^{***}$ ***p<0.001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죄 발생 시간대	00:00~02:59	129	36.4	69	31.7	198	34.6
	03:00~05:59	88	24.9	53	24.3	141	24.7
	06:00~08:59	5	1.4	5	2.3	10	1.7
	09:00~11:59	8	2.3	8	3.7	16	2.8
	12:00~14:59	9	2.5	8	3.7	17	3.0
	15:00~17:59	23	6.5	12	5.5	35	6.1
	18:00~20:59	17	4.8	15	6.9	32	5.6
	21:00~23:59	75	21.2	48	22.0	123	21.5
전체	354	100.0	218	100.0	572	100.0	

(df=7) $\chi^2 = 4.348$ n.s.

연쇄성 방화 유형별 사건 발생 시간을 보면 연속방화의 경우 자정부터 새벽 3시 이전이 전체 354건 가운데 129건으로 전체 36.4%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이전까지가 88건(24.9%), 밤 9시부터 자정 이전까지가 75건(21.2%),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이전까지가 23건(6.5%)등의 순이었다. 연쇄방화는 자정부터 새벽 3시 이전이 전체 218건 가운데 69건으로 31.7%,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이전까지가 53(24.3%), 밤 9시부터 자정까지가 48건(22.0%),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가 15건(6.9%)등의 순이었다. 즉, 하루 동안 발생하는 연속방화와 하루 이상의 냉각기를 두고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연쇄방화의 사건 발생 시간은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새벽 시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

2) 사건 발생 시간 간격

방화사건이 개별적으로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사건발생 시간 간격(일)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3-4-31>과 같다. 즉, 2회 이상의 사건이 1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인 연속방화는 전체 572건 가운데 354건으로 전체의 61.9%를 차지하였고 하루 이상의 냉각기를 두고 범행을 저지른 연쇄방화는 218건으로 전체의 38.1%를 차지하였다. 연쇄방화 가운데 사건 발생 시간 간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일 이내가 78건(13.6%), 10일 이내가 53건(9.3%), 1개월 이내가 48건(8.4%), 3개월 이내가 26건(4.5%), 3개월 초과⁵⁹⁾가 13건(2.3%)였다.

표 3-4-31 사건 발생 시간 간격(일)

(단위: 건 %)

발생시간간격(일)		빈도	비율
연속방화	1일 이내	354	61.9
	3일 이내	78	13.6
연쇄방화	10일 이내	53	9.3
	1개월 이내	48	8.4
	3개월 이내	26	4.5
	3개월 초과	13	2.3
전체		572	100.0

한편, 하루 동안 발생하는 연속방화의 경우 사건발생 시간 간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분 이내가 전체 354건 가운데 19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30분 이내(14.2%), 5시간 이내(12.7%), 1시간 이내(8.5%), 20시간 초과(4.2%) 등의 순이었다. 즉, 연속방화의 사건 발생 시간 간격에서 나타나듯이 멀지 않은 장소들에서 연달아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4-32 사건 발생 시간 간격(분) - 연속방화

(단위: 건, %)

연속방화 사건 발생시간간격	빈도	비율
10분 이내	196	55.4
30분 이내	50	14.2
1시간 이내	30	8.5
5시간 이내	45	12.7
10시간 이내	9	2.5
15시간 이내	4	1.1
20시간 이내	5	1.4
20시간 초과	15	4.2
합계	354	100.0

59) 3개월 초과한 경우 세부적으로 보면 116일(1건), 120일(2건), 122일(1건), 129일(1건), 132일(1건), 187일(1건), 196일(1건), 350일(1건), 450일(1건), 1,341일(1건)으로 나타났다. 연쇄방화범들은 몇주, 몇 달, 혹은 몇 해를 기다리며 다음 범행을 기다리기도 한다(홍성열, 2007:6)

나. 범행 대상

1) 실내/실외

연쇄성 방화사건의 범행대상이 실내인지 실외인지 살펴본 결과, 전체 사건 716건 가운데 362건(50.6%)이 실내에서 발생하였고, 나머지 354건이(49.4%) 실외에서 발생하였다. 한편, 비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에는 262건 가운데 195건(74.7%)이 실내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즉,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는 비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실외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df=1, \chi^2=44.571^{***}$).

표 3-4-33 범행 대상(실내/실외)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여부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행 대상	실외	67	25.6	354	49.4	421	43.0
	실내	195	74.7	362	50.6	557	57.0
전체		262	100.0	716	100.0	978	100.0

 $(df=1)\chi^2=44.571^{***} \quad ***p<.001$

한편, 성별에 따라 범행 대상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비연쇄성 방화에서는 남성이 실내에 있는 범행 대상에 불을 지르는 비율이 더 높고 연쇄성 방화에서는 여성이 더 높았다. 즉,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피의자가 여성인 경우는 실내에 있는 범행 대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전체의 44건 가운데 28건으로 63.6%이고 남성은 671건 가운데 334건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 피의자가 여성인 경우는 실내에 있는 범행 대상에 불을 지른 비율은 66.7%(16건), 남성은 75.2%(179건)였다.

표 3-4-34 성별에 따른 범행 대상

(단위: 건 %)

연쇄성 방화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행 대상	실외	337	50.2	16	36.4	353	49.4
	실내	334	49.8	28	63.6	362	50.6
전체		671	100.0	44	100.0	715	100.0

(df=1) $\chi^2 = 3.173$ n.s.

비연쇄성 방화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행 대상	실외	59	24.8	8	33.3	67	25.6
	실내	179	75.2	16	66.7	195	74.4
전체		238	100.0	24	100.0	262	100.0

(df=1) $\chi^2 = .836$ n.s.

연쇄성 방화 유형별로 범행 대상이 실외인지 실내인지를 살펴보면 연속방화의 경우 실외에 있는 범행 대상에 불을 지른 비율이 전체의 53.7%(190건)였고 실내인 비율은 46.3%(164건)였다. 연쇄방화의 경우에는 실내와 실외인 비율인 각 50%씩으로 나타나 연쇄방화사건의 경우 연속방화사건에 비해 실외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3-4-35 연쇄성 방화 유형별 범행대상(실외/실내)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행 대상	실외	190	53.7	109	50.0	299	52.3
	실내	164	46.3	109	50.0	273	47.7
전체		354	100.0	218	100.0	572	100.0

(df=1) $\chi^2 = .729$ n.s.

2) 구체적 범행 대상

연쇄성 방화사건의 구체적 범행대상(실외)을 살펴보면, 노상의 쓰리기통이나 버

려진 물건과 노상의 자동차가 전체 364건 가운데 각 94건으로 각 25.8%씩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간판이나 현수막이 38건으로 10.4%, 건물 밖 담벼락이 32건으로 8.8%, 야산 및 임야가 24건으로 6.6%등의 순이었다. 비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는 노상의 자동차가 전체의 43.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노상의 쓰레기통이나 버려진 물건(22.3%), 건물 밖 담벼락(7.4%), 건물출입구와 가로수, 실외가스배관이나 에어컨 실외기가 각 4.5%등의 순이었다. 즉,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노상의 쓰레기통이나 버려진 물건과 현수막이나 플랜카드, 건물 밖 담벼락과 같이 소유가 명확하지 않은 대상에 불을 지르는 비율이 비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높았다.

표 3-4-36 구체적 범행 대상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실외	노상의쓰레기통버려진물건	15	22.3	94	25.8	109	25.3
	노상의오토바이자전거	3	4.5	22	6.0	25	5.8
	노상의자동차	29	43.3	94	25.8	123	28.5
	야산 및 임야	2	3.0	24	6.6	26	6.0
	건물 밖 담벼락	2	3.0	32	8.8	34	7.9
	노상주차장자동차	1	1.5	9	2.5	10	2.3
	노점상물건	1	1.5	19	5.2	20	4.6
	간판플랜카드현수막	-	-	38	10.4	38	8.8
	건물출입구앞	3	4.5	15	4.1	18	4.2
	가로수	3	4.5	2	0.5	5	1.2
	실외가스배관가스통실외기	3	4.5	8	2.2	11	2.6
	기타 실외 ⁶⁰⁾	5	7.4	7	1.9	12	2.8
전체	67	100.0	364	100.0	431	100.0	

60)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 구체적 범행 대상이 기타인 경우는 미끄럼틀, 원두막, 텐트가 각 1건씩이었고 화단(2건)이 있었다.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기타인 경우는 공터 놀이기구, 나무사다리, 안전망, 유모차, 인터폰, 전신주, 주택처마가 각 1건씩이었다.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실내	주거지	98	49.7	105	28.5	203	35.9
	상가및가게사무실	29	14.7	86	23.3	115	20.3
	병원 학교화장실공공시설	21	10.7	45	12.2	66	11.7
	교회등 종교건물	4	2.0	12	3.3	16	2.8
	시청 동사무소등의관공서	5	2.5	5	1.4	10	1.8
	지하철등대중교통시설	6	3.0	7	1.9	13	2.3
	공장,창고	5	2.5	24	6.5	29	5.1
	비닐하우스	1	0.5	13	3.5	14	2.5
	주차장내 오토바이,자전거	6	3.0	7	1.9	13	2.3
	주차장내자동차	14	7.1	36	9.8	50	8.8
	건물 내 버려진 물건	3	1.5	23	6.2	26	4.6
	기타 실내 ⁶¹⁾	5	2.5	6	1.6	11	1.9
	전체	197	100.0	369	100.0	566	100.0

* 중복응답

한편, 연쇄성 방화사건의 실내에 있는 범행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주거지가 전체 369건 가운데 105건으로 28.5%로 가장 많았고, 상가 및 가게(사무실)이 23.3%, 병원이나 학교등의 공공시설이 12.2%, 주차장 내 자동차가 9.8%, 공장이나 창고가 6.5%, 건물내 버려진 물건이 6.2%, 비닐하우스가 3.5%등 이었다. 비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죄명별 분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실내에서는 자동차가, 실외에서는 주거지가 범행 대상인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4-1, 표 3-4-36 참고). 즉,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는 주거지가 전체의 49.7%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고 상가 및 가게(사무실)이 14.7%, 공공시설(10.7%), 주차장내 자동차(7.1%), 지하철등 대중교통시설(3.0%)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연쇄성 방화범죄의 경우 병원이나 학교, 공공 화장실 등의 공공시설물이나 교회 등의 종교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사회적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다. 그리고 실외에서 발생하는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실내에서 발생하는 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노상의 쓰레기통이나

61)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 기타는 계단벽(1건), 엘리베이터(1건), 철거예정집(1건), 주차장(2건)이 포함되어 있고 연쇄성 방화사건에는 주차장(2건), 헬체어(2건), 철거예정집(2건)이 포함되었다.

버려진 물건, 현수막 등이 범행대상이 되는 비율이 높아 방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가 작을 수 있다.

표 3-4-37 연쇄성 방화 유형별 구체적 범행 대상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실외	노상의쓰레기통버려진물건	46	23.2	33	29.7	79	25.6
	노상의오토바이자전거	11	5.6	10	9.0	21	6.8
	노상의자동차	47	23.7	26	23.4	73	23.6
	아산 및 임야	14	7.1	5	4.5	19	6.1
	건물 밖 담벼락	22	11.1	5	4.5	27	8.7
	노상주차장자동차	5	2.5	2	1.8	7	2.3
	노점상물건	9	4.5	10	9.0	19	6.1
	간판플랜카드현수막	23	11.6	12	10.8	35	11.3
	건물출입구앞	9	4.5	4	3.6	13	4.2
	가로수	1	0.5	1	0.9	2	0.6
	실외가스배관가스통실외기	5	2.5	3	2.7	8	2.6
	기타실외	6	3.0	-	-	6	1.9
전체	198	100.0	111	100.0	309	100.0	
실내	주거지	42	25.1	38	34.5	80	28.9
	상가및가게사무실	41	24.6	22	20.0	63	22.7
	병원 학교화장실공공시설	20	12.0	15	13.6	35	12.6
	교회등 종교건물	6	3.6	3	2.7	9	3.2
	시청 동사무소등의관공서	1	0.6	2	1.8	3	1.1
	지하철등대중교통시설	3	1.8	2	1.8	5	1.8
	공장창고	16	9.6	4	3.6	20	7.2
	비닐하우스	1	0.6	8	7.3	9	3.2
	주차장내 오토바이,자전거	4	2.4	2	1.8	6	2.2
	주차장내자동차	18	10.8	9	8.2	27	9.7
	건물내 버려진물건	12	7.2	4	3.6	16	5.8
	기타실내	3	1.8	1	0.9	4	1.4
전체	167	100.0	110	100.0	277	100.0	

*중복응답

연쇄성 방화 유형별로 범행대상(실외)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 결과, 연속방화사건의 경우, 노상의 자동차(23.7%), 노상의 쓰레기통이나 버려진 물건(23.2%), 간판이나 플랜카드(11.6%), 건물 밖 담벼락(11.1%), 야산 및 임야(7.1%), 노상의 오토바이나 자전거(5.6%), 노점상 물건(4.5%) 건물 출입구(4.5%)등의 순이었고 연쇄방화사건의 경우는 노상의 쓰레기통이나 버려진 물건이 29.7%, 노상의 자동차가 23.4%, 간판이나 플랜카드가 10.8%, 노상의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노점상 물건이 각 9.0%, 야산 및 임야와 건물 밖 담벼락이 각 4.5%등의 순이었다. 즉, 연쇄성 방화 유형별로 실외에 있는 범행대상에 있어서 연쇄방화의 경우 노상의 쓰레기통이나 버려진 물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연속방화사건에서의 비율하과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범행 대상이 실내인 경우는 연속방화사건에서 주거지가 전체 167건 가운데 42건으로 전체의 25.1%, 상가 및 가게가 24.6%, 학교나 병원등과 같은 공공시설이 12.0%, 주차장 내 자동차가 10.8%, 공장이나 창고는 9.6%, 건물 내 버려진 물건이 7.2%, 교회나 종교건물이 3.6% 등의 순이었고 연쇄방화사건에서는 주거지가 전체의 34.5%, 상가 및 가게가 20.0%, 병원이나 학교, 화장실 등의 공공시설이 13.6%, 주차장 내 자동차가 8.2%, 비닐하우스가 7.3%, 공장이나 창고와 건물 내 버려진 물건이 각 3.6% 등으로 나타나 연쇄방화사건이 실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거지가 범행 대상이 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 범행 장소

1) 피해자/가해자 관련 장소 여부

연쇄성 방화 사건에서 범행 장소의 특징으로 피해자 관련 장소인지, 가해자 관련 장소인지, 피해자/가해자 공동의 장소인지, 제 3의 장소인지 살펴본 결과 전체 사건의 708건 가운데 470건(66.4%)이 피해자 관련 장소였고, 피해자와 가해자 공동의 장소가 139건(19.6%), 지하철이나 공공시설물과 같은 제 3의 장소는 72건(10.2%), 가해자 관련 장소가 27건(3.8%)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관련 장소인 경우가 전체 사건 262건 가운데 120건으로 4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쇄성 방화사건과의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df=3, $\chi^2=87.308^{***}$).

한편, 연쇄성 방화 유형별로 범행 장소의 특징을 살펴보면 연속방화의 경우와 연쇄방화의 경우 모두 피해자 관련 장소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관련 장소, 제 3의 장소, 가해자 관련 장소의 순이었다. 즉, 연속방화의 경우 피해자 관련 장소는 전체 352건 가운데 243건으로 전체의 69.0%이고 피해자와 가해자 관련 장소는 18.2%, 제 3의 장소는 10.5%, 가해자 관련 장소는 2.3%였다. 연쇄방화의 경우는 피해자 관련 장소가 66.7%를 차지하였고 피해자와 가해자 관련 장소는 19.0%, 제 3의 장소는 8.3%, 가해자 관련 장소는 6.0% 였다. 이렇게 연쇄성 방화사건의 범행 장소가 피해자 관련 장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만으로는 범행 장소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즉, 피해자 관련 장소이기는 하지만 가해자 또한 익숙한 장소일 수도 있고 정작 가해자는 피해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범행 장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범행 장소의 친밀성과 주거지로부터의 거리,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등에 대한 범행 장소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범행 장소에 대한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3-4-38 범행 장소(피해자/가해자 관련 여부)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행 장소 특징	피해자 관련장소	90	34.4	470	66.4	560	57.7
	가해자 관련장소	15	5.7	27	3.8	42	4.3
	피해자/가해자 관련장소	120	45.8	139	19.6	259	26.7
	제3의 장소	37	14.1	72	10.2	109	11.2
전체		262	100.0	708	100.0	970	100

(df=3) $\chi^2=87.308^{***}$ ***p<.001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행 장소 특징	피해자 관련장소	243	69.0	144	66.7	387	68.1
	가해자 관련장소	8	2.3	13	6.0	21	3.7
	피해자/가해자 관련장소	64	18.2	41	19.0	105	18.5
	제3의 장소	37	10.5	18	8.3	55	9.7
전체		352	100.0	216	100.0	568	100.0

(df=3) $\chi^2 = 5.892$ n.s.

2) 범행 장소와의 친밀성 정도

모든 방화는 친숙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다(Brogan, R., 2009). 실제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는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가해자가 평소 자주 가서 친밀성이 높은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전체 591건 가운데 274건(46.4%)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고 가해자가 과거 한 두 번 정도 가본 경험이 있는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35.5%, 전혀 가본 적이 없는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18.1%로 연쇄성 방화 사건의 80% 이상이 가해자와 친밀성이 있는 지역에서 범행이 발생하였다. 한편,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는 친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전체의 6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친밀성이 낮은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 전체의 22.9%, 친밀성이 중간 정도인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13.7%였다. 즉,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비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친밀성이 높은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비율(비연쇄성 방화사건:63.5%, 연쇄성 방화사건:46.4%)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지만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는 친밀성이 없는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어느 정도의 친밀성이 있는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비해서도 많았다. 다시 말해서,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비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친밀성이 없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었다(df=2, $\chi^2 = 40.876^{***}$).

표 3-4-39 범행 장소와의 친밀성 정도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여부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행장소와의 친밀성	상	158	63.5	274	46.4	432	51.4
	중	34	13.7	210	35.5	244	29.0
	하	57	22.9	107	18.1	164	19.5
전체		249	100.0	591	100.0	840	100.0

(df=2) $\chi^2 = 40.876^{*****} p < .001$

한편,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피의자의 성별에 따라 범행 장소와의 친밀성이 다른 지 살펴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그 차이가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신이 친숙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크지 않았다. 즉, 연쇄적으로 방화를 저지르는 여성의 경우, 평소 자주 가는 장소로 그 곳 지리를 잘 아는 친밀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비율은 전체의 60%였고 전혀 가 본적 없는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비율은 10.0%였다. 그리고 연쇄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남성은 친밀성이 아주 높은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비율은 45.3%, 친밀성이 전혀 없는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비율은 18.7%로 나타났다.

표 3-4-40 성별에 따른 범행 장소와의 친밀성 정도

(단위: 건 %)

연쇄성 방화사건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행장소와의 친밀성	상	249	45.3	24	60.0	273	46.3
	중	198	36.0	12	30.0	210	35.6
	하	103	18.7	4	10.0	107	18.1
전체		550	100.0	40	100.0	590	100.0

(df=2) $\chi^2 = 3.691$ n.s.

연쇄성 방화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연속방화와 연쇄방화 모두 친밀한 범행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속방화의 경우 친밀성이 높은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전체 295건 가운데 131건으로 44.4%였고 연속방화의 경우에는 전체 173건 가운데 78건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하였다.

표 3-4-41 연쇄성 방화 유형별 범행 장소와의 친밀성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행장소와의 친밀성	상	131	44.4	78	45.1	209	44.7
	중	108	36.6	63	36.4	171	36.5
	하	56	19.0	32	18.5	88	18.8
전체		295	100.0	173	100.0	468	100.0

(df=2) $\chi^2 = .026$ n.s.

3) 범행 장소까지의 이동 수단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범행 장소까지의 이동 수단을 살펴보면 도보인 경우가 전체 573건 가운데 448건으로 전체의 78.2%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있었던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 이동 안함(9.2%, 53건),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5.9%, 34건), 본인 차량을 이용한 경우(4.0%, 23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는 ‘도보’가 전체의 37.4%(80건)로 범행 장소까지 이동하지 않은 경우(33.6%, 72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그 다음으로 ‘대중교통’이 15.4%(33건), ‘본인차량’이 10.3%(22건) 등이었다. 즉,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범행 장소까지 걸어서 가는 경우가 많았다(Rossmo, 2000, 김경옥·공은경, 2011). 그렇다면 연쇄성 방화 유형별로 살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표 3-4-42 범행 장소까지의 이동 수단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행장소 까지의 이동수단	이동안함	72	33.6	53	9.2	125	15.9
	도보	80	37.4	448	78.2	528	67.1
	본인차량	22	10.3	23	4.0	45	5.7
	대중교통	33	15.4	34	5.9	67	8.5
	기타 ⁶²⁾	7	3.3	15	2.6	22	2.8
전체		214	100.0	573	100.0	787	100.0

(df=4) $\chi^2 = 124.454^{***}$ ***p<.001

연쇄성 방화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연속방화의 경우 전체 293건 가운데 246건이 범행 장소까지 걸어서 이동한 것으로 전체의 84.0%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범행 장소까지 이동 안함(6.5%), 대중 교통을 이용(5.1%), 본인 차량을 이용(3.1%) 등의 순이었고 연쇄방화의 경우는 범행 장소까지 걸어서 이동한 것이 전체 163건 가운데 120건으로 73.6%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범행 장소까지 '이동안함'이 19건으로 11.7%, 대중교통 이용이 11건으로 (6.7%), 본인 차량 이용은 8건으로 4.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연쇄성 방화 유형별로 범행 장소까지의 이동 수단을 살펴본 결과, 연속방화의 경우 '도보'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쇄방화에서보다 상대적으로 크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62) 연쇄성방화사건에서 범행장소까지의 이동수단 기타에 해당하는 것으로 렌터카 2건, 자전거 4건, 훔친 차량 8건, 새아버지차량 1건이었고 비연쇄성방화사건에서의 기타는 경찰차 1건, 관광버스 1건, 앰블런스 1건, 자전거 2건, 훔친차량 1건이었음

표 3-4-43 연쇄성 방화 유형별 범행 장소까지의 이동 수단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행/5장소 까지의 이동수단	이동안함	19	6.5	19	11.7	38	8.3
	도보	246	84.0	120	73.6	366	80.3
	본인차량	9	3.1	8	4.9	17	3.7
	대중교통	15	5.1	11	6.7	26	5.7
	기타 ⁶³⁾	4	1.4	5	3.1	9	2.0
전체		293	100.0	163	100.0	456	100.0

(df=4) $\chi^2 = 7.729$ n.s.

4) 범행 장소와 가해자 주거지간 거리

뉴질랜드의 연쇄방화범 45명을 대상으로 한 Edward와 Grace(2006) 연구에서도 연쇄방화범의 82%가 집 주소의 5km이내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연구들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Canter & Larkin, 1993; Kocsis & Irwin, 1997; Lundrigan & Canter, 2001; Edward & Grace, 2006). 즉, 범죄자의 거주지와 범행 장소 간의 거리는 근거리이며 범죄자의 일상 생활공간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 심리과 범죄분석실에 의하면, 방화가 인접한 곳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방화범은 범죠헌장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 심리과 범죄분석실, 2004a:110). 이에 본 연구에서도 범행 장소와 가해자 주거지간 거리를 살펴보았다. 범행 장소와 가해자 주거지 간의 거리를 살펴본 결과,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2km 이내가 전체 643건 가운데 440건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하고 있고 5km 이내가 18.2%, 10km 이상이 7.5%, 10km 이내가 5.9%였다. 비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에는 2km 이내가 전체의 60.4%를 차지하고 있고 10km 이상이 20.0%, 5km 이내가 10.6%, 10km 이내가 8.9%였다. 즉,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가해자 주거지와 범행발생지역 간 거리가 5km 이내인 비율이 86.6%로 비연쇄성 방화사건(71.0%)에 비해 범행 장소와 가해

자 주거지 간의 거리가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df=3, $\chi^2=35.079^{***}$).

표 3-4-44 범행 장소와 가해자 주거지 간의 거리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행장소와 가해자주거지간의 거리	2km이내	142	60.4	440	68.4	582	66.3
	5km이내	25	10.6	117	18.2	142	16.2
	10km이내	21	8.9	38	5.9	59	6.7
	10km이상	47	20.0	48	7.5	95	10.8
전체		235	100.0	643	100.0	878	100

(df=3) $\chi^2=35.079^{***}$ ***p<.001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라서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 결과, 연속방화의 경우 2km 이내가 전체의 68.6%를 차지하고 있고 5km 이내가 19.6%, 10km 이상이 6.5%, 10km 이내가 5.0%였다. 연쇄방화의 경우에도 2km 이내가 전체의 71.0%로 가장 많았고 5km 이내가 15.5%, 10km 이내가 8.0%, 10km 이상이 5.5%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3-4-45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범행 장소와 가해자 주거지간의 거리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행장소와 가해자주거지간의 거리	2km이내	221	68.6	142	71.0	363	69.7
	5km이내	63	19.6	31	15.5	94	18.0
	10km이내	16	5.0	16	8.0	32	6.1
	10km이상	21	6.5	11	5.5	32	6.1
전체		321	100.0	200	100.0	521	100.0

(df=3) $\chi^2=3.287$ n.s

한편, 범행 장소와 가해자 주거지간 이동 거리의 경우 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하루 동안 연속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와 하루 이상의 냉각기를 거치면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에 연속방화 사건과 연쇄방화사건에서 피의자의 연령대별 범행 장소와 가해자 주거지 간 거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속방화사건과 연쇄방화사건이 모두 연령대별로 범행 장소와 가해자 주거지간 거리가 다르게 나타났다. 물론 연령대가 높을수록 혹은 낮을수록 범행 장소와 가해자 주거지간 거리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일관적인 패턴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30, 4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활동 범위가 넓어져서인지 범행 장소와 가해자 주거지간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즉, 연속범죄에서 10대의 경우, 범행 장소와 가해자 주거지간 거리가 2km이내인 경우가 전체의 70.0%, 5km초과 10km 이내가 16.7%, 2km초과 5km이내가 13.3%의 순이었고 20대의 경우는 2km이내가 73.7%, 5km이내가 16.8%, 10km이상이 5.3%, 10km이내가 4.2%였다. 30대의 경우는 2km이내(67.9%), 5km이내(21.7%), 10km이상(8.5%) 등이었고 40대의 경우는 2km이내(71.9%), 5km이내(17.5%), 10km이상(8.5%), 10km이내(1.8%)였고 50대 이상인 경우는 2km이내(51.5%), 5km이내(30.3%), 10km이내(12.1%), 10km이상(6.1%)였다. 또한 연쇄방화사건에서 역시 연속방화사건과 마찬가지로 연령대별로 범행 장소와 가해자 주거지 간 거리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즉, 10대의 경우 범행 장소와 가해자 주거지간 거리가 2km이내인 경우가 전체의 71.1%, 2km 초과 5km이내가 26.3%, 5km초과 10km이내가 2.6%의 순이었고 20대의 경우는 2km이내가 76.5%, 5km이내가 8.6%, 10km이상이 7.4%, 10km 이내가 7.4%였다. 30대의 경우는 2km이내(73.7%), 10km이내(15.8%), 5km이내(10.5%)이었고 40대의 경우는 2km이내(82.8%), 5km이내(3.4%), 10km이상(10.3%), 10km이내(3.4%)였고 50대 이상인 경우는 2km이내(45.5%), 5km이내(33.3%), 10km이내(15.2%), 10km이상(6.1%)였다.

표 3-4-46 가해자 연령대별 범행 장소와 가해자 주거지간 거리

(단위: 건)

연속방화	연령대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2km이내	21	70	72	41	17	221
	70.0%	73.7%	67.9%	71.9%	51.5%	68.8%
5km이내	4	16	23	10	10	63
	13.3%	16.8%	21.7%	17.5%	30.3%	19.6%
10km이내	5	4	2	1	4	16
	16.7%	4.2%	1.9%	1.8%	12.1%	5.0%
10km이상	-	5	9	5	2	21
	-	5.3%	8.5%	8.8%	6.1%	6.5%
전체	30	95	106	57	33	3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df=12) $\chi^2 = 23.310^{*} p < .05$

연쇄방화	연령대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2km이내	27	62	14	24	15	142
	71.1%	76.5%	73.7%	82.8%	45.5%	71.0%
5km이내	10	7	2	1	11	31
	26.3%	8.6%	10.5%	3.4%	33.3%	15.5%
10km이내	1	6	3	1	5	16
	2.6%	7.4%	15.8%	3.4%	15.2%	8.0%
10km이상	-	6	-	3	2	11
	-	7.4%	-	10.3%	6.1%	5.5%
전체	38	81	19	29	33	2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df=12) $\chi^2 = 29.719^{***} p < .01$

5) 범행 장소들 간 거리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범행 장소들 간의 거리를 보면 전체 576건 가운데 상당 부분인 505건(87.7%)이 2km이내로 나타났고 43건(7.5%)이 5km이내, 18건(3.1%)건이 10km이내, 10건(1.7%)이 10km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최초 범행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여러 차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연쇄성 방화사건은 앞서 살펴본 범행 장소와 피의자 주거지간의 거리에서도 나타나듯이 피의자 주거지와 멀지 않은 곳에서 모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표 3-4-44, 3-4-47 참고).

표 3-4-47 범행 장소들 간의 거리

(단위: 건 %)

발생시간간격	빈도	비율
2km이내	505	87.7
5km이내	43	7.5
10km이내	18	3.1
10km이상	10	1.7
합계	576	100.0

연쇄성 방화 유형별 범행 장소간 거리를 살펴보면 연속방화의 경우 2km이내가 전체 350건 가운데 319건이 91.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5km이내가 6.3%, 10km이내가 1.7%, 10km이상이 0.9%이고 연쇄방화의 경우에는 2km 이내가 전체 216건 가운데 180건이 83.3%로 가장 많았고 5km이내가 8.8%, 10km이내가 5.1%, 10km이상이 2.8%였다. 즉, 연속방화의 경우는 하루 동안 발생하는 사건들로 연쇄방화에 비해 범행 장소 간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더 가깝게 나타난 것이다 ($df=3$, $\chi^2=10.260^*$). 하지만 연쇄방화의 경우에도 범행 장소 간 거리가 2km이내 인 비율이 8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하루 이상의 냉각기를 두고 발생하는 연쇄방화사건이라 할지라도 피의자의 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는 적었다.

표 3-4-48 연쇄성 방화 유형별 범행 장소간의 거리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행장소간거리	2km이내	319	91.1	180	83.3	499	88.2
	5km이내	22	6.3	19	8.8	41	7.2
	10km이내	6	1.7	11	5.1	17	3.0
	10km이상	3	0.9	6	2.8	9	1.6
전체	350	100.0	216	100.0	566	100.0	

($df=3$) $\chi^2 = 10.260^*$ * $p < .05$

라. 범행의 계획성 여부

연쇄성 방화사건의 계획성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653건 가운데 361건 (55.3%)이 범행 계획이 사전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전체의 44.7% 정도는 사전 범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나 연쇄성 방화사건의 절반 이상이 사전에 계획 없이 저질러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비연쇄성 방화 사건에서도 나타나 사전에 범행 계획을 세운 경우는 전체의 60.3%(146건), 그렇지 않은 경우는 39.7%였다. 즉, 연쇄성 여부에 상관없이 방화사건의 경우 사전에 미리 범행을 계획하는 비율이 높지 않음을 예상 할 수 있다.

표 3-4-49 범행의 계획성 여부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행의 계획여부	있다	96	39.7	292	44.7	388	43.4
	없다	146	60.3	361	55.3	507	56.6
전체		242	100.0	653	100.0	895	100.0

(df=-1) $\chi^2 = 1.832$ n.s.

연쇄성 방화 유형별로 범행의 계획성 여부를 살펴본 결과 연속 방화의 경우 전체 319건 가운데 179건이 ‘계획성 없음’으로 전체 연속방화의 56.1%였고 ‘계획성 있음’은 43.9%(140건)를 차지하였고 연쇄방화의 경우에도 ‘계획성 없음’이 56.0%(112건), ‘계획성 있음’이 44.0%(88건)로 나타났다.

표 3-4-50 연쇄성 방화 유형별 범행의 계획성 여부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행의 계획여부	있다	140	43.9	88	44.0	228	43.9
	없다	179	56.1	112	56.0	291	56.1
전체		319	100.0	200	100.0	519	100.0

(df=1) $\chi^2 = .001$ n.s.

마. 방화 수법 및 방화 도구

1) 방화 수법

연쇄성 방화사건의 방화 수법의 경우는 소지하고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전체 986건 가운데 684건으로 69.4%를 차지하여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현장에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소지하고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 소지하고 있는 도구를 사용한 경우는 전체 351건 가운데 211건으로 60.1%를 차지하였고 현장에 있는 도구를 사용한 경우는 140건으로 39.9%를 차지하였다.

표 3-4-51 방화 수법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방화 수법	현장에 있는 도구사용	140	39.9	302	30.6	442	33.1
	소지하고 있는 도구사용	211	60.1	684	69.4	895	66.9
전체		351	100.0	986	100.0	1,337	100.0

* 중복응답

연쇄성 방화유형별로 방화 수법을 살펴본 결과, 연속방화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도구를 사용한 비율이 전체의 69.2%였고 현장에 있는 도구를 사용한 비율은 30.8%로 연쇄방화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연쇄방화의 경우에도 전체 303건 가운데 소지하고 있는 도구를 사용한 비율이 70.0%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현장에 있는 도구를 사용한 비율은 30.0%였다.

표 3-4-52 연쇄성 방화 유형별 방화 수법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방화 수법	현장에 있는 도구사용	151	30.8	91	30.0	242	30.5
	소지하고 있는 도구사용	339	69.2	212	70.0	551	69.5
전체		490	100.0	303	100.0	793	100.0

* 중복응답

2) 방화 도구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사용한 방화 도구를 살펴보면 전체 1,104건 가운데 677건(61.3%)이 라이터를 사용하였고 종이류나 형질이 322건(29.2%), 휘발류 등의 촉진제가 90건(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라이터와 같이 소지하기도 쉽고 구하기 쉬운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이미 미국의 ATF/FBI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연쇄방화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성냥이나 라이터, 종이 등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는 경향이 많아 직접 연소장치를 만든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Rossmo, 2000:47).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도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지른 경우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고 그 다음으로 종이류나 형질(26.8%), 촉진제(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물론, 연쇄성 방화사건이 비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라이터와 종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구하기 쉬운 도구를 사용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도 하고 범행에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표 3-4-53 방화 도구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여부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방화 수법	라이터	226	51.7	677	61.3	903	58.5
	종이류나 형겅	117	26.8	322	29.2	439	28.5
	촉진제	68	15.6	90	8.2	158	10.3
	점화장치	22	5.0	15	1.3	37	2.4
	가스레인지	2	0.5	-	-	2	0.1
	번개탄	1	0.2	-	-	1	0.1
	기타 ⁶⁴⁾	1	0.2	-	-	1	0.1
전체	437	100.0	1,104	100.0	1,541	100.0	

* 중복응답

연쇄성 방화 유형별로 방화도구를 살펴본 결과, 연속방화의 경우 라이터가 전체의 63.1%, 종이류나 형겅(29.3%), 촉진제(6.1%), 점화장치(1.5%)였고 연쇄방화의 경우에도 라이터가 전체 338건 가운데 206건으로 전체의 60.9%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종이류나 형겅은 28.4%, 촉진제는 9.5%, 점화장치는 1.2%로 큰 차이는 없었다.

표 3-4-54 연쇄성 방화 유형별 방화 도구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방화 도구	라이터	342	63.1	206	60.9	548	62.3
	종이류나 형겅	159	29.3	96	28.4	255	29.0
	촉진제	33	6.1	32	9.5	65	7.4
	점화장치	8	1.5	4	1.2	12	1.4
전체	542	100.0	338	100.0	880	100.0	

* 중복응답

64) 소주병으로 화염병을 만들어 사용

3) 방화 도구 처리

방화범의 절반 정도는 범행에서 사용한 도구를 현장에 두고 간다(Brogan, R., 2009). 하지만 본 조사 결과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에는 방화 도구를 소장하는 비율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방화 도구를 현장에 방치하는 비율이 23.7%, 현장 주변에 투기하는 비율이 5.1% 등이었다. 이렇게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방화 도구를 소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아마도 방화 도구가 라이터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비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에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 도구 처리 방식에 있어서 방화 도구를 현장에 두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렇다면, 연쇄성 방화사건에서의 방화 도구 처리 방식 가운데 ‘소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이유는 범행에 대한 계획성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방화 도구를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라이터가 실제로 자신에게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이후의 범행에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에게 범행에 이용한 라이터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기념품이라는 의미로 방화 도구를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표 3-4-55 방화 도구 처리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여부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방화 수법	소장	108	39.6	475	70.5	583	61.6
	현장방치	143	52.4	160	23.7	303	32.0
	현장주변투기	17	6.2	34	5.1	51	5.4
	가져갔으나 은닉	1	0.4	-	-	1	0.1
	현장소화	3	1.0	2	0.3	5	0.5
	소지후 투기	1	0.4	3	0.4	4	0.4
전체		273	100.0	674	100.0	947	100.0

* 중복응답

연쇄성 방화 유형별로 방화 도구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연속방화사건에서 방화도구를 소장하는 경우가 전체 351건 가운데 259건으로 전체의 73.8%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현장 방치(22.8%), 현장 주변 투기(3.1%), 소지 후 투기(0.3%) 순으로 나타났고 연쇄방화사건에서 방화 도구를 소장한 경우가 65.4%, 현장 방치 26.2%, 현장 주변 투기 6.8%, 소지 후 투기 1.0%, 현장 소화 0.5%였다.

표 3-4-56 연쇄성 방화 유형별 방화 도구 처리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방화 도구 처리	소장	259	73.8	125	65.4	384	70.8
	현장 방치	80	22.8	50	26.2	130	24.0
	현장 주변 투기	11	3.1	13	6.8	24	4.4
	현장 소화	-	-	1	0.5	1	0.2
	소지 후 투기	1	0.3	2	1.0	3	0.6
전체		351	100.0	191	100.0	542	100.0

*중복응답

바. 범행 시 음주 및 약물 사용 여부

1) 범행 당시 음주 여부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전체 716건 가운데 394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는 전체의 45.0%로 나타났다. 이는 연쇄 방화사건의 경우 정신적 문제나, 심리적 문제로 술을 마시고 방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Rossmo, 1999; Doley, 2003; Lowenstein, 2003)와 일치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비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즉, 비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전체의 66.4%가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고 33.6%가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연쇄성 방화사건이 비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df=1, $\chi^2=10.210^{**}$).

표 3-4-57 범행 당시 음주 여부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음주여부	그렇다	174	66.4	394	55.0	568	58.1
	아니다	88	33.6	322	45.0	410	41.9
전체		262	100.0	716	100.0	978	100.0

(df=1) $\chi^2 = 10.210^{**}$ $^{***} p < .01$

연쇄성 방화사건을 하루 사이에 일어난 연속방화사건과 하루 이상의 심리적 냉각기를 가지고 있는 연쇄방화사건으로 구분하여 음주 여부를 비교해 보면, 연속방화사건의 경우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전체의 63.3%이고 연쇄방화사건의 경우는 39.4%로 1일 동안 계속해서 불을 지르는 사람의 경우의 상당 부분은 술을 먹고 술김에 불을 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연쇄방화의 경우는 술을 먹고 범행을 하는 비율(39.4%)보다 술을 먹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60.6%)이 더 높았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연속방화의 최종 판결 심급이 1심인 경우보다 2심인 경우가 더 많은 것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표 3-4-14 참고). 연속방화의 경우 술을 먹고 술김에 저지른 경우가 많아 범행에 대한 정확한 기억 문제 뿐 아니라 현재 우리 형법에서는 술을 먹었다는 것에 면죄부를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음주량이었냐 등의 법정 다툼의 요인이 많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표 3-4-58 연쇄성 방화 유형별 범행 당시 음주 여부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음주여부	그렇다	224	63.3	86	39.4	310	54.2
	아니다	130	36.7	132	60.6	262	45.8
전체		354	100.0	218	100.0	572	100.0

(df=1) $\chi^2 = 30.856^{***}$ $^{***} p < .001$

한편,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피의자의 성별에 따라 범행 시 음주여부가 다른 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3-4-59>와 같다. 즉,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남성의 경우 범행 당시 술을 먹은 비율이 전체의 55.3%, 술을 먹지 않은 비율이 44.7%이었고 여성의 경우는 술을 먹은 비율과 술을 먹지 않은 비율이 각 50.0%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는 남성의 경우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전체의 65.1%였고 여성의 경우는 79.2%로 나타나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술을 먹고 불을 지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3-4-59 성별에 따른 범행 당시 음주 여부

(단위: 건 %)

연쇄성 방화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음주여부	그렇다	371	55.3	22	50.0	393	55.0
	아니다	300	44.7	22	50.0	322	45.0
전체		671	100.0	44	100.0	715	100.0

(df=1) $\chi^2 = .467$ n.s.

비연쇄성 방화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음주여부	그렇다	155	65.1	19	79.2	174	66.4
	아니다	83	34.9	5	20.8	88	33.6
전체		238	100.0	24	100.0	262	100.0

(df=1) $\chi^2 = 1.927$ n.s.

2) 범행 당시 약물 사용 여부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방화범이 범행 당시 약물을 사용했는지 살펴본 결과, 범행 당시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대부분으로 전체 716건 가운데 710건이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6건(0.8%)만이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60 범행 시 약물 사용 여부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약물여부	그렇다	3	1.1	6	0.8	9	0.9
	아니다	259	98.9	710	99.2	969	99.1
전체		262	100.0	716	100.0	978	100.0

(df=1) $\chi^2 = .198$ n.s.

연쇄성 방화 유형별 약물 사용 여부를 보면 연속방화의 경우에는 354건 가운데 약물을 사용한 경우가 한건도 없었고 연쇄방화사건에서는 전체 218건 가운데 3건이 약물을 사용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61 연쇄성 방화 유형별 약물 사용 여부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약물여부	그렇다	-	-	3	1.4	3	0.5
	아니다	354	100.0	215	98.6	569	99.5
전체		354	100.0	218	100.0	572	100.0

(df=1) $\chi^2 = 4.897^{**}$ p<.05

사. 범행의 동기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범행 동기는 ‘개인적 원한’이 전체의 29.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사회적 열등감이 20.8%,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가 15.6%, 가정불화와 음주 후 습관이 각 4.7%씩이었다. 비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도 개인적 원한이 전체의 4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신의 처지 비관, 사회적 열등감이 14.9%, 가정불화가 11.0%,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가 9.6%, 사회부적응이 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개인적 원한으로 인한 방화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비연쇄성 방화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사회적 열등감으로 인

한 방화와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로 인한 방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세분화된 범행의 동기를 5가지로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 즉, 경제적 이득을 위한 방화, 분노 표출의 방화, 범죄 은폐를 위한 방화, 욕구 충족의 방화, 정신 이상으로 인한 방화가 그것이다. 분노 표출형은 개인적 원인과 가정불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사회적 열등감, 사회적·정치적·종교적 불만, 사회 부적응이 포함되고 욕구 충족형은 흥분이나 스릴, 호기심, 스트레스 해소, 성욕이 포함되며 정신 이상형은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 음주 후 습관이 포함된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살펴보면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분노표출을 위한 방화가 전체의 60.9%, 정신이상으로 인한 방화가 20.3%, 욕구충족을 위한 방화가 10.5%, 경제적 이득을 위한 방화는 1.6%, 범죄 은폐를 위한 방화는 1.5%로 나타났다. 비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에는 분노표출을 위한 방화가 전체의 75.3%였고 정신 이상으로 인한 방화가 10.3%, 욕구 충족을 위한 방화가 4.0%, 범죄은폐를 위한 방화가 2.5%, 경제적 이득을 위한 방화가 2.1%였다.

한편, 연쇄성 방화유형에 따른 범행 동기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4-63>과 같다. 즉, 표에서 나타나듯이 연속방화의 경우에는 개인적 원인이 28.9%, 자신의 처지비관이나 사회적 열등감 22.6%,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가 17.7% 등의 순이고 연쇄방화의 경우도 개인적 원인이 26.4%, 자신의 처지비관이나 사회적 열등감이 20.4%,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가 14.5% 등의 순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앞서 살펴본 대로 범행의 동기를 크게 유형화하여 살펴보면 연속방화의 경우 분노 표출을 위한 방화가 전체의 60.4%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정신이상으로 인한 방화(22.9%), 욕구충족을 위한 방화(9.9%), 경제적 이득을 위한 방화(2.2%)의 순이었고 연쇄방화의 경우에는 분노 표출을 위한 방화가 57.3%, 정신이상으로 인한 방화가 19.7%, 욕구충족을 위한 방화가 14.1%, 범죄 은폐를 위한 방화가 3.7%, 경제적 이득을 위한 방화가 0.4%였다. 이처럼 연쇄방화와 연속방화 모두 분노 표출을 위한 방화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3-4-62 범행 동기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 행 동 기	경제적 이득	6	2.1	14	1.6	20	1.8	
	분노 표출	개인적 원한	120	42.7	250	29.3	370	32.7
		가정 불화	31	11.0	40	4.7	71	6.3
		자신의 처지비판·사회적 열등감 ⁶⁵⁾	42	14.9	176	20.8	218	19.2
		사회정차종교적 불만	6	2.1	31	3.6	37	3.3
		사회부적응	13	4.6	21	2.5	34	3.0
	범죄은폐 - 범죄 후 은닉	7	2.5	13	1.5	20	1.8	
	욕구 충족	흥분스릴	1	0.4	34	4.0	35	3.1
		호기심·재미·삼아	10	3.6	37	4.3	47	4.1
		스트레스 풀기	-	-	18	2.1	18	1.6
		성욕	-	-	1	0.1	1	0.0
	정신 이상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27	9.6	133	15.6	160	14.1
		음주 후 습관	2	0.7	40	4.7	42	3.7
	기타	아무런 이유 없이	2	0.7	15	1.8	17	1.5
		추워서	11	3.9	19	2.2	30	2.6
		기타 ⁶⁶⁾	3	1.1	10	1.2	13	1.2
전체		281	100.0	842	100.0	1,133	100.0	

* 중복응답

65) 실제로 발생한 사건으로 1992년 2월부터 8월 말까지 경남 산천포시 동서금동 유료주차장에서 14대의 자가용승용차량만을 골라 불을 질러 구속된 강씨(22세)는 ‘자가용을 타고 뽀내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보기 싫어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최인섭·진수연, 1993:82).

66) 연쇄성 방화범의 범행동기 가운데 기타로는 교도소에 들어가려고(1건), 뉴스와 영화 따라하다가(7건), 쓰레기를 태우려고(1건) 등이 있었다. 비연쇄성 방화범의 범행동기의 기타로는 언론을 타려고(1건), 교도소에 들어가려고(1건), 관심받기 위해서(1건)이었다.

표 3-4-63 연쇄성 방화 유형에 따른 범행 동기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경제적 이득	9	2.2	1	0.4	10	1.5	
분노 표출	개인적 원한	116	28.9	71	26.4	187	27.9
	가정 불화	17	4.2	12	4.5	29	4.3
	자신의 처지비관사회적 열등감 ⁶⁷⁾	91	22.6	55	20.4	146	21.7
	사회정치종교적불만	15	3.7	5	1.9	20	3.0
	사회 부적응	4	1.0	11	4.1	15	2.2
범죄은폐 - 범죄후은닉	-	-	10	3.7	10	1.5	
욕구충 족	흥분스릴	15	3.7	16	5.9	31	4.6
	호기심재미심아	17	4.2	15	5.6	32	4.8
	스트레스 풀기	8	2.0	7	2.6	15	2.2
정신 이상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71	17.7	39	14.5	110	16.4
	음주 후 습관	21	5.2	14	5.2	35	5.2
기타	아무런 이유 없이	5	1.2	6	2.2	11	1.6
	추위서	9	2.2	5	1.9	14	2.1
	기타	5	1.2	2	0.7	7	1.0
전체	403	100.0	269	100.0	672	100.0	

* 중복응답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범죄 심리와 범죄분석실에 의하면, 연쇄방화사건에서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불을 지를 경우, 대부분의 방화 대상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는 쓰레기 더미, 건축자재, 주차된 자동차 등을 범행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보복 및 분노 방화의 경우는 피해자 및 피해자와 관련이 있는 물건 혹은 건물 등이 범행대상이 되었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 2003: 1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2004a:110).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도 연쇄성 방화사건의 범행 동기에 따라 범행 내용이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범행 동기별 범행대상과 범행도구, 범행 도구 처리에서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경제적 이득과 분노 표출인 경우는 범행 대상이 실

67) 실제로 발생한 사건으로 1992년 2월부터 8월 말까지 경남 산천포시 동서금동 유료주차장에서 14대의 자가용승용차량만을 골라 불을 질러 구속된 강씨(22세)는 ‘자가용을 타고 뽀내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보기 싫어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최인섭·진수연, 1993:82)

내인 비율(경제적 이득: 85.7%, 분노표출 50.2%)이 더 높고 욕구충족과 정신이상으로 인한 방화사건에서는 범행 대상이 실외인 비율(욕구충족: 52.8%, 정신이상: 50.3%)이 더 높았다. 범죄 은닉을 위한 방화사건은 13건 모두 실내에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범행 동기별로 범행 장소가 피해자관련 장소인지 가해자 관련 장소인지가 다른지 살펴본 결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방화를 제외하고 모든 유형의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피해자 관련 장소가 약 60%이상을 차지하였다(경제적 이득: 14.3%, 분노표출: 61.9%, 범죄은닉: 84.6%, 욕구충족: 77.3%, 정신이상: 69.4%).

표 3-4-64 범행 동기에 따른 범행 관련 특징(연쇄성 방화사건)

(단위: 건 %)

		범행동기					전체
		경제적이득	분노표출	범죄은닉	욕구충족	정신이상	
범행 대상	실외	2	258	-	47	87	394
		14.3%	49.8%	-	52.8%	50.3%	48.8
	실내	12	260	13	42	86	413
		85.7%	50.2%	100.0%	47.2%	49.7%	51.2
	전체	14	518	13	89	173	80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범행 장소 특징	피해자관련	2	317	11	68	120	518
		14.3%	61.9%	84.6%	77.3%	69.4%	64.8
	가해자관련	-	22	-	1	2	25
		-	4.3%	-	1.1%	1.2%	3.1
	피해자기해자관련	12	123	2	12	34	183
		85.7%	24.0%	15.4%	13.6%	19.7%	22.9
	제 3의장소	-	50	-	7	17	74
		-	9.8%	-	8.0%	9.8%	9.3
	전체	14	512	13	88	173	8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방 화 수 법	현장 도구 사용	4	230	11	45	88	378
		28.6%	31.3%	47.8%	33.6%	34.4%	32.5
	소지한도구사용	10	505	12	89	168	784
		71.4%	68.7%	52.2%	66.4%	65.6%	67.5
	전체	14	735	23	134	256	1,16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범행동기					전체
		경제적이득	분노표출	범죄은닉	욕구충족	정신이상	
방화 도구	라이터	9	495	11	85	170	770
		50.0%	57.7%	45.8%	67.5%	70.8%	60.8
	종이나 형검	2	280	11	32	65	390
		11.1%	32.6%	45.8%	25.4%	27.1%	30.8
	촉진제	5	74	1	8	5	93
		27.8%	8.6%	4.2%	6.3%	2.1%	7.3
	점화장치	2	9	1	1	-	13
		11.1%	1.0%	4.2%	.8%	-	1.0
	전체	18	858	24	126	240	1,26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방화 도구 처리	소장	2	375	5	64	129	575
		33.3%	65.9%	71.4%	80.0%	71.3%	68.2
	현장방치	4	163	2	15	37	221
		66.7%	28.6%	28.6%	18.8%	20.4%	26.2
	현장주변투기	-	27	-	1	15	43
		-	4.7%	-	1.3%	8.3%	5.1
	현장소화	-	4	-	-	-	4
		-	.7%	-	-	-	0.5
	전체	6	569	7	80	181	84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리고 방화 수법에 있어서는 모든 유형의 연쇄성 방화에서 소지한 도구를 사용한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경제적 이득: 71.4%, 분노표출: 68.7%, 범죄 은닉: 52.2%, 욕구충족: 66.4%, 정신이상: 65.6%) 구체적 방화도구를 보면 라이터가 많았다. 그리고 방화 도구 처리에 있어서는 경제적 이득을 위한 방화를 제외하고는 방화도구를 소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경제적 이득: 33.3%, 분노표출: 65.9%, 범죄은닉: 71.4%, 욕구충족: 80.0%, 정신이상: 71.3%).

아. 범행 후 행동

FBI의 NCAVC에 따르면 연쇄방화자의 1/3이 범행 이후의 소란을 지켜보기 위해 현장에 남아있었다(Brogan, 2009). 이에 국내에서 발생한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나타나는 범행 후 피의자 행동의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 결과, 비연

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도주가 전체 250건 가운데 102건인 4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현장체류가 37.2%(93건), 소화 후 도주(13건)와 소화 후 체류(13건)가 각 5.2%로 나타났고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에는 도주가 전체의 77.5%(521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현장체류(9.5%, 64건), 다른 범행 장소로 이동(6.7%, 45건) 등의 순이었다($df=10, \chi^2=201.313^{***}$). 즉,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비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범행 후 바로 현장에서 빠져나와 도망가는 비율이 높았다.

표 3-4-65 범행 후 행동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행 후 행동	현장체류	93	37.2	64	9.5	157	17.0
	도주	102	40.8	521	77.5	623	67.6
	소화 후 도주	13	5.2	17	2.5	30	3.3
	신고 후 도주	1	0.4	4	0.6	5	0.5
	도주 후 현장방문	6	2.4	10	1.5	16	1.7
	도주 후 자수	7	2.8	2	0.3	9	1.0
	다른 범행장소로이동	1	0.4	45	6.7	46	5.0
	범행현장에서 진입체포	5	2.0	2	0.3	7	0.8
	소화후다른범행장소로이동	-	-	3	0.4	3	0.3
	소화후체류	13	5.2	3	0.4	16	1.7
	자수	9	3.6	1	0.1	10	1.1
전체	250	100.0	672	100.0	922	100.0	

* 미상(비연쇄성 10건, 연쇄성 40건),마수, 예비는 제외 ($df=10$) $\chi^2=201.313^{***}$ *** $p<.001$

한편, 연쇄성 방화 유형별로 범행 후 행동을 살펴보면 연속방화의 경우 범행 후 도주한 비율이 전체의 74.0%, 다른 범행 장소로 이동한 경우가 12.2%, 현장체류 8.7%, 도주 후 현장방문이 2.4% 등이었고 연쇄방화의 경우는 도주가 전체의 86.4%, 소화 후 도주가 4.5%, 현장체류가 3.0% 등의 순으로 범행 후 행동에 있어서 그 차이가 나타났다($df=10, \chi^2=45.036^{***}$). 즉, 연속방화사건에서 보다 연쇄방화사건에서 피의자가 현장에서 바로 도주하는 경우가 많고 소화 후 도주 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3-4-66 연쇄성 방화 유형별 범행 후 행동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행 후 행동	현장체류	29	8.7	6	3.0	35	6.6
	도주	248	74.0	171	86.4	419	78.6
	소화 후 도주	5	1.5	9	4.5	14	2.6
	신고 후 도주	-	-	2	1.0	2	0.4
	도주 후 현장방문	8	2.4	1	0.5	9	1.7
	도주 후 자수	-	-	1	0.5	1	0.2
	범행장소로이동	41	12.2	4	2.0	45	8.4
	범행현장에서진입체포	-	-	2	1.0	2	0.4
	소화후다른범행장소로이동	3	0.9	-	-	3	0.6
	소화후체류	-	-	2	1.0	2	0.4
	자수	1	0.3	-	-	1	0.2
전체	335	100.0	198	100.0	533	100.0	

(df=10) $\chi^2 = 45.036^{***}$ ***p<.001

자. 범행의 자백 여부 및 자백 동기(경찰, 검찰, 법원)

1) 범행의 자백 여부 및 자백 동기(경찰)

경찰 단계에서 범행의 자백여부를 보면 비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에는 전체 251건 가운데 179건이 범행을 일체 자백한 경우로 전체의 71.3%를 차지하고 있고 범행에 대한 일부 자백이 44건(17.5%), 범행에 대한 전면 부인이 28건(11.2%)이었다.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에도 ‘일체 자백’이 75.0%, ‘일부 자백’(12.8%), ‘전면 부인’(12.1%) 순으로 나타나 비연쇄성 방화사건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3-4-67 범행의 자백 여부(경찰)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자백여부	자백	179	71.3	526	75.0	705	74.1
	일부 자백	44	17.5	90	12.8	134	14.1
	전면 부인	28	11.2	85	12.1	113	11.9
전체		251	100.0	701	100.0	952	100.0

(df=2) χ^2 =4.961 n.s.

한편,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한 동기를 보면 CCTV등의 증거물이 있는 경우가 전체 594건 가운데 208건으로 전체의 35.0%, 순순히 범죄를 인정한 경우는 34.5%, 죄책감으로 자백한 경우는 20.5%, 경위 등 추궁이나 압박으로 인해 자백한 경우는 8.9%, 경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자백은 1.0%였다.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는 순순히 범죄를 인정한 경우가 전체의 37.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죄책감’(33.2%), ‘증거 제시’(26.7%), ‘경위 등 추궁이나 압박’(2.5%)의 순이었다.

표 3-4-68 범행의 자백 동기(경찰)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여부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자백 동기 (경찰)	증거제시	54	26.7	208	35.0	262	32.9
	죄책감	67	33.2	122	20.5	189	23.7
	경위등추궁압박	5	2.5	53	8.9	58	7.3
	경찰두려움	-	-	6	1.0	6	0.8
	순순히범죄인정	76	37.6	205	34.5	281	35.3
전체		202	100.0	594	100.0	796	100.0

*중복응답

2) 범행의 자백 여부 및 자백 동기(검찰)

검찰단계에서 범행의 자백여부를 보면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경우가 전체 248건 가운데 196건으로 전체의 79.0%였고 ‘일부 자백’과 ‘전면 부인’이 각 10.5%였고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에도 모든 범행의 내용을 자백한 비율은 79.5%로 가장 많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한 비율은 13.8%, 범행에 대해 일부만 자백한 비율은 6.7%였다. 즉, 검찰단계에서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비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범행 내용에 대한 전면 부인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4-69 범행의 자백 여부(검찰)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자백여부	자백	196	79.0	536	79.5	732	79.4
	일부자백	26	10.5	45	6.7	71	7.7
	전면부인	26	10.5	93	13.8	119	12.9
전체		248	100.0	674	100.0	922	100.0

(df=2) $\chi^2 = 4.961$ n.s.

검찰단계에서의 범행의 자백동기를 살펴보면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는 순순히 범죄 인정하는 비율이 전체 210건 가운데 95건으로 4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죄책감’이 74건(35.2%), ‘증거 제시’가 38건(18.1%), ‘경위등 추궁압박’은 3건(1.4%) 이었고 연쇄성 방화사건에서도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가 44.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죄책감으로 자백했다는 비율이 25.3%, 증인이나 CCTV 등과 같은 증거물로 인해 자백한 비율이 23.2%, 경위 등 추궁 및 압박으로 인한 자백이 7.4%였다.

표 3-4-70 범행의 자백 동기(검찰)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여부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자백 동기 (검찰)	증거제시	38	18.1	141	23.2	179	21.9
	죄책감	74	35.2	154	25.3	228	27.8
	경위등추궁압박	3	1.4	45	7.4	48	5.9
	순순히범죄인정	95	45.2	269	44.1	364	44.4
전체		210	100.0	609	100	819	100.0

* 중복응답

3) 범행의 자백 여부 및 자백 동기(법원)

법원 단계에서 범행에 대한 자백 여부를 보면 비연쇄성 범죄의 경우 범행에 대한 일체 자백이 전체의 83.1%였고 ‘일부 자백’이 10.2%, ‘전면 부인’이 6.6%였고 연쇄성 방화범죄의 경우는 범행에 대한 ‘일체 자백’이 84.6%, ‘전면 부인’이 9.2%, ‘일부 자백’이 6.1%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범행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표 3-4-71 범행의 자백 여부(법원)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여부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자백여부	자백	138	83.1	540	84.6	678	84.3
	일부 자백	17	10.2	39	6.1	56	7.0
	전면 부인	11	6.6	59	9.2	70	8.7
전체		166	100.0	638	100.0	804	100.0

(df=2) $\chi^2 = 4.298$ n.s.

연쇄성 여부에 따라 법원단계에서의 자백 동기를 보면 비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죄책감으로 인한 자백은 40.0%를 차지하였고 순순히 범죄를 인정한 자백은 38.7%, 증거 제시를 통한 자백은 21.3%였다. 그리고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에는

순순히 범죄를 인정한 비율이 48.8%, 죄책감으로 인한 자백의 비율은 34.4%, 증거 제시를 통한 자백의 비율은 16.8%였다. 즉, 법원단계에서의 자백 동기에서도 방화사건의 연쇄성 여부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3-4-72 범행의 자백 동기(법원)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여부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자백 동기 (법원)	증거제시	32	21.3	105	16.8	137	17.7
	죄책감	60	40.0	215	34.4	275	35.5
	순순히범죄인정	58	38.7	305	48.8	363	46.8
전체		150	100.0	625	100.0	775	100.0

* 중복응답

차. 범행 후 반성 및 후회 정도(경찰, 검찰, 법원)⁶⁸⁾

1) 범행 후 반성 및 후회 정도(경찰)

방화범의 경찰단계에서 범행 후 반성 및 후회정도를 살펴본 결과, 비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는 ‘매우 후회한다’는 비율이 전체의 51.6%, ‘약간 후회한다’는 비율이 30.0%, ‘후회 안한다’는 비율이 18.4%였다.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는 ‘매우 후회한다’의 비율이 4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약간 후회한다’(43.4%), ‘후회 안한다’(12.9%)로 연쇄성 방화사건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 비연쇄성 방화사건을 저지른 사람에 비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었다($df=2$, $\chi^2=12.849^{**}$).

68) 미상과 자백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였다.

표 3-4-73 범행 후 반성 및 후회 정도(경찰)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행후 반성, 후회 정도(경찰)	매우 후회	112	51.6	262	43.7	374	45.8
	약간 후회	65	30.0	260	43.4	325	39.8
	후회 안함	40	18.4	77	12.9	117	14.3
전체		217	100.0	599	100.0	816	100.0

*미상과 자백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df=2, $\chi^2 = 12.849^{**}$ $^{***}p < .01$

연쇄성 방화 유형별 범행 후 반성 및 후회정도(경찰)를 살펴보면 연속방화의 경우는 범행에 대해 ‘매우 후회한다’는 비율이 47.9%, ‘약간 후회한다’는 비율이 43.5%, ‘후회 안한다’는 비율이 8.6%였고 연쇄방화의 경우는 범행에 대해 ‘약간 후회한다’는 비율이 48.6%로 가장 많았고 ‘매우 후회한다’는 비율이 35.7%, ‘후회 안한다’의 비율이 15.7%로 연속방화범이 연쇄방화범에 비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과 후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f=2, $\chi^2 = 9.672^{**}$).

표 3-4-74 연쇄성 방화 유형별 범행 후 반성 및 후회정도(경찰)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행후 반성, 후회 정도(경찰)	매우 후회	140	47.9	66	35.7	206	43.2
	약간 후회	127	43.5	90	48.6	217	45.5
	후회 안함	25	8.6	29	15.7	54	11.3
전체		292	100.0	185	100.0	477	100.0

*미상과 자백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df=2 $\chi^2 = 9.672^{**}$ $^{***}p < .01$

2) 범행 후 반성 및 후회 정도(검찰)

검찰단계에서의 범행 후 반성 및 후회정도를 살펴보면, 비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매우 후회’가 전체 179건 가운데 100건으로 전체의 55.9%였고, ‘약간 후회’는 32.4%, ‘후회 안함’은 11.7%였다.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

에 대해 ‘매우 후회한다’(55.4%), ‘약간 후회한다’(36.8%), ‘후회 안한다’(7.9%)의 순으로 비연쇄성 방화사건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경찰 단계에서의 반성 및 후회정도와 마찬가지로 연쇄성 방화범이 비연쇄성 방화범에 비해 자신의 범행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75 범행 후 반성 및 후회 정도(검찰)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행후 반성 후회 정도(검찰)	매우 후회	100	55.9	289	55.4	389	55.5
	약간 후회	58	32.4	192	36.8	250	35.7
	후회 안함	21	11.7	41	7.9	62	8.8
전체		179	100.0	522	100.0	701	100.0

*미상과 자백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df=2) $\chi^2 = 2.989$ n.s.

한편, 연쇄성 방화유형별로 범행 후 반성 및 후회 정도에서는 그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난다. 즉, 연속방화의 경우 범행에 대해 ‘매우 후회 한다’의 비율이 61.9%(151건), ‘약간 후회 한다의 비율’이 34.0%(83건), ‘후회 안 한다’의 비율이 4.1%(10건)였고, 연쇄방화의 경우에는 범행에 대해 ‘매우 후회한다’의 비율이 47.8%(77건), ‘약간 후회한다’의 비율이 40.4%(65건), ‘후회 안 한다’의 비율이 11.8%(19건)로 나타나 연속방화범이 연쇄방화범에 비해 검찰단계에서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f=2, $\chi^2 = 12.516^{**}$).

표 3-4-76 연쇄성 방화 유형별 범행 후 반성 및 후회 정도(검찰)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행후 반성 후회 정도(검찰)	매우 후회	151	61.9	77	47.8	228	56.3
	약간 후회	83	34.0	65	40.4	148	36.5
	후회 안함	10	4.1	19	11.8	29	7.2
전체		244	100.0	161	100.0	405	100.0

*미상과 자백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df=2 $\chi^2 = 12.516^{**}$ ***p<.01

3) 범행 후 반성 및 후회 정도(법원)

범행 후 법원단계에서의 반성 및 후회정도를 살펴보면 연쇄성 방화사건 피의자의 경우 전체의 72.5%가 매우 후회하고 있었고 22.4%가 약간 후회, 후회 안하는 경우는 5.1%에 해당하였다. 한편 비연쇄성 방화사건의 피해자의 경우는 후회안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10.8%로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df=2, $\chi^2=6.942^*$.) 즉,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비연쇄성 방화범에 비해 공판단계에서도 범행에 대한 후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77 범행 후 반성 및 후회 정도(법원)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행후 반성 후회 정도(법원)	매우 후회	90	64.7	399	72.5	489	71.0
	약간 후회	34	24.5	123	22.4	157	22.8
	후회 안함	15	10.8	28	5.1	43	6.2
전체		139	100.0	550	100.0	689	100.0

*미상과 자백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chi^2 = 6.942^*$ df=2 *p<.05

한편, 연쇄성 방화 유형별 범행 후 반성 및 후회정도(법원)를 보면 연속방화의 경우 ‘매우 후회한다’가 전체의 78.8%, ‘약간 후회’가 18.9%, ‘후회 안함’이 2.3%였고 연쇄방화의 경우에는 ‘매우 후회한다’가 66.1%, ‘약간 후회’가 26.0%, ‘후회 안함’은 7.9%로 일정한 냉각기를 두고 범행을 저지른 연쇄방화범의 경우는 연속방화범에 비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반성과 후회를 안 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f=2, $\chi^2=11.872^{**}$).

표 3-4-78 연쇄성 방화 유형별 범행 후 반성 및 후회 정도(법원)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행후 반성, 후회 정도(법원)	매우 후회	204	78.8	117	66.1	321	73.6
	약간 후회	49	18.9	46	26.0	95	21.8
	후회 안함	6	2.3	14	7.9	20	4.6
전체		259	100.0	177	100.0	436	100.0

*미상과 자백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df=2 $\chi^2 = 11.872^{**}$ **p<.01

카. 공범의 유무 및 공범간의 관계

1) 공범의 유무 및 공범의 수

개별 방화사건이 2회 이상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공범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92.3%를 차지하였고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도 91.2%가 공범 없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명 이상 모여 범행을 저지른 사건의 비율을 보면 비연쇄성 방화사건이 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공범의 수가 많았다(df=3, $\chi^2 = 15.970^{**}$). 즉,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 공범이 한명인 경우가 9건(3.4%), 3명 이상인 경우가 7건(2.7%), 2명인 경우가 6건(2.3%)으로 나타났다 연쇄성 방화사건에서는 공범이 1명인 경우가 31건(4.3%), 2명인 경우가 23건(3.2%)이고 3명 이상인 경우는 1건(0.1%)에 불과했다.

표 3-4-79 공범 유무 및 공범의 수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여부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공범 없음		240	91.6	661	92.3	901	92.1
공범 있음	1명	9	3.4	31	4.3	40	4.1
	2명	6	2.3	23	3.2	29	3.0
	3명 이상 ⁶⁹⁾	7	2.7	1	0.1	8	0.8
전체		262	100.0	716	100.0	978	100.0

(df=3) $\chi^2 = 15.970^{**}$ **p<.01

한편, 피의자의 성별에 따른 공범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 같은 남성인 비율이 79.2%(42건)였고 여성과 함께 저지른 비율은 11.3%(6건), 혼성인 비율이 9.4%(5건)였고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는 같은 동성끼리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전체의 77.3%였고 이성간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9.1%, 혼성 간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13.6%였다. 한편,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는 비연쇄성 방화와 연쇄성 방화사건 모두 공범자가 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비연쇄성 방화: 1건, 연쇄성 방화: 2건).

표 3-4-80 공범자의 성별

(단위: 건 %)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공범자의 성별	남성	17	77.3	42	79.2	59	78.7
	여성	2	9.1	6	11.3	8	10.7
	남녀	3	13.6	5	9.4	8	10.7
전체		22	100.0	53	100.0	75	100.0

(df=2) $\chi^2 = .338$ n.s.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공범자의 성별	남자	1	100.0	2	100.0	3	100.0
전체		1	100.0	2	100.0	3	100.0

연쇄성 방화유형별 공범 유무 및 공범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4-81>과 같다. 즉, 연속방화의 경우 전체 354건 가운데 322건이 ‘공범 없음’(91.0%)이며 ‘공범 있음’은 32건으로 전체의 9.0%로 나타났고 연쇄방화의 경우에는 ‘공범 없음’이 전체의 93.2%, ‘공범 있음’이 6.8%로 연쇄방화의 경우 연속방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범 없이 단독으로 저지르는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69)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 공범이 4명인 경우는 3건, 5명은 3건, 6명은 1건이었고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공범이 5명인 경우가 1건이었다.

표 3-4-81 연쇄성 방화 유형별 공범 유무 및 공범자 수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공범 없음		322	91.0	203	93.2	525	91.8
공범있음	1명	16	4.5	10	4.6	26	4.5
	2명	16	4.5	5	2.2	21	3.7
전체		354	100.0	218	100.0	572	100.0

(df=2) $\chi^2 = 1.891$ n.s

연쇄성 방화 유형별로 공범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표 3-4-82>와 같다. 즉, 연속방화사건에서 피의자가 남성인 경우, 공범이 남성인 비율이 83.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공범이 남성과 여성이 모두인 비율은 10.0%, 공범이 여성인 비율은 6.7%였으며 연쇄방화사건에서는 동성끼리 저지른 비율은 66.7%, 이성끼리 저지른 비율은 20.0%, 혼성 간 저지른 비율은 13.3%였다. 한편, 피의자가 여성인 경우는 연속방화 사건에서 남성과 함께 저지른 사건만(2건) 있었다.

표 3-4-82 연쇄성 방화 유형별 공범자의 성별

(단위: 건 %)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공범자의 성별	남성	25	83.3	10	66.7	35	77.8
	여성	2	6.7	3	20.0	5	11.1
	남녀	3	10.0	2	13.3	5	11.1
전체		30	100.0	15	100.0	45	100.0

(df=2) $\chi^2 = 2.057$ n.s.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공범자의 성별	남자	2	100.0	-	-	2	100.0
전체		2	100.0	-	-	2	100.0

2) 공범과의 관계

공범이 있는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공범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구 및 선배가 전체의 87.3%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회사상사와 함께 한 경우도 10.9%로 나타났다. 한편 비연쇄성 방화사건인 경우 역시 친구 및 선배가 73.9%로 가장 많았지만, 그 다음으로 가족이 13.0%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모르는 사람과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다(df=5, $\chi^2=17.622^{**}$).

표 3-4-83 공범과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공범과의 관계	모르는 사람	2	8.7	-	-	2	2.6
	가족	3	13.0	-	-	3	3.8
	친척	1	4.3	-	-	1	1.3
	친구 및 선배	17	73.9	48	87.3	65	83.3
	애인	-	-	1	1.8	1	1.3
	회사상사	-	-	6	10.9	6	7.7
전체	23	100.0	55	100.0	79	100.0	

(df=5) $\chi^2 = 17.622^{**}$ $^{***}p < .01$

연쇄성 방화 유형별로 공범과의 관계를 보면 연속방화에서는 공범이 친구나 선배인 경우가 전체 31건 가운데 25건으로 80.6%, 회사 상사인 경우가 6건으로 19.4%였다. 연쇄방화에서는 전체 16건 가운데 15건이 친구와 선배와 함께 저지른 경우였고 애인과 함께 저지른 경우도 1건 있었다.

표 3-4-84 연쇄성 방화 유형별 공범과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공범과의 관계	친구 및 선배	25	80.6	15	93.8	40	85.1
	애인	-	-	1	6.3	1	2.1
	회사상사	6	19.4	-	-	6	12.8
전체		31	100.0	16	100.0	47	100.0

(df=2) $\chi^2 = 5.247$ n.s.

3) 가해자의 역할

방화 사건에서 공범이 있는 경우 해당 가해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인 경우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94.6%). 한편,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 가해자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는 81.0%로 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단순가담의 비율이 높았다(df=2, $\chi^2 = 8.325^*$). 즉,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해당 사건에서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가져다 주거나 불을 붙이는 행위를 지켜만 보거나 망을 보거나 하는 등의 행위보다 직접 범행 대상에 불을 붙이는 등의 주도적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연쇄성 방화범의 경우는 주도적 행위를 한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보조적 역할과 단순 가담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연쇄성 방화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4-85 가해자의 역할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가해자의 역할	주도적 역할	17	81.0	53	94.6	70	90.9
	보조적 역할	1	4.8	3	5.4	4	5.2
	단순 가담	3	14.3	-	-	3	3.9
전체		21	100.0	56	100.0	77	100.0

(df=2) $\chi^2 = 8.325^*$ *p<.05

연쇄성 방화 유형별로 가해자의 역할을 보면 연속방화의 경우에는 주도적 역할을 한 비율이 97.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쇄방화에서는 86.7%로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연쇄방화의 경우에도 공범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해자가 주도적 역할 하는 비율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86 연쇄성 방화 유형별 가해자의 역할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가해자의 역할	주도적 역할	32	97.0	13	86.7	45	93.8
	보조적 역할	1	3.0	2	13.3	3	6.3
전체		33	100.0	15	100.0	48	100.0

(df=1) $\chi^2 = 1.868$ n.s.

3. 피해 내용

가.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는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전체 682건 가운데 472건으로 전체의 약 7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안면이 있는 사람(6.0%)’, ‘지하철이나 공공화장실과 같은 공공시설물’(5.7%) 등의 순이었다. 한편, 비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는 ‘모르는 사람’의 경우가 31.5%에 불과하여 연쇄성 방화사건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즉, 앞서 살펴본 범행 장소가 피해자 관련 장소인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에서처럼 범행 장소가 피해자 관련 장소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표 3-3-38 참고). 다시 말해서, 비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보복과 원한 등으로 방화를 하는 비율이 높지만,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방화의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3-4-87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모르는 사람	84	31.5	472	69.2	556	58.6
	가족, 친척	41	15.4	22	3.2	63	6.6
	친구	6	2.2	6	0.9	12	1.3
	회사동료	2	0.7	15	2.2	17	1.8
	이웃	18	6.7	24	3.5	42	4.4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	32	12.0	30	4.4	62	6.5
	안면이 있는 사람	20	7.5	41	6.0	61	6.4
	본인	12	4.5	8	1.2	20	2.1
	애인	20	7.5	15	2.2	35	3.7
	공공시설물	22	8.2	39	5.7	61	6.4
	기타	10	3.7	10	1.5	20	2.1
전체	267	100.0	682	100.0	949	100.0	

* 중복응답

한편, 연쇄성 방화사건 가운데 피의자의 성별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다른지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는 ‘모르는 사람’이 68.8%, ‘안면이 있는 사람(6.1%)’, ‘공공시설물(5.9%)’, ‘회사상사나 집주인 등의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4.4%)’, ‘이웃(3.6%)’ 등의 순이었고 여성의 경우는 ‘모르는 사람’이 75.0%, ‘가족이나 친척’이 10.0%,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 각 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 피의자가 남성인 경우는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이 32.5%, ‘가족이나 친척’이 15.9%,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11.7%) 등의 순이었고 여성인 경우도 ‘모르는 사람’이 전체의 23.2%로 가장 많기는 하지만 그 비율이 높지는 않았고 그 다음으로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이 15.4%, ‘가족이나 친척’이 11.5% 등의 순으로 나타나 남성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비연쇄성 방화사건과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보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관계가 상이하여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표 3-4-88 성별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단위: 건 %)

연쇄성 방화사건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가해 자와 피해 자와의 관계	모르는 사람	441	68.8	30	75.0	471	69.2
	가족, 친척	18	2.8	4	10.0	22	3.2
	친구	6	0.9	-	-	6	0.9
	회사동료	15	2.3	-	-	15	2.2
	이웃	23	3.6	1	2.5	24	3.5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	28	4.4	2	5.0	30	4.4
	안면이 있는 사람	39	6.1	2	5.0	41	6.0
	본인	8	1.2	-	-	8	1.2
	애인	15	2.3	-	-	15	2.2
	공공시설물	38	5.9	1	2.5	39	5.7
	기타 ⁷⁰⁾	10	1.6	-	-	10	1.5
전체	641	100.0	40	100.0	681	100.0	
비연쇄성 방화사건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가해 자와 피해 자와의 관계	모르는 사람	78	32.5	6	23.2	84	31.5
	가족, 친척	38	15.9	3	11.5	41	15.4
	친구	4	1.7	2	7.7	6	2.2
	회사동료	1	0.1	1	3.8	2	0.7
	이웃	16	6.6	2	7.7	18	6.7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	28	11.7	4	15.4	32	12.1
	안면이 있는 사람	18	7.5	2	7.7	20	7.5
	본인	10	4.1	2	7.7	12	4.5
	애인	19	7.9	1	3.8	20	7.5
	공공시설물	20	8.3	2	7.7	22	8.2
	기타 ⁷¹⁾	9	3.7	1	3.8	10	3.7
전체	241	100.0	26	100.0	267	100.0	

* 중복응답

70) 기타로는 세입자, 전 회사동료, 전부인(애인), 채무 관계 등이 있었다.

71) 기타로는 목사, 기도원집사, 전애인 등이 있었다.

연쇄성 방화 유형별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3-4-89>와 같다. 즉, 연속방화의 경우 ‘모르는 사람’이 전체의 77.4%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안면이 있는 사람(4.8%)’, ‘공공시설물(4.5%)’, ‘회사동료’와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이 각 3.0% 등으로 나타났다. 연쇄방화의 경우는 ‘모르는 사람’이 68.0%, ‘안면이 있는 사람(7.9%)’, ‘이웃(6.4%)’, ‘공공시설물(4.9%)’,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4.4%)’ 등의 순으로 연속방화사건에 비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 적었다.

표 3-4-89 연쇄성 방화 유형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가해 자와 피해 자 와의 관계	모르는 사람	260	77.4	138	68.0	398	73.8
	가족·친척	7	2.1	6	3.0	13	2.4
	친구	1	0.3	4	2.0	5	0.9
	회사동료	10	3.0	—	—	10	1.9
	이웃	5	1.5	13	6.4	18	3.3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	10	3.0	9	4.4	19	3.5
	안면이 있는 사람	16	4.8	16	7.9	32	5.9
	본인	2	0.6	2	1.0	4	0.7
	애인	4	1.2	4	2.0	8	1.5
	공공시설물	15	4.5	10	4.9	25	4.6
	기타	6	1.8	1	0.5	7	1.3
전체	336	100.0	203	100.0	539	100.0	

* 중복응답

나. 피해 금액

방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 금액을 살펴본 결과,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가 전체 402건 가운데 123건으로 전체의 30.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18.4%), ‘10만원 이하’(13.2%),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11.4%), ‘5만원 초

과 1천만원 이하’(9.5%)등의 순이었다. 한편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는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가 전체의 2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21.0%),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15.3%), ‘5만원초과 1천만원 이하’(12.1%), ‘5천만원 초과’(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물론, 연쇄성 여부에 따른 피해 금액의 차이가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연쇄성 방화범죄 사건에서의 피해금액이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의 피해금액 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었다. 즉,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가 전체의 약 44%이상을 차지한 반면, 개별 방화사건이 1회에 그친 경우는 피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약 31%정도로 개별 방화사건이 2회 이상 발생 경우의 피해금액이 소액인 비율이 더 높았다.

표 3-4-90 피해 금액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피해 금액	10만원 이하	11	7.0	53	13.2	64	11.4
	100만원 이하	38	24.2	123	30.6	161	28.8
	300만원 이하	33	21.0	74	18.4	107	19.1
	500만원 이하	8	5.1	27	6.7	35	6.3
	1천만원 이하	19	12.1	38	9.5	57	10.2
	3천만원 이하	24	15.3	46	11.4	70	12.5
	5천만원 이하	11	7.0	12	3.0	23	4.1
	5천만원 초과	13	8.3	29	7.2	42	7.5
전체		157	100.0	402	100.0	559	100.0

(df=7) $\chi^2 = 12.959$ n.s.

연쇄성 방화 유형별로 피해 금액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3-4-91>과 같다. 즉, 연속방화는 전체 195건 가운데 62건이 피해금액이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로 전체의 3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가 22.1%, ‘10만원 이하’가 13.3%, ‘500만원 초과 천만원 이하’가 9.7%,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가 9.2%, ‘5천만원 초과’는 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쇄방화는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가 32.3%,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가 16.1%, ‘300

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와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가 각 12.1%, '10만원 이하'가 11.3%, '500만원 초과 천만원 이하'가 7.3%등의 순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표 3-4-91 연쇄성 방화 유형별 피해 금액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방화				전체		
	연속		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피해 금액	10만원 이하	26	13.3	14	11.3	40	12.5
	100만원 이하	62	31.8	40	32.3	102	32.0
	300만원 이하	43	22.1	20	16.1	63	19.7
	500만원 이하	10	5.1	15	12.1	25	7.8
	1천만원 이하	19	9.7	9	7.3	28	8.8
	3천만원 이하	18	9.2	15	12.1	33	10.3
	5천만원 이하	4	2.1	5	4.0	9	2.8
	5천만원 초과	13	6.7	6	4.8	19	6.0
전체	195	100.0	124	100.0	319	100.0	

(df=7) $\chi^2 = 8.915$ n.s.

다. 인명 피해 정도

1) 인명 피해 유무 및 인명 피해자의 총 수

해당 사건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있었는지 살펴본 결과,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가 716건 가운데 705건으로(98.5%)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는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가 42건으로 1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 많은 것으로 보인다(df=1, $\chi^2 = 80.496^{***}$). 이는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기 위해 불을 지르기 보다는 단지 불을 지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4-92 인명 피해 유무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피해 유무	인명피해 있었음	42	16.3	11	1.5	53	5.4
	인명피해 없었음	215	83.7	705	98.5	920	94.6
전체		257	100.0	716	100.0	973	100.0

(df=1) $\chi^2 = 80.496^{***}$ $***p < .001$

인명 피해가 있었던 사건 가운데 개별 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수를 보면, 연쇄성 방화사건인 경우 전체 11건 가운데 피해자가 1명인 경우가 7건(63.6%), 10명은 2건(18.2%), 2명과 6명이 각 1건(9.1%)이었다. 그리고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는 인명 피해가 있었던 42건 가운데 피해자가 1명인 경우가 28건(66.7%), 2명이 6건(14.3%), 3명이 3건(7.1%), 7명이 2건(4.8%), 4명과 16명, 21명인 경우가 각 1건(2.4%)이었다.

표 3-4-93 인명 피해자의 총 수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피해자의 총 수	1명	28	66.7	7	63.6	35	66.0
	2명	6	14.3	1	9.1	7	13.2
	3명	3	7.1	-	-	3	5.7
	4명	1	2.4	-	-	1	1.9
	6명	-	-	1	9.1	1	1.9
	7명	2	4.8	-	-	2	3.8
	10명	-	-	2	18.2	2	3.8
	16명	1	2.4	-	-	1	1.9
21명	1	2.4	-	-	1	1.9	
전체		42	100.0	11	100.0	53	100.0

(df=8) $\chi^2 = 13.740$ n.s.

2) 인명 피해 유형

인명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표 3-4-94>에서 나타나듯이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부상자만 발생한 사건 수는 11건 가운데 8건(72.7%)이고 사망자만 발생한 사건 수는 2건(18.2%), 부상자와 사망자가 모두 발생한 사건 수는 1건(9.1%)이었다.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는 전체 42건 가운데 부상자만 발생한 경우는 28건(66.7%), 사망자만 발생한 경우는 10건(23.8%), 부상자와 사망자 모두 발생한 경우는 4건(9.5%)이었다.

표 3-4-94 인명 피해 유형

(단위: 건 %)

구분		비연쇄성/연쇄성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인명 피해 유형	부상자 발생	28	66.7	8	72.7	36	67.9
	사망자 발생	10	23.8	2	18.2	12	22.6
	부상자, 사망자 발생	4	9.5	1	9.1	5	9.4
	전체	42	100.0	11	100.0	53	100.0

(df=2) $\chi^2 = 1.71$ n.s.

한편, 개별 사건에서 2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전체 4건 가운데 2건이 ‘이웃’이었고 ‘모르는 사람’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 각 1건이었다. 그리고 비연쇄성 방화사건에서는 전체 13건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웃(4건)’, ‘가족’과 ‘친구’, ‘안면이 있는 사람’, ‘세입자’가 각 1명씩이었다.

표 3-4-95 2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 간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연쇄성 여부				전체	
		비연쇄성		연쇄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피해자 사이의 관계	모르는 사람	5	38.4	1	25.0	6	35.3
	가족	1	7.7	-	-	1	5.9
	친구	1	7.7	-	-	1	5.9
	이웃	4	30.8	2	50.0	6	35.3
	인면이 있는 사람	1	7.7	1	25.0	2	11.8
	세입자	1	7.7	-	-	1	5.9
전체		13	100.0	4	100.0	17	100.0

* 미상(비연쇄성 방화: 1건) 제외

(df=5) $\chi^2 = 2.179$ n.s.

제5절 소결

본 연구에서는 연쇄성 방화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방화사건에 대한 기록 조사를 실시하여 148명의 연쇄성 방화범이 저지른 716건에 대한 방화사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쇄성 방화범의 일반적 특성

연쇄성 방화범은 남성이 절대 다수이고 30대 이하의 비율이 약 60% 이상이며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무학에서부터 중졸 이하의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하여 교육 수준이 낮은 편이다. 그리고 연쇄성 방화범은 범행 당시 신체장애와 정신 질환 및 정신장애가 없는 정상인으로 결혼은 하지 않았고 일정한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며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연쇄성 방화범의 어릴 적 경험을 살펴본 결과, 친부모에 의해 양육된 비율이 50% 이상이라는 하였지만 가족 간 관계에 있어서는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학대 경험과 가출 경험이 있는 비율이 약 10% 정도였다. 그리고 연쇄성 방화범의 범죄경력을 살펴보면 과거 이종 전과를 가진 경우가 전체의 약 60% 이상

을 차지하였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종 전과 4범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연쇄성 방화범 가운데 방화와 같은 동종 전과를 가진 비율은 약 13%에 불과했다.

한편, 연쇄성 방화범과 비연쇄성 방화범과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연령과 혼인상태 그리고 어릴 적 학대 경험이었다. 즉, 연쇄성 방화범은 비연쇄성 방화범에 비해 연령이 낮았고 미혼 상태와 어릴 적 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2. 연쇄성 방화사건의 특징

연쇄성 방화사건의 특징은 크게 범죄처리의 과정과 결과, 범행 내용 그리고 피해 내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연쇄성 방화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연쇄성 방화사건은 경찰이 인지하거나 탐문 수사를 통해 3일 이내 범인이 검거되는 경우가 많았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검찰처리 결과의 약 90%가 구공판이었다. 공판 결과, 최종판결이 1심에서 나오는 경우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았고 구형량을 살펴보면 유기징역이 90%이상이었고 징역 3년이 가장 많았다. 특히, 이러한 특징들은 비연쇄성 방화사건과 차이가 커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연쇄성 방화사건은 비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범인을 검거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 해당 기간 동안 연쇄성 방화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과 긴장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피의자 구속 수사와 구공판의 비율이 더 높았고 2심과 3심까지 공판이 진행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두 번째, 연쇄성 방화사건의 범행관련 내용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연쇄성 방화사건은 사전에 범행에 대한 계획 없이 술을 먹고 단독으로 새벽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서 불을 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범행 대상은 실내인 경우(50.6%)가 실외인 경우(49.4%)보다 약간 많았으며 실외에서 주로 범행 대상이 되는 경우는 쓰레기통이나 버려진 물건이나 자동차, 거리의 현수막이나 플랜카드 등이었고 실내에서는 주거지와 상가 및 가게, 화장실과 같은 공공시설 등이었다. 그리고 사건 발생장소는 피의자의 주거지로부터 2km이내인 경우가 약 70%였고 범행 장소들 간 거리 역시 2km이내가 약 90%를 차지하여 평소 친밀성이

있는 장소로 범행 당시 걸어서 이동하였고 범행 후에는 방화 도구를 가지고 바로 현장을 빠져나오는 경우가 약 70%를 차지하였다. 한편, 범행의 동기로는 개인적 원한과 자신의 처지 비관, 사회적 열등감 등의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 이었고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로 인한 방화도 15.6%를 차지하였다.

특히, 사건 발생 시간과 범행 대상이 실내인지 실외인지의 여부, 범행 장소의 친밀성, 범행 장소까지의 이동수단, 가해자 주거지로부터 방화 장소까지의 거리, 범행 시 음주여부, 범행 후 행동, 반성 및 후회 정도에서 연쇄성 방화사건과 비연쇄성 방화사건 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즉, 연쇄성 방화사건에서는 비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새벽에 발생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범행 당시 술을 먹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고 범행 장소가 피의자의 주거지로부터 더 가깝고 친밀한 장소로 범행 대상이 실외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범행 당시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범행 후에는 현장에서 바로 벗어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비연쇄성 방화범에 비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

세 번째, 연쇄성 방화사건의 피해 내용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르는 관계인 경우가 약 70%로 불특정인에 대한 방화의 비율이 높았고 피해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약 4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연쇄성 방화가 왜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가이다. 각 사회는 그 사회에 상응한 범죄를 생산해 낸다는 말에서도 나타나듯이 개인의 범죄행위는 사회적 차원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발생하는 연쇄성 방화를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쇄성 방화범의 가정과 사회 내 경험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연쇄성 방화 범죄를 양산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와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연쇄방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 즉, 연쇄성 방화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과 이해는 본 연구와 같은 연쇄방화 특징에 대한 기초 연구가 축적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이에 향후 연쇄방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와 연쇄방화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기대해 본다.

3. 연쇄성 방화유형별 특징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2회 이상의 방화가 발생한 경우를 ‘연쇄성 방화’라 규정하고 이를 다시 범행 사이의 심리적 냉각기가 없이 하루 동안 지속적으로 방화가 발생한 경우인 ‘연속방화’와 하루 이상의 심리적 냉각기를 두고 발생하는 방화인 ‘연쇄방화’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연쇄성 방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심리적 냉각기 여부에 따라 방화범과 방화범죄 관련 특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분석 과정은 향후 연쇄범죄 관련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쇄에 대한 표준화된 개념 제안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쇄성 방화유형별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⁷²⁾

먼저, 연쇄성 방화범의 개인적 특성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방화범의 범행 당시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쇄방화범의 경우는 70%이상을 차지한 반면 연속방화범의 경우는 절반 정도로 연쇄방화범의 연령이 연속방화범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특히, 연쇄방화범의 경우에서 나타난 10대와 20대의 높은 비율은 청소년과 젊은 청년들에 의한 연쇄방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심각성이 더 하다. 그리고 연쇄방화범 가운데 어릴 적 학대경험과 가출경험이 있는 경우가 연속방화범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과 사회 내 경험과 연쇄방화간의 관계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두 번째, 연쇄성 방화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난 특성이다. 연쇄방화사건은 연속방화사건에 비해 범인을 검거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어 연쇄방화가 발생하였을 때 겪는 우리 사회의 불안감과 위기감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예상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쇄방화사건의 경우 최종 판결이 1심에서 내려지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연속방화사건에 비해 많았다.

세 번째, 연쇄성 방화사건에 대한 범행 내용에서 나타난 특성이다. 연속방화사건의 경우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연쇄방화사건에 비해 많았고 범행 후 행동에 있어서 연속방화의 경우 범행 후 도주한 비율이 연쇄방화에 비해서는 낮았으며 범행에 대한 반성과 후회정도에 있어서 후회하는 비율이 상

72) 연속방화와 연쇄방화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던 결과들만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대적으로 더 높았다. 즉, 연속방화사건은 술을 먹고 술김에 새벽 내내 불을 지르며 돌아다닌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었다.

이처럼 연쇄성 방화유형에 따라 방화범의 개인적 특성이나 범행관련 내용 등에서 특징적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연쇄성 방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심리적 냉각기가 없는 연속방화와 하루 이상의 심리적 냉각기를 둔 연쇄방화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이에 앞으로 연쇄방화 연구에서 심리적 냉각기 측정 기준에 대한 보다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4장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연쇄성 방화의 특성

박형민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연쇄성 방화의 특성

제1절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면접대상자의 개략적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표 4-1-1>과 같다.

면접에 동의한 수용자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나이는 20대 3명, 30대 9명, 40대 4명, 50대 5명, 60대 1명이었다. 직업은 무직이 4명, 단순 노동직이 16명, 숙련노동직이 2명이었으며,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 6명, 중학교 중퇴 3명, 중학교 졸업 1명, 고등학교 중퇴 2명, 고등학교 졸업 4명, 전문대 이상 5명 등이다. 이들의 혼인 상태는 미혼 15명, 이혼 4명, 사별 1명, 기혼 2명 등이다.

표 4-1-1 면접 대상 방화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나이	직업	정신장애	학력	혼인상태
1	52세	무직	정상	고등학교 1 중퇴	이혼 (사실혼)
2	42세	고물상	정신장애2급	초등학교 2학년 중퇴	미혼
3	25세	무직	정상	중학교 중퇴	미혼
4	38세	신문배달	정상	중학교졸	미혼
5	38세	용접공	우울증	고등학교졸	이혼
6	49세	무직	정상	대학교 중퇴	이혼
7	38세	자동차 청소	정상	고등학교졸	미혼

연쇄강력범죄 실태조사(I)

사례	나이	직업	정신장애	학력	혼인상태
8	57세	벌목공	정상	초등학교 5학년 중퇴	사별 후 동거
9	28세	단순 생산직	정신지체3급	고등학교졸	미혼
10	36세	공공근로	우울증	초등학교 2학년 중퇴	미혼
11	57세	단순 생산직	우울증	초등학교 2학년 중퇴	미혼
12	53세	기능직	순간충동조절장애	중학교 2학년 중퇴	이혼
13	61세	일용직(노동)	정상	초등학교 2학년 중퇴	미혼
14	34세	단순 생산직	정상	중학교 중퇴	미혼
15	34세	영업직	정상	대학졸	미혼
16	38세	단순 생산직	정신분열증	고등학교졸	기혼
17	57세	잡역	정상	초등학교 2학년 중퇴	미혼
18	48세	단순 생산직	정상	전문대학졸	이혼
19	31세	단순 서비스업	정상	전문대졸	미혼
20	41세	농업	정신지체2급	고등학교졸	미혼
21	22세	일용직(노동)	정신지체	고등학교 2학년 중퇴	미혼
22	37세	무직	정상	방통대 중퇴	미혼

면접 대상 방화사건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4-1-2>와 같다. 대상 사건의 유형을 살펴보면(중복집계), 연쇄방화가 12건, 연속방화가 11건, 방화전과가 있었던 것은 5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사건 발생일시 및 장소, 범행지 친밀도는 <표 4-1-2>를 참조하라.

표 4-1-2 면접 대상 방화 사건의 일반적 특성

사례	사건발생일시	사건발생장소	범행지 친밀도	방화유형
1	2011. 11. 08. 20:00경 2011. 12. 14. 21:25경	아파트	거주지	연쇄
2	2011. 11. 28. 04:40경 2011. 11. 28. 04:50경	숙박업소	평소 자주 가는 곳	연쇄, 연속, 방화전과
3	2010. 12. 13. 21:50경 2010. 12. 13. 21:52경	노상	거주지	연쇄, 연속
4	2010. 10. 08. 06:53-07:19 2010. 12. 16. 06:20 2010. 12. 25. 06:45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	평소 잘다니던 길쪽 건물	연속, 연쇄
5	2011. 03. 10. 03:30 2011. 03. 10. 05:40경	창고, 나이트 클럽, 나이트클럽 숙소, 산	다니는 직장 / 자주가는 가게	연쇄, 연속
6	2011. 5. 8. 22:02경 2011. 5. 8. 22:10경	주택가	자주 가는 곳	연속

제4장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연쇄성 방화의 특성

사례	사건발생일시	사건발생장소	범행지 친밀도	방화유형
7	2012. 03. 13. 21:30경 2012. 03. 13. 21:40경 2012. 03. 13. 21:43 2012. 03. 13. 21:47경 2012. 03. 13. 21:50경	아파트 단지	처음 기본 곳	연속
8	2011. 04. 17. 01:20경 2011. 04. 17. 02:50경	일반 주택	동거하던 곳	연속
9	2012. 04. 26. 23:35경	공원내 체육시설	다니던 교회 앞	방화전과
10	2011. 03. 19. 02:00경	다방 앞 출입문	평소 다니던 곳	연쇄
11	2011. 12. 13. 00:57경 2011. 12. 17. 04:06경	교회주차장(지동차)	몇 번 간 교회	연쇄 연속
12	2011. 03. 12. 16:49경 2011. 03. 12. 18:40경 2011. 03. 13. 17:40경 외	산책로 등산로	거주지 뒷산	연쇄
13	2011. 06. 28. 19:40경	인력사무소 건물	매일 가는 곳	방화전과
14	2011. 03. 07. 03:39경	재래시장 거리	자주 왔다갔다 함	연속
15	2011. 09. 08. 23:46경 2011. 09. 09. 00:12경	다세대 주택 주차장	여자친구 집	연속
16	2010. 11. 07. 16:20경	주택가	평소 다니던 곳	연쇄
17	2011. 10. 02. 21:30경 2011. 10. 02. 23:50경	아파트 단지	자주 왔다갔다 함	연속
18	2010. 12. 25. 21:00경	숙박업소	몇번 간적이 있음	방화전과
19	2011. 08. 05. 03:50경 2011. 08. 17. 02:47경 2011. 08. 22. 02:40경 2011. 09. 14. 01:20경	주택가	거주지 앞	연쇄
20	2012. 04. 11. 14:52경	시장내창고	몇번 간적이 있음	방화전과
21	2010. 04.17. 11:00경 2010. 04.17. 13:30경 2010. 04.11. 00:15경	주차장	거주지 주변	연쇄
22	2010. 09. 29. 03:50경 2010. 09. 29. 03:50경 2010. 03. 05. 02:00-02:05경 2010. 03. 20. 04:00경	주택가	거주지 주변	연쇄

제2절 범죄 특성

1. 범행 시간과 공간

가. 시간

분석대상이 된 사례들이 발생한 시간은 대부분 밤에서 새벽 사이의 시간이었다.

연쇄 방화 범죄의 경우 다른 날짜에 발생한 사건도 발생시간은 거의 비슷한 시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례 4>의 경우 3건의 방화사건이 새벽 6시-7시 사이에 발생했으며, <사례 12>의 경우 68회의 방화사건이 오후 4시-6시 사이에 발생하였다. <사례 19>도 4건의 방화 사건이 새벽 시간에 발생하였으며, <사례 22> 역시 4건의 방화사건이 새벽 2시-4시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다.

연속 방화 사건의 경우에는 약 1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여러건의 방화 사건이 집중되어 있었다. 22건의 연속방화를 저지른 <사례 14>의 범죄자도 1시간 가량 동안 불을 지른 것이었으며, 5건의 연속방화를 저지른 <사례 7>의 범죄자 역시 1시간 가량의 시간동안에 모든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범행 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절의 <면접대상 방화사건의 일반적 특성>을 참조하라.

나. 범행 장소

방화범죄자들의 범행 장소를 살펴보면, 대부분 집 근처 또는 자주 지나다녀 익숙한 곳을 범행 장소로 선택했으며, 방화 전과가 있었던 사례들 중에서는 자신의 집(또는 거주지)에 불을 지른 경우도 있었다. 반면 처음 가본 곳에서 방화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1개의 사례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방화범죄자들이 불을 지르는 장소가 범죄자들의 생활반경 안에서 선택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연쇄방화와 연속방화의 경우 자신들이 익숙한 집근처의 장소에서 사건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다.

1) 자신의 집 또는 거주지

먼저 자신의 집 또는 거주지에 불을 지른 사례들은 <사례 1>, <사례 17>, <사례 13> 등이 있었다.

<사례 1>의 경우는 총 2건의 방화가 모두 범죄자의 집에서 발생한 것이었는데, 첫번째 방화는 딸과의 갈등 과정에서 화가 나서 불을 지른 것이었고, 두번째 방화는 범죄자가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주장하였다.

집이 아파트인데 사는집에 11월 8일건은 딸하고 다투고 문열어 달라고 했다가 안열어주자 장난삼아 우유봉지 남은걸로 태워서이구, 두 번째는 술한잔먹고 12월 24일날 애들 다 알바가구 부인은 일가구 그러니 적적하구 세상살아 뭐하나 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랬죠.

<사례 1>

한편 <사례 17>과 <사례 13>의 사례들에서는 불을 지르려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불이 커진 것이라 주장하였다.

작년 사건이 선생님 댁에 불을 지르신거죠? 불을 완전히 지른게 아니라 끄트머리 까시르려다가. 원래 불 저지틀려고 한건 아닌데. 이불에 실 나온걸 정리하려고 라이터 켜는데 다 타버렸다. 옛날부터 병원에 다녔어요.

<사례 17>

(첫번째) 사건 있던 날은 어떻게 하다가 불이 났어요? 노가다 하다가 술 마시고 왔는데 방에서 라면 먹고 싶어서 끓여 먹다가 불이 났어요 성냥으로 하는 알코올 램프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먹고 싶지 않아서 벽에 성냥을 집어 던졌는데 불이 나더라고

<사례 13>

2) 집 근처

자신의 집 근처에서 불을 지른 사례들은 집에서 출발해서 집 근처에서 불을 지른 사례들과, 다른 곳에서 출발했다가 집에 거의 도착할 무렵 불을 지른 사례들로 구분할 수 있다.

범죄자의 집이 출발지였던 사례들은 <사례 3>, <사례 12>, <사례 16>, <사례

19), <사례 21> 등이었다.

스트레스가 생기면 방화충동이 생긴다고 했던 <사례 3>의 경우를 비롯하여, <사례 16>, <사례 19>, <사례 21>의 사례들은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방화 충동이 생기면 집 근처의 건물이나 차량에 방화를 저질렀다.

그때는 그 새벽이었는데 새벽 그 오면서 그때도 거기 빌라 뒤쪽이었거든요, 거기서 ...
빌라뒤면 집근처예요? 네 ...
불난 장소들이 다 집근처예요? 네
가장 먼 곳은? 한.. 한 집에서 2~300미터 이상 거리였던거 같아요
집이랑 가까운 거린데 다 집주변에 몰려있던 거네요? 네 ...
나머지 사건들도 그런가요? 네 나머지 사건들도 다

<사례 3>

불 난 곳이 집과 가까웠나요? 가까운 곳도 있고 먼 곳도 있었어요, 바로 옆집은 아니고 세 집 정도 떨어진 거리가 제일 가까웠고 제일 먼 곳은 잘 모르겠어요.

<사례 16>

전부 거의 집 근처예요, 그냥 집이랑 가까우니깐 거의 집 앞이에요요, 첫 사건 저지르고 나서 동네 살펴보니깐 경찰이 잠복하는 것도 봤고 순찰하는 것도 봤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할 생각은 없어요? 밤에는 인적도 드물고 나쁜 말로 동네에도 차들도 많고 하니깐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죠.

<사례 19>

(첫번째 사건에 대해서)집에서 나와서 택시에 불 지르러 어디로 갔었어요? 놀이터요, 놀이터는 바로 집 옆에 있어요, 아파트 놀이터. ...

(두번째 사건에 대해서)집에서 불 낸 곳과의 거리는 얼마나 됐어요? 집에서 20분 정도 거리.
첫 번째는 집에서 나오자마자 불 질렀는데, 2010년도에는 왜 20분이나 걸어가서 질렀어요?
불 지를 곳이 없었어요. ...

그 학교는 자주 가는 곳이었어요? 네.

그 학교는 왜 자주 갔어요? 놀러. ...

운동장에서 승용차에 불 지르기 일주일 전에도 교회 버스에 불 질렀네요? 그때도 비슷해요?
네.

집에서 교회 버스와의 거리는요? 거기도 15분~20분.

<사례 21>

〈사례 12〉의 경우에는 바로 집 주변은 아니지만, 평소에 산책하던 등산로 근처에서 68건의 연쇄 방화를 저질렀다.

처음 불낼 때는 맥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동네 주변뒷산 이라서 1.5km이내 일겁니다. 우리집 주변에서 ... 처음에는 등산로 주변이고 두 번째는 놀이터

〈사례 12〉

다른 곳에서 출발했다가 집 근처에서 불을 지른 사례들은 〈사례 4〉, 〈사례 22〉였는데 이들은 모두 술을 마시다가 집에 거의 도착하였을 때 불을 지른 생각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새벽에 청소를 다끝내 놓구 나서, 고속버스는 2~3시엔 다 들어오니 끝나는 도중에 다 이제 다 마무리 저 놓고 집에 가는 도중에 건너편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거기서 세병 먹고, 하나더 먹고나서, 걸어가는 도중에 인제 집에까지 갔는데 인제 술을 많이 먹으니 참다 참다 거의 한 집엔 나왔어요, 집에 다 온 도중에 인제 저기 큰 건물 거기다 불내고 화장실에 불내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게 첫 번째

〈사례 4〉

불 난 곳과 집과의 거리는 얼마나 됐어요? 걸어서 갔어요, 집에서 100미터 정도, 걸어서 2~3분 정도, ...

불 지른게 집에 거의 다 왔을 때였어요? 집까지 어느 정도 왔을 때 지른거죠? 집에 가진 다 와서죠, 집과는 가까웠어요.

〈사례 22〉

3) 집 이외의 연고지

자신의 집은 아니지만 생활주기상 연고지가 있었던 곳에서 방화를 저지른 사례들도 있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범행장소가 분노나 원망의 대상과 관계 있는 곳이라는 점이였다.

〈사례 15〉의 경우 자신과 다툼이 있었던 여자친구의 차량에 불을 지른 것이었으며, 〈사례 8〉은 동거인이 범죄자와 다툼 후 다른 곳으로 도피해 있는 동안에 동거인의 집에 불을 지른 사례였다. 그리고 〈사례 6〉은 여자 친구를 여자친구의 형제들이 만나지 못하게 한 것 때문에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것이였다.

피해자 집 1층 원룸 주차장에서 불 질렀어요. 그 피해자는 여자친구였습니다.

〈사례 15〉

그 집이 원 본집이 있고 그 주변에 집이 있는데 번저가지고 피해본 사람들이 보상해달라 그러고 본집에서는 원하진 않는데 합의가 안됐고, 그래서 제가 1심이 2년받았는데 2심에서는 기각됐고, 그래서 2년받아서 지금은 7개월 남았습니다.

〈사례 8〉

여자어머니가 건물을 상속했는데 형제가 5명이라 5분의 1이 상속권이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 뒤에 귀속된 원룸식으로 붙여진 그 집에 같이 살았어요. 그 집에 불을 지르니까 그 집이 같이 불이 붙었다 해서 그 혐의로 제가 여기에 있는데, 형제들이 그 여자랑 때놓았는데 제가 그여자가 어디에 있는지 나타나라고 불을 지른건데 그 혐의로 현주건조물방화죄가 된거예요.

〈사례 6〉

〈사례 10〉과 〈사례 5〉의 경우는 유흥주점의 종업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에 불을 지른 사례들로서, 〈사례 10〉은 성매수를 한 종업원이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였으며, 〈사례 5〉도 유흥주점에서 바가지를 쓴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다방에서 그날 나와 가지고 주인 가고나서 문쪽에 옆에 불이 좀 탄건데요. 거기가 좀 탔습니다.

〈사례 10〉

하여튼 나이트에서는 뭐라더라 제가 거기서 술을 먹었었거든요. 거기가 전용 외국인 바라 한국 사람은 출입할 수 없는데 하여튼 들어갔는데 제가 그날 바가지를 좀 심하게 썼어요. 거기서 화가났던거 같아요.

〈사례 5〉

〈사례 11〉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목사의 교회 주차장에서 불을 지른 것이었다.

교회주차장 차가 목사 차예요? 네 뭐 교회사람 차니깐 누구 차인지는 모르고 나중에 나오니 ... 12월 13일도 차에 불지른게 있던데? 그거하고 관련된 겁니다. 목사님하고 말다툼 후 바로 불지른게 아니네요? 네

〈사례 11〉

4) 자신이 자주 가던 곳

집 근처가 아닌 곳이지만 상대적으로 익숙한 곳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사례들도 있었다.

〈사례 2〉와 〈사례 18〉은 평소에 자주 갔던 숙박 시설에서 방화범죄를 저지른 사례였으며, 〈사례 20〉은 평소 안면이 있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변에서 불을 지른 사례였다. 그리고 〈사례 13〉은 자신의 일거리를 구하던 인력사무소 앞에서 불을 질렀다.

그거는 우리 영등포에 노숙자 쉼터, 지금 없애 버린 자리에 교회있고 거기 맞은편에 한일여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하는 사람이 남잔데 술먹고 교회와서 행패부리구 저 때리고 욕하고 화가나서 여관회장실에 화장지로 불붙여서 놔뒀는데, 누가 거기 신고해가지고 ... 그쪽 다 아는 이쯤마고, 아는, 여관업주도 알고 저녁에 나오는 아주머니도 알고

〈사례 2〉

이번 불난건 어떻게 된거죠? 제가 술 한잔 먹고 한번씩 갔던 모텔에서 불 났어요. 집하곤 끝과 끝 사이인데. ...

몇 번이나 갔었어요? 서너번 간 적 있어요

〈사례 18〉

○○시장 내인데. 거기에 술집도 있고 순대집도 있었는데, 제가 먹었던 곳이 “이모집”이란 곳이었어요 ...

그날 갔던 가게는 자주 가는 편이었어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 주인이 제 이름이랑 얼굴정도 아는 정도예요.

〈사례 20〉

두번째 방화사건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그 날은 비가 왔었는데 비가 오는 밤에 인력소에 가서 일 구하러 갔었어요. 인력소에 있다가 사람들이랑 헤어졌고 나가다가 건물계단에 있어서 담배 폈는데 근처에 박스 종이 있었어

〈사례 13〉

〈사례 9〉의 경우에는 자신의 자주 다니던 교회에서 집으로 오는 동선 상에 있는 운동장에서 범위가 발생하였으며, 〈사례 14〉는 어릴 때부터 자주 다녀서 익숙한 골목에서 불을 지른 것이었다.

운동장은 걸어서 갈수있는 곳이에요? 교회건너편에 있어요 가다보면 운동장이 나오거든요 산하고 연결되어 있고, 경찰관이 던지면서 산에 불나면 어떻게 할래 하면서 무덤있다고 산위에 불나면 우알까야 하면서

〈사례 9〉

○○동 시외버스터미널쪽에서 친구 한명과 술을 마시기로 하고 만났어요. 술을 마신 그 곳은 집과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술집이었습니다. 친구와 저녁 11~12시쯤 만나서 소주 2~3병정도 마셨는데 술집에 앉자마자 급하게 마셨고 30분~1시간 만에 자리는 끝나고 일어나서 친구는 집으로 보내고 저도 집으로 바로 갈려다가 술도 깰겸 좀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걷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이 3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술 깰려고 걷다가 현수막이 눈 앞에 보였고 호기심에 현수막에 불 붙였습니다. ... 불 붙인 동네는 어릴 때부터 왔다갔다해서 대충 아는 동네인데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범행 저질렀습니다.

〈사례 14〉

5) 처음 가본 곳

조사된 사례 중 처음 가본 곳에서 범죄가 발생한 사례는 〈사례 7〉 뿐이었는데, 술을 먹고 배회하다가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국물하나 나두고 먹었지 싶습니다. 그날따라 기분이 좀 안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난데 까지 걸어간 건가요? 그리고 나서 호주머니 다털어서 3~4천원 되더라구요 그래서 소주하나 사먹고 술이 취해서 땀났는데 기억이 안납니다. 그리고는 올라갔는데 그러고는 정신이 혼미상태가 됐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불난데 까지 걸어갔는데 거리가 얼마나되요? 걸어서 한~참됩니다. 한 한시간정도? 느낌이 그렇습니다. ... 한번도 안가봤는데요 술김에 가봤는데 나왔는데 갑자기 뺨돌아가지고

〈사례 7〉

다. 출발점

1) 집 또는 거주지

자신의 집(또는 거주지)이 범행장소였던 〈사례 1〉, 〈사례 17〉, 〈사례 13〉을 포함하여, 범행 직전 출발점이 집이었던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전형적인 연쇄방화라 볼 수 있는 〈사례 12〉, 〈사례 16〉, 〈사례 19〉, 〈사례 21〉 등의 사례는 집에 있다가 방화 충동이 생겼을 때 집에서 나와 집 근처에서 방

화를 저지르는 전형을 보이고 있다.

그담부터는 침에는 산책하러갔다간건데 그다음 불낼려고 나온거죠? 네

〈사례 12〉

전부 거의 집 근처예요. 그냥 집이랑 가까우니깐 거의 집 앞이에요.

〈사례 19〉

불 저지르기 전엔 어디 있었어요? 집에 있다가 불 질러라는 환청이 들려서 집에서부터 불 지를려는 생각을 하고 나왔어요.

〈사례 21〉

불 난 곳이 집과 가까웠나요? 가까운 곳도 있고 먼 곳도 있었어요. 바로 옆집은 아니고 세 집 정도 떨어진 거리가 제일 가까웠고 제일 먼 곳은 잘 모르겠어요.

〈사례 16〉

전형적인 연쇄방화사건은 아니지만, 〈사례 2〉, 〈사례 6〉, 〈사례 8〉 등도 범행을 위한 출발점은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사례 2〉는 거주지인 ○○교회에 있다가 범행을 위해 주변의 숙박시설로 찾아간 것이었고, 여자친구 혹은 동거인과의 불화가 동기가 된 〈사례 6〉과 〈사례 8〉도 출발점은 자신의 집이었다.

사시는건 ○○교회구요, 여관은 왜 들어가셨어요? 그쪽 다 아는 아줌마고, 이는... 여관업주도 알고 저녁에 나오는 아줌머니도 알고.

놀이 가신건가요? 네 그냥 왔다갔다 한번씩 왔다갔다.

뭐하시려고 가셨나요? TV같은거 보고와요.

〈사례 2〉

여자어머니가 건물을 상속했는데 형제가 5명이라 5분의 1이 상속권이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 뒤에 귀속된 원룸식으로 붙여진 그 집에 같이 살았어요. 그 집에 불을 지르니까 그 집이 같이 불이 붙었다 해서 그 혐의로 제가 여기에 있는데 ...

〈사례 6〉

제가 집에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나고 전화도 안받고 그래서 화가나서 불지르고 차몰고 경산가서 불지르고

〈사례 8〉

2) 술집 또는 유흥업소

집 이외의 장소 중 가장 많은 출발점은 술집 또는 유흥업소였다.

〈사례 3〉, 〈사례 4〉, 〈사례 7〉, 〈사례 18〉, 〈사례 22〉은 혼자서 술집 또는 포장마차 등에서 술을 먹다가 범행장소로 이동하였다.

이 날은 혼자 술 마셨어요? 술도 혼자 먹고 노래방도 혼자갔어요. 그렇게 놀다가 집으로 오면서 했죠. 노래방안에서도 술 마셨죠. ...

술 많이 먹었나요? 좀 먹은거 같은데. 집에서 소주 한 병 마시고, 노래방에선 맥주 10병 정도 마신 것 같아요. 좀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사례 22〉

그때 쫓겨나구 월급뭇받구 그랬네요? 네, 쫓겨나서 가게 근처 술집에 가서

술집은 어느집인가요? 네, 아는 동생집, 알비하는곳, 거기서 술마시고 귀가 하는 중에 첫 사건이 일어난거죠

혼자서 술드신건가요? 네

〈사례 3〉

직장과 집은 거리가? 보통 한 30분 거리, 걸어서 한시간 정도 넘게 걸립니다. 차로

그럼 거기서 3병드신거예요? 네 식당입니다 밥먹는 식당맞습니다. ... 국물하나 나두고 먹었지 싶습니다. 그날따라 기분이 좀 안좋았습니다.

〈사례 7〉

○○동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세네병 정도 마시고, 새벽엔 차가 없으니깐 걸어가고 있으니깐, 그게 집에 거의 한 10분거리 다운거리에 ... 거기 건물 화장실 여자화장실만 제가 골라서 방화를 했습니다.

〈사례 4〉

그래서 아침부터 제가 술을 좀 먹었죠. 술 좀 얼큰하게 돼서, 사고 저지른 모토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술 마셨어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사건당일 술은 몇시부터 마셨어요? 집에서 1~2분 거리밖에 안되는 곳인데 동네 큰 누님뻘되는 가게에서 소주세병인가 네병인가 마시고 편의점가서 또 마시고 그랬죠.

〈사례 18〉

그리고 〈사례 14〉, 〈사례 20〉, 〈사례 15〉 등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지면서 범행장소로 이동한 것이었다.

그날 갔던 가게는 자주 가는 편이었어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 주인이 제 이름이랑 얼굴정도 아는 정도예요.

〈사례 20〉

술을 마신 그 곳은 집과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술집이었습니다. 친구와 저녁 11~12 시쯤 만나서 소주 2~3병정도 마셨는데 술집에 앉자마자 급하게 마셨고 30분~1시간 만에 자리는 끝나고 일어나서 친구는 집으로 보내고 저도 집으로 바로 갈려다가 술도 깰겸 좀 걸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걷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이 3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술 깨려고 걷다가 현수막이 눈 앞에 보였고 호기심에 현수막에 불 붙였습니다.

〈사례 14〉

아는 형이랑 친구들이랑 마셨어요. 해운대에서 마시고 김해로 오는 버스를 탔고 타고오다가 버스에서 잤는데 그게 더 취하게 했던 것 같아요.

〈사례 15〉

한편, 범행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범행장소로 돌아와서 불을 지른 사례도 있었는데, 이들 사례들은 유흥주점의 종업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에서 술을 먹다가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다시 돌아와 불을 지른 것이었다.

그 대상자가, 하여튼 나이트에서는 뭐라더라 제가 거기서 술을 먹었거든요 ... 그날 바가지를 좀 심하게 썼어요. 거기서 화가났던거 같아요.

화나가서 그 뒤에 연락해서 찾아간건데 만나와서 불지를 생각하신거예요? 네

〈사례 5〉

다방에서 집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요? 버스타구 가야되요.

버스타구 가다가 돌아오신거예요? 네 ...

가시다가 내려서 다시 걸어 타신거예요? 네 ... 그냥 아무생각안하구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짜증나구 화가나구

〈사례 10〉

집이나 술집 이외의 다른 곳에서 출발한 사례는 〈사례 9〉가 유일했는데, 평소에 자주 가던 교회에서 집으로 가던 중 불을 지른 것이었다(범죄자는 자신이 불을 질렀다는 것을 부인. 본 장의 동기부분 참조).

집에서 거기 거리가? 좀 먼데 교회가 그 근처라서요 ...

교회에서 선생님집에 가시는 길에 불이 난거죠? 네 무덤에서 연기가 나더라구요. 가니까요 소방관들이 불을 끄더라구요

〈사례 9〉

라. 이동

분석 대상이 된 사례들에서 거의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출발지에서 범행 장소까지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시간은 도보로 약 5분 정도가 가장 많았으며, 가장 가까운 곳은 집 바로 앞에서 불을 지른 사례이고, 가장 많이 걸린 시간은 걸어서 약 1시간 정도의 거리였다.

1) 도보

〈사례 19〉가 자신의 집 바로 앞에서 방화범죄를 저지른 사례이며, 〈사례 22〉, 〈사례 21〉 등도 집에 있다가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이 생긴 후 집 근처에서 방화범죄를 저지른 사례이다.

전부 거의 집 근처예요. 그냥 집이랑 가까우니까. 거의 집 앞이에요. ... 밤에는 인적도 드물고 나쁜 말로 동네에도 차들도 많고 하니깐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죠.

〈사례 19〉

불 난 곳과 집과의 거리는 얼마나 됐어요? 걸어서 갔어요. 집에서 100미터 정도, 걸어서 2~3분 정도.

〈사례 22〉

집에 있다가 불 질러라는 환청이 들려서 집에서부터 불 지틀려는 생각을 하고 나왔어요.

〈사례 21〉

〈사례 4〉, 〈사례 16〉, 〈사례 12〉, 〈사례 16〉 등도 출발점에서 방화장소까지 걸어서 이동한 사례들이다. 〈사례 16〉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방화대상을 물색한 사례이며, 〈사례 12〉의 경우도 집에서 멀지않은 등산로와 산책로에서 연쇄적으로 방화를 저질렀다. 〈사례 2〉 역시 자신이 거주하는 교회에서 방화

대상이었던 숙박업소까지 걸어서 5분 정도의 거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6>도 거주지와 방화장소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 불 낼 때는 덕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었나요? 매스컴 타서 아시겠지만 다람쥐 다람쥐해서 동네 주변땀산 이라서 1.5km이내 일겁니다. 우리집 주변에서.

<사례 12>

불 난 곳이 집과 가까웠나요? 가까운 곳도 있고 먼 곳도 있었어요. 바로 옆집은 아니고 세 집 정도 떨어진 거리가 제일 가까웠고 제일 먼 곳은 잘 모르겠어요. 제일 멀다 느껴진 곳은 선생님 느낌에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거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차 타고 다녔나요? 아님 걸어서? 걸어다녔어요.

<사례 16>

먹자골목에서 교회까지 5분거리거든요
걸어서 5분이예요? 네

<사례 2>

거기서 집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한 5분
걸어서 차로? 걸어서
동네이시네요? 네

<사례 4>

<사례 11>, <사례 9>의 범행장소는 거주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방화를 저질렀지만, 출발지에서는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였다.

집에 계시다 식당까지 걸어가셨어요? 여기서 포항나가는 거리되겠조 택시타고 갔습니다 ...
술집과 여관과의 거리는 얼마나되요? 술집에서 여관... 한 500m되겠네요

<사례 11>

교회에서 운동장까지 거리는? 교회에서 걸어가는데 신분증도 안보여주구요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구요
운동장은 걸어서 갈수있는 곳이에요? 교회 건너편에 있어요 가다보면 운동장이 나오거든요. 산하고 연결되어 있구

<사례 9>

<사례 7>과 <사례 15>는 평소에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지만, 방화 당

시에는 걸어서 이동한 사례들인데, 술을 마셨기 때문에 당시에는 걸어서 간 것이라 진술하였다.

불난데 까지 걸어갔는데 거리가 얼마나되요? 걸어서 한~참됩니다. 한 한시간정도? 느낌이 그렇습니다.

〈사례 7〉

피해자 집까지는 얼마나 걸렸나요? 피해자 집까지 걸어가면 30분 정도 걸어갈 정도의 거리였어요. 술이 취하지 않았다면 택시 타고 갔겠죠. 짧은 거리는 아니니까.

〈사례 15〉

친구와 저녁 11~12시쯤 만나서 소주 2~3병정도 마셨는데 술집에 앉자마자 급하게 마셨고 30분~1시간 만에 지리는 끝나고 일어나서 친구는 집으로 보내고 저도 집으로 바로 갈려다가 술도 깰겸 좀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걷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이 3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술 깰려고 걷다가 현수막이 눈 앞에 보였고 호기심에 현수막에 붙 붙였습니다

〈사례 14〉

사건당일 술은 몇시부터 마셨어요? 집에서 1~2분 거리밖에 안되는 곳인데 동네 큰 누님뻘되는 가게에서 소주세병인가 네병인가 마시고 편의점가서 또 마시고 그랬죠.

〈사례 18〉

2) 차량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한 사례는 22건 중 4건에 불과했으며, 이중 1건은 차로 이동하기는 했지만 집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례들이었으며, 나머지 3건은 분노의 대상이 있는 곳인 구체적인 범행장소를 목적으로 해서 이동한 사례들이었다.

다음의 〈사례 3〉은 술을 마시고 택시로 집으로 오는 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으며, 〈사례 5〉는 출발점에서 방화장소까지는 멀지 않은 곳이었으나 집에서 차를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차로 이동한 사례였다.

집으로 가신거예요 다른데 들리거나하지 않고? 들리거나 하지 않고 바로 그냥 택시타구 온거 같아요. 길가에 좀 앉아 누워있다가 좀 돌아다니다가 차타구 집에 온거 같아요. 볼 처음낸게 차타구 내려서 아니면 차타기전에 불지른거예요? 차타구 내린 후에

〈사례 3〉

택이랑 나이트 거리는 얼마나 되요? 15키로 정도 됩니다. 차로 운전해서 가야됩니다
 나이트랑 숙소거리는요? 3키로 정도요
 그러고 나서 바다랑 거리는? 5키로 이상 됩니다
 어떻게 이동하셨어요? 차로 이동합니다
 술드시고? 네 ...
 택에서 운전해서 나이트부터 쪽 이동한거구요? 네

〈사례 5〉

한편 〈사례 10〉은 출발점에서 버스로 집으로 이동하다가 범행현장으로 돌아와 불을 질렀다.

다방에서 집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요? 버스타구 가야되요
 버스타구 가다가 돌아오신거예요? 네 ...
 가시다가 내려서 다시 걸어 타신거예요? 네
 그때 가실 때 무슨 생각하구 가신거예요? 그냥 아무생각안하구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짜증나구 화가나구

〈사례 10〉

출발점과 방화 장소가 가장 멀었던 사례는 〈사례 8〉이라 할 수 있는데, 〈사례 8〉의 범죄자는 집에서 출발하여 자동차로 50분 가량 걸리는 방화장소로 이동하였던 것이다.

대구와서 차몰고 ○○나가가지고 ○○동에
 ○○에서 대구 집까지 차로가면 얼마나 걸리나요? 40~50분 차좀 밀리면 50분, 안밀리면 40분
 그럼 화나는 맘을 가지고 차몰고 가신거예요? 네

〈사례 8〉

2. 범행 유발요인

가. 범행 동기

분석 대상이된 사례들의 방화 동기를 살펴보면 크게 분노나 화가 동기가 되었던 방화와 충동적인 방화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충동적인 방화 중에는 평소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분노가 방화충동을 더 자극하였던 사례도 다수 보인다.

1) 분노

먼저 방화의 동기가 되었던 분노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 대상을 향한 분노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 대상을 향한 분노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금전적 피해나 정서적 모욕감을 주었다는 생각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으며,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는 평소에 느끼고 있던 추상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가) 구체적 대상에 대한 분노

〈사례 15〉와 〈사례 11〉, 〈사례 5〉, 〈사례 10〉 등은 구체적 대상에 대한 보복으로 불을 사용한 사례들이다. 〈사례 15〉는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와의 불화와 여자친구로부터의 모욕으로 인해 화가 나서 여자친구의 승용차를 불로 태우려 했던 사례이고, 〈사례 11〉은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라고 종용했던 목사에게 화가 나서 그 목사가 일하던 교회 주차장에 불을 지른 사례이다.

거의 한달동안 못 잤습니다. 잠을 잠깐 잤다가 일어나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동안 특히 힘들었어요. 치료도 받으러 가기도 하고, 여자친구와 만나는 과정에서 힘들고 그러다보면 다투고 격해져서 계속 힘들어지면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나니깐..

안 좋은 생각이 어떤거였죠? 그냥 패버리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미쳐버릴 것만 같아서 심리치료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누나와도 상의를 많이 했어요. ... 그게 결혼문제였어요. ...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시업한다고 돈도 집에서 많이 가져왔는데 결혼 한다고 돈 더 달라고 더는 부탁 못 드린다고 얘기했더니 여자친구는 니가 결혼한다면 집에서 다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해서 다투는 날이 많아졌고 ... 아무튼 벌이는 괜찮았는데 여자친구가 만족을 못했었습니다.

〈사례 15〉

모르는 교회목사님이랑 문제가 무슨일이 있었나요? 속은 좀 상했습니다

무슨일 때문에 속상하셨나요? 하...금전탐에 그렇습니다 ... 2년살고 나와가지고 1년2개월 만에 여기 왔는데, 내 1년 2개월만에 돈 천만원 번거를 그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1년 2개월 동안 번돈을 사기당하신거예요? 네 그거 때문에 교회랑 연관이 된거라서

〈사례 11〉

또 <사례 5>는 이혼 후 외로움을 느끼던 범죄자가 믿었던 유흥주점 종업원에게 바가지를 쓰게 되자 화가 나서 종업원이 일하던 유흥주점과 기숙사 건물에 불을 지른 사례이다. 그는 유흥업소 종업원과 정서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여성은 범죄자를 이용해서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했던 것을 ‘배신’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때는 제가 처음 이혼하고 나왔을 때 마누라한테 믿을 사람이 없다 했는데 믿을 사람 만났자나요 근데 한번은 그래도 같은 일을 두 번당하고 나면 맨봉같은게 오거든요 ... 그때도 나도 내가 바가지를 많이 썼잖아요~ 너네도 한번 큰일나봐라 ...
 그분이 배신한건 어떤거예요? 제가 일단 돈을 벌고 있으니 금전적으로 일단 일하는 가게에 왔으니 상업행위, 제가 그 쪽가게 갔으니 쓰게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오해를 했나 봐요.
 그 여자는 선생님을 이용하려고 한거예요? 저는 정을 주니깐 제가 잘못 생각을 한거죠.
 선생님은 감정적으로 좋아한다 생각했는데 그분은 이용을 한거였다? 네 제가 그 당시에는 이혼을 한 상태라 옆에 두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례 5>

<사례 10>도 다방에서 성매수를 했던 여종업원이 범죄자에게 냄새가 난다고 한 것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와 불을 지른 사건이다.

내가 거기 있어가지구요. 좀. 내가 정신병원에 좀 오래 있었거든요.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 나도 모르게 ...
 (피해자외는) 어떤 사이예요? 시간 끊어서 밖에 나갔다 왔는데 그것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 술을 많이 먹어서 ... 술 많이 먹어서 냄새난다고 뭐라해서 열이 받아서 ... 조금 앉아있다가 그말하는 바람에 저는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다가 횡김에 다시 돌아와서 ...
 그냥 아무생각안하구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짜증나구 화가나구

<사례 10>

<사례 6>은 여자친구의 형제들이 여자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상황 때문에, 바깥에서 불을 지르면 여자친구가 밖으로 나올 것이라 기대해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보다는 여자친구와 그녀의 형제들에게 화가 난 것이 더 큰 동기로 보인다.

송탄에서 여자를 알게되서 같이 살고 한국에서 돈벌고 송탄에서 돈벌고 있으면서 그 여자가 피해자죠. 그 여자의 오빠들이 반대하고 피해를 보고한게 이 사건에 요지가 됐습니다. ... 그

형제들이 와서 괴롭히고 하니 제가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됐죠. 그 형제들 때문에 다른 문제도 있었고 ... 와이프도 거기 있는지 알구 숨겨놓고 그런것도 알고 너무 힘들게 형제들이 나한테 괴롭히는 행동에 항거하다가 제가 너무 괴로워서 참고 참다가 가게가 있는데 거기 찾아와서 행패도 부리고 해서 참다가 술먹고 그 건조물에 방화해서 1년6월로 살고 있습니다. ... 불보고 나오면 만날라 그랬는데 그 형제지간들이 다 나와서 일이 커져서 ... 형제들이 괴롭히는거랑 만나고싶어 하는데 못만나게 하고 하니 술김에 저지른 과오입니다.

〈사례 6〉

〈사례 8〉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불지를 생각은 없었으나, 동거하던 여성과 연락이 되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해 동거녀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것이었다. 당시 동거녀는 범죄자를 피해 다른 곳으로 도피해 있던 상황이었다.

처음부터 집에서 불지를 생각은 없었고요? 없었어요. 술먹고 집에서 전화도 안받고 하니 짜증이 나고 해서 담배한테 파우고 휴지던져놓고 나왔어요. 그래서 옆집에 불 번지는 그런생각도 없었고 그냥 확하구 ... 확 올라올때는 완전 물불을 안가리고, 내가 다른 사고가 났지 싶어. 내가 그날도 경산가서 불지르는거는 딱 돌아서는 그 순간을 못이겨서 내가 경산갈때는 계획을 세우고 간것도 아니고 올라오면서 후회하고 내가 못배우고 한번도 생각못하는게 화근이다하고 뉘우치는거고 ... 내가 썩이 다 인풀리고, 여자가 내한테 배신감을 주고 나는 사랑해줬고 그리여름에 더운데 내가 한달에 220만원 넘겨주고 그랬는데 지금 머리한다고 다른사람 만나고 그런배신감이 조금 있으니까 그리 불을 질렀지.

〈사례 8〉

불을 지르게 된 데까지는 구체적 대상에 대한 분노가 원인이었지만, 실제로 불을 지른 곳은 그 대상과는 상관없는 장소였던 사례들도 발견된다. 〈사례 12〉의 경우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게되는 상황이 방화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불을 지른 곳은 주변의 산책로와 등산로였다. 이처럼 자신이 일하던 곳의 사장에 대한 분노로 불을 지르게 된 〈사례 3〉, 여자친구와의 불화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사례 4〉 등이 이와 비슷한 동기와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8〉은 처음부터 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으나 계속해서 여자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자 화를 참을 수 없어 불을 지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네 제가 제 자신한테 안 좋은 일이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고 하면 홧김에 그러면 올라가

서 불을 지르고 해서 ... 특별히 나에 대해서 내 생각에서, 응.. 집안에 안좋은 일이 있고 집사람하고도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94~5년에, 집사람 금전관계 땀에 깊어주고 깊어주고 하다 보니 액수가 어마어마 하더라구요. 근데 애들때문에 이혼할까하다가도 그렇고 술한잔 먹고 우리동네 뒷산에 내버렸는데 크게 한번 난적 있고, 불내고 내 속이 억압된 감정이 확 시원해지고 맑아지고 죄책감도 못느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구요. ... 집사람을 막 구타를 하거나 물건을 뿌수거나 그런 거 보다는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막 불을 내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 전보다 확 불질러가지고 나도 모르게 제어가 안되더라구요

〈사례 12〉

네, 그만큼 사장님에 대한 중요가 컸던거 같아요 ... 소변본게 아니구요, 넘어졌다구 말씀드렸는데 넘어져가지구 그 쓰레기에 불을 지른거구, 사장님 얼굴이 보여서 ... 그러니깐 그 사장님이 술을 과하게 드시키지고요 ... 단골손님도 끊기고 장사도 안되다 보니깐 저한테 화살이 꽂힌거 같더라구요, 장사 안되니깐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저한테 화풀이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거 같아요 ... 그냥 사장님도 술이 과하셨던지 “씨발”욕하면서 손님관리도 못하면서 ... 그러니까 제가 이번사건 방화이전에는 모든 스트레스 쌓이는데 다 풀렸었는데, 제가 안풀렸던 적이 아까도 말했듯이 직장에서 일못한다는 소리 못들었었거든요, 그 사장이 건달인것도 침이고 인정도 못받고 특히나 맞은것도 침이어서 지금까지 제가 직장에 1년 넘게 일하면서 이렇쿵 저렇쿵 이런것도 침이었고 이게 종합적으로 뺏겨졌던거 같아요

(두 번째?) 그 그냥 첫 번째처럼 그때도 똑같이 집에 귀가 하던중에 첫 번째 방화한 사건이 생각나더라구요, 그 건물바로 옆이야이야기 했자나요, 그건물옆이라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는 첫 번째 느꼈던 감정을 좀 다시 그 느끼고 싶어서 라고, 그래서 했던거 같아요.

〈사례 3〉

그리고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술드시고 불난게 헤어진 당일인가요? 크리스마스 이브땐가 여자친구한테 제가 차였는데 제가 인제 ... 연말아 세 번다 여자친구 때문에

싸웠나요? 싸운 건 없구 말하다가 개가 막 무엇때문에 모르겠지만 개가 계속 신경질 내서 먼저 냈는데 술먹다보면 할 말있고 안할 말이 있는데 개가 뭐라고막 원소리냐고 하니 오빠는 알거없다 개가 술먹고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막 저 뭐야 욕을 하고 그랬어요. 그거 때문에 인제 저도 욕을 안하는데 개가 저걸(욕)하니깐 그거때문에 싸웠어요.

〈사례 4〉

〈사례 22〉도 평소의 자격지심이 방화충동을 일으킨 것으로 진술한 부분도 있었으나, 실제로는 유흥업소에서 자신이 생각한 만큼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한 것을 별충하려는 생각으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유흥업소에서 해소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마음먹은대로 잘 안되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을 지른 것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술 먹다보니깐 그런 생각이 든거죠. 집에서 깨고 나서 좀 뒤척뒤척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 생각은 자주 나는 편이에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 ...
그 날따라 왜 하필이면 불 생각이 났을까요? 그냥 자격지심이었던것죠.
어떤 자격지심을 말하는거예요? 나는 잘 못 사는데 남들은 잘 사는 것 같고, 술 취한 상태에서 그런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
자격지심이란 생각이 든게 술 마시기 전이었어요? 아니면 후였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들죠.
자격지심 생각은 언제부터 들었나요? 직장 그만 둔 뒤부터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건 어디서 저질렀었죠? 그 때도 집에서 술 먹고, 노래방 갔다 오면서 비닐하우스에 비닐보니까 불 잘 붙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노래방 간 건 스트레스 풀러 간 건데? 스트레스가 잘 안 풀린건가요? 제대로 못 놀았어요. 노래방에 가서 아가씨 부르잖아요. 아가씨들하고 제대로 못 놀았으니깐 갈 때까지 잘 못 놀았으니깐.
제대로 못 놀았다는건 어떤거죠? 2차까지 못 갔다는거? 그런 거랑 비슷하죠. 섹스는 아니고요. 터치를 못하게 하니깐. 그게 짜증났죠.
노래방 가서 터치도 하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렸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불 질러야겠다는 생각이 든거예요? 꼭 아니라고는.

(사례 22)

나) 자기 처지에 대한 분노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 처지에 대한 분노와 화가 방화의 동기가 된 사례들도 발견된다. <사례 1>은 신체적 질병과 실직 등으로 인해 살고 싶지 않아 자살하려고 불을 질렀다고 주장하였으며, <사례 13>도 살기 힘들어서 별 생각 없이 방안에서 성냥을 집어 던진 적이 있었다. <사례 13>의 두 번째 방화도 마땅한 일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왜 하필 방화를 하신거예요? 제가 정신과약을 먹었었어요. 알콜치료하려고요. ... 가장으로써 미안한 마음도 있고 수입을 다 책임지지는 못하니깐 내 마음이 그렇죠. 이렇게 사느니 나혼자 없애는게 낫겠다. ... 에이 그냥 나혼자 죽겠다고 붙였는데 그렇게 빨리 확 탈지 몰랐지. 겁이 덜컥났다니깐.

<사례 1>

라면 끓여 먹을려다가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성냥을 집어던졌어.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사람들처럼 밥 준비해서 안 먹고 라면 끓여 먹는 내 처지를 생각하니깐 처량해서 집어 던졌어.

처음 알코올 집어 던질 때 불이 날거란 생각하지 않았나요? 살기 힘들어서 그런 생각 안하고 그냥 집어 던졌어 ...

두번째 방화사건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나는 방화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비가 와서 계단에 앉아서 박스 조각과 라이터 들고 있었는데 건물 관리인이 그 모습을 보고 신고했었어 남대문 불저지르는 것 처럼 제대로 했으면 속이라도 시원했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과 때문에 잡혀오니깐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

불 내기 전에 술 마시면서 하는 생각은 뭐였나요? 오늘은 일도 못 가서 돈도 없고 비도 오니깐 담배나 피우자는 생각 뿐이었죠.

〈사례 13〉

2) 충동

방화 당시 분노나 화가 나서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방화의 충동이 생겨 불을 지른 사례들도 보인다.

가) 정신질환

먼저 정신질환에 의해 방화충동이 생긴 사례는 〈사례 16〉, 〈사례 21〉 등으로, 이들은 불을 지르라는 환청을 들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례 16〉은 심리적,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환청을 듣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사례 21〉은 아버지가 방화살인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충격이 있어서 그 이후로 방화를 종용하는 환청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을 일으킨 계기가 뭔지 궁금해서요. 제가 정신분열증에 좀 시달렸어요 ... 직장 생활하니까 치료 못 하고 혼자 병원 가기 무섭고 해서 그냥 뒀어요. 그리고 술 마시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자꾸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던가요? 계속 죽어라 죽어라하는 그런 소리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 본 적도 있고, 그런 소리 들리니까 죽으려고 올라간 거 같아요. 정신없다가 정신 차려보니깐 옥상에 올라가고, 집에서 칼로 배에 갖다댄 적도 있고 ... 춤지 않냐 그런 말 들리고 불 저지르면 따뜻하다 그런 소리 들렸어요. ...

불 저지를 때도 환청이 계속 들렸나요? 네. 계속 불 질러라 그랬어요.

불 저지르다가 언제 정신이 차려지던가요? 불이 커질 때

〈사례 16〉

그 땐 정신자체가 있어가지고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했어요. ... 어릴적부터. 어릴 때 아버지가

교도소 간 충격 때문이에요. ... 2006년도 부턴가. 한 17살. 그 때부터 정신지체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방화 살인 때문에 들어갔어요. 일부러 그런건 아닌데. 애기한테 불이 붙었고, 아버지가 겁이 나서 그냥 도망갔는데 방화살인죄가 됐어요. ...

불 지르고 싶다는 충동이 언제 생기나요? 아버지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 생각 자주 나나요? 아님 가끔? 자주나요. 매일 나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럼 그때마다 불 저지르고 싶고? 네. ...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불 질러라는 소리요. 계속 시끄럽게 들렸어요. 그래서 치료 받으러 공주에도 가거든요.

그 소리가 언제 들리는 거예요? 계속 나요. 하루 종일 나고, 그래서 머리 아프고 시끄럽고 짜증나고 그래요.

〈사례 21〉

나) 자극 추구

〈사례 19〉는 혼자 집에 있다가 자극적인 행위(‘뭔가 짜릿한 일’)를 하고 싶다는 충동이 생긴다고 진술하였고, 그런 충동이 생길 때 쉽게 들키지 않으면서도 스릴 있다고 생각하는 방화를 저지른다고 하였다.

뭐 술 먹고, 술먹다보니깐. 혼자 지내다 보니깐. 처음에는 우연찮게 시작한거죠. ... 계속 안 걸리고 그러니깐 심리적으로 더 크게 해볼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 계속해도 안걸리네.

제일 처음엔 왜 불 저지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휴지랑ライター ڤ했을까요? 그냥 모르겠어요. 순간적으로 그랬어요. 그냥 티비보다보니깐 불 나는데 나오던데 그 장면 보니깐 스릴있어 보였어요. ... 너무 모험적인건 못하겠더라구요. 티비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성범죄라든지 지나가는 사람들 폭행, 강도하는 것처럼 대놓고는 못하겠더라구요. 그러면 증거도 있고 금방 들들나니깐. 그런데 휴지에 불 붙이면 휴지가 다 타고 나면 증거가 없어지니깐 뭔가 짜릿한 일을 해볼랐는데 그 중에 좀 소극적인거 해볼러다가 그리된거죠. ... 딱히 불 저지를려고 했던건 아닌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그런데 왜 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외로웠던 것 같아요. 저도 말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내일 아침에 일 나가야되는데 2~3시까지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스트레스 많았던 것 같아요. ... 내면에 쌓아두고 있던 스트레스, 짜증스러움인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 솔직히 말해서 잡히든 말든 될대로 되라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주변 살피긴 했지만 (웃음) 계속 안 잡히고 성공을 하니깐 그 일에 빠져버린거죠.

〈사례 19〉

〈사례 20〉 역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례이다. 이 사례의 범죄자는 공식기록상으로는 3건의 사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다른 사건들은 부인하고 마지막 사건만 자신이 불을 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사건도 충동적으로 한번 불을 붙여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술을) 평소처럼 먹었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러고 화장실 간다고 나와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와서 왼쪽으로 내려와야지 계단으로 가는 길인데 왼쪽으로 안가고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 쪽으로 가다보면 빈 창고가 나와요. 거기가 조그마한 건물인데. 저는 아무 생각없었는데 꾸역꾸역 종이 같은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무심결에 가지고 있던 라이트로 불 붙이고 그냥 돌아서서 나온거예요. 난 이렇게 불이 크게 날줄 몰랐어요. 전 그냥 쓰레기인줄로만 알고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을거란 생각도 못했고, 그냥 종이 찌거리만 몇 개 있구나하고 종이에 불 딱 붙이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요. ...

사건이 3건 있는걸로 알고 왔는데? 네.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한 일은 인정하겠는데. 다른건 아니예요. ... 제가 조사받을 때, 형사들한테, 강압에 의해서 거짓증언을 했죠. ... 그러니깐 어디 어디 불 냈나 물어보더라고요. 세탁기도 있었고, 빨래방에도 있었다고 그냥 내가 대충 불렸어요. 이렇게 크게 될줄 몰랐어요.

〈사례 20〉

3) 분노와 충동의 상호작용

그러나 분노와 충동이 서로 무관한 요소는 아니다. 〈사례 7〉, 〈사례 14〉의 경우와 같이 평소 자기 처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방화 충동을 느끼게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사례 7〉의 경우 자신이 왜 불을 질렀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평소에 괴로운 일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사례 14〉의 경우도 방화 당시에는 자신도 모르게 불을 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사후적으로 생각해 보면 평소에 쌓여 있던 것이 폭발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그날 귀신이 씌였는가 보통 평상시 술을 먹은건데도 지나간 일입니다만 ... 제가 여기 아는 사람도 없는데 뭐 때문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 형사님이 오셔서 영문도 모르고 잡혀서 당신여기 간 적 있나 없나해서 술이 취해서 얼핏 기억하는데 갔습니다 하니깐 당신 불냈지 하길래 술이 취했는데 어떻게 기억하냐고 ...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날 좀 괴로웠습니다. 그날따라 아무리 괴롭다 그래도 그런일이 없어야 하는데 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일도 많이 없고 이러니까는 좀 괴롭더라구요. 술도 먹었겠다. 그 다음날 일이 없었거든요. 쯤.. 술도 깰겸 술술올라가는데 사람이 또 술보니 술술들어가서 슈퍼들어가서 소주사서

〈사례 7〉

별 생각 없었습니다. 총 22번에 걸쳐 연속적으로 불 붙였는데 1시간 정도의 단 시간에 다 저 질렀습니다. 처음에는 길거리에 걸려있는 현수막에 불 붙였고 다음은 봉어빵인가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나다가 눈에 보이는 불에 잘 탈 것 같은 물건들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동차 비닐 호루, 화장품 가게에 불을 붙였는데 그 쪽이 재래시장이라 쪽 돌면서 천같이 잘 타는 물건에 불을 붙였습니다. … 처음에는 그냥 불 아무 생각없이 붙이다가 나중에는 의식적으로 불에 잘 타는 물건 찾아다니면서 불을 붙였어요. … 처음에 그냥 호기심에 했는데 나중에 생각보다 불도 잘 붙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막 불 질렀어요. 형사님들도 조사과정에서 사회에 불만 있나는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건 아니었거든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때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글썄요. 뭐 평소에 하는 일도 잘 안되고 안정된 것도 없었던 것이 항상 마음 속에 있었는데 그것 때문 아닐까요?. 불 붙일 땐 아무 생각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평소에 쌓여있던게 폭발한 것 같아요. 평소에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는데 그게 알게 모르게 폭발한거 같습니다.

그 당시 때 떠오른건 아닌데 지금 돌아켜 생각해 보니까 그런거 같다는거죠? 네

〈사례 14〉

4) 부인

〈사례 18〉, 〈사례 17〉, 〈사례 2〉 등의 사례는 불을 지르려 했던 것이 아니라 실수로 불이 붙은 것이라 주장하였다. 〈사례 18〉은 숙박업소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종업원을 불렀는데 오지 않아 CCTV 앞에서 불을 흔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사례 17〉은 이불 끝에 마감이 되지 않은 실 끝을 태우려 했던 것이 이불에 옮겨 붙었다고 주장하였다. 〈사례 2〉도 정신질환을 핑계대로 있기는 하였지만 불을 지르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요양원 계시는데 3~4년 되셨고, 어머니는 고향에 계시고 형들은 결혼했고, 아버지 간호하려고 왔다갔다 했는데. 부모님인 동시에 환자니깐. 그날따라 아버지께서 짜증내고 화내시고, 누가 안 돌봐주면 못 다니고 소변대변도 못 받고 그러니깐 아버지 입장에서 짜증나고 답답했겠죠. 그래서 아침부터 제가 술을 좀 먹었죠. … 그러다가 다시 좀 자다가 일어나서 술 좀 더 마시려고 모텔 주인한테 인터폰하고 전화를 계속했는데도 전화도 안 받고, 왜 이렇게 안 받아 그런 생각하면서 술도 덜 깬 상태이기도 했고, 티슈 한 장 꺼내서 불 붙여서 복도에 있는 CCTV 보면서 흔들었어요. 주인이 이거보면 올 거라 생각하고. …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고의성은 하나도 없었어요.

〈사례 18〉

그 때도 억울하게 들어온거예요? 네. 억울해요. 전 아침에 나갈 때 안전화신고 나가는데, 눈

위에 쌓인게 안전화인지 운동화인지도 안 살펴보고 잡으러 왔어. 눈오고 비오는데 불 지른다고 불이 쉽게 타나요? 안 타죠. 그 때 혼자 있었어요. 밥 먹고 씻고 자고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고 생활만 반복했는데. ... 끄트머리만 끊어낼려고 했는데 다 타버렸어요.

〈사례 17〉

건물도 타고 다칠거란거 생각안했어요? 건물안탔어요. 화장실에 했기 때문에 애초에 불을 어떤 생각으로 화장실에? 어떤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내가 진짜 불내고 싶으면 크게 불냈죠. 화장실 방안에다가 불냈죠. ... 불낼생각 아니었다구요? 네. 놓구만 문열어놓고 그냥 여관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깐 담뱃불 불날거란 생각못했어요? 네. 정신장애 2급판정 받다보니깐 생각을 못했어요 ... 화가나거나 그런 건 아니구요? 그런거 없었어요. 담배피고 놔둬서 화재발생한거지.

〈사례 2〉

〈사례 9〉의 경우에는 애초에 자신이 불을 지르지 않아 억울하게 잡혀 왔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교회에서 운동장까지 거리는? 교회에서 걸어가는데 신분증도 안보여주구요. 현행법으로 체포하더라구요. ... 현장검증하자 하더라구요. 불내는거 한번 해봐라 하면서 기쁨병 있었나 하면서 안했다 했거든요. 그니깐 경찰관들이 했다. 그래 새끼야 하면서 유치장 가져 하더라구요. 그때도 불구경하다가 그러신거예요? 네.

〈사례 9〉

나. 스트레스 요인

면접 대상이 된 방화 범죄자들은 평소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었다. 이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일상적인 긴장상태에서 삶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스트레스 요인들은 다양한 경로로 방화와 연결되고 있었다. 즉 평소의 스트레스와 별개로 방화 당시 촉발요인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으나, 별다른 촉발요인 없이 평소 스트레스가 방화와 직접 연관된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반면 소수의 사례에서는 범행 당시의 문제상황 이외에 다른 스트레스는 없었다고 대답한 경우도 있었다.

1) 경제적 곤란

방화범죄자들이 겪고 있던 스트레스는 빈곤, 실직 등 경제적 곤란이 많이 발견되었다.

〈사례 22〉는 실직 이후 경제적으로 곤란해 지다보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가고 있는 상태였고, 〈사례 1〉은 가정불화 등의 문제도 겪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상태가 스트레스를 가져왔다고 진술하였다. 〈사례 7〉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실직 상태가 스트레스 상황이었으며, 〈사례 11〉도 교도소 출소 이후 돈을 잘 모을 수 없었다는 것이 스트레스였다고 진술하고 있었다.

자격자심이란 생각이 듣게 술 마시기 전이었어요? 아니면 후였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들죠.

자격자심 생각은 언제부터 들었나요? 직장 그만 둔 뒤부터 그런 것 같은데요. ... 2009년 2월 인가 3월인가. 그 때부터 경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장이 월급을 줄인다 그러더라구요. 그때 직원이 3명이었는데 그렇게 작게 받고는 일 못한다고 하고 다 같이 나와버렸어요. 그 이후에 정수기 회사에 들어가서 일했는데 거기서 화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1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햇볕을 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수입도 없이 집에만 있었어요. ...

2009년 3월쯤엔 돈 가진 것도 없었겠어요? 거의 다 떨어져 갔죠.

그래서 자격자심이 더 심해졌다는거죠? 네.

사건 당시에 많이 힘들게 했던 상황이 있었나요? 직업 잃은거 외에 다른건? 월세 밀린거. 전기세 밀린거. 뭐 그런거죠.

〈사례 22〉

근데 이게 젤 중요한 경제력이 없다보니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제조업할텐 남한테 빚 안 지고 살았습니다.

주로 수입은? 지금은 부인이 일을 나가고, 작은애는 고3이라 2학기때 취업나가고 큰애는 전문 대라 취업만하면 되죠. ...

다른일은 안하신거예요? 나두 일을 손을 때니깐 오래 영업을 해서 그런지 쉬고싶더라구요. 굶을 형편은 아니었으니까 조금 나태하게 있던게 길어졌죠. 이제는 내 용돈벌이를 해야겠다고 여기와서 많이 느꼈어요. ...

〈사례 1〉

그날이 다른날과 다른점이 있어요? 없었습니다. 다른것도 없었고 단지다만 일거리가 없어서 괴롭다 그거말곤 없었습니다.

〈사례 7〉

여지분 말고 다른 속상한일도 있었나요? 물론 잘 안됩니다. (교도소에서 사회로) 나가면 적어도 안될뿐더러, 돈조금 있었는데 돈도 없어지니깐. ... 97년 딱들어오니 아이엠에프 터져서 그것때문에 내가 1억 정도 나가고 장사가 되거나. 돈도 다 없어지고 그리했습니다. ... 무슨일 있는 건 그건(한숨) 잘안되고 무슨일 하려면 잘안됩니다.

(사례 11)

2) 정서적 곤란

가정불화, 가족의 질병 등 가정 내의 여러 가지 문제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범죄자들도 다수 발견된다. <사례 1>은 범행당시 경제력이 없었던 것도 스트레스 요인이었지만, 그와 연관해서 발생하는 가족 내 불화도 범죄자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건강말고 다른문제가 있었나요? 건강말고는 문제될게 없었어요. 중간에 내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서 법적으로 이혼당한 상태였어요. ...

따님이랑 사이가 원래 안좋았던거예요? 그날만 딸이랑 사이가 안좋은 거였죠, 근데 자식도 품안의 자식이라고 의견충돌이 있어요. 저는 가부장적인게 있어서 주관이 뚜렷한데 요즘 애들도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 있었던거지. 근데 문제는 여자들은 엄마편, 그래서 난 혼자인거지. 그런 면에서 섭섭하게 있었던거지 ... 하나 더 추가적 요인은 애들 말고 처조카 같이 사는데 30몇인데 처조카인데 몇일 동안 외박하더니 다녀왔습니다도 안하고, 사실 나는 얘기가 없는걸 싫어해서 한마디 하는데, 그전에도 집사람한테 내보내라고 했는데, 그런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그날 낮에 들어오더라구 놀라왔다는지 자기가 몸뚱이리 안 챙기고 스스로 안 살구 처조카인데 머라하긴 그렇구 꼴을 보기 싫었어

(사례 1)

<사례 12>의 범죄자 역시 경제적인 문제가 스트레스 상황이기는 하였지만, 경제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배우자의 행위가 더 짜증나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배우자가 필요 없는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는 등 지속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게하는 행위를 반복해 왔고, 그것이 범죄자를 견딜 수 없게 했던 요인들이었던 것이다.

특별히 나에 대해서 내 생각에서, 응.. 집안에 안좋은 일이 있고 집사람하고도 안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94~5년에, 집사람 금전관계 땀에 깊이주고 깊이주고 하다보니 액수가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 땀에 이혼할까 하다기도 그렇고 술 한 잔 먹고 우리동네 뒷산에 내버렸는

데 크게 한번 난적 있고 ... 제가 일하다가 척추하고 골반이 떨어져서 다쳐서 고생을 하고 재활치료 하다가 퇴원해서 동네 뒤에 등산로로 지나다니다가
 그 당시 가장 스트레스는? 허리다친거랑 집사람이 내 모르게 전자제품사고 보증서고 주변에서 집사람이 마음이 좋으니깐 이용을 당한거지, 인감도 띠어주고 처음엔 액수가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깐 집사람이 이용을 당했다 싶어지니깐 액수가 감당이 안 되고, 애들 학원비 같은 거도 두달 세달 밀리고 애들도 학원못가고 그러다가 나한테 걸려서 물어보면 쪼잘쪼잘 말해주고, 처음에는 많이 갚아줬는데, 나중에는 다단계 같은거도 하고 나중에는 감당 못하게 산화머니에도 독촉장 날아오고 법원에서 날아오고, 거기 이자가 68%인데 이자를 못 내가지고 1년만에 원금에서 10배올라 있고, 저혼자 그러면서 감당도 못하고 머리도 아프고 불도 지르고 싶고 술도 먹고 싶고 산도 돌아다니고 싶고 그랬던거죠 ... 남동생이 반 신기가 있어가지고 일도 안하고 나이가 마흔이 다되기도 나한테 와가지고 절로 산으로 온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니고 정신나가 가지고 술만 먹고 알콜중독으로 결국은 심근경색으로 죽고 나한테 제각까지 지어서 만들어 달래서 만들어줘도 머 누가 거길 가요. 어머님도 머 아들 죽으니 화병걸리고 발에 올라가서 언덕높이에 추락하셔서 농로 댕아놓는데 모서리에 머리 박아서 다치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계속 있었죠.

(사례 12)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여자친구와의 불화 등 가정문제나 애정문제가 스트레스 요인이었던 사례들도 있었다. <사례 5>의 범죄자에게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 평소 스트레스의 원인이었으며, <사례 18>의 범죄자도 이혼을 하였는데 자녀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가장 마음 아픈 일로 남아 있었다. <사례 14>의 범죄자도 몇 달동안 여자친구와의 불화로 인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음.. 그때 그니까 제가 이혼을 하고 애들을 갖다가 2명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저 변명같은 얘기지만 집사람이 바람을 많이 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돈을 벌어야 하는데 정을 둘 때가 없어서 그쪽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사귀게 됐는데 배반 비슷한 그런 걸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감정이 여자들한테 안 좋더라구요. 한번은 그니깐 1년 안에 배신을 갖다가 2번이나 당하니깐 정신적으로 우울증도 오고 그랬습니다. ... 제가 그때 좋게 이혼하면 좋은건데 변명같지만 처음 결혼한 건데 이혼하고 아이들도 있고 제가 합의이혼했는데 좋게 헤어졌어요. 그때부터 머리가 좀 이상해졌어요, 생각이 이상하게 변하고 알콜하고 담배하고 안 좋은 것만 하니깐 계속 안 좋아지더라구요 ... 같은 아파트 옆에 이웃집인데 같이 밥같이 먹고 유부남인데 애도 있고 그런데 그쪽 남편하고 좀 그런 일이 있었나봐요. 나이도 비슷하니깐

(사례 5)

제일 화날 때는 언제예요? 그냥 딱 꼬집어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노가다 하다가 짜증나고 일도 잘 안되고, 이혼하고, 내 얘기 생각나고 그러면 화나죠. 내 딸이 컸으면 지금쯤 22살 정도 됐겠네요. 어머니는 어디 사는걸 아실 거 같은데 저한테 말 안해주시더라구요. 제가 찾아갈 까봐 그런 것 같아요. 잘 살고 있을 거니깐 굳이 찾아갈 필요도 없죠.

(사례 18)

피해자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여자친구였고 또 피해자와 같은 회사, 같은 팀에서 일하는 입장이라 여자친구와 싸우고 헤어지는걸 다 아니간. 힘들었어요. 회사에 나가기도 쪼끄럽고, 그래서 집 밖도 안 나가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 거의 한 달동안 못 잤습니다. 잠을 잠깐 잤다가 일어나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동안 특히 힘들었어요. 치료도 받으러 가기도 하고, 여자친구와 만나는 과정에서 힘들고 그러다보면 다투고 격해져서 계속 힘들어지면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나니깐 ... 그냥 패버리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미쳐버릴 것만 같아서 심리치료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누나와도 상의를 많이 했어요.

언제부터 여자친구와 관계가 안 좋았어요? 사건나기 한 달전 쯤 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여자친구가 원하니깐 하루에 잠도 몇 시간 못 자면서 피곤해도 아침, 저녁으로 일 했었죠. 그런데 그런 생활이 두 세 달이 지속되니깐 사람이 힘들더라구요. 피곤하니깐 아무 곳에서나 찜만 나면 꾸벅꾸벅 즐기고, 잔다던지, 컨테이너 사이에서도 즐기고..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생활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여자친구에게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했어요.

(사례 14)

〈사례 6〉과 〈사례 8〉은 평소의 다른 스트레스는 없었고, 단지 동거하던 여성과의 관계문제가 당시의 일시적인 문제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다른 스트레스는 없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빨리 출세하고 승승장구 했었어요. 지금도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 나이나 번 돈 다 까먹고 거지가 되서 한국에 돌아와 위축감은 있었는데 그때 그 백미숙과의 사이에서는 다른 문제가 끼어들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사례 6)

평소 여자분 말고 스트레스 쌓인거는? 우리는 스트레스 쌓이면 산에 가서 일을 못합니다. 톱날이 팔이나 그런데 걸리면 끝내기 때문에 그러면 스트레스받거나 술을 먹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작년엔 둘이 같이 저랑 일하다가 다친 사람도 있고, 나무베다가 탕겨서 다른 사람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일 못합니다.

(사례 8)

3) 기타 관계적 문제

그 밖에 배우자 이외의 가족 구성원들이 발생시킨 문제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사례도 있었는데, <사례 15>는 아버지의 지속적인 외도가 범죄자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으며, <사례 20>은 아버지가 방화살인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것이 거의 매일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었다. <사례 20>의 범죄자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자신에게 정신지체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다른 부분에선 힘든 점 없었나요? 사실 그 당시, 가족들과의 관계가 좀 있었죠.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있었는데. 제가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었죠. 아버지가 외향적인 스타일이시라 집보다는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셨고 바람도 피셨고(3~4번), 한번은 아버지가 술이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정신없는 상태에서 바람핀 상대를 집으로 데려오기도 하고 했죠. 잘못은 아버지가 해놓고 오히려 우리를 파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엔 힘도 없었고 아버지니깐 어떻게 할 수 없었죠. 어머니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외가로 가버리시고.

<사례 15>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일 짜증났던 일이 있었어요? 환청 들리는게 제일 짜증났어요. 그리고? 또 없어요? 그거 밖에 없었어요. 어떤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리는거예요? 여자 목소리. ... 뭐라고 해요? ○○씨 불질러 불질러. 그 소리 들으면 짜증나요. ... 불 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어릴 때부터라고 했는데 언제를 말하는거죠? 2006년도 부턴가. 한 17살. 그 때부터 정신지체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방화 살인 때문에 들어갔어요. 일부러 그런건 아닌데. 얘기한테 불이 붙었고, 아버지가 겁이 나서 그냥 도망갔는데 방화살인죄가 됐어요. 아버지 생각 자주 나나요? 아님 가끔? 자주나요. 매일 나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럼 그때마다 불 저지르고 싶고? 네.

<사례 20>

그 밖에 직장 상사의 폭언, 폭행 등이 스트레스였던 <사례 19>와 같이 사회 관계적인 문제가 스트레스요인이었던 사례도 있었다.

사건 당시에 사건과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짜증나거나 스트레스 쌓이는 상황은 없었어요? 그냥 일할 때요. 욕 많이 얻어먹었으니까요. 중간에 잠자고 그러니까요. 누구한테 욕 들었다는거예요? 감독관이죠. 반장. 그 사람도 성격이 지랄 맞아가지고 뽕떡거리는데 스타일이었어요. 자기가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바로 욕 하고 그랬죠.

그 일이 불 지른 사건과 연관이 있었을까요? 약간은 있었겠죠. 혼자 있고 외롭고 스트레스 받
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다가 욕 많이 듣고 그러니깐 복합적으로 그렇게 된거죠. 좇같네 이러면서

(사례 19)

다. 불결심 시점

1) 갈등상황

〈사례 4〉, 〈사례 8〉, 〈사례 18〉 등의 사례들은 촉발요인이 될 수 있는 갈등상황
이 발생할 당시 불을 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사례 4〉는 여자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 〈사례 8〉은 동거녀와의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사례 18〉
은 숙박업소 종업원과의 말다툼 상황에서 불을 지르려는 생각이 든 것으로 진술한
것이다.

불 내야겠다 생각은 언제 드신거예요? 그때 이제 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헤어지고 바로 불지르겠다 생각하신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가장 처음 불냈을 때 불내고 싶다 생각은 언제 드신거예요? 들어가서 들어가기 전 들어가서..

(사례 4)

네네 제가 항상 열쇠를 들고 다니니깐 제가 집에 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나
고 전화도 안받고 그래서 화가나서 불지르고 차몰고 경산가서 불지르고
처음부터 집에서 불지를 생각은 없었다는 건가요? 없었어요. 술먹고 집에서 전화도 안받고
하니 짜증이 나고 해서 담배한테 피우고 휴지 던져놓고 나왔어요. 그래서 옆집에 불 번지는 그
런 생각도 없었고 그냥 확하구

(사례 8)

그러다가 다시 좀 자다가 일어나서 술 좀 더 마실려고 모텔 주인한테 인터폰하고 전화를 계속
했는데도 전화도 안 받고 왜 이렇게 안 받아 그런 생각하면서 술도 덜 깬 상태이기도 했고
티슈 한 장 꺼내서 불 붙여서 복도에 있는 CCTV 보면서 흔들었어요.

(사례 18)

2) 음주상황

가) 갈등 후 음주 상황

〈사례 5〉의 경우는 유흥업소 종업원과의 갈등상황 이후 본드와 술을 같이 먹게 되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불을 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사례 6〉도 동거녀 및 동거녀 형제들과의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불을 질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례 6〉의 범죄자는 방화 이전에도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처음부터 불지를 생각을 했나요? 술먹고 여러 가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저만 생각하는 건지 불이라는게 깨끗하다, 다 태워버릴 수 있으니깐, 술 먹고 정신이 없었을 때긴 한데... 아니 일단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나니깐 답답한 마음에 본드를 그때 하셨나요? 네 그거는 어릴 때 제가 그니깐 고등학교 땐가 고등학교 1학년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술도 안취하고 그러니깐 다른 그런것도 하고 싶고 마약 이런 것도 하고 싶었는데 못구하니깐, 옛날 어릴때 생각나셔서 하신 거예요? 10대때 했던 경험이 맨 정신으로 살기 힘드니까 다시 생각난 거예요? 네 사건당일에만 하신 거예요 아님 그전에도 하신 거예요? 당일 몇 일전에도 하다가 그때도 술 땀에 아님 본드 땀에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복합적 인거. 어느 정도 드신 거예요? 양주하고 맥주하고

〈사례 5〉

그전에는 다른 방법을 썼었죠, 별지랄 별거 다해봤는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통하니깐 안하무인들이니깐 이러면 사람은 볼 수 있지 안느냐해서,, 하지말고 갔어야 하는데 작은 불이 되면 나오면 이야기 하고 갈랐는데 큰불이 되셔야 나타나고 일이 커져서 이렇게 된거죠. 불질러야 겠다 생각한건 언제인가요? 교회에 있다가 ○○○ 집 주변 미국부대 주변에 와서 거기서 술을 먹으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구요. 그 집이 ○○○거리 옆 ○○○호텔 옆에 있기 때문에 3층에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게 보이는데, 있는데 없다 그러고 가게갔다가 참고 그 집갔다 참고 술을 먹다가 그 동네 갔다가 결정한 거예요. 결심하고 바로 가서 불지른 것인가요? 마음먹고 1시간 정도, 그렇게 우발적으로 술을 먹다가 맘을 먹고 불을 지르러 간거죠.

〈사례 6〉

〈사례 12〉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상황이 닥칠 때 마다 술을 마시고 그 이후에 불을 지르는 양상을 반복한 사례이다. 68건의 방화 중 첫 방화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스트레스 상황이 닥치게 되면 첫 방화의 느낌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충동 때문에 ‘화가 나면 술이나 한잔 먹고 질러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니깐 담배피다가 첫 화재방화부터 그뒤로부터는 인종은일 생기면 다태워고 싶은 충동이 ... 네, 처음에는 우찌나나가 싶어 한건데 그러가지고 끄는데 번지고 그래서 싸이렌소리 헬기소리 들으니 속이 답답하게 풀리고, 이러면 나쁜짓인데 싫어도 하고싶어지고 ...
 제가 화가나가지고 술을 먹으러 가고 술을 한잔 두잔 먹으면 폭주를 먹고 2~3병 소주를 먹고 나면 충동이 생기고 근데 밤에는 술한잔 먹고, 맨정신에는 무서워서 못들어가니깐 밤에 술도 먹고 그러고 가죠 ... 나는 나한테 화가나면 술이나 한잔먹고 질러야지 이런 기분으로 그럼 불을 지르게 되게, 답답한게 얼마만큼에 한번씩 찾아오나요? 나한테 인종은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답답한 걸 느끼고 ...
 불지를 때 술은 드셨어요? 주로 술을 한잔씩 하고, 술먹다가 주로 가서
 불좀 내야지 하는 맘은 언제 드세요? 술한잔 먹으면 충동이 막

〈사례 12〉

나) 일상적인 음주상황

〈사례 13〉, 〈사례 22〉, 〈사례 1〉 등의 사례들은 촉발요인이 되는 갈등상황이 없이, 일상적인 음주 상황에서 방화의 충동이 생겼던 사례들이다.

왜 갑자기 불을 지르셨어요? 라면 끓여 먹으려다가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성냥을 집어던졌어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사람들처럼 밥 준비해서 안 먹고 라면 끓여 먹는 내 처지를 생각하니깐 처량해서 집어 던졌어

〈사례 13〉

불이나 질러봐야겠다는 생각은 언제 들었어요? 술 먹다보니깐 그런 생각이 든거죠. 잠에서 깨고 나서 좀 뒤척뒤척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 생각은 자주 나는 편이에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
 불 낸 날이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런 것 없었어요.

〈사례 22〉

술을 먹으면 사람이 단순해지나봐요. 그순간엔 그게 그냥 생각이 난거야. 담배를 피니깐 라이

터는 가지고 있죠. 그날상황을 얘기하면, 조카가 낮에 들어왔자나. 저녁되니 지 방가서 자더라도, 불을 벌려고 솔직히 크게 날진 몰랐지, 잠시 재활용 옷을 쌓아는 6봉지를 몇 일 전부터 갖다주라구 치워라 치워라 했는데 뇌뒀더라구, 그래서 술먹고 거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니 붙는 거야.

〈사례 1〉

3) 범행 장소 도착 시점

〈사례 3〉, 〈사례 15〉는 음주 당시에 불을 지를 생각이 없었다가, 음주 후 범행 장소 도착하자 갑자기 불을 지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응답한 사례들이다. 〈사례 3〉은 음주 후 택시를 타고 집앞에 도착한 이후에 갑자기 자신을 내쫓고 폭언과 폭행을 한 사장의 얼굴이 떠올라 불을 질렀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사례 15〉는 음주 후 자신도 모르게 여자친구 집앞까지 오게 되었고, 여자친구의 차를 보고 불을 질렀다고 이야기하였다.

쓰레기더미에 불지르신 거예요? 그때는 그게 저는 쓰레기더미에 불 내본게 도구 낚시도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속상해서 술드실 때까지 불내는거 생각까진 안했구요? 네

그럼 사장얼굴이 떠올라서 불낸 거예요? 네

〈사례 3〉

왜 하필이면 차에 불 붙일 생각을 했나요?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또 한번 더 패버릴까? 아님 전화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차욕적인 욕을 다 해버릴까. 돈도 안 갖고 여러 가지 당한 것만 같고 억울한 상황이 이어지니깐 별의 별 생각을 다 했다. 찾아가서 따져볼까. 다 집어치우고 처음부터 잘 지내볼려고 매달려도 볼까. ...

그 전에도 불 붙이려고 시도한 적이 있어요? 술 먹고 정신 났을 때 이미 불을 저질러 버렸더라구요. 그런데 불을 저지를 줄은 생각 못 했죠. 실은 한 달 사이에 열 받아서 집 앞까지 찾아가서 패버릴려고 기다렸다가 간 적은 많아요. 그런데 불 지르려고 한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생각만으로 너도 나한테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니깐 나도 너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기 위해서 불을 저질러버릴까라는 생각은 한적은 있는데 실제로 실행으로 나간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너가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게 하니깐 너도 금전적으로 잃어버리는 식이었죠.

〈사례 15〉

〈사례 10〉은 범행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집을 돌아가는 중에 화가 나서 다시 범행장소로 돌아와 불을 지른 사례이다.

조금 앉아있다가 그말하는 바람에 저는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다가 횡김에 다시 돌아와서 ...
 그때 가실 때 무슨 생각하구 가신 거예요? 그냥 아무생각 안 하구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짜증나구 화가나구 ...
 그때 술도 많이 드셨고 쉬고 싶지 않으셨어요? 네 그런데 화가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례 10)

4) 지속적으로 방화 충동이 있음

〈사례 21〉, 〈사례 19〉, 〈사례 22〉는 갈등이나 음주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방화 충동을 가지고 있는 사례들로 보인다. 이중 〈사례 21〉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경 때문에 불을 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어린 시절부터 들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사례 19〉는 강한 자극과 스틸을 추구하고 싶다는 생각에 방화를 선택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불 지르고 싶다는 생각은 언제 들었나요? 어릴적부터. 어릴 때 아버지가 교도소 간 충격 때문
 에요.
 그게 언제였죠? 초등학교 4학년. ...
 그 소리가 언제 들리는 거예요? 계속 나요. 하루 종일 나고, 그래서 머리 아프고 시끄럽고 짜
 증나고 그래요.
 언제부터 불 질러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아버지 일부러.
 왜 환경이 불 질러라고 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사례 21)

제일 처음엔 왜 불 저지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순간적으로 그랬어요. 그냥
 티비보다 보니까 불 나는거 나오던데 그 장면보니까 스틸있어 보였어요.
 혼자 술 마시다가 그런 생각 든 거예요? 혼자 마시고 있었어요.
 제일 처음 왜 불을 냈을까요? 너무 모험적인건 못하겠더라고요. 티비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성
 범죄라든지 지나가는 사람들 폭행, 강도하는 것처럼 대놓고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증거도
 있고 금방 들들나니까 그런데 휴지에 불 붙이면 휴지가 다 타고 나면 증거가 없어지니까 원
 가 짜릿한 일을 해볼랐는데 그 중에 좀 소극적인거 해볼러다가 그리 된거죠. ...
 술 드셨는데 기억은 다 나시나요? 기억이 다 나요. 상황적으론 판단이 나죠. 잡힐거 같던지
 누가 보고 있다던지. 그래서 안전하다 싶으면 그 때 하죠. 항상 술 마시면 갑자기 불 지르고
 싶었어요. ... 티비 프로그램 중 영화보다보면 깡패 영화같은거 있잖아요. 비열한 거리같은거.
 그런걸 보면 재밌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다보면 딱 스틸 날이 있어요. 딱히 불 저지를려고 했
 던건 아닌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떠올라요.
 어떤 생각 말하는거죠? 확 나는 그런 생각은 없고 그냥 술 기운이 확 올라오는거죠. ...

그러면 불 말고 다른 걸로 스킬 느껴볼 생각은 안 했어요? 저는 차를 좋아해서 다른거엔 스킬 못 느꼈고 제가 운전을 좋아하니깐 차한테 했죠.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범죄는 좀 그렇고 내가 소극적으로 불 질러 불만하게 없나 하다가. 일종의 반항이죠. 나도 이런걸 못할거 같냐 이런식으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사례 19)

〈사례 22〉는 자동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래서 좋은 자동차를 보면 불을 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 하였다.

주로 자동차에 불 질렀는데 왜 그랬을까요? 글썄요. 그냥 자동차에 지르고 싶더라구요. 혹시 자동차에 안 좋은 추억이라도 있어요? 하나가 있긴 있는데요. 예전에 카드를 대납해주는 곳에서 차를 빼가지고 다시 파는 건가. 카드깡처럼. 차를 빼면 삼백 줄테니깐 빼러더라구요. 근데 차는 없고 삼백만 받아서 쓴거죠. ...
하필이면 그 날 왜 그 차에 질렀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비싼 차였으면 안 하는건데. ...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냥 뭐 좋은 차네. 불이나 질러볼까. 불 붙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불이 붙더라구요. ...
좋은 차 보면 더 화가 나는지요? 뭐. 그냥 꼭 그렇...그런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사례 22)

3. 범행 전후 행적

가. 범행 직전 행적

1) 음주

방화 범죄자들의 방화 직전 행적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 범행 현장에서 음주

이중 〈사례 1〉, 〈사례 13〉, 〈사례 17〉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불을 지른 사례들이며, 〈사례 18〉은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불을 지른 사례이다.

집이 아파트인데 시는집에 11월 8일건은 딸하고 다투고 문열어 달라고 했다가 안열어 주자 장

난삼아 우유봉지 남은걸로 태워서이구, 두 번째는 술한잔먹고 12월 24일날 애들 다 알바키구 부인은 일키구 그러니 적적히구 세상살아 뭐하나 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랬죠.

〈사례 1〉

사건 있던 날은 어떻게 하다가 불이 났어요? 노가다 하다가 술 마시고 왔는데 방에서 라면 먹고 싶어서 끓여 먹다가 불이 났어요. 성냥으로 하는 알코올 램프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먹고 싶지 않아서 벽에 성냥을 집어 던졌는데 불이 나더라고

〈사례 13〉

원래 불 낼려고 한건 아닌 거네요? 네. 다 탄건 아니고 한 뽕 정도 탔어요. ... 술 한잔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담뱃재를 재떨이 버릴려다가 잘못해서 떨어졌는데 불이 나버렸어요.

〈사례 17〉

이번 불난건 어떻게 된거죠? 제가 술 한잔 먹고 한번씩 갔던 모텔에서 불 났어요. 집하곤 끝과 끝 사이인데. ... 아침부터 제가 술을 좀 먹었죠. 술 좀 얼큰하게 돼서. 사고 저지른 모텔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술 마셨어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깨고 보니깐 청소를 했는지 술병이랑 그런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좀 자다가 일어나서 술 좀 더 마시려고 모텔 주인한테 인터폰하고 전화를 계속했는데도 전화도 안 받고, 왜 이렇게 안 받아 그런 생각 하면서 술도 덜 깬 상태이기도 했고. 티슈 한 장 꺼내서 불 붙여서 복도에 있는 CCTV 보면서 흔들었어요.

사건당일 술은 몇시부터 마셨어요? 집에서 1~2분 거리밖에 안되는 곳인데 동네 큰 누님뻘되는 가게에서 소주세병인가 네병인가 마시고 편의점가서 또 마시고 그랬죠.

〈사례 18〉

나) 집에서 음주 후 범행현장 이동

다음의 〈사례 19〉, 〈사례 6〉, 〈사례 8〉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범행장소로 이동한 사례들이다.

처음 불 저지를 땐 술 마신 상태였어요? 술 먹었죠. 그리고 준비해갔죠. 추운 겨울이었으니깐 긴 잠바입고, 그 안에 휴지랑 라이터 가지고 다녔어요... 전부 거의 집 근처예요. 그냥 집이랑 가까우니깐 거의 집 앞이에요.

〈사례 19〉

그때 교회숙소에 있다가 목사님 말도 안 듣고 낮에 일하러 갔다가 중단을 시켰어요. 건물이 돌아가는 바람에 저희가 생명이 위험한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중단시키구, 일하는 사람들이랑 술 한잔 하구 교회 왔다가 술먹고

술은 동료들과 먹고 먹은 거예요? 그때 먹고 또 먹었죠.

〈사례 6〉

처음부터 들어가서 불지를 생각은 없었고요? 없었어요. 술먹고 들어가서 전화도 안받고 하니 짜증이 나고 해서 담배한테 피우고 휴지던져놓고 나왔어요. 그래서 옆집에 불 번지는 그런 생각도 없었고 그냥 확하구

〈사례 8〉

다) 술집에서 음주 후 범행장소로 이동

가장 많은 사례가 분포한 유형은 술집 등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범행장소로 이동한 사례들로서, 다음의 〈사례 22〉, 〈사례 4〉, 〈사례 11〉, 〈사례 5〉, 〈사례 7〉, 〈사례 10〉 등이 이와 같은 행적을 보였다.

3월달에 있었던 것도 비슷한가요? 네. 술 마셨어요. 다른 곳에서 술 마시다가. 1차로 집에서 먹고 노래방가서 놀다가.

이 날은 혼자 술 마셨어요? 술도 혼자 먹고 노래방도 혼자갔어요. 그렇게 놀다가 집으로 오면서 했죠. 노래방안에서도 술 마셨죠.

〈사례 22〉

근데 개가 한마디도 미안하단소리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아프더라구요. 11시부터 인제 술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3시가 들어갔는데 집에 가는 도중에 제가방화를 해서 혼자 드신 건가요? 네 혼자 포장마차에서 소주3병

포장마차에서 어디로 갔어요? 바로 앞에 편의점있고 거기 건물 화장실 어디가서 볼일 볼래도 길에서 볼수 없으니깐 ... 화장실가는 도중에 술을 먹고나서 방화를 했습니다.

〈사례 4〉

네, 택시타고 가서 바람도 쐬겸 술도 마시고 속상하고 해서 술먹으로 간건데 술먹다보니 확올라와서 웬만하면 소화를 시키는데 웬만하면 그걸안하죠. 내가 속상해도 상대방한데 표현도 잘 안내고 그러는데 진짜 화가나면

〈사례 11〉

그 대상자가, 하여튼 나이트에서는 뭐라더라 제가 거기서 술을 먹었었거든요. 거기가 전용 외국인 바라 한국사람은 출입할 수 없는데 하여튼 들어갔는데 제가 그날 바가지를 좀 심하게 썼어요. 거기서 화가 났던거 같아요.

〈사례 5〉

처음은 술드신데가 직장에서 얼마나 걸려요? 걸어서 한 20분 ...
 그럼 거기서 3병드신거예요? 네 식당입니다 밥먹는 식당맞습니다. ... 국물하나 나두고 먹었지
 싶습니다. 그날따라 기분이 좀 안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난데 까지 걸어간 건가요? 그리고 나서 호주머니 다털어서 3~4천원 되더라
 구요 그래서 소주하나 사먹고 술이 취해서 멀했는데 기억이 안납니다. 그러고는 올라갔는데 그
 러고는 정신이 혼미상태가 됐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어디까지 기억하세요? 슈퍼에서 술먹은건 기억하는데 담배를 피고는 어디로 간지 기억이 안남
 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억이 안나서 형사님께 나를 본 목격자를 토대로 진술해주시고 octv토
 대로 형사님들 보고 추측하고 그분들 이야기 듣고 진술서를 써주십쇼 솔직히 기억이 안납니다
 해서 사실상

〈사례 7〉

12시에 티켓 끊어 아가씨 부른거예요? 네 ... 조금 앉아있다가 그말하는 바람에 저는 나왔습니
 다. 집으로 가다가 횡감에 다시 돌아와서
 다방에서 집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요? 버스타구 가야되요
 버스타구 가다가 돌아오신거예요? 네
 가시다가 내려서 다시 갈아 타신거예요? 네

〈사례 10〉

〈사례 3〉의 경우 첫 방화때에는 혼자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가는 중에 불을 질
 렸고, 두 번째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도착하기 직전 불을
 지른 것이다.

(첫방화 당시) 그때 쫓겨나고 월급못받고 그랬네요? 네, 쫓겨나서 가게 근처 술집에 가서
 술집은 아는집인가요? 네, 아는 동생집, 알바하는곳, 거기서 술마시고 귀가 하는 중에 첫 사건
 이 일어난거죠
 혼자서 술드신건가요? 네 ... 제가 과하게 끊길 정도로 마시진 않는데 선이 있잖아요, 그걸 넘
 어선 잘 마시진 않는데 그날 많이 마시면서 이때까지 살면서, 제어가 안됐어요.
 (술 먹은 후)집으로 가신거예요 다른데 들리거나하지 않고? 들리거나 하지 않고 바로그냥 택시
 타구 온거같아요. 길가에 좀 앉아 누워있다가 좀 돌아다니다가 차타구 집에 온거 같아요.
 불 처음뵈게 차타고 내려서인가요 차타기 전인가요? 차타구 내린 후에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된것인가요? 두 번째는 제가 월급을 못받았잖아요, 그러가지구 다시
 가게를 찾았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주겠다. 나중에 와라 하며 다시 내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집에 뭐 방서며 이것저것 널게 많았는데 한 몇 달치 월급을 어머니께 가져다 드려
 야 하는데 못하니까 그때는 속상하잖아요, 그땐 혼자 마신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같이 마셨어요
 이때 술얼마나 드셨어요? 이때도 세네병 마셨던거 같아요.

혼자서요? 네 저혼자 3~4명마시구 친구들하고 다 합치면 10명 정도

〈사례 3〉

〈사례 15〉, 〈사례 14〉, 〈사례 20〉은 술집 등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범행장소로 혼자 이동한 사례들이다.

그 당시 술을 마셨어요? 네.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건 아니었는데 몇 일동안 피곤했습니다. 누구와 마셨어요? 아는 형이랑 친구들이랑 마셨어요 해운대에서 마시고 김해로 오는 버스를 탔고 타고오다가 버스에서 잤는데 그게 더 취하게 했던 것 같아요

〈사례 15〉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시외버스터미널쪽에서 친구 한명과 술을 마시기로 하고 만났어요. 술을 마신 그 곳은 집과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술집이었습니다. 친구와 저녁 11~12시쯤 만나서 소주 2~3병정도 마셨는데 술집에 앉자마자 급하게 마셨고 30분~1시간 만에 자리는 끝나고 일어나서 친구는 집으로 보내고 저도 집으로 바로 가려다가 술도 깰겸 좀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걷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이 3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술 깨려고 걷다가 현수막이 눈 앞에 보였고 호기심에 현수막에 불 붙였습니다.

〈사례 14〉

술 많이 마셨나봐요? 조금 마신거 같아요. ... 장애도 있고 술도 먹었고 그래서 잘 생각이 안나요

〈사례 20〉

2) 비음주

방화 직전 술을 마시지 않은 사례들은 〈사례 11〉, 〈사례 21〉, 〈사례 9〉, 〈사례 2〉 등이었다. 이중 〈사례 11〉, 〈사례 21〉는 집에 있다가 범행장소로 출발한 사례들이며, 〈사례 9〉는 교회에서 예배후 다른 사람들과 만나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범행장소를 경유한 것이고, 〈사례 2〉는 거주하는 교회에서 출발하여 범행장소인 숙박업소에 몰래 TV를 보러 들어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그때는 새벽 4시까지 뭐했습니까? 새벽 예배드리러 갔다가 그랬습니다

주무시다가 예배드리러 가신거예요? 네

다니는 교회는 따로 있으신거죠? 네

다니는 교회가려구 일어나서가다가 그게 더 생각이 나서 거기로 가신 건가요? 네

〈사례 11〉

불 저지르기 전엔 어디 있었어요? 집에 있다가 불 질러라는 환청이 들려서 집에서부터 불 지르려는 생각을 하고 나왔어요.

라이터는? 저도 모르게 집에 있던걸 가지고 나왔어요.

〈사례 21〉

집에서 거기(범행장소) 거리가? 좀 먼데 교회가 그 근처라서요

운동장은 걸어서 갈수있는 곳이에요? 교회건너편에 있어요 가다보면 운동장이 나오거든요. 산하고 연결되어 있고, 경찰관이 던지면서 산에 불나면 어떻게 할래 하면서 무덤있다고 산위에 불나면 우알까야 하면서 ...

잡한날이? 4월 27일이요

그게 무슨 요일인가요? 금요일

금요일에 예배드리고 오신건가요? 네

〈사례 9〉

여관은 왜 들어가셨어요? 그쪽 다 아는 이쯤마고 아는... 여관업주도 알고 저녁에 나오는 아주머니도 알고 ... 네 그냥 왔다갔다 한번씩 왔다갔다.

가서 뭐하실려고 하셨나요? TV같은거 보고와요 ... 그때는 몰래 들어갔어요 내가. 몰래 들어갔는데, 카운터에 다 붙까놓고 주무시고 있더라구요. 그냥 계단을 올라갔어요.

〈사례 2〉

나. 범행 직후 행적

1) 바로 집으로 돌아옴

〈사례 3〉, 〈사례 5〉, 〈사례 12〉, 〈사례 14〉, 〈사례 21〉, 〈사례 22〉, 〈사례 19〉는 범행 후 바로 집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한 사례들이다. 이들에게 집은 범행이후 도피처로서 기능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 3〉은 술마시고 집으로 오는 길에 집 근처에서 불을 지르고 바로 집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사례 12〉는 집 근처의 산책로와 등산로에서 불을 지른 후 집으로 도피하였다. 〈사례 5〉와 〈사례 14〉도 쉬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집으로 가신거예요 다른데 들리거나하지 않고? 들리거나 하지 않고 바로 그냥 택시타구 온거 같아요. 길가에 좀 앉아 누워있다가 좀 돌아다니다가 차타구 집에 온거 같아요. ... 지켜본거도 있고 집에 들어간 적도 있고

〈사례 3〉

불은 바람이 불어오니 금방번지더라고요. 소나무껍어서 치면 꺼져야하는데 불똥이 더 번져서 겁이 나서 아차 싶어서 저 같은 경우는 셋길로 숨어서 내려왔고
그러면 불이 타는 모습을 보고 내려오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놓고 오시는 편이에요? 지능적으로 되더라고요. 화장지 같은거 새끼꼬아서 성냥 몇가지 꽂아가지고 라이터 불 흔들면 불씨만 타다가 성냥있는데 타들어오면 시간을 벌어서 확 타더라고요
그니깐 불을 놓고 자리를 뜨는 거네요 타는걸 보는게 아니라? 네
속이 시원해지려면 타는걸 봐야하지 않나요? 그니깐 성냥 하얀게 인화가 돼서 불이 확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내려와서 보면되니깐 내려와보면 싸이렌 소리가 나고 머, 그니깐 불이 나는 걸 보고 ... 네 처음엔 질러놓고 도망가고

〈사례 12〉

그때 전화연락해도 연락도 안되고 불을 지르면 사람이 나오겠지, 좀 약간 덜떨어진 생각이긴 한데 슬취해가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불지르면 만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불 다 탈 때까지 기다리지 왜 가셨어요? 그때는 새벽이 밝아오고 운전하기 힘들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새벽이라도 사람이 있으니깐 있기 그렇더라고요

〈사례 5〉

20회 이상 불 지르고 난 후에 더 불 지르지 않고 집에 갔는데 왜 멈췄나요? 그냥 피곤하기도 했고 잠도 와서 그만 두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이후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집에 들어가서 한참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데 형사가 들이닥쳤어요.

〈사례 14〉

〈사례 21〉, 〈사례 22〉도 불이 타는 도중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에 집으로 도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사례 19〉 역시 불을 지른 다음에 바로 집 안으로 도피한 후 다른 날처럼 일상생활을 지속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불 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엔 집으로 왔어요.
불 타는 중에 갔어요? 다 보고 갔어요? 타는 중에 가요. 불 타고 있고 사람들 모여있고 하면 무서웠어요.

〈사례 21〉

차는 얼마나 탔나요? 조금 타는 것만 보고 그냥 갔죠.
왜 다 안 보고 그냥 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불까봐. 걸릴까봐 겁나서요.

〈사례 22〉

범행 후엔 어떻게 지냈어요? 범행하고 나서도 술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지냈죠. 그러다가 술 먹고 필 받으면 주변 살펴보면서 왔다 갔다하고 괜찮다 싶으면 실행했고, 날씨가 안 좋으면 불이 잘 안 붙으니깐 안하고요.

〈사례 19〉

〈사례 16〉과 같이 스스로 119에 신고한 후 집으로 도피한 사례도 보인다.

신고는 몇 번째 범행 때 했어요? 세 번째요. 그 때도 무서워서 신고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불 질렀을 때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불 나면 신고를 하니깐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불이 커지니깐 겁도 나고 해서 그냥 도망갔거든요.

불 난걸 구경한건 아니구요? 네

신고했을 땐 어떻게 했어요? 소방차 와서 불 끄는거 좀 보다가 집으로 왔어요.

〈사례 16〉

2) 다른 곳으로 도피

〈사례 2〉, 〈사례 13〉, 〈사례 10〉, 〈사례 11〉는 불을 지른 이후 다른 곳으로 도피한 사례들이다.

〈사례 2〉는 정신장애가 있다는 변명과 큰 불이 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불을 지른 후 범행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도피하였고, 〈사례 13〉은 집에서 불을 지른 후 집 밖으로 도피해 버렸다.

네 (불을) 지르구 문열어놓고 그냥 여관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불날거란 생각못했어요? 네 정신장애 2급판정 받다보니깐 생각을 못했어요 ... 담배만 놓고 나왔는데 조금있다가 싸이렌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소방차오고.. 그리고 내가 담배놓고 온 여관이 아닐거란 생각하고 나는 그냥 나갔죠. ... 담배피구 끄지않고 제가 정신장애자다보니 그냥 두고 나와버렸어요. 문도 이만큼정도 열어놓고

〈사례 2〉

이불과 베개에 불이 타면서 뜨겁다는 생각이 나면서 방에서 나와버렸어. 밖으로 나오니깐 주변 아주머니들이 방에 연기가 많이 난다라는 말을 했었고 잠시 후에 소방차가 왔어

〈사례 13〉

한편 <사례 10>은 불을 지른 후 체포를 피하기 위해 정신병원으로 도피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집이라고 말씀하신게 다방에서 그게 정신병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 갔다가 집으로 가는중에..그..그갔다가 불하고나서 정신병원에 병원을 왜 가신거예요? 병원에 내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 거기있으면 좀 나올까 싶어서
(사례 10)

<사례 11>과 <사례 8>은 진술상으로 추정할 때 도피했다기 보다는 방화 이후의 결과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계획한 다른 일을 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범행 장소를 빠져나간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례 20>은 바로 옆에서 술을 먹다가 불을 지르고 술자리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교회주차장 불 내구 집에와서 주무신거예요? 그날 일하러 나갔습니다.
(사례 11)

술먹고 집에 가서 전화도 안받고 하니 짜증이 나고 해서 담배한테 피우고 휴지던져놓고 나왔어요. 그래서 옆집에 불 번지는 그런생각도 없었고 그냥 확하구 휴지로 불지른 후 타는 것을 보셨나요? 그냥 던지고 바로 나왔어요. 경상도는 그래요
(사례 8)

평소처럼 먹었나요? 전 그냥 쓰레기인줄로만 알고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을거란 생각도 못했고, 그냥 종이 찌거리만 몇 개 있구나하고 종이에 불 딱 붙이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요. 불이 나는 과정을 보거나 탄 과정을 본 건 아니구요? 네. 처음에는 불 붙일려고 하니깐 안 붙더라구요. 그러고 한번 더 시도하니깐 불이 붙었고 그것만 보고 바로 가게로 다시 들어갔어요.
(사례 20)

3) 현장에서 체포

<사례 9>, <사례 18>은 방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들이다.

네 교회끝나구 아는형님하구 만나서 집에가는데요, “방화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하더라구요
(사례 9)

좀 있다가 경찰이 왔어요. 불 났다고, 주인 입장에서는 겁나기도 했겠죠. 그런 행동이. 그리고 그 장면이 CCTV에 다 찍혀있으니깐 그리고 지루대로 잡혀갔는데 왜 불내셨냐고 경찰이 물어 보고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경찰이 조사해보고 올 테니깐 여기 잠시 있어보라면서 나갈려는데 혼자말로 “그래 씨발 니네들이 똑바로 해라” 그런 말을 했었어요.

〈사례 18〉

한편 〈사례 1〉, 〈사례 17〉은 실질적으로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범행 후 119에 신고하거나 불을 끄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가 평소에 설비를 집에 잘해놔서 수화기로 빨리 꺼서 소화시켰지. 그러구 집사람한테 미안하니까 처벌받겠다고 신고해라 그리고 집사람이 신고해서 경찰서가서, 크리스마스이브날 바로 옷 갈아 입구 잡혀갔어.

〈사례 1〉

119신고는 왜 했어요? 이불에 불 붙었으니깐 꺼달라고

〈사례 17〉

4) 기억나지 않음

〈사례 4〉, 〈사례 7〉, 〈사례 15〉는 범행이후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사례 4〉는 아침에 눈을 떠보니 여자 화장실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사례 7〉은 배회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PC방에서 잠을 깨었다고 진술하였다. 〈사례 15〉도 범행 후 배회하다가 주변에서 자고있다가 체포되었다.

기억은 나세요? 음.. 첨엔 기억이 안나죠

기억안날정도로 마셨어요? 네 그때는 제가 7시, 아침7시 눈을 뜨니 화장실에서 제가 자고 있는거예요(웃음)

어디화장실에서? 여자화장실에서, 7시에 눈뜨니 화장실에서 그래가지고 인제 집에가서 또 인제 형사가 찾아왔어요.

〈사례 4〉

어디까지 기억나세요? 슈퍼에서 술먹은건 기억나는데 담배를 피고는 어디로 간지 기억이 안납니다. ...

그럼 그뒤로는 언제부터 다시 기억이 나세요? 그러고는.. 그뒤로부터 아무기억이 안났지요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도 안들어가고 어디서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깨셨어요? pc방인가 먼가 앉아있었다니까요. 호주머니 돈이 조금있었는데 굶어서 찜질방이라도 가면되는데 그날은 자고 일어나니 피씨방이라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사례 7〉

불 저지를려고 한건 기억이 났는데 불이 타고 있었던건 기억이 안납니다. 불 타는 모습까진 지켜보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주변에 가서 자고 있었는데 경찰이 와서 현행범으로 체포 했습니다 저보고 불 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불 저지른 적 없다고 왜 그러냐고 처음엔 했었죠.

〈사례 15〉

다. 체포 과정

1) CCTV

면접 대상 사례중 반 이상이 CCTV에 범행 내용이 찍힌 것이 체포에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3〉, 〈사례 4〉, 〈사례 5〉, 〈사례 7〉, 〈사례 10〉, 〈사례 11〉, 〈사례 12〉, 〈사례 14〉, 〈사례 15〉, 〈사례 16〉, 〈사례 20〉, 〈사례 21〉, 〈사례 22〉 등이 CCTV에 범죄자의 모습이 찍혀서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CCTV가 방화 범죄자의 체포에는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알고보니 CCTV찍혀가지고

〈사례 4〉

어쩌다 선생님이 한 걸로 드러난거예요? 그날 CCTV땀에.

CCTV는 언제 드러난거예요? 일단은 그날 경찰이 바로 알았겠죠. 근데 나중에 그 뒤에 드러난 거겠죠.

선생님이 CCTV에 잡힌거 알고있었어요? 네 ○○가 CCTV많은데 한 군대는 잡혔겠다 생각했어요.

〈사례 5〉

형사님 올때까지 모르셨어요? 네 그래서 와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 기억이 조금 나더라고요. 제가 갔습니다. 술이 취해서 한바퀴돌다온게 기억나서 제가 갔습니다 해서 CCTV잡힌데 마다 추측하고 목격자 종합해서 지술서 다쓰고 그러고

CCTV보셨어요? 사진만, 사진찍은거 형사분이 가져왔는데 저 맞더라고요.

〈사례 7〉

그 CCTV찍혀있어서

〈사례 10〉

어떻게 잡으신거예요? 카메라에 찍혔나봐요. ... 교회 CCTV요 ... 사건나고 그게 20일만에 잡힌거

〈사례 11〉

그럼 어떻게 잡혔나요? CCTV찍혀서, 아파트 주차장 CCTV설치가 안돼있는지 알았는데 술한잔 먹고 갔는데 내가 나쁜짓하고 나와서 십 한 육칠일 뒤에 찾아왔더라구요. 동사무소가서 내주소 얼굴확인하고 휴대폰화 도청 이런거 다해서 나 찾아 왔더라구요 일하는데 ... 처음에 아니라고 잡아땀지 다그렸겠지, 나중에 CCTV얼굴 나오고 나 나오고 2분뒤에 불나고 그러니 그거는 인정해야되지뭐

〈사례 12〉

어떻게 잡혔어요? 알고보니 CCTV에 잡혔더라고요, 새벽에 불 저지르고 그 다음날 1~2시쯤 낮에 형사들에게 잡혔어요. 조사과정에서 보니까 CCTV에 얼굴이 선명하게 잡혀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수사기술이 많이 발전한 거 같아요

〈사례 14〉

어떻게 잡히게 된건가요? 공터에서 자고 일어 났더니 손이 시꺼멓고, 제가 불 붙인 장소 근처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었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살짝 불려고 했는데 거기서 경찰한테 잡혔죠. 그냥 살짝보고 지나가면 모르겠지 생각하고 잠깐만 보고 집으로 갈렀는데 잡혔어요. 불이 났을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경찰서에 잡혀와서 하나하나 생각해보니깐 그리고 CCTV와 드문 드문 기억을 조합해보니까 불 낸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자고 있다가 깬을 당시에는 전혀 몰랐어요. ... 제가 자고 있을 시간에 여자친구가 경찰서 가서 CCTV를 확인하고 제가 이미 불 질렀다는거 확인했었고 경찰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잡힌거 같아요.

〈사례 15〉

그럼 어쩌다가 잡혔어요? 회사 갔다오는데 집에서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CCTV 보고 잡으러 왔더라고요.

증거로 CCTV 말고 다른건 없었어요? 다른 증거는 없었어요. CCTV에 완전히 정면으로 찍혀서 누가 보더라도 저인줄 알았어요.

〈사례 16〉

어떻게 잡혔어요? 그 날도 시간 때울겸 시내에 있는 PC방을 가서 ... 고스톱 치고 있는데 누가 두드리더라고요. 제가 휴대폰이 있어서 위치 추적을 했는가 몰라도, 저보고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경찰서에서 나왔는데 경찰서로 가자 그랬어요. 그 당시엔 난 모르겠다 그랬어요. 경찰서 와서 CCTV 보여 주더라고요. 거기에 제 얼굴이 나와있더라고요. 불 내는 장면.

〈사례 20〉

어떻게 잡혔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피씨방에 있다가 끌려왔거든요. 친구랑 같이 피씨방에서 게임하고 있었거든요.

2010년은 어떻게 잡혔어요? CCTV로요. 집에 있을 때 경찰이 와서 잡아갔어요.

〈사례 21〉

잡힐거란 느낌은 안 들었어요? 네.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런데 CCTV없는 줄 알았는데 CCTV가 있었더라고요. ... 친구랑 만나서 저녁 먹으면서 밥 먹고, 술 먹고하다가 친구 집에 있다가 집에 갔는데 집 주변에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잡힐거란건 몰랐죠. 경찰이 와서 뭐좀 확인할게 있다고 하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경찰들이 들어와선 옷장에 옷가지들을 살펴보는거예요. CCTV에 찍혔던 옷 가지들과 비교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선 경찰서 가서 잠깐 조사 좀 하자고 해서 따라 나왔어요.

〈사례 22〉

그러나 일부 방화범죄자들의 경우 CCTV 존재 여부를 살피거나, CCTV의 시야를 피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사례 3〉, 〈사례 19〉, 〈사례 22〉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곳이 CCTV가 없는 곳들이었기 때문에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처벌생각이 안든 건 왜 일까요? 그게, 당시 제가 알기론 거기 동네는 CCTV도 없었고, 아무튼 밤이고 해서

〈사례 3〉

고민은 했어요. 주변 상황을 살핀거죠. 사람이 다니나 안 다니나. 좀 안 된다 싶으면 포기하고 그냥 가는 거죠. 무조건 실행을 한다는게 아니라 상황이 안 좋으면 피해간다는거죠. 주변에 카메라 있거나 CCTV있거나 하면

〈사례 19〉

걸리면 처벌받을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요? 들었죠. 그런 생각도 했었죠. 그러면서도 안 걸리겠지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뭐. 그 땐 주변에 CCTV도 없었거든요. ... 몇 번 다닌 적이 있었고, 외진 곳이었으니깐요. 안 걸릴거 같은곳이죠.

〈사례 22〉

〈사례 14〉의 경우는 여자친구 집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평소에 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CCTV 위치를 인지하고 있었고, 범행 당시 동선이 CCTV의 시야

를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도 CCTV에 거의 안 나와요. 실제로도 2번 정도 밖에 안 나왔더라구요. 술 마셨고 그 날 일이 잘 생각은 안 나지만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대로 진행되었더라구요.

〈사례 14〉

2) 신고

다음의 〈사례 1〉, 〈사례 17〉, 〈사례 18〉, 〈사례 2〉, 〈사례 8〉 등의 사례는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신고에 의해 체포된 사례들이다.

〈사례 1〉은 범죄자의 배우자가 신고를 해서 체포를 당했으며, 〈사례 18〉은 숙박업소의 사장 또는 종업원이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 17〉은 불이 커지자 범죄자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누가 신고를 하신 거예요? 집사람이 했어요. 내가 집사람한테 에이 신고하려면 하라구. 뭐 내가 주변사람 피해준거도 없고하니 신고해도 괜찮으니 신고하라고 했죠. ... 설마 신고 하겠나 했죠. 잔소리 많이 들겠다.

〈사례 1〉

그런 행동이. 그리고 그 장면이 CCTV에 다 찍혀있으니깐 그리고 지구대로 잡혀갔는데 왜 불 내셨냐고 경찰이 물어보고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경찰이 조사해보고 올 테니깐 여기 잠시 있어보라면서 나갈려는데 혼자말로 “그래 씨발 니네들이 똑바로 해라” 그런 말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거짓이 없어요. 뭐라했냐고 경찰이 물어보길래 또 혼자서 중얼 중얼 했더니 긴급체포 당했어요.

〈사례 18〉

처음에 119 차가 와서 병원으로 바로 갔어요. 거기서 주사 맞고, 집에 다시 왔었는데 그 때 경찰이 왔어요.

〈사례 17〉

〈사례 2〉와 〈사례 8〉은 주변의 목격자가 신고하여 체포된 사례들이다.

어떻게 잡혔어요? 본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여관 저녁에 나온 다른 업주 저녁에 일하는 이종마들이 나오는 걸 봤으니까요.

불난다음 어느 정도 있다가 잡혔어요? 바로 안 잡히고 하루 그날..

〈사례 2〉

그때 거기서 신고가 되고 소방서에도 신고가 되고 이웃에서 차몰고 가는 것을 봤다고하고, 옆 집에 두 사람하고 이야기 했으니깐, 혼자 있다가 담배피고 나왔으니, 그것은 내가 요만큼도 거짓말할 꺼 없고 시인다하고

〈사례 8〉

3) 현행범 체포

〈사례 19〉는 CCTV가 없는 자신의 집 주변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주변에 경찰이나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범행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잠복하고 있던 사복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례이다.

그럼 어떻게 잡혔어요? 사복 경찰이 잠복하고 있었어요. 불심검문하러 온거죠. 제가 그 앞에서 어슬렁거리간 수상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전 불을 그 근처에 좀 놓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경찰이 그걸 보고 있었나봐요. 경찰들이 제가 범인일거라 생각하고 제가 놓은 불을 끄고 제가 들어간 곳을 따라 왔죠. 그리고 제가 사는 1층을 다 뒤진거죠. 층마다 센서가 있어서 사람 있으면 불 켜지는데 제가 1층에 사니깐 1층에서 불 켜지고 2층에선 안 켜졌으니깐 경찰들은 제가 1층에 살거라 확신했겠죠. 그래서 경찰이 1층을 다 뒤져서 질 잡았어요. ... 경찰이 니가 불 지른 주변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니가 한거 아니냐고 그러 식으로 계속 물기에 계속 아니라고 그랬는데 검찰 앞에서 어중간하게 인정하게 인정해버렸죠. CCTV를 봐도 전지 확실히 모르겠더라구요. 어떨결에 인정해보려서 상황이 좀..

〈사례 19〉

4. 범행 전후의 감정

가. 범행 전후의 느낌

방화 당시 혹은 방화 전후에 들었던 느낌을 질문하였을 때, 불을 지른다는 것에 재미를 느꼈다는 응답과 두려움을 느꼈다는 응답으로 양분되었다. 물론 음주 등의 이유로 기억을 못한다고 응답하거나, 화가 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

1) 재미 또는 만족

방화 과정에서 즐거움이나 재미를 느꼈다는 사례들은 〈사례 3〉, 〈사례 5〉, 〈사

례 12), 〈사례 14〉, 〈사례 16〉, 〈사례 19〉, 〈사례 20〉 등이었다.

〈사례 12〉는 배우자가 일으킨 경제적 손실이 동기가 되어 총 68건의 연쇄방화를 저지른 사례였는데, 이 사례에서 첫 방화는 장난과 호기심으로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재미와 흥분을 느끼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첫 방화에서 느껴지던 두려움은 두 번째 이후 사라지고 속이 시원해 지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생겼다는 것이다.

제가 일하다가 척추하고 골반이 떨어져서 다쳐서 고생을 하고 재활치료 하다가 퇴원해서 동네 뒤에 등산로로 지나다니다가 산에 올라가서 담배한대 피우다가 담뱃불도 불난다는데 하고 무심코 던졌는데 불 안나더라구요. 그래서 담뱃불이 불 안나네 해서 내 상황에 속도상하고 해서 불이나 확 나라 해서 담뱃불로도 안나는데 라이터로 장난삼아 무심결에 불을 켜는데 확 번져가 지구 끌려고 소나무가지로 치니 더 불이 번져서 놀래서 산 셋길로 도망갔어요. 그때부터 죄의식을 가지고 안했어야하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확 불이 나는걸 보고 깨운하다고 생각하고 시원하고 그래서 그게 그때부터 그렇더라구요 ... 그니까 짜증나고 집에 그 안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속에 심정이 속이 시원해지고 머리가 쭈뼛해지는게 방금 복잡하던 머리가 맑아지던 그런 기분이 짜릿짜릿하고 그런현상이.

첫날부터 그랬어요? 첫날은 두려워서 몰랐는데 그 뒤부터는 이상하다 신기하다 하면서 충동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겁이 나셨던 거예요? 네, 근데 내려오니 헬리콥터 소리나고 소방차 소리나고 내려오고나니 저리 끄는구나 싶어서 재미나기도 하고

첫날부터 겁은 났지만 시원한 것이 좀 있었나봐요? 네

하면할수록 재밌고 희열감이 더 있어요? 아님 지켜워 졌나요? 지켜워 진다는 거는 아니고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작은아들이 군대를 제 작년에 갔다 제대했는데, 작은 아들이 나리일 하러갔는데 내가 나쁜 일 하면되겠나 하면서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서도 속이 막, 한마디로 울화병이지 헛병이지 머리가 멍한게 얼굴도 상기되고 눈도 출혈오고,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몇 번 아들생각하면서 그래해도 몸은 발은 이미 산에 올라가고있고 그래요

불지를 당시 불지를 때 사이렌 울릴 때 어느 순간이 스트레스가 가장 풀리나요? 일단 불이 났다는 거랑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 풀리고

선생님 잡히기 전에 언론에 났는데 짐작보도도 있었는데 언론보도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뭐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았지. 나는 불지르는 게 좋았지.

언론보도 나왔을 때 두려움이 생기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언론보도 나왔을때는 잡힐거란 생각보단 좀 조심해야 하는데 그것도 한순간이고 그러고 나면 또 지르고 그랬습니다.

(사례 12)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례 16>의 경우에는 환청이 들리면 자신도 모르게 불을 지르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불의 따뜻한 느낌과 소방차가 올 때의 느낌이 좋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환청이 들리면 어떻게 대처하세요? 처음에는 저항을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저도 모르게 시키는대로 행동하고 있는거 같아요.

불 질렀을 때는요? 저도 모르게 있다가 정신 차려보면 불이 타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불을 저지르는데 불 타는게 재밌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어떤 점이 재미있고 좋았어요? 따뜻한 느낌이 좋았어요. 소방차 올 때 느낌도 좋았던거 같고 또 불이 따뜻하다는 느낌. 불 자체.

평소에 춥다고 느꼈어요? 아니요.

처음엔 불 낸 게 무서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좋은 느낌이 들었나요? 여러 번 하고 나서요. 첫 번째나 두 번째까진 나도 모르게 불 저지르고 내가 왜 이럴까했는데 세 번째 이후부터 기분이 좋아졌어요.

불 저지르고 집에 갈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불 다 꺼지고 나면 다행이다 라는 생각했어요.

불이 더 크게 타야 재밌지 않나요? 재밌는게 아니라 불이 따뜻하니까 좋았던 거예요. 불 꺼지니까 다행이란 생각들고.

불 질러라는 환청을 들었을 때 불 저지를 행동에 나서기 전에 정신이 차려진 적은 없었어요? 그런 적은 없었던 거 같아요. 매번 환청 들리고 불 저지른 다음에야 정신을 차렸어요.

(사례 16)

<사례 19>는 술을 마시면서 TV를 시청할 때 방화 충동이 생긴다고 하였는데, 불이 서서히 타오르는 상황과 불을 지르고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상황에 재미가 붙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사례 19>는 강한 자극을 원하였지만 강한 범죄에는 두려움을 느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행위인 방화를 통해 반항심을 충족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특히 차량에 불을 지른 이유가 차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왜 계속 불 저지른 거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일에 재미가 붙었던 거죠. 어, 안걸리네. 더 크게 해보자는 식이었어요.

하필이면 왜 차를 대상으로 했어요? 차에는 기름이 있고 재질이 플라스틱이다보니깐 그냥 잘 타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대놓고 기름 탱크에 불 넣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너무 빨리 터지니까 안 했어요. 저는 불 붙여놓고 진행이 좀 더디도록 하는 게 좋았어요. 그냥 기름에 불 넣으면 바로 터져버리니까.

그런 걸 보면 재미있었어요? 재미...그렇다고 봐야죠. 불 놓고 내가 그 현장을 무사히 빠져나오면 빠져나왔다는 생각에 스킬있었어요. 그런게 재밌었어요. 불 탄다는 자체가 재밌었던건 아니고.

그러면 불 말고 다른 걸로 스릴 느껴볼 생각은 안 했어요? 저는 차를 좋아해서 다른거엔 스릴 못 느꼈고 제가 운전을 좋아하니깐 차한테 했죠.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범죄는 좀 그렇고 내가 소극적으로 불 질러 불만하게 없나 하다가. 일종의 반항이죠. 나도 이런걸 못할거 같냐 이런식으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불 지는 것과 두 번째 불 저지른 것의 차이는 없었어요? 기분이라든지? 기분이나 방법의 차이는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긴장을 좀 하는 거죠. 차 근처에 가서 주변 살펴 보면서 담배피다가 내가 피해다닐 수 있는 길도 살펴보고 그랬죠. 그런데 하면 할수록 긴장은 덜 해졌죠.

네 번 불 지른 것 중에 뭐가 제일 좋았어요? 다 똑같았어요. 그냥 불 지르고 그 주변을 지나 치거나 그랬지 기분 좋고 나쁘고 같은 그런 건 없었어요. ... 오늘도 한번 해볼까. 그 정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불 지르고 나면 스트레스는 풀렸나요? 그런 건 없었어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왜 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외로웠던 것 같아요. 저도 말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내일 아침에 일 나가야되는데 2~3시까지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스트레스 많았던 것 같아요.

(사례 19)

〈사례 3〉은 일하던 업소에서 쫓겨난 이후 사장의 얼굴이 생각날 때마다 집 근처에서 총 10여회의 방화를 저질렀는데, 첫 방화는 갑자기 발생한 우발적 행위라 주장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첫 방화시 느꼈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반복하여 불을 질렀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는 불을 붙일때의 느낌은 강하지 않았지만,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면 감정이 해소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냥 첫 번째처럼 그때도 똑같이 집에 귀가 하던 중에 첫 번째 방화한 사건이 생각나더라구요. 그 건물 바로 옆이라 이야기 했잖아요. 그 건물 옆이라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는 첫 번째 느꼈던 감정을 좀 다시 그 느끼고 싶어서 라고, 그래서 했던 거 같아요.

그럼 스트레스 풀리는 시점이 불을 낼 때인가요, 타는 거 볼 때인가요? 활활 타는 거 볼 때였어요. ... 불 조금 타면서 옮겨 불을 때 그때는 라이터 킬 때는 아무느낌 없었던 거 같아요. ... 그때.. 불을 탄 게 있잖아요. 그때 조금 탈 때는 그냥 뭐 따뜻하다 했는데, 큰 엄청 큰 불이잖아요. 그때는 큰불이 되었을 때는 그때 뭐 활활 타라 내감이 모두 다 타 없어져 버려라 이렇게 생각했던 거 같아요. 그냥 다 타버려라. 그랬던 거 같아요. ... 그니깐 술 먹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술 먹고 그랬다 하는데 세 번째 부터는 술 안 먹고 제가 그 제 감정들을 해소하기 위해 그 했었던 거 같아요. ... 그냥 불타고 있는 모습 보면은 말 그대로 모든 걸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깐 속이 시원하고, 그 너무 시원한 나머지 그 시원한 것처럼 나도 저 불길로 가면 어떤 느낌일까 했던 기분이었는데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사례 3)

〈사례 14〉는 방화 전과도 없었고, 이전에 검거되지 않은 방화도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총 22건의 연속방화를 저지른 사례였다. 〈사례 14〉는 불이 잘 붙으면 자신의 기분도 좋아질 것이라 기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불을 붙였을 수도 있는데 22번 연속은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그냥 불 아무 생각없이 붙이다가 나중에는 의식적으로 불에 잘 타는 물건 찾아다니면서 불을 붙였어요.

불 타는 거 보고 무슨 생각이었나요? 별 생각 없었고 그냥 생각보다 잘 타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불 붙을 때 기분은 어땠나요? 불 타는 거 보면서 별 기분은 안 들었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현수막 불 붙여보니까 잘 탄다고 생각하다가 다음번부터는 어디에 불 한번 붙여볼까 하면서 잘 탈 것 같은 물건을 찾아다니면서 불을 붙였으니까요.

찾아다니면서 불 붙일 때 의도는 무엇이었나요? 별 생각없이 불 잘 붙으니깐 계속 붙여보자는 생각뿐이었어요. 불이 생각보다 잘 붙으면 기분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구요.

다른 날에는 술 먹고 불 질러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나요? 아니요.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게 그날따라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불 붙이고 난 후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별 생각이 안 들었는데 차량에 불 붙여서 탈 때는 큰 일 났다는 생각을 처음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3~4번째 불 붙일 때쯤부터 일이 심각해짐이 조금씩 느껴졌고 큰 일 났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만 뒤야겠다는 생각을 할만도 한데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불 붙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약간 좋아지는 걸 느꼈으나 크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사례 14〉

〈사례 5〉와 〈사례 20〉도 불을 붙일 때 시원함을 느끼거나 재미를 느낀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니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을 지르면 정월대보름이나 마음이 좋고 그런게 있었지만요, 그런 느낌 때문에 불을 지른 거고 속이 시원해지고, ...

시원하시던가요 불났을 때? (끄덕)

〈사례 5〉

그럼 재미로 불 붙인거네요? 재미.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장난삼아 그랬죠. 그냥 종이 쪼가리 있으니까 장난 삼아.

불 붙이고 지켜본다던지 다른 행동은 안 했어요? 종이 쪼가리 타서는 아무렇지도 않을거 같아서 그냥 돌아섰죠.

처음 불 안 붙을땐 무슨 생각이었어요? 그냥 별 생각없었어요. 그냥 불 잘 안 붙네라는 생각 정도.

〈사례 20〉

2) 불쾌함

반면 불을 지를 때 불쾌함을 느끼지만 환청과 충동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불을 지르게 된다는 응답도 있었는데, <사례 21>의 경우 불을 지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환청이 계속 들리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불을 질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불이 붙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적도 있었으나, 그때조차도 기분은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

불 내고 싶은 충동이 어떤 마음인지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어요? 저도 모르게.

택시 불 낼 때 뭘로 냈어요? 신문지.

불은? 라이터.

담배는 피워요? 아니요.

그럼 라이터는 왜 가지고 다녔어요? 저도 모르게 갖고 있었어요 어릴 때 충격 때문에 환청이 계속 들리고 ...

신문지에 불 붙었을 때 기분은 어땠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웃고 그랬어요.

자신의 웃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그 때의 기분은 어땠어요? 기분이 안 좋는데 웃었어요.

불 타는 모습을 보곤 어땠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불 질러라해서 지르고 나면 속 시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남한테 피 해가는 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남에게 피해 안 가는 방법으로 불 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냥 쓰레기 모아서 불 지른다면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사례 21>

3) 두려움

방화범죄 당시 두려움을 느낀 응답자들도 있었으나, 이 두려움은 오히려 스틸을 제공해 주는 새로운 자극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앞서 사례로 들었던 <사례 19>와 같이 불을 지르면서 현장에서 빠져 나오는 상황이 스틸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사례 22>도 불을 붙이고 빨리 현장을 빠져나오는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사례 4> 역시 불을 지르는 것이 나쁜일이며,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두려웠으나 계속적으로 반복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불 붙일 곳 찾을 때 기분은 어땠어요? 글썄요, 표현하기가 좀 그렇네요. 겁은 당연히 났죠. 겁도 나고 빨리 붙이고 가야지하는 생각이었죠.
겁나는데 왜 불을 질렀어요? 모르겠어요, 화풀이 할 때가 없으니깐 술 김에 그런거 같아요.
불이 딱 붙을 때 기분은 어땠어요? 그냥 불 붙으니깐 붙네라는 생각이 들었죠 뭐. 좀 걱정되기도 하고, 걸릴까봐요.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는 좀 풀렸나요? 네. 조금.
차는 얼마나 탔나요? 조금 타는 것만 보고 그냥 갔죠.
왜 다 안 보고 그냥 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걸릴까봐 겁나서요.
다 타는거 보고 싶은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런 생각은 들죠. 그런데 불 지르면 사람들도 나오고 하니깐 들기잡아요.
불 날 때 스트레스는 좀 풀렸어요? 안 풀렸다고는. 조금 기분이 나아졌어요.
불 지를 때 생각난 사람이나 사건이 있나요? 아니요. 없는데요. 그냥 빨리 불 지르고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사례 22〉

불탈 때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무섭죠
뭐가 무서웠어요? 제가 한번도 불지른거 안해봤거든요. 침이니 무섭죠. 불내서 누가 좋을 것도 아니고, 처음엔 무섭더라구요.
근데 무섭다는 것은 나쁜 경험인데 또 불을 지른 것은 왜인가요? 음..안하다 안하다 계속 안해야 하는데 하게되고 세 번은 그랬어요 ... 하지 말아야지 하고 계속하게 됐죠 제 자신도 모르게 ...
그런데도 또 하게되고? 네, 하.. 제가 출소하면은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제가 딱 한 가지 약속한 게 하나님이란 저랑 출소하면 방화를 다시는 하지마라 착하게 살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례 4〉

4) 범행 후 두려움

〈사례 15〉와 〈사례 6〉은 방화 전후에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았으나, 나중에 불이 난 이후 처벌의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응답하였다.

사건 끝나고 잡힐 때까지 무슨 생각을 했었나요? 자고 있었기 때문에 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불 다 저지르고 집에 왔더니 피곤해서 바로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도 술도 조금 덜 깨고 잠도 안 깬 피곤한 상태였고 그제서야 잠시 새벽에 한 일들이 모두 생각하면서 큰일났구나, 잡히면 큰일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 새벽에 했던 일이 모두 생각났어요? 불 붙였던 거 다 생각났습니다.

〈사례 15〉

불이 커졌을 때 무슨 생각을 했나요? 이제는 이만큼 커졌으니 죄의 댓가를 받겠구나 하구 그 때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사례 6〉

5) 분노의 표출

한편 〈사례 8〉과 〈사례 10〉의 경우에는 불과 관련된 느낌보다는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한 행위의 동기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불에 대한 느낌을 진술하지 않았다.

화가 좀 풀렸었어요? 화가 더 났었어요. 내가 오히려 지금도 저 여자는 몇 번 오고는 오지도 안하고, 어제 아래께 여동생하고 어무니한테 전화하구, 여동생이 오빠수준엔 돈있고 할 때는 연락도 오고 하더니 이제는 연락도 없지. ... 확 올라올 때는 완전 물불을 안가리고, 내가 다른 사고가 났지 싶어. 내가 그날도 경산가서 불지르는 거는 딱 돌아서는 그 순간을 못 이겨서 내가 경산갈 때는 계획을 세우고 간 것도 아니고 올라오면서 후회하고 내가 못 배우고 한 번도 생각 못하는 게 화근이다하고 뉘우치는거고

〈사례 8〉

그때는 불을 확대워야겠다 생각한거예요? 나무는 작고 전부 돌이거든요
그니깐 결과는 조금됐는데 처음 불지를 때 생각이 다방 다 태워버릴려고 한거예요? 네
그럼 다방여지분의 피해는 생각 안 하셨나요? 그런생각안하고 그냥 다 태우고 싶었습니다.

〈사례 10〉

나. 처벌 두려움

면접 대상이 된 사례들에서 범죄자들은 범행당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체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것은 방화가 그리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행위 자체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이후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죄의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1) 처벌두려움을 잊음

〈사례 12〉의 경우는 처음에만 처벌에 대해 잠시 생각이 들었다가, 방화행위 자체의 쾌락에 몰두하여 처벌에 대한 생각이 사라졌고, 지속적인 범행에도 체포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끝까지 잡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중에 처벌받을 것에 대한 생각은 하셨어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뭐 횡수가 많
아지니깐 그런 생각도 없어지더라고요.
그 두려움보다 속 시원한 게 컸다는 거죠? 네 ...
잡힐 거란 생각은 점점 안 드신 거네요? 네 내 자신이 잡힐 거란 강박관념도 없어지고 안 잡
힌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한 20 번 정도 넘으니깐 안 잡혀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언론보다 나왔을 때 두려움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언론보다 나왔을 때는 잡힐 거란
생각보단 좀 조심해야 하는데 그것도 한순간이고 그러고 나면 또 지르고 그랬습니다.

〈사례 12〉

〈사례 21〉과 〈사례 16〉은 모두 환청이 들리는 것 때문에 방화를 자제할 수 없었
다고 했는데, 처벌이 두렵기는 했지만 방화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
다. 〈사례 16〉의 경우에는 방화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체포 된 것이 차
라리 잘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자신에게 바가지를 씌운 유흥업소에
불을 지른 〈사례 5〉도 체포 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불을 지른 사례였다.

불 지르면 처벌 받을 수도 있단 것도 알았어요?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못 참겠어요.
벌 받더라도 불 질러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네요? 네. 못 참겠어요. ...
사람들이 나와 있으면 무서웠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피해자한테 걸리면 맞아 죽
을까봐.

〈사례 21〉

CCTV 보고 잡으러 왔더라고요. ... 잘 됐죠. 어떤 면에선.
CCTV가 범행장소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았고, 잡힐 거에 대
한 두려움 같은 것도 없었고, 그냥 환청으로 시키는대로 했어요.
불 지르고 정신이 차려지자마자 드는 생각은 뭐였나요? 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불이 너
무 크니깐 그냥 도망갔어요.
불이 무서워서 도망갔나요, 잡힐 것이 두려워서 도망갔나요? 불이 무섭기도 했고 잡히면 큰일
날거 같아서. 둘다. 잡히면 경찰서 간다는 생각하고 교도소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면서 무
서웠어요. ... 그냥 교도소 자체를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례 16〉

잡힐 것이란 생각 안했나요? 아니요 카메라가 있으니 제가 찍혔다는 건 알잖아요 언젠가는 잡히겠다 했어요

〈사례 5〉

2) 생각하지 못함

〈사례 1〉, 〈사례 2〉, 〈사례 20〉, 〈사례 6〉는 방화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죄의식을 갖지 못해 체포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한 사례들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불 지르면 벌 받는다 생각은 안하셨어요?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 내 집 물건이다 생각하지 이게 그렇게 큰 죄다라는 걸 몰랐어요.

〈사례 1〉

남의 물건이니깐 불 태우면 안될 거란 생각은? 종이 그거 하나 태워가지곤 그런 생각은 못 했어요.

이것 때문에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그냥 종이 하나 태운다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사례 20〉

처음 불지를 때 벌받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구요.

〈사례 2〉

처벌에 대한 생각은 하셨나요? 처벌을 받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또 내가 들어가서 골짜니깐 이 여자가 나타나서 좋게 해결하면, 내 그 마음가짐이 어느 일을 당하든 그런 자부심이 있었으니깐 ... 그런데 늦게 나타나고 불이 커지고 내가 끄기엔 늦어지고 처벌받을 것이다 생각 안했어요.

〈사례 6〉

한편 〈사례 3〉은 처음에는 죄의식이나 처벌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다가, 10여 차례 방화를 저지른 이후에야 죄의식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때 불을 내서 처벌받을 거란 생각은 했나요? 그때는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마지막 12번째 방화를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마지막 방화를 할 때 저희집 근처 편의점이 있었는데요, 12번째 방화를 딱 하구나서 정신이 들어온 게 큰일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구 편의점이 있는데 CCTV가 있잖아요. 그런 거도 다 알면서 들어가서는 편의점 이모님께 불이 났다 119에 신고해야겠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말했던 거 같아요.

〈사례 3〉

3)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었던 것은 범죄 당시 죄의식이나 범행이후의 과정을 생각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경우도 다수 보인다. <사례 3>의 경우 동네에 CCTV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만 조심하면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사례 22>, <사례 19> 역시도 주변에 CCTV나 감시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체포에 대한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불지를 때 처벌 받을 거란 생각이 안 드신거죠? 네

처벌생각이 안 든 건 왜 일까요? 그게, 당시 제가 알기론 거기 동네는 CCTV도 없었고, 아무튼 밤이고 해서

안 걸릴 꺼다 생각하신 거예요? 네 처음 방화할 때는 그때 물론 사장님 때문이지만 나머지 나중의 방화는 제 스트레스라고 해야하나 제 감정들을 해소하기 위해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가지고 그 방화했을 때 그 내가 경찰이 수사하고 처벌받을 거란 생각보다는, 그 그, 희열이나 즐거움 그런 스트레스 풀리는 게 더 많았기 때문에 비중이 컸기 때문에 처벌받고 그런 생각이 안 났던 거 같아요. 처벌받는 생각은 10%로 안 되서 뒤쪽으로 밀려나 있었던 거 같아요.

〈사례 3〉

걸리면 처벌받을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요? 들었죠. 그런 생각도 했었죠. 그러면서도 안 걸리겠지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뭐, 그 땐 주변에 CCTV도 없었거든요.

〈사례 22〉

잡힐 것이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 생각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잡힐 줄 몰랐죠. 이렇게 쉽게. 경찰이 잠복해 있을 줄은 알았는데 사복 입고 근처에 있을 줄 몰랐죠. ... 잡힐 줄은 알았는데. 더 감춰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사례 19〉

4) 방화 이후 처벌에 대한 생각이 들

범행 당시에는 처벌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다가, 방화 행위를 마친 후 비로소 처벌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는 응답들도 있었다. <사례 6>, <사례 8>, <사례 10> 등의 사례는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방화 대상을 설정하고 불을 지른

사례들인데, 불을 지른 이후에 처벌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불이 커졌을 때 무슨 생각을 했나요? 이제는 이만큼 커졌으니 죄의 댓가를 받겠구나 하구 그때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사례 6〉

처벌도 생각 못 했고? 한 몇 년 또 살겠구나, 그리고 중부서에서 전화와서 내일 잡으러 오시오 하고 ...

그때(불지르고 돌아올 때)부터 처벌받을까 걱정하신건가요? 네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 진거죠

〈사례 8〉

처벌에 대해서 걱정 안 했어요? 그거 하고나서 생각했습니다.

불 지르고 나서 생각하셨어요, 아님 직후에? 다 지르고 나와 가지고 그 다음날 생각났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정신병원 갔죠.

〈사례 10〉

다. 중화 내용

방화 행위에 대한 범죄자의 정당화 기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었다.

가장 많은 사례는 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경우들로서, 〈사례 5〉는 술과 본드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사례 7〉 역시 힘들어서 술을 먹은 것 때문에 자기가 행위를 통제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사례 15〉의 경우는 자신이 불을 지른 것조차 기억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때도 완전한 정신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제정신이면 그렇게 안했겠죠. ... 전에는 제가 술을 많이 안 먹었어요, 이혼하고 난 다음에 술 먹으니깐 계속 늘더라구요, 그전에는 일단 돈벌 생각 밖에 없어서 먹어도 간단히 회사자리에서 먹고 집에서 잠 안 올 때나 맥주나 그런 거 먹고

〈사례 5〉

그날 술 힘들다고 안 먹었어야되요, 술을 먹었는데 김에 오만 잡생각이 안 나서 귀신이 씩였는가 올라갔지.

〈사례 7〉

불 저질렀던 일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셨죠? 불 저지를려고 한건 기억이 났는데 불이 타고 있었던 건 기억이 안 납니다. 불 타는 모습까진 지켜보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주

변에 가서 자고 있었는데 경찰이 와서 현행범으로 체포 했습니다 저보고 불 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불 지르른 적 없다고 왜 그러냐고 처음엔 했었죠.

〈사례 15〉

아니요,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산에서 재판받으러 갈 때도 판사가 동종 전과도 없는데 한 번에 연속해서 불을 질러서 공주 정신 치료감호소 가서 감정 받아보라 했었어요.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구요.

〈사례 14〉

〈사례 1〉은 자기만 죽으려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갈지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사례 13〉, 〈사례 17〉은 불을 지르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에이 그냥 나 혼자 죽겠다고 붙었는데 그렇게 빨리 확 탈지 몰랐지. 겁이 덜컥 났다니깐 ... 내가 남을 해칠 목적이었음 그렇게 안하지.

〈사례 1〉

나는 방화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비가 와서 계단에 앉아서 박스 조각과 리터러 들고 있었는데 ... 인력사무소엔 평소 무서운 사람들(조폭들을 의미하는 것)도 왔다갔다하니깐 알아서 신고한 것 같아 ... 남대문 불 지르는 것처럼 제대로 했으면 속이라도 시원했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과 때문에 잡혀오니깐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례 13〉

네. 다 탄건 아니고 한뼘 정도 탔어요. ... 끄트머리만 끊어낼려고 했는데 다 타버렸어요.

〈사례 17〉

〈사례 6〉은 조금만 불을 지르는 척을 하다가 적당할 때에 끄려고 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사례 2〉는 불을 크게 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사례 20〉도 자그마한 종이 하나 태우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하였다.

가게 갔다가 불을 끄고 왔는데 가게는 불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살던 방이 타면 그까 지 타면 사면되는데, 그 면접관님이 묻는 거처럼 일이 커질 거란 생각은 안했습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깐 그 집이 다 타고 옆 건물로 불이 옮겨가는데 그 제서야 나타나더라구요. 제가 가기에 아젠 늦었다 하고 이제는 후회하는 게 되었죠 ... 그런 생각했어요. 처벌을 받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또 내가 들어가서 끌 꺼니깐

〈사례 6〉

그 분한테 그렇게 하시지 왜 다른데다가? 그래도 많이 안됐어요. 바깥에, 여관말고 좌변기쪽만 약간 타고..

불지른 것 말고 그분한테 해를 끼치려고 불지른 건데 왜 그분한테 하지 왜 여관에? 힘도 엄청 써요. 당치도 커가지고

그분이랑 상민었는데 거기다가 왜? 힘이 없으니까요. 내가 약하니까요. 제가 여자들보다 더 약해요. 사고를 당하고 나니깐

〈사례 2〉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이건 쓰레기다. 이건 불 태워도 아무렇지 않겠다하는 생각이었죠.

〈사례 20〉

〈사례 12〉는 자신이 당시에 겪은 상황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불을 지르지 않았다면 자살을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 식으로도 화를 안 풀었으면 내 자신이 감당이 안될 정도니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자살도 많이 생각했고 2000년도에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약까지 먹고 실려가고 했습니다.

〈사례 12〉

제3절 범죄자 특성

1. 경제적 상황

면접 대상이 된 연쇄 방화 범죄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범행 당시 실직상태이거나 일거리가 없어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있었고,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 노무직이나 저임금 비숙련 노동에 종사하고 있어서 어려운 생활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있었다.

가. 실직

〈사례 1〉, 〈사례 3〉, 〈사례 22〉는 범행 당시 직업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사례 1〉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래방을 운영하여 버는 돈에 의존하고 있어서 가정 내에서

발언권이 거의 없었으며, <사례 3>은 일하던 상점에서 쫓겨난 것이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사례 22>도 비숙련 노동을 전전하다가 범행 당시 약 3개월간 실직 상태에 있어 자격지심이 생겼다고 진술하였다.

주로 수입은? 지금은 부인이 일을 나가고 ... 나두 일을 손을 때니깐 오래 영업을 해서 그런지 쉬고 싶더라구요. ... 조금 나태하게 있던 게 길어졌죠, 이제는 내 용돈벌이를 해야겠다고 여기 와서 많이 느꼈어요.

<사례 1>

그럼 직업은 계속 없으시고? 네
12건다? 네 무직이었어요

<사례 3>

제대후엔 무슨 일 했어요? 한 일 년 정도는 결핵 약 먹고 집에서 쉬다가 그 이후에는 익산직업훈련원인가 거기 1년 정도 다녔거든요, 98년도에.

거기서 뭐 배웠어요? 보석이요, 보석 세공하는 거요. 그런데 취업 나갔다가 IMF가 터져가지고 그냥 다시 고향으로 왔죠. 그래서 동상 같은거 만드는 회사 들어갔는데 인대를 다쳤어요. 그라 인더에 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러다가 99년도에 친구가 서울로 올라오래서 가서 싱크대 회사 들어갔죠. 한 3군데 옮겨다닌 거 같네요. ...

자격지심 생각은 언제부터 들었나요? 직장 그만 둔 뒤부터 그런 것 같은데요. ... 2009년 2월 인가 3월인가. 그 때부터 경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장이 월급을 줄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직원이 3명이었는데 그렇게 작게 받고는 일 못한다고 하고 다 같이 나와버렸어요. 그 이후에 정수기 회사에 들어가서 일했는데 거기서 화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1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햇볕을 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입도 없이 집에만 있었어요. ...

2009년 3월쯤엔 돈 가진 것도 없었겠어요? 거의 다 떨어져 갔죠.

그래서 자격지심이 더 심해졌다는거죠? 네.

사건 당시에 많이 힘들게 했던 상황이 있었나요? 직업 잃은거 외에 다른건? 월세 밀린 거. 전기세 밀린 거. 뭐 그런 거죠.

<사례 22>

<사례 10>과 <사례 12> 등과 같은 사례들은 간혹 일을 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직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사례 10>은 공공근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례 12>는 범행 당시 일거리가 없어서 전전공공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어릴 때부터 징역살기전까지 직업은 어떤 거 해보셨어요? 소키우는 거
 다른 일요? 공공근로
 소 키우는 건 몇 년 하셨어요? 오래했습니다 한 4년정도 ...
 공공근로는요? 나갈 때 마다 계속했지

(사례 10)

선생님은 무슨 일하세요? 저는 고물 철거쪽으로 위에 사장님 계시는 일당으로 일하다가 철거
 해가지고 고물나오니까는...
 수입은? 한 달에 쯤 그렇게 많이 벌어도 백 한 사오십 만 원 벌었습니다.
 저축은 좀 하셨어요? 제가 뭐 월세 쥐가며 그게 못했죠. 뭐 뻘하잖아요 사람 산다는 게요. 저
 축하기는 뭐... 이 직업이 저위에 날고 가는 사람들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벌어야 백 사
 오십 벌까 쯤. 어딜 가도 돈이 돈 버는 세상 아닙니까. 제 실력으로 아무리 해도 혼자 더 이상
 크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직장이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하하 ...
 다른 기술같은 건 있어요? 없습니다. 저희는 철거하면은 내부철거를 하면은 저희는 주로 하는
 게 빠루질 밖에 없거든요. 고물될 만한 건 때려 부셔서 가져오고 폐목같은 건 분류하고 커튼
 같은 일반쓰레기는 분류하고 저희가 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까지 무슨 회사다녔어요? 저는 시내버스 회사 정비하다가, ○○시내버스가 나뉘져서 합병
 이 돼서 더 있어 봤자 비전이 없어서 내 위에 날고 가는 사람 못이길 바에야 내가 다른데 가
 서 미리 치우고 가는데 낫지 않겠나 해서 아는 형님도 고물쪽으로 가고 그래가 그 형님 따라
 다니면서 연줄 연줄 연줄돼서 일당으로 저희는 오너가 오면 철거하는데 인건비 얼마 하고 다
 철거비 견적해서 고 재미로 일하는 거지, 고물은 장사라서 인건비 제하고 남아가지 오너가 아
 무래도 운영을 해가지 않습니다?
 그날이 다른 날과 다른 점이 있어요? 없었습니다. 다른 것도 없었고 단지 다만 일거리가 없어
 서 괴롭다 그거말곤 없었습니다.

(사례 7)

나. 저임금 비숙련 노동

〈사례 2〉, 〈사례 4〉, 〈사례 8〉, 〈사례 9〉, 〈사례 14〉, 〈사례 17〉, 〈사례 18〉,
 〈사례 19〉, 〈사례 20〉, 〈사례 21〉 등 많은 사례의 범죄자들은 저임금의 비숙련 노
 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중 〈사례 18〉과 〈사례 21〉은 이른바 ‘노가다’ 라고 하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
 하였다.

일은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중소기업 공장에도 많이 다녔어요. 생산직이죠, 기술직 아니고 거
 진 1년 미만으로 다녔어요. 3개월, 4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청주 네슬러 커피공장, 컴퓨터

공장 같은데 다녔는데 공장 자꾸 다니다보니깐 돈도 안 되고 직원들하고 말다툼하고 계속 싸우다 보니깐 스트레스만 받고 일 그만 두게 되고 그랬죠.

당구장은 얼마나 운영했어요? 1년 정도요.

노가다는 적성에 맞았어요? 맞았어요. 일하다가 담배 좀 피다가 술도 좀 마시고 땀 흘리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무식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깐 싸울 때도 있지만 전 잘 지내는 편이었어요. 당노가 심해서 죽을 때까지 인술린 맛이야 되니깐 술은 안 마셔야죠

〈사례 18〉

2010년도 당시라면 20살이었는데 뭐하면서 지냈어요? 노가다 다녔어요.

돈 벌려고 처음 한 일은 뭐예요? 노가다.

고등학교 때부터 2010년 때까지 계속 노가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돈 많이 벌었어요? 네.

일은 일주일에 몇 번 나갔어요? 일주일 계속 다녔어요.

힘들었겠네? 돈 벌려면 할 수 없어요.

〈사례 21〉

〈사례 2〉는 40대의 중년임에도 불구하고 신문배달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사례 14〉는 30대 중반까지 비정규직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고물상 다닌건 몇 년정도 있다가? 한. 17~18살때가 직장 얻었을 때가. 고물상 다녔죠

얼마나 버셨죠? 고물상하니깐 월급을 많이 안 주더라구요

대충? 40~45만원

생활이 되던가요? 생활은 공장안에 기숙사에 있어요

거기서 몇 년정도 일하셨어요? 고물상 1년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거.. 신정중앙시장안에 보면 가방공장이 있어요. 거기 또 취업했어요.

지금까지 하신 일들은? 고물상, 가방공장, 중화요리, 설거지, 신문배달, 뭐 납출지공장 거 신나 통 공장.. 거.. 공장에 보면 기계있잖아요, 통만드는 기계 거기다가 기계로 뽑아서 무게달고, 0.5면 그거고.

그러면 작년에 불질렸을 때 무슨일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신문배달

〈사례 2〉

가출하고 아르바이트로는 주로 무엇을 했나요? 아르바이트는 술집 아르바이트를 주로 했어요. 웨이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가출하고 처음에는 친구들과 놀러다니고 그랬는데 돈도 어느 정도 필요하니깐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 술집 아르바이트 할 때가 17~19살 땐데 그 당시엔 어릴 때라 힘든건지 모르고 일 했어요. 일하는게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니었지만 그냥 계속 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말고 정식으로 월급받고 일하는 직종은 한 경험이 없나요? 공장에서 일한적도 있어

요 22살 때, 사무용 의자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사출공장. 2~3달 정도 일했는데 이 시기때만 정규직이었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만 계속 했어요.

〈사례 14〉

〈사례 20〉의 경우에는 군에서 사고를 당해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사례 17〉은 인삼밭에서 잡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사건 즈음에 직업은 뭐였죠? 뭐. 저희 집에 농사짓고 있으니깐 그냥 농사짓고 군대 가기 전에는 빵 같은거 만들고
 빵 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자격증은 없었고 그냥 제과점에서 조금 일했어요.
 군대 제대 후엔 무슨 일 했어요? 군대 제대 후, 사고 후엔 이 상태론 다른 일은 할 순 없어서 그냥 집에서 농사일이나 하고 그랬죠.
 군대 제대후 사건 있을 때까지 8년 정도 지냈는데 그 때까지 계속 농사지은 거예요? 계속 농사일하고 있었죠.

〈사례 20〉

제천에서 몇 살 때까지 일했어요? 10살 때쯤 되었는데 그 땐 아줌마도 안 보이고 해서 그냥 제천서 일하자. 8살부터~12살까지는 처음 같이 간 아줌마랑 살고, 그 이후는 다른 집에서 일 거들어주고, 다른 아줌마랑 계속 살았어요. 학교 보내준됐는데 내가 싫다고 했어요.
 회사나 공장 다닌 적은요? 없었어요. 인삼밭에서 일했는데 인삼 집단으로 엮여가지고 인삼 밭에서 일도와주면서 쪽 살았어요. 지금까지 제천에서.
 수입은 어땠어요? 예후~ 못 벌었어요. 일해도 돈도 안 주고 부려먹기만 했어요. 그래도 그냥 다녔어요.

〈사례 17〉

〈사례 16〉, 〈사례 9〉, 〈사례 4〉, 〈사례 8〉, 〈사례 19〉 등과 같이 다른 사례들 역시 단순 생산직이나, 청소, 저임금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였다.

어느 직장에 다니셨어요? 전자제품 공장. 제조하는 곳.
 그 중에서 어떤 일 하셨어요? 생산직, 만드는 것, 공장에서. ...
 섬 밖으로 나오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였죠? 공장 다녔어요.
 나오자마자 일 했어요? 고등학교에서 직업훈련소를 나왔거든요. 직업훈련소라는 것이 고등학교 과정 중에 있는건데 졸업하기 전에 거길 나오면 거기서 취업을 시켜주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곳으로 취직이 되었나요? 용접이랑 보일러 설비.
 거기도 많이 힘들었을텐데요? 거기선 돈을 많이 벌고 주야간으로 뛰니까 돈이 좀 많았어요. 계약직 6개월로 들어갔어요.

계약직 끝나는 6개월 후엔 어떻게 됐어요? 그만 뒀어요. ...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3교대 하다보니깐

그 외 다른 직장 생활한 곳을 생각나는대로 말씀해주세요? 화장지 공장, 지업사(종이 제단하는 곳), 핸드폰 회사, 구미 올라와서는 핸드폰 회사하고 핸드폰 만드는 회사(조립), 티비 만드는 곳(조립) 같은데를 다녔어요.

〈사례 16〉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은 어떤일 하신 거예요? 도자기 만들고, 계단 고무판 만들고 그런거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구 몇 년 정도 일하셨나요? 3년정도
사건 전에 무슨일했어요? 종이컵 만들었어요

〈사례 9〉

직업은? ○○고속 고속버스 청소하구, 하기 전에는 봉재를 했어요. 봉재하다가 돈도 월급이 190만 원정도 나왔고, 그거 다뭇받구 사장이 그만 나오라 해서 고속버스로 옮겨서 해봤자 돈도 안되구 한 90만원 밖에

생활이 힘들셨었어요? 네

당시에 혼자 사신 거예요? 부모님하고 같이

부모님을 부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부양을 했었어요, 해요.

〈사례 4〉

(산에서) 내려와서는 무슨일 했어요? 제가 약국에 있었어요. 월급도 별로 없고 밥만 먹고 용돈만 주는 식으로, 그래서 대구 와서도 공장에 있고, 그러고 나서는 보령 가서 계속 노동일이나 목수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맨날 거기 가서는 먹고 살고 하며

일할 때 같은 일을 오래 하시는 편인가요? 제가 목수일은 길었습니다. 10년 넘게, 그러고나서는 목형일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 사고나가지고, 그러가지고 그때 상해치사로 3년받아서 2년6개월 살고 나가고 ...

지금은 간벌 일하신 거구? 네 산에 나무베는 거, 죽은 거 베어내고, 고사목 베어내고,

그건 몇 년 정도 하셨어요? 그제 한 3년

〈사례 8〉

졸업하곤 어떻게 지냈어요? 자동차 부품, 배달, 주로 배송 쪽으로 많이 했어요. 잡화나 택배, 사건 당시엔 무슨 일 하고 있었어요? 용역업체, 아웃소싱이라 해야 되나. 사무실하고 회사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요. 반도체 회사와 우리 회사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 벌면 저한테 돈을 주는 거죠.

벌이는 어땠어요? 한 달에 120~130 정도.

〈사례 19〉

다. 숙련노동

〈사례 11〉, 〈사례 12〉와 같은 몇몇 사례들은 주방일이나 기술직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례 11〉은 자격증이 없어서 기술을 인정받지 못 한데다가 범행 당시 사기를 당해서 경제적인 곤란에 처해 있었으며, 〈사례 12〉는 대기업 기술직에 종사하였으나 배우자의 경제적 손실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어떤 회사 다녔어요? 자전거 만드는 회사데 회사 2년 다니다가 회사 그만두고 내가 중화요리 주방장을 하려고 중식식당에 일배웠습니다
조리사 자격증은 따셨어요? 조리사 자격증 못따왔습니다 76년도에 취득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길로 딸려고 했습니다만 못했습니다 ... 다른 일은 안하고 중화요리 거의 한 30년 됐습니다
경력은 오래 되셨네요? 경력은 많은데 자격증이 없으니 인정 안 해 줍니다.

〈사례 11〉

퇴학 후는 돈벌로 나갔나요? 나이가 어리니깐 못나가고 지금은 동해시 묵호에 오징어배 모터 수리하는 거 배워보라 그래서 외삼촌 소개로 있었고, 마산에서도 철공소같은데 주물공장가서 있었고 ...

무슨 일 해보셨어요? 주조공장, 선반일, 제지공장 마산에 제지공장 거기서 종이 만들고 그랬습니다.

○○중공업에 들어가신 걸로 되어있는데? ○○중공업은 내가 84년도에 내가 거기 가가지고 내가 일은 안하고, 거기서 그렇게 있다해서 집에 왔다가 84년도에 입사했지, 부서가 여러 갠데 하도급이고 하청일 한군데 다니다가 85년부터 근무했습니다.

〈사례 12〉

2. 지지체계

가. 가정상황

면접 대상이 된 많은 사례들은 대부분 미혼이거나 이혼한 상태였으며,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사례는 2사례에 불과했다.

면접 대상자 중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7〉, 〈사례 9〉, 〈사례 10〉, 〈사례 11〉, 〈사례 13〉, 〈사례 14〉, 〈사례 15〉, 〈사례 17〉, 〈사례 19〉, 〈사례 20〉, 〈사례 21〉, 〈사례 22〉는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었는데, 결혼하지 못한 것

때문에 외로웠다고 호소하거나, 사회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진술을 하였다.

친구분들 결혼하구 얘기 있음 부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부럽죠. 그런데 인자 사람이 그런 시기가 됐으니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밑바탕이 안 되었고 시기가 안됐다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가 시기가 올 것 같은가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늦었긴한데 그냥 제 혼자 생각입니다. 언젠간 올 때 오지 않겠습니까

〈사례 7〉

결혼 안 했고 계속 혼자 지냈어요. 결혼 안하고 여자와 잠시 동거는 했는데 오래 되서 생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나요. 1972년 즈음 동거 하다가 헤어졌어요. 그 후로는 많이 외로움을 느꼈어요.

〈사례 13〉

여기(교도소) 살고 나가면 두달 정도 적응이 잘 안됩니다. 물론 맘먹기 달렸는데 그 혼자 살다 보면 뼈뼉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 가정이 있음 다르겠지요, 혼자 있다보니 속상해서 술 한 잔 먹고 그러다 보니 엉뚱한 길 가게 되고

〈사례 11〉

〈사례 1〉, 〈사례 5〉, 〈사례 6〉은 이혼을 경험하였는데, 〈사례 5〉의 경우 이혼이 강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방화 사건의 간접적인 배경요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제가 그때 좋게 이혼하면 좋은 건데 변명같지만 처음 결혼한 건데 이혼하고 아이들도 있고 제가 함의이혼했는데 좋게 헤어졌어요. 그때부터 머리가 좀 이상해졌어요. 생각이 이상하게 변하고 알콜하고 담배하고 안 좋은 것만 하니깐 계속 안 좋아지더라구요 ... 제가 이거는 말하기 거북한데 제가 일을 조선업을 하니깐 집은 거젠데 진해 STX에서 물량을 때서 일을 해서 3년간 진해 아파트에서 있었는데, 같은 아파트 옆에 이웃집인데 같이 밥같이 먹고 유부남인데 애도 있고 그런데 그쪽 남편하고 좀 그런 일이 있었나봐요. 나이도 비슷하니깐.

〈사례 5〉

〈사례 1〉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다시 만나 동거하고 있었으나, 방화 후 배우자의 신고로 체포되었으며, 자녀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님분이란 사이가 원래 안 좋았던거예요? 근데 자식도 품안의 자식이라고 의견충돌이 있어요 ... 근데 문제는 여자들은 엄마 편 그래서 난 혼자인거지 그런 면에서 섭섭한 게 있었던 거지 ... 그날 당시엔 직접적으로 싸우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혼자 있다 자살 할 생각이 들어서 ...

누가신고를 하신 거예요? 집사람이 했어요. 내가 집사람한테 에이 신고하려면 하라구, 뭐 내가 주변사람 피해준거도 없고 하니 신고해도 관찮으니 신고하라고 했죠. ... 설마 신고 하겠나 했죠. 잔소리 많이 들겠다.

〈사례 1〉

〈사례 8〉은 전 부인과 사별한 후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었는데, 동거하던 배우자와의 갈등이 범죄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사례 8〉은 동거하던 배우자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화가나 불을 질렀던 사례인데, 다른 가족들(어머니와 자녀)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가족 간에 대화가 불가능했다고 진술하였다.

제가 카드로 같이 살 여자를 화장품을 하면서 제카드를 두 개를 내줬어요. 카드빚을 천 만 원 넘게 사용하고 자취를 감췄어요. 같이 동거생활하다가 전화를 하니깐 전화도 안 받고 집에 오지를 안고 그래서 찾김에 차를 몰고 고령에서 대구로 내려갔다가 ...

그 여자분이 대구에 계셨어요? 저랑 같이 동거하고 있었어요. 전세를 얻어가지고 여자가 살던 집에, 집에 일이 있으면 고령에 명절이나 제사 때 가고, 저는 화장품하고 ... 고령가면 아들이 3급장애고, 어머니는 1급장애거든요, 그래서 대화할 사람도 없고 이웃에 아줌마들은 장사하고, 내가 그 아줌마들 그날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 하고, 여 안있다 그러면 거제가기까지 화가나가지고, 경찰서 간 날도 그 사람들이 처벌받는거 원치 않는다해서 2년 받은 거예요.

〈사례 8〉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례는 〈사례 12〉와 〈사례 16〉이었는데, 〈사례 12〉는 배우자의 행위가 스트레스의 근원이었으며, 〈사례 16〉은 배우자와 거의 시간을 함께하지 않았고 의사소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허리다친 거랑 집사람이 내 모르게 전자제품사고 보증서고 주변에서 집사람이 마음이 좋으니깐 이용을 당한거지, 인감도 띠어주고, 참엔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깐 집사람이 이용을 당했다 싫어지니깐 액수가 감당이 안 되고, 애들 학원비 같은 거도 두 달 세 달 밀리고 애들도 학원못가고 그러다가 나한테 걸려서 물어보면 쪼질쪼질 말해주고, 처음에는 많이 갚아줬는데, 나중에는 다단계 같은 거도 하고 나중에는 감당 못하게 산화머니에도 독촉장 날아오고 법원에서 날아오고, 거기 이자가 68%인데 이자를 못 내가지고 1년만에 원금에서 10배 올라 있고, 저혼자 그러면서 감당도 못하고 머리도 아프고 불도 지르고 싶고 술도 먹고 싶고 산도

돌아다니고 싶고 그랬던거죠

94년 이전에도 사모님하고 금전적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아파트로 이사를 오고 나서 안거죠. 그전에는 속이고 있어서 몰랐고 이사오면서 거주지까지 따라오고 나서 이미 감당 못 할 정도에서 나한테 들킨거죠. 침엔 무마시켜주고 2005,6,7년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나한테 속이다가 내가 갇주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우유배달도 하고 하는데 새벽4시에 나가도 얼마남도 안하는데 우유도 이상하게 많이 가져오고 몇 개씩 넣어줄 만큼 그랬는데 이래가지고 돈이 남나했는데 이게 확장을 하면 돈을 더 받으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되니까 다 빛이 되더라고 근데 사채를 쓰니 이자 넣기 바빠서 글로 돈이 다 빠지더라고, 나중에는 이혼서류까지 작성하고 그렇게 까지 왔었던 거고, 내가 불로 갖다가 내 자신이 질려서 인정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볼 지른 거 형 받아도 미땅하다 생각합니다.

〈사례 12〉

다 나온 다음에 결혼할 때까지 7~8년 동안은 (정신분열증이) 재발 안 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심리적으로 좀 혼란스러웠나봐요. 재발 했어요.

결혼하면 좋은거 아닌가요? 저도 좋았는데 몸이 잘 받아들이지 못했나봐요.

병 재발하니까 사모님이 뭐라셨나요? 그 전까진 이런 병 있다는 거 말을 안 했었거든요. 아예 말을 안 했어요.

옥상에도 올라가고 자해도 했는데 사모님이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

사모님은 잡히기 전까지도 환청 들리는지 몰랐나요? 네. 밖에 나갈 땐 보통 와이프랑 같이 나가거든요. 혼자 있기 싫어서. ...

사모님은 언제 들어오시나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쯤 들어와요. 거의 만날 시간이 없죠. 새벽일 하다가 일이 많지 않으면 새벽에 들어 올 때도 있었어요.

(배우자와) 거의 대화는 하지 못했어요. 전화하면서 밥 먹었냐, 조심히 일해라 정도 대화. 말 많이 못한 편이에요.

〈사례 16〉

나. 사회관계

1) 평소 교류하던 친구 없음

〈사례 1〉, 〈사례 13〉, 〈사례 11〉, 〈사례 12〉, 〈사례 10〉, 〈사례 19〉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연쇄 방화범죄자 중 많은 수가 경제적인 상황, 내성적인 성격 등으로 인해 평소에 교류하던 친구들이 없었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교류하던 친구들이 없다는 것은 문제상황이나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례 1〉과 〈사례 2〉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들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은 욕구

는 있으나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사회관계를 스스로 단절시킨 것으로 보인다.

친구들은? 내가 안 만나지. 사업할 땐 만났는데 내 자신이 별이가 없으니 내가 안하지. ... 혼자서 술 먹고 혼자 노래듣고 그러죠. ... 내가 이가 빠지면서 대인기피증이 생겨 사람만나는 걸 싫어해요. 괜히 꺼림직하더라구요. 만나봤자 가진 것두 없고 뭐하겠냐. 내가 많이 썼었으니 수중이 돈이 없음 나가질 않아요, 스타일이.

〈사례 1〉

적적할 때 가족들한테 연락해 보지 그랬어요? 연락 못한 이유는 돈도 없고, 몇 십년 만에 보는 건데 아무 것도 없어서. 돈이 문제지 만나고는 싫어요, 형님댁에 가서.

〈사례 13〉

〈사례 11〉과 〈사례 12〉는 자신의 성격을 내성적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친구를 적극적으로 사귀는 것을 어려워 했다. 〈사례 10〉은 혼자 살면서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지 않고 있었다.

들어오기 전에 만났던 친구는? 요번에 들어오기 전에 친구 없습니다. 내성적이다 보니 친구 없습니다.

술 마실 때 혼자 드세요? 혼자 먹고 어디 나가질 않아요.

〈사례 11〉

고민을 나누는 친구는 있으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나는 객지에 나와서 편하다 하는 친구는 없고 회사동료라 해도 업무 외에는 친한 사람도 없고 두세 사람은 있겠지. 근데 사람들하고는 제가 대인기피증이 있고 잘 안 어울리는 편입니다.

그게 객지 생활하면서인가요, 아님 어릴 적부터인가요? 어릴 적에는 어렸을 때 부터 제가 좀 성격이 내성적이라 보편됩니다.

〈사례 12〉

나와서 힘들데 형님들이 도와준 적은 있어요? 그런 적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거의 혼자 지냈는데, 아버지는 얼마만에 보셨어요? 자주 못봤습니다 ...

혼자살면 누가 괴롭히거나, 맞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사례 10〉

〈사례 19〉는 적은 돈을 벌 수밖에 없었으나 혼자 사는 데는 충분한 돈이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그에게 절실한 것은 사람들과의 만남이었다.

사건 당시 시흥엔 친구들이 없었어요? 형이나 친구들 있었지만, 다들 사생활이 있으니깐 자주 보지는 못하고 혼자 마시고 그랬죠.

스트레스나 힘든 일들에 대해서 상의하고 이야기할 사람은요? 없었어요. 그냥 혼자 푸는 거죠. TV보고 제가 좋아하는 거 보고, 저녁엔 저녁도 먹어야 하니깐 통닭시켜서 술이랑 먹고, 집에 가서는 뭐 먹을까 생각하니깐

심심했겠네요? 심심했어요(웃음). …

돈은 필요한 만큼은 좀 있었다면서요? 돈이 다는 아니잖아요. 돈은 생활할 만큼 있었는데 돈만 있어서 되나요, 인간관계도 있어야 하고.

〈사례 19〉

2) 표면적 사회관계

〈사례 3〉과 〈사례 20〉의 경우 평소 교류하던 친구들이 있기는 했지만, 표면적인 관계에 불과하여 실질적 지지체계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보인다. 〈사례 3〉의 경우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들은 있으나 깊이 있는 이야기는 나누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사례 20〉은 문제가 있더라도 친구들에게 진술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여 혼자 고민하였던 모습을 말하기도 하였다.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스트레스 푸시곤 하시나요? 친구들이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런거 있잖아요. 이거 한 잔 마시구 힘내라 이러는 거 위로해주면서 말리는 게 아니라 더 술을 건네주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일찍 저보다 형이나 그렇게 낳았으면 의지 했을텐데, 어머니한테는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얘기를 절대 못하거든요.

왜요? 한 적도 없었고, 하기도 좀 그, 어머니 그러니깐 편해야 하는데 어머니랑 떨어져있었던 기간이 워낙 오래되서 좀 서먹서먹하디해야 하나? 우리 친엄마고 사랑하는 엄마이긴 하지만 대화를 많이 못했거든요.

혹시 이 당시 친구들은요? 학교친구보다는 사회친구가 좀 많거든요. 학교친구는 뭐 같이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나중에 만나면 되는데 사회친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회친구라 하면 다 술친군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같이 일했을 때는 같이 주로 만나지만 다른 직장에서 일했을 때는 연락없다 연락으면 술 한 잔 하자 하는 거는 있어도 깊이있는 이야길 한적 없는 거 같아요.

〈사례 3〉

친구들과 돈 문제 얽히면 속상할 텐데, 심정은 어땠어요? 아휴, 짜증나죠. 어떨 땐 술도 많이

먹을 때도 있고 어디 가서 남한테 하소연할 때도 없고 혼자 끙끙 앓고 그냥 막말로 그냥 지나가는 차에 확 부딪혀서 죽을까도 싶고 그런 생각하다가도 혼자 계시는 어머니 생각이 나서 이리저 말자 생각했죠.

〈사례 20〉

〈사례 7〉의 경우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친구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네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과하고 계를 합니다. ... 네 제 친구는 장가가서 부부동반해서 계촌도 하고 있고, 저는 일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다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 지금 고정적으로 만난 친구들은 열댓 명 됩니다.

〈사례 7〉

3) 제한된 사회관계

〈사례 21〉, 〈사례 2〉, 〈사례 9〉 등과 같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기는 하지만 극히 제한된 범위에 한정된 사례들도 있었다.

〈사례 9〉는 장애인 학교 다닐 때부터 따돌림과 폭행을 경험하여 사회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으며, 범행 당시에도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1명 이외에 교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였으며, 〈사례 21〉도 공장을 다니는 친구 2명 이외에는 다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다니시기 힘들셨겠어요? 네
 일반학교 다녔어요 아님 장애인학교? 장애인요
 친구들이 놀리진 않겠네요? 놀렸어요
 장애인 학교인데도요? 네
 왜 놀린 거예요? 공부못한거랑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려서 ... 친구들이 안 놀아줬어요 ...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은 자주 만나는 분? 도서관에서 막걸리도 마시구요 담배두 피구요
 다른 분도 만나요? 그 분만 만나요? 그 분만요 ... 도서관에 놀러오는 분인데요.
 그분도 장애를 가지고 있나요? 갖고 있어요. 2급이요. 자체 2급

〈사례 9〉

친구랑 그 시간까지 뭐하고 놀아요? 피씨방. 다른 건 없어요. 피씨방 밖에.

친구는 몇 명이랑 같이 게임해요? 두 명과 같이.
어떻게 사귀었어요? 저한테 착하고, 도와주던 친구예요. ... 중학교 때부터 친구.
그 친구들은 지금 뭐해요? 두 친구는 공장 다녀요.
고민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할만한 다른 사람은요? 없어요.
할아버지한테 이야기 해보죠? 할아버지한테는 안 해요. 걱정하실까봐요.

〈사례 21〉

〈사례 22〉, 〈사례 2〉, 〈사례 20〉과 같이 적극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사례들도 있었으나 소수에 불과하였다.

교회나가는 게 스트레스가 풀리나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탁구도 치고 그러면 풀리죠.
친구란 분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서울로 오라고 했던 그 친구요.
그 친구와는 얼마나 자주 만나는 사이예요? 일주일에 3~4일은 만나는 거 같아요.
친구와 만나면 보통 무슨 대화 나뉘어요? 교회 얘기, 여자 얘기, 오늘 일한 얘기 같은 거요.
많이 친한가 보네요? 네. 고등학교 친구.
힘든 얘기, 아픈 얘기, 회사에서 짚린 얘기 다 했어요? 네. 그 친구와 그런 얘기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좀 풀렸어요.

〈사례 22〉

그때 친구들도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친구를 안 사귀었어요. 여자학생들이 사귀자고 막 좋다 해도 친구들 사귀기 싫어서 안 사귀었어요.
어른되고 친구분들이 있었어요? 응 있었죠.
어디서 사귀신 친구? 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었고
주로 교회?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장애인 교회에 있어요 제가

〈사례 2〉

(술 먹는 것은) 얘기할려고 하는거죠. 저는 혼자 있는게 싫어요. 혼자 있으면 위축되기도 하고, 제가 집은 촌인데 밖에 자주 나가는 편이에요. 시내. 나가서 사람들도 많이 보고, 가진 돈은 없어도 사람들 왔다갔다하는거 보면서 사람들이라도 보잖습니까.

〈사례 20〉

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

1) 음주

면접 대상자들에게 스트레스 해소방법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사례 18>, <사례 20>, <사례 4>, <사례 19>, <사례 10>, <사례 17>, <사례 9> 등의 사례들은 술 이외의 다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스트레스 쌓일 땐 어떻게 푸시나요? 술 안 먹고는 다른건 없었어요 등산이나 낚시, 여행 같은 건 일절 없었어요.

술 마시면 스트레스 풀리는 편이었나요? 좀 풀리죠. 안 좋은 일 있을 때 술 마시고 얘기하다 보면 좀 풀리죠.

<사례 18>

술 드시는거 말고 스트레스 푸는 다른 할만한 일들은 없었어요? 다른거에는 취미가 없고, 다른 사람들은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간다는데 전 별로예요.

<사례 20>

스트레스나 힘든 일 풀에 대해서 상의하고 이야기할 사람은요? 없었어요. 그냥 혼자 푸는 거죠. 티비보고 제가 좋아하는 거 보고, 저녁엔 저녁도 먹어야 하니깐 통닭시켜서 술이랑 먹고 집에 가서는 뭐 먹을까 생각하니깐

심심했겠네요? 심심했어요

평소에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었나요? 그냥 꼭 참아요. 참다 참다 못 참으면 이야기하는데 거의 참는 편이에요. 도저히 못 참을 거 같고 앞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이야기 받아줄 것 같으면 이야기해서 풀고, 그런데 괜히 제 이야기해서 분위기 망치기 싫었어요.

보통 사람들처럼 운동하거나? 영화 감상 같은 건 안 했어요? 그러건 딱히 없었어요. 그냥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아버지 차 몰고 나갔다가 친구들이랑 놀고 그런 게 좋았어요. 부모님과 지낼 때는 술 먹고 집으로 바로 가는 편이었어요.

<사례 19>

회가나면 어떻게 하세요? 풀어야 되는데 ... 풀지를 못하니깐

풀려는 시도는 해봤을텐데 어떻게 푸세요? 술,, 술 술로

<사례 10>

한 3년간 속상했겠네요? 혼자 집에 가서 술을 마시던가 노래방에서 스트레스풀던가

노래방 혼자서? 네

혼자 가서 스트레스가 풀리나요? 혼자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잠궜어요. 크게 부르면 목이

쉬지나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사례 4〉

스트레스 쌓이면 어떻게 푸는 편이에요? 혈압이 높아요. 195정도. 몸이 아프고 그러면 약 먹고 그냥 자야지 뭐. 다른건 없어. 그러다보니 그냥 스트레스 계속 쌓여있는 거예요. 술은 많이 먹지는 않고, 반 병 정도씩 먹고 나머지는 놀아봤다가 나중에 또 먹고

〈사례 17〉

일하는 데서 다른 사람이 괴롭히고 그런 일 있을 때, 화나면 어떻게 하세요? 술로요

〈사례 9〉

〈사례 13〉, 〈사례 8〉, 〈사례 12〉 역시 노래를 부르거나 등산을 가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주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술을 마시는 것이었다.

외로울 땐 어떻게 극복하세요? 외롭고 스트레스 쌓일 땐 술 사와서 마시지 주량은 2~3병정도 예요. 하루에 2~3병씩 계속 마시는데 밥 먹다가 반주삼아 마시는 편이죠 ...

스트레스 쌓이면 어떻게 풀었어요? 바닷가 가서 바다보고 낚시질하고 스트레스 쌓이면 제가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 많이 불렀어요.

혼자서 노래 불렀어요? 네. 기타치고 하모니카 부르면서 노래 불렀어요.

〈사례 13〉

스트레스 받으면 무엇을 하시나요? 술 한 잔 먹으러 나가는 거지, 아침 술 사와서 TV보고, 아침에 5시 일어나서 밥 챙겨가 먹고, 다음날 일가고

주로 술을 드시는 건가요? 네 아침 산에 올라가고,

〈사례 8〉

사모님 일이 터지기 전에도 스트레스가 있을텐데 그때 어떻게 해소했어요? 그때는 뭐 술 한 잔 먹고, 첫째 금전적인 게 아니니깐 일반적이니깐, 친구들과하고 술 한 잔하고, 낚시도 가고, 보통사람들이 푸는 식으로 풀었지.

취미가 낚시 말고 다른 거는요? 등산도 뭐 좋아하고

〈사례 12〉

2) 혼자하는 취미활동

술 이외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물었을 때 혼자 하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사례 8〉, 〈사례 12〉, 〈사례 13〉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된 스트레스 해소방법은 술이지만 낚시나 등산 등과 같이 혼자 하는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이야기하였고, <사례 1>, <사례 11>도 혼자서 음악을 듣거나 여행을 간다고 진술하였다.

스트레스 쌓일때는 주로 어떻게 푸세요? 음악들어요 ... 조용한 노래 좋아해요. 음악 많이 듣구 시간되구 경제적 여유되면 낚시가구

친구들은? 내가 안만나지 사업할 땐 만났는데 내 자신이 별이가 없으니 내가 안하지.

<사례 1>

주방장 할 때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셨나요? 스트레스요? 나 열차타고 여행가는게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여행자주 다니세요? 여행자주 안가도 스트레스 받을 때는 강원도 간다던가 부산 내려 간다던가 혼자 가세요? 친구도 없구요. 요번에 내가 요 마지막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느끼는 게 요번에 앞전에는 내성적이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생각이 좀 밝아졌다 해야하나, 그래 이제 생각을 바꿔야지.

<사례 11>

3) 특별히 없음

<사례 16>, <사례 22>는 특별한 방법 없이 집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스트레스 쌓이면 어떻게 풀어요? 집에서 그냥 술 마시고 컴퓨터 하면서 그냥 집에 있고 그래요. 그냥 식히는 편이에요.

<사례 16>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은 편인가요? 보통 때 어떻게 푸세요? 그냥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 거 좋아해서. 집에서 티비보고 친구 오면 저녁 먹고 그러죠.

<사례 22>

4) 사람들과 교류

종교단체에 속해있는 <사례 17>, <사례 22>의 사례와 같이 종교단체의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사례 21>과 같이 친구들과 게임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실 땀 주로 뭐해요? 일요일 날은 쉬고 교회 다니고 그래요. 교회는 진짜 많이 다녔어요. 아는 사람들이 집에 놀러오면 커피나 한 잔 타주고, 다른 사람한테 해꼬지 한 것도 없고.

〈사례 17〉

교회나가는 게 스트레스가 풀리나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탁구도 치고 그러면 풀리죠. ... 친구와 만나면 보통 무슨 대화 나눕니까? 교회 얘기, 여자 얘기, 오늘 일한 얘기 같은 거요. ... 네. 그 친구와 그런 얘기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좀 풀렸어요.

〈사례 22〉

친구랑 그 시간까지 뭐하고 놀아요? 피씨방. 다른 건 없어요. 피씨방 밖에. 친구는 몇 명이랑 같이 게임해요? 두 명과 같이.

〈사례 21〉

3. 성장 배경

가. 어린시절 가족 상황

1) 조손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

면접 대상자 중 많은 사례가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례 2〉, 〈사례 3〉, 〈사례 10〉, 〈사례 17〉, 〈사례 21〉, 〈사례 22〉이 조손가정이거나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이로 인해 어린 시절 심하게 방임되었던 사례도 발견되었다.

〈사례 2〉는 부모님이 자신을 할머니에게 맡겨서 외롭게 지냈다고 진술하였으며, 〈사례 21〉은 아버지가 방화살인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자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다고 진술하였다.

○○초등학교 다니셨다고? ○○은 할머니랑 살았었어요.

왜 따로 살았어요? 원래 부모님이 누나 여동생 형님하고 다 할머니 한데 맡겼어요. 시골에서 학교가기 머니깐

다 할머니 댁에 학교 다녔어요? 나머지 형제는 다 부모님한테 있었고, 저만 할머니 한데 있었어요.

따로 떨어져서 외롭지 않았는지? 외롭죠. 보고 싶고, 특히 여동생하고 누나가 보고 싶었어요. 형님은... 친한데도 좀... 덜 보고 싶었어요.

〈사례 2〉

2010년도 당시라면 20살이었는데 뭐하면서 지냈어요? 노가다 다녔어요.
언제부터? 20살 때부터.
형편이 많이 안 좋았어요? 네. 어려웠어요.
어릴 때부터 쪽 안 좋았어요? 아니면 갑자기 안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아버지가 교도소 들어가기 전엔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어머니는? 이혼하셨어요.

〈사례 21〉

〈사례 3〉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한 사례이다. 이혼 후 범죄자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 범죄자를 보육시설에 맡겼다가 중학생이 되자 다시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 범죄자는 어머니와 사는 것도 적응이 잘 안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중학교 중퇴하셨다고했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랑 단둘이 살았는데 몇 살 때 이혼하신거세요? 6살 이전
기억은 잘 안나시겠네요? 네. 어머니랑 단둘이 살았는데 어머니가 일을 하셔야 돼서 할머니한테도 맡기고 윗집에도 맡기고 제가 남의 손에서 키워졌거든요. 나쁜 놈들도 만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펜을 잡기보다는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오락실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천주교 살레시오수도원에 맡겼거든요
사고라는 게? 학교를 안 가구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 만나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요즘에 말하면 뽕이란 거죠, 뽕도 뜯고,
중학교, 고등학교 나이 땀 사고 안쳤어요? 그때 엄마랑 재회했던 시기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 어머니가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저두 중학교로 올라가서 좀 성숙해졌고, 어머니랑 재회하게 됐는데, 재회하고도 ... 또 다른 환경에 지내게 되면서 적응을 못 한 거 같아요.

〈사례 3〉

〈사례 8〉, 〈사례 22〉, 〈사례 12〉, 〈사례 10〉는 어린 시절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사별로 인해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한 사례이다. 이중 〈사례 8〉, 〈사례 22〉, 〈사례 12〉는 아버지와의 사별을 경험한 사례였는데, 아버지 생존 당시에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다. 〈사례 8〉은 아버지가 온 가족을 산으로 데리고 들어가 범죄자는 학교도 못다니고 친구도 없이 지내야 했었으며, 〈사례 22〉는 술로 노름으로 가족들을 괴롭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었다. 〈사례 12〉역시 생전에 어머니를 폭행하던 아버지의 기억만 있었다.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했죠? 14년, 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있다 내려왔거든요, 산에 못 있게 해서

그럼 학교가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말씀하시거나? 그 당시에는 산에 복숭아심고 고추심고 그래서 감히 학교 간다고 말을 못했어요. 학교 가려면 6키로를 가야되는데 ... 지금 내 학교는 내 북이고, 동생들도 고등학교도 못가고 다 초등학교 나오고 ... (놀거나) 그런 시간 없었어요. 동생들도 학교 갔다 오면 농사짓는 거 도와야 되고 풀베야 되고 사춘기 때에 그런 거 겪지도 못하고

아버님이 엄하셨나요? 네 한마디 하면 복종하고, 말대꾸 못하구

맞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술을 좋아해가지고

어린나일부터 중노동 하신 건데, 그랬을 때 가족 중 타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계속 만이고 동생은 28에 결혼해서 나가빠고 내가 털어놓고 할 때도 없고 어머니가 계셔도 그때는 어머니가 옛날사람이고

〈사례 8〉

부모님은 뭐하셨어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형이 대신했죠, 이집 저집 경운기 가지고 그런 거 일하고, 형이 학교도 그만 뒀어요, 아버지도 안 계시니깐

아버지는 술 많이 드셨어요? 네, 좀 드셨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농사요, 경운기 한 대 사가지고, 남의 일 도와주면서 쌀 팔아서 먹고 살았죠. 땅 있던 건 아버지가 노름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를 원망하시나요? 네, 좋은 기억이 별로 없으니깐 어머니한테 손찌검하는 것만 생각이 나니깐 아버지께 대한 생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전 결혼하면 아버지처럼 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사례 22〉

아버님이 술도 많이 드셨겠네요? 네 술도 많이 자시고 담배도 많이 피워서 결국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랑 싸움도 하셨겠네요 술 드시고 아버님이? 옛날분이라 그런 것도 있고 술 깨고 나면 미안하다고 하고

어릴 때 어머니한테 손찌검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재떨이 던져서 어머니 머리도 다치고 뇌진탕도 걸리고 뭐.

선생님도 맞았나요? 네 많이 맞았습니다

주로 언제?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맘에 안 들고, 내가 뭐 어릴 때는 제가 좀.

〈사례 12〉

〈사례 10〉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살아야 했었는데, 아버지 방임으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비행경험을 했던 것으로 응답하였다.

부모님은 뭐하셨어요? 그냥 남의 집에 농사지었어요
 선생님이 학교 안 가는 거 부모님이 언제 아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9살 때 ...
 아버지한테 말한 건 언제예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바로 이야기 했어요
 아버지는 뭐라 말하셨어요? 알아서 하라고
 저같은 아들이 학교안가면 화낼 것 같은데? 아버지가 밖에서 일하고 그러니 잘 안들어오시고
 그럼 밥은? 저 혼자 했습니다

〈사례 10〉

2) 엄격한 아버지

〈사례 5〉, 〈사례 7〉, 〈사례 8〉, 〈사례 9〉, 〈사례 11〉, 〈사례 12〉, 〈사례 13〉 등의 사례는 엄격하고 강압적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하였다. 〈사례 9〉의 경우는 범죄자 자신도 어린시절 다양한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사고를 저지를 때마다 그의 아버지는 강압적으로 반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례 5〉는 어린 시절 자주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했으며, 〈사례 11〉은 아버지는 엄했지만 자신을 잘 잡아주지 않고 방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아버님도 술많이 드시나요? 네
 아버님 술버릇은? 막화내요 막때릴라 하고
 변호사 사기전에도 아버지 술많이 드셨어요? 네
 그때 술드시고 오시면 어땠어요? 들어올때도 있고 안들어올때도 있고요
 술드시고 오면 화많이 났어요? 네

〈사례 9〉

중 고등학교때 선생님 가정형편이 어땠어요? 중상층 정도
 아버님 무슨일하셨어요? 아버지가 직업군인하시다가 ... 사춘기때 아버지가 직업군인이다보니
 간 너무 자식들한테 대할 때 훈계해서
 자주 맞았나요? 네
 언제 많이 맞았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때 ... 그때 어릴때 싸우거나 아님 싸워서 금전적으로 많
 이 물어줘야할 때

〈사례 5〉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조금만 더 잡아 주는 사람이 있었음 좋겠다. 지금 조금 억울한 마음이 있
 긴 합니다. 이런건 아닌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부모님이 때리거나 한적이었어요? 그런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상한편이세요 아님 엄한편? 조금 엄했다고 봐야죠

〈사례 11〉

그 밖에 〈사례 19〉는 아버지가 엄격해서 무서웠던 것은 아니지만 형이 엄격해서 가출을 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례 20〉은 부모들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상황을 이야기하였다.

사고를 크게 쳐서 집에서 도망나왔다고 했는데 사고가 컸나요? 좀 컸어요. 저는 형이 무서워서 형을 피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용기가 없어서 가족을 피해서 온거죠.
형은 어땠어요? 형이고 하니깐 무서웠어요. 거기다가 큰 사고까지 쳐서. 형 성격이 다혈질이라 무서웠어요. 어릴 때 형한테 많이 맞았어요.

〈사례 19〉

부모님간 사이는 어땠어요? 사이는 괜찮았어요. 그냥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알고 있거든 저희 아버지께서 바람을 한번 피웠더대구요. 초등학교도 가기 전인가 가고 나선가. 아무튼 아는 여자가 있었다고 하더대구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많이 다투는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론 괜찮았어요.

〈사례 20〉

3) 가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임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된 이유 중 한 가지는 어린 시절의 가출이었다. 〈사례 13〉은 청소년기에 가출하여 혼자서 생활한 경험이 있었으며, 〈사례 14〉도 가출 후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다. 〈사례 16〉의 경우도 명확히 가출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어린 시절 따로 독립해서 살았던 경험이 있었다.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몰라.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지금은 형 주소로 되어 있어. 부모님이 언제, 어떻게 돌아가신지는 몰라
서울에서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혼자서 생활했어. 17살 때 서울에 올라와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서울에서 공장 취직하고 노가다하면서 지냈지 ...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아버지가 엄하시고 어머니는 부드러운데요. 아버지한테 혼나면 할머니께서 감싸주셨어. 할머니께서 제일 감싸주시고 잘 대해주셨지. 아버지가 제일 엄격하고

무서웠어요

〈사례 13〉

부모님과 사이는 어땠나요? 부모님과 사이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가정에서의 금전적인 면도 나쁜 적 없었어요.

가출하고 아르바이트로는 주로 무엇을 했나요? 아르바이트는 술집 아르바이트를 주로 했어요. 웨이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가출하고 처음에는 친구들과하고 놀러다니고 그랬는데 돈도 어느 정도 필요하니깐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 때라 아르바이트가 힘들지 않았나요? 술집 아르바이트 할 때가 17~19살 땀데 그 당시엔 어릴 때라 힘든 건지 모르고 일 했어요. 일하는 게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니었지만 그냥 계속 일했습니다.

〈사례 14〉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땐 아직 어린 나이였는데? 고등학생이면 어린 나이는 아니죠. 섬에서는 고등학교면 돈 벌고 그랬는데 섬 안에선 돈 벌 거리는 없었어요.

〈사례 16〉

나. 학력

1) 학업 중단 경험

가) 경제적 이유

〈사례 8〉, 〈사례 11〉, 〈사례 12〉, 〈사례 3〉, 〈사례 4〉는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를 다니다가 학업을 중단한 사례들이다. 〈사례 8〉은 부모님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져서 산속에 들어가 사느라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사례 12〉는 공납금을 내지 못해 학교에 가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였다. 〈사례 3〉은 부모의 이혼 이후 보육시설에서 살다가 중학교를 마치지 못했다.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셨어요?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몇 학년까지 다녔어요? 5학년. 졸업 다 못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요? 그때 우리 보령서 살기가 좋았었는데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서서 살다가, 5학년 때 산에 가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박정희대통령이 화전민들 산에 다 내려오라 해서 일

귀는 밭이 군 소유지가 돼서 내려와서 땅 몇 마지기 받아서 우리는 농사짓고 세금 만7천원인가 내고
그러니깐 5학년때 집이 어려워 진거네요? 네
그 후로 학교는 안다녔고? 네
그럼 학교 못 다니게 한 부모님이 원망되겠어요? 지금은 그런 원망 못하지만 그때는 좀 그랬어요

〈사례 8〉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어요? 중학교 2학년 중퇴했습니다
왜 더 안 다니시구요? 집안형편이 좀.. 어머니가 좀.. 아버님이 직업도 없고, 어머니는 또 장에서 집화해서 돈 벌고, 어려서부터 좀 불우하게 컸습니다. 학교도 공납금을 못 내가지고, 그랬습니다.
쪽 안 좋은 거였나요, 아니면 크면서 안 좋아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집안 형편이 안 좋다고 보면 됩니다. 아버지가 직업이 없다보니깐, 아버지도 허리 다쳐가지고, 산재보험 이런 게 없던 60년대 그때 시절이니깐, 의원도 없고 한 번 다치면 본인만 손해다 그렇다보니, 아버지가 몸이 안좋아서
중학교 2학년 이후는요? 공납금 못 내서, 6개월 못 내니 자퇴된거죠, 자동으로, 내보고 자퇴하러더라구.

〈사례 12〉

중학교 중퇴하셨다고 했지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랑 단둘이 살았는데

〈사례 3〉

〈사례 11〉, 〈사례 4〉, 〈사례 1〉, 〈사례 21〉도 집안형편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학교는 어디까지? 초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중학교는 안가시구요? 중학교 중퇴했습니다
몇 학년까지 다니셨어요? 2학년이요, 여름방학 때까지
왜 끝까지 안다니시고? 집에 돈도 없고 나가서 돈 벌려고
집안사정이 안 좋으셨나봐요? 네 안 좋았습니다
쪽 안 좋았나요, 아니면 그 때부터 안 좋아지신 건가요? 그때부터 좀 안 좋아서 그렇다보니 그길로 계속 직장생활하다 형제들 다 갈라지고 어머니가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길로 뭐 집안사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사례 11〉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어요? 중학교 3학년 까지

고등학교를 안가신거예요? 네 고등학교 갈했는데 저희 집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그러가지고 다른 형제분도 학력이 그 정도? 네 형제들은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못갔어요.

〈사례 4〉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중퇴했어요

그만둔 이유가? 경제적 이유, 아버지가 장사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공납금 못 내서 1학년 때 어려워져서 그만뒀죠.

학교 그만두고는 뭐 하셨어요? 직장 다녔죠. 18살부터 직장다녔으니, 제조업체 사원으로 집에서 1시간거리.

〈사례 1〉

학교는요? 중학교까지 다녔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다니다가 그만 뒀어요. 2학년까지 다니다가 말았어요.

왜 그만 뒀어요? 할아버지 호강시켜 드릴려고 돈 벌어 드릴려고요.

형편이 많이 안 좋았어요? 네. 어려웠어요.

〈사례 21〉

〈사례 6〉은 기록상에는 중졸로 나타나 있었으나, 면접 당시에는 대학교 중퇴 학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학교는? 저는 건국대학교 축산과 중퇴입니다. 중퇴했어요. 번식학이라해서 축산쪽인데

몇 학년까지 다니신 거예요? 2학년

중퇴 왜 하신 거예요? 제가 출생관계상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미국에 누가 계셔가지구, 제가 그때 운동권 관계도 있고 해서, 학교중퇴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6〉

나) 가출 또는 불출석

〈사례 10〉과 〈사례 13〉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는 하였지만, 이와 더불어 학교에 다닐 의지가 없었던 사례들로 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 둔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셨어요? 국민학교 졸업 못했습니다

몇 학년까지 다니신 거예요? 2학년 9살 때까지 다녔습니다

왜 학교를 안 마쳤어요? 집이 어려워가지고

2학년 마치셨나요? 다니다가

학교 들어갔을 때도 어려웠는데 그때 하필 그만둔 이유는? 내가 가기 싫어가지고
학교안가고 뭐하실려고요? 그때부터는 나쁜 짓하고 오토바이도 타고 싶고 해가지고 훔치고
2학년은 꼬마인데요? 호기심에 하고싶어 가지고
그때부터 오토바이 타고 싶었어요? 네 훔쳐가지고 타다가 사고 나가지고

〈사례 10〉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어요? 국민학교 1학년 다니다가 그만 뒀어요. 집안 형편 때문에 못 갔어.
집안형편이 계속 안 좋았으니깐 못 갔지
1학년 마치고 그만 두셨어요, 중간에 그만 두셨어요? 1학년은 마치고, 2학년 들어갈 때 그만
뒀어
학교 그만 두고 뭐하셨어요? 학교 그만두고 농사일 했지. 집에는 농사일 없었는데 다른 집 농
사일 도와주었지
친구들은 학교를 다녔을텐데요? 나는 돈도 없었을 뿐더러, 학교 중간중간에 물가로 가서 물놀
이 하고 땡땡이 치다보니깐 집에서 책을 꾀슬러버렸어. 그러고 나서 집에서 도망 나왔지. 집에
서 다시 학교 가라는 말도 없었고 그 일이 있고 한달 정도 학교를 안 나갔어요. 그러다보니깐
학교에서도 잘리고

〈사례 13〉

〈사례 14〉는 가출하고 놀러 다니느라 학교 출석에 신경을 쓰지 않아 퇴학을 당
했다고 진술하였다.

학교는 언제까지 다녔습니까? 중학교 중퇴입니다. 마산이 고향입니다.
왜 중학교를 못 마쳤나요? 친구들과하고 놀다보니깐 언젠가부터 자동 퇴학되었더라고요.
퇴학당한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가요? 중 3쯤입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하시지 그랬어요? 아르바이트하다보니깐 학교는 안 다녔어요. 아르바이트하면
서 다닐 시간도 없구요. 또 가출하고 놀러 다니느라 학교는 신경 안 썼습니다.
왜 가출했나요? 호기심에 가출했습니다. 가출하면 보통 어느 정도 잘 아는 마산이나 부산, 진
주 등과 같이 가까운 곳으로 갔습니다. 보통 친구 4~5명씩 같이 돌아다녔어요.

〈사례 14〉

다) 사고

〈사례 2〉와 〈사례 17〉은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학업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는
데, 당시 큰 사고를 당해서 학업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개인적인 사항 학교는? 목동 초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요 제가 사고가 나가지고 좀 식물인간으

로 4년동안 병원에 있다가 깨어났어요. 3년 6개월을 중환자실에 있다가. 교통사고요. 학교 갈려고 신호등 건너고 있는데 낮에 술먹고 운전하시는 분께 치어가지고

〈사례 2〉

학교는? 학교는 다니다가 말았어요. 국민학교 다니다가 말았어요.
 몇 학년 때까지 다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무슨 일이 있어서 그만 뒀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말 때문에 허리가 부러졌어요.

〈사례 17〉

라) 대학진학 포기

〈사례 5〉, 〈사례 7〉, 〈사례 9〉, 〈사례 16〉, 〈사례 20〉, 〈사례 22〉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진학을 포기한 사례들인데, 대부분 경제적인 형편도 좋지 않은 데다가 공부를 잘 하지 못해서 대학진학에 별 뜻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었다.

학교어디까지 나오셨나요? 고등학교요.
 대학진학은 안하셨고요? 네. 대학교 갈려다가 일이 좀 더 중요한 거 같아서 안 갔습니다.
 보통 대학진학을 원하는데 취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 거예요? 그때 사회적으로 시기가 대학 나오봤자 실업자고 해서 굳이 갈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례 5〉

학교는?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대학은 왜 안 나왔어요? 대학은 취미없고 일짜감치 내가 벌어서 살아야겠다 생각해서. 고등학교는 나와야 일해먹고 산다는 생각에 학교도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사람이 기본 저기 있잖아요, 사람이 고등학교 나온 얼굴하고, 고등학교도 못나온 얼굴하고도 관점이 다르니깐 그거 때문에 간 거지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반에서 꼴등하고 50등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가지고 뭐, 20살 때 돈 벌기 시작해서 21~23살에 영장나와서 97년도 제대해서 그때부터 해서 내가 직장생활해가지고, 회사생활하다가 이거는 미래가 없다 싶어서 그만두고 나와서 한 게 고물이었습시다.

〈사례 7〉

학교는 얼마나 다니신거예요? ○○학교요, 중·고등학교요.
 고등학교 졸업하신거요? 네

〈사례 9〉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고등학교까지 다녔어요, 고졸.

대학진학은 안 하시구요? 네
대학진학 안 하신 이유는요? 취업하려고, 공부도 잘 못하고, 고등학교는 인문계 나왔어요
반에서 등수는? 반에서 바닥은 아닌데 못 했어요 머리가 나빠서

〈사례 16〉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어요? 고등학교까지 나왔어요. ○○농림고등학교
대학교는 왜 안 갔어요? 가기 싫었어요.
보통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갈 생각을 하는데? 공부도 잘 못했고, 과도 농산제조과를 택했
는데, 농림고등학교니깐, 한 마디로 식품쪽이죠, 거기서 빵도 배우고 그런 쪽인데, 거기서 학교
생활하다가 빵을 접하게 되었죠.

〈사례 20〉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어요? 고졸요.
대학은요? 방통대 다녔었는데 중퇴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 안 갔던 이유가 있을까요? 공부를 못했어요, 고등학교를 안 좋은
곳으로 가서요, 농고갔어요.
중학교때부터 성적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으니깐 농고갔죠.
고등학교 때 성적은요? 그래도 10등 안에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대학도 가지지? 머리가 안 좋아서요, 집안 사정도 그렇게 좋은건 아니었지.

〈사례 22〉

2) 전문대 이상의 학력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례는 〈사례 18〉, 〈사례 19〉, 〈사례 15〉 였다. 이
중 〈사례 18〉은 전문대를 도중에 그만둔 경험이 있었고, 〈사례 19〉는 전문대를 졸
업하기는 했지만 전공과는 무관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사례 15〉는 일반 대
학을 졸업하였다.

학교 그만 둔것 때문에 아쉬운건 없어요? 아쉬웠죠, 그 과가 세무회계관데 참고 졸업했으면 취
직은 했을텐데, 참았으면 지금 징역도 안 맞을텐데.
복학 생각은? 그런 생각없었습니다.

〈사례 18〉

대학은? 전문대, 자동차학과 다녔어요.
졸업하곤 어떻게 지냈어요? 자동차 부품, 배달, 주로 배송 쪽으로 많이 했어요, 집화나 택배.

〈사례 19〉

다. 폭력경험

1) 폭력피해경험

〈사례 21〉, 〈사례 22〉, 〈사례 4〉, 〈사례 9〉등은 청소년기에 폭력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례 21〉과 〈사례 22〉는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금전 갈취 피해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사례 9〉는 학교다닐때도 폭행과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였으며, 범행 당시에도 직장에서 폭행피해를 당하고 있었다.

중·고등학교 때 맞거나 때려본 적은요? 맞았어요.
 누구한테? 양아치들한테.
 학교 다니는 양아치? 동네 양아치? 동네에 있는 양아치요.
 몇 살때 맞았어요? 중학교 때.
 자주? 네. ... 학교 끝나고 ... 피씨방 가면 ... 돈 내놓으라고.
 그럼 다른 피씨방 가면 되잖아요? 다른 피씨방 가도 절 따라 다녔어요.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들도 같이 맞았어요? 그 친구들은 싸움 잘 했어요.

〈사례 21〉

주로 뺨 뜨기고 맞는 편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거진 고등학교때.
 고등학교 댄 공부도 좀 하셨다면서요? 농고는 그렇죠. 실업계니깐 공부 잘해봐야.
 친구들이 선생님을 괴롭혔던 적이 있죠? 몇 명되죠.
 어떻게 괴롭혔나요? 돈 있으면 좀 빌려달라. 뭐 좀 사와라 그러고. 그냥 그런거죠. 심부름 같은거. 때리면 맞고. 힘이 없으니깐.
 맞는 빈도는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그 당시에 가정 형편이 안 좋았다고 했는데 뺨 뜯길 돈 있었나요? 그래도 1~2천원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친구들이 돈 주면서 사오랄 때도 있었고.

〈사례 22〉

침에는 제가 왕따를 당했어요 맞고,
 왜요? 애들은 거의 나보다 2~3살 많아요. 형 형들이구.

〈사례 4〉

〈사례 9〉의 경우 장애인 학교에 재학할 당시에도 폭행 피해 경험이 있었으며, 범행 당시에도 공장 등 일터에서 폭행 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학교 다니시기 힘들셨잖아요? 네
일반학교 다녔어요, 아님 장애인학교? 장애인요
친구들이 놀리진 않겠네요? 놀렸어요
같은 장애인 학교인데도? 네
뭐로 놀린 거예요? 공부못한거랑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려서
공부못할수도 있는데 왜? 좀 어울리지 그랬어요? 친구들이 안 놀아줬어요
(최근에)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은 없었구요. 일하는 사람들이요 괴롭히는 바람에 휴대폰
도 가가고요, 돈도 가가고요,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네
괴롭히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구요 소장님 있거든요 얘기하니깐 고자질쯤 하지마 그러더라구
요. 공장장님도 그렇고요, 발로 차고 때리구요. 똑바로 해라 니가 똑바로 하면 안 괴롭히지 그
러더라구요

〈사례 9〉

2) 폭력 가해경험

〈사례 3〉, 〈사례 5〉, 〈사례 10〉, 〈사례 18〉 등은 폭력 가해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사례 3〉은 부모의 이혼 후 보육시설에 맡겨져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절도, 갈취 등의 비행에 노출되어 있었다.

사교라는 게? 학교를 안 가구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 만나면 맛난 것도 많이 먹고, 요즘에 말
하면 뽕이란 거죠, 뽕도 뜯고
형들을 어떻게 만났어요? 동네 친구의 친형의 아는 사람들이예요. 자동차 뜯는 것도 자세히 알
려주고
나이가 얼마나 차이나요? 2~3살, 5~6학년 형들 ... 그거는 때린 게 아니고 제가 말했던
2~3학년 형들이 주먹으로 겁은 준 것이었죠. 그 애들을 때린 적은 없어요

〈사례 3〉

〈사례 5〉와 〈사례 18〉은 싸움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몇 차례의 폭력 가해 경험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동급생이랑 싸움 많이 했어요? 어릴 때니깐 사이좋게 지냈어요
혹시 일진했어요? 안 했습니다.
지내다가 싸운 거고 가끔 되면 치료비도 물고? 네

〈사례 5〉

학교 다닐 때 때리는 편이었어요? 맞는 편이었어요? 때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았어요. 제가 다닐 때 다니는 친구들도 그러진 않았어요. 친구들 6~7명이 몰려다니긴 했는데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다들 운동을 하던 친구들이라. 저도 태권도 조금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사례 18〉

〈사례 10〉은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나곤 했는데, 청소년시절부터 싸움 등으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다고 진술했었다.

폭력전과가? 3~4개

그럼 1년에 두 번씩은 들어오신 거예요? 열일곱 인가 열여섯부터 징역살았어요.

〈사례 10〉

4. 성격 및 정신질환

가. 성격

1) 내성적 성격

면접 대상자의 성격 특성 중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사례 11〉, 〈사례 12〉, 〈사례 13〉, 〈사례 1〉, 〈사례 3〉, 〈사례 5〉, 〈사례 16〉, 〈사례 19〉, 〈사례 20〉, 〈사례 21〉, 〈사례 22〉 등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내성적인 성격에서 기인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들은 많은 경우 대외적으로 관계를 넓히기 보다는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하였고, 낮을 가리는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내성적인 성격같은데 어릴때도 그랬나요? 중학교 다닐 때도? 그땐 안 그랬죠. 나이 먹어서 그런 거죠

중학교 중퇴 전까진 친구 많이 사귀시고 했어요? 그 당산엔 친구 많이 사겼죠. 활발하고

언제부터 내성적으로 변하신거예요? 30대 넘어가서

〈사례 11〉

사모님 일이 터지기 전에도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그땐 어떻게 해소했어요? 그때는 뭐 술 한 잔 먹고 첫째 금전적인게 아니니깐 일반적인니깐 친구들하고 술 한 잔하고 낚시도 가고 보통 사람들이 푸는 식으로 풀었지. ...

고민을 나누는 친구는 있으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나는 객지에 나와서 편하다 하는 친구는 없고 회사동료라 해도 업무 외에는 친한 사람도 없고 두세 사람은 있겠지. 근데 사람들하고는 제가 대인기피증이 있고 잘 안 어울리는 편입니다.

그게 객지 생활하면서예요, 아님 어릴 적부터? 어릴 적에는 어렸을 때 부터 제가 좀 성격이 내성적이라 보면 됩니다.

〈사례 12〉

입소하기 전에 이야기 많이 했던 사람이 있나요?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지들과 이야기 많이 했어요. 같이 술 마시고 자고 밥 먹는 단골집 가서 식당 아주머니와 이야기하기도 하고, 술 안 먹고 옆에서 누가 말 안 시키면 하루종일 말 한마디 안 한 적도 많아요. 내가 먼저 말을 거는 편은 아닙니다

〈사례 13〉

혼자서 술 먹고 혼자 노래듣고 그러죠. 독립된 외톨이 은둔생활이라 그러냐? 내가 이가 빠지면 서 대인기피증이 생겨 사람만나는 걸 싫어해요. 괜히 꺼림직 하더라구요. 만나봤자 가진 것도 없고 뭐하겠냐.. 내가 많이 썼었으니 수중이 돈이 없음 나가질 않아요 스타일이지.

〈사례 1〉

그때 엄마랑 재회했던 시기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 어머니가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저두 중학교로 올라가서 좀 성숙해졌고, 어머니랑 재회하게 됐는데, 재회하고도 제가 좀 커가면서 저보다 더 어려운 애들하고 살맞대고 살다보니 제 목표가 뚜렷해졌는데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가 또 다른 환경에 지내게 되면서 적응을 못한 거 같아요. ... 그렇죠 어머니까지도 낯설다고 느꼈어요.

〈사례 3〉

주변에 얘기를 안하시는 거 같은데 원래 성격이 그런 거 같아요? 원래 혼자서다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여러 개가 너무 겹치니깐 제가 자폭을 한 거 같아요. 웬만한 거는 다 혼자 이겨내는 편인데 그때 이혼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고

〈사례 5〉

2) 소심함

낮은 감정표현 능력은 소심함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사례 19〉는 형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가 가진 욕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방화라는 일탈도 다른 대인범죄를 차마 하지 못해서 선택한 대안적 일탈이었으며, ‘너무 모험적인 것’은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다른 학생들을 때리거나 맞고 다녔던 적은 없었어요? 맞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때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참고 사는 게 많았어요. 부모님이 엄하실 땐 엄하셨어요. 그래서 성격 죽이고 많이 살았어요. 형은 저와는 다르게 화낼 땐 화내고 그랬는데. 그래서 형과 비교가 많이 됐죠. 형은 공부도 잘하고, 저는 사고도 많이 치고, 형에 비하면 저는 책임감이 좀 없었죠. 사고를 치면 형이 니가 사고 쳤으면 니가 알아서 해야지 왜 모른 척하고 책임을 안지나면서 많이 혼냈죠.

불 질러서 선생님께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건 없죠. 예를 들어, 차 주인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면 옛 먹어봐라하고 하며 불 질러 버리면 되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스릴 있다는 것 뿐이었어요. 다른 생각들이 많았다면 우리 집 앞에서 웬만하면 그런 행동도 못 하는 거죠.

제일 처음 왜 불을 냈을까요? 너무 모험적인건 못하겠더라구요. TV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성범죄라든지 지나가는 사람들 폭행, 강도하는 것처럼 대놓고는 못하겠더라구요. 그러면 증거도 있고 금방 들통나니깐 그런데 휴지에 불 붙이면 휴지가 다 타고 나면 증거가 없어지니깐 뭔가 짜릿한 일을 해볼랐는데 그 중에 좀 소극적인 거 해볼려다가 그리된거죠.

〈사례 19〉

〈사례 20〉도 자신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소심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혼자 있는 것이 싫어서 사람들과 자주 교류하고 싶지만 혼자서 고민하고 마는 상황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평소에도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술 드시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얘기하려고 하는거죠. 저는 혼자 있는게 싫어요. 혼자 있으면 위축되기도 하고, ... 아휴, 짜증나죠. 어떨 땐 술도 많이 먹을 때도 있고, 어디 가서 남한테 하소연할 때도 없고 혼자 끄공 앓고, 그냥 막말로 그냥 지나가는 차에 확 부딪혀서 죽을까도 싶고, 그런 생각하다가도 혼자 계시는 어머니 생각이 나서 이리저 말자 생각했죠.

〈사례 20〉

3) 다혈질

〈사례 8〉, 〈사례 9〉, 〈사례 15〉, 〈사례 18〉 등과 같이 다혈질적이고 성급한 특성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다혈질적인 성격과 내성적인 것이 상호 모순적인 것은 아닌데, 〈사례 8〉의 경우를 보면 화가 쉽게 나지만 내성적인 성격이라 쉽게 표현하지는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사례 15〉의 경우도 화가 난 상태에 쉽게

도달하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혼자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평소에도 화를 많이 내시는 편인가요? 제가 확하는 편입니다. 대신 뒤끝은 없습니다. 돈도 주는 거 받는 거 정확하게 거래안하면 절대 거래 안합니다.

평소 화를 못참거나 사고친 적은? 네 하지마라 했는데도 했거나 모르게 했거나 그러면 성질이 강하고, 하지말라했는데 도가 넘어가면 못 참습니다. ... 그게 오래가지는 않는데 그걸 좀 못참고 그런 ... 제가 좀 내성적인데도 급한 거는 이거는 아니다 맞다 이러면 사람이 짜증이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템포 늦추면은 되는데 못늦춰서.

〈사례 8〉

3일 동안 잠을 못 잤다고 했죠? 거의 한 달 동안 못 잤습니다. 잠을 잠깐 잤다가 일어나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특히 힘들었어요. 치료도 받으러 가기도 하고, 여자친구와 만나는 과정에서 힘들고 그러다보면 다투고 격해져서 계속 힘들어지면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나니깐..

〈사례 15〉

술 먹기 전엔 서로 좋아하고 잘 지내지. 하지만 술 먹을 땐 내가 길게 마실려는 스타일인데 다른 친구들은 적당히 먹다가 가자고 하는데 난 계속 남아서 혼자 마시는 편인데 그런 부분을 친구들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사례 13〉

〈사례 18〉도 다혈질적인 성격이 외부로 표출되기 보다는 자해를 하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성격은 화끈하신 것 같네요? 화끈한 성격인 편이에요 ...

팔에 흉터가 많은데 어떻게 된 거죠? 별거 아닌데, 다른 사람들에게 해 끼치면 안되니깐 혼자 푸는 편이에요

자해를 말하는 건가요? 네. 자해. 술 먹다가 열 받으면 자해해요. 그리고 풀고

자주 자해하는 편이에요? 자주는 아니고 한두 번 짜증나고 숨길게 있을 때

〈사례 18〉

나. 음주습관

1) 혼자 먹음

음주 습관 중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사례 4>, <사례 8>, <사례 11>, <사례 12>, <사례 13> 등과 같이 혼자 술을 마시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많은 반면, 이것은 이들의 내성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평소 술을 혼자 드시나요? 네 나가서 먹든가 집에서 먹든가
 혼자 가게가서 마시는 거예요? 슈퍼 아님 포장마차 호프집 같은데
 하나거나 하면 누구에게 하소연하지는 않나요?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해요

<사례 4>

술은 혼자 드시는 거예요 아님 주변 분들이랑? 아무케도 친구들하고 술먹음 비싸고 혼자 먹음
 4~5천원이면 먹으니깐
 혼자 드셔도 스트레스 풀려요? 네 텔레비전보면서 주로

<사례 8>

술 버릇은? 그런 거 없습니다. 술 마시면 그 자리 자기 때문에 그대로 자버리지.
 술 마실 때 혼자 드세요? 혼자 먹고 어디 나가질 않아요.

<사례 11>

술은 혼자 드신다고 하셨죠? 네 술은 주로 혼자서
 불내기 전에도 혼자 드시고, 술집에서 불낸 장소를 바로 간 거예요? 술집에서도 먹고 집에서도
 먹고 술 한 잔 먹고 한바탕 소리지르고 나온 적도 있고

<사례 12>

다른 친구들은 적당히 먹다가 가져고 하는데 난 계속 남아서 혼자 마시는 편인데 그런 부분을
 친구들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사례 13>

<사례 18>과 <사례 22>는 혼자 술을 마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마시기도 한다고 응답하였다.

술 드시면 누구랑 먹나요? 저 혼자 60% 마시고 나머진 지인, 노가다 친구, 직장 동료, 당구장 친구, 동생들이랑 먹는 편이에요. 당구장이 동네에 있으니깐 40년 넘게 동네에서 살았으니깐 당구장가면 항상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당구치고 술도 마시고, 또 깨고 다시 마시고를 반복했어요

〈사례 18〉

보통 술은 혼자서 드세요? 친구랑 먹을 때도 있고, 혼자 먹을 때도 있고 그렇죠.

〈사례 22〉

2) 지인들과 함께 마심

앞선 사례들과 달리, 〈사례 20〉, 〈사례 7〉, 〈사례 9〉는 혼자 술을 먹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선호하였다.

술 드실 때 혼자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혼자서 거의 안 먹는 편이죠.
특별히 자주 만나는 친구있어요? 그 날 화재사건 날 때 만났던 동생하고, 사회에서 아는 형, 뭐 그 정도해서 자주 만나고,
그 사람들과 힘든 이야기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서 술 한 잔 하고 오늘은 이런 일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좋았던 일, 나빴던 일 다 얘기했죠. 그렇게 좋더라구요. 그렇게 만나서 술 한잔했죠. 그렇게 얘기하면 제 마음이 편해졌죠. 안 그러고 집에 있으면 마음이 답답해요.

〈사례 20〉

술 혼자 드셨어요? 네 혼자 먹었어요
평소에도 혼자드세요? 아니요 친구들이 다 장기를 가서 제초때 말곤 만나기 힘들거든요, 그날 따라 근데 혼자 자주 먹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그날따라 귀신에 홀린거처럼 미친놈도 아니고 거기 가서 불을 지를 놈이 어디있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될려니, 뭐가 되었건 사람이 해서 안 될 일이 있는데, 아무리 술이 취해도 생각하지않습니까? 그날 무슨 귀신이 씌였지

〈사례 7〉

주로 술 혼자 드세요? 다른 분들이랑
주로 어떤 분들이랑 드세요? 아는 형하구요

〈사례 9〉

3) 폭력적인 음주습관

면접 대상자 중에는 술을 먹으면 폭력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사례들이 있었다. <사례 10>은 술을 먹으면 주변 사람들과 싸움을 하게 된다고 응답하였고, <사례 7>과 <사례 13>은 ‘예전’이라고 한정하기는 했지만 음주 후 싸웠던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술 드시면 주로 싸움을 하는 편인가요? 네
누구랑 싸우죠? 주로 모르는 사람이랑 ... 술집 있는 옆사람이랑.
폭력전과가? 3~4개
실형 사셨어요? 네 ... 열일곱 인가 열여섯부터 징역살았어요

<사례 10>

평소술버릇은요? 옛날이 안 좋아서
옛날은 어땠습니까? 술 처먹고 길에 드러눕고
싸우거나 물건 부수거나 그런 건 없고요? 네 20대 초반엔 그랬는데 다 고쳤습니다. 그날따라
뭐가 안 되려고 그러니까는, 귀신에 씌였는데 술김에 왜 그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례 7>

특별한 술버릇은 없으세요? 술버릇으로 남을 괴롭히는 행동은 안하고 싸움 가끔씩 하곤 했어.
예전에 방화로 인해 교도소에 입소한 경험있어(1987년)

<사례 13>

<사례 18>의 경우는 음주 후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자해의 형태로 폭력성이 드러나는 사례였다.

팔에 흉터가 많은데 어떻게 된거죠? 별거 아닌데, 다른 사람들한테 해끼치면 안되니까 혼자 푸는 편이에요.
자해를 말하는 건가요? 네. 자해. 술 먹다가 열 받으면 자해해요. 그러고 풀고
자주 자해하는 편이에요? 자주는 아니고 한두 번 짜증나고 숨길 게 있을 때.

<사례 18>

다. 정신질환

면접 대상자 중에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례도 있었다.

〈사례 2〉, 〈사례 9〉, 〈사례 21〉은 정인지체 진단을 받은 사례들이었고, 〈사례 16〉은 정신분열 진단을 받은 사례였다. 이중 〈사례 21〉과 〈사례 16〉은 불을 지르라는 환청을 견디지 못해 연쇄 방화를 저지른 사례였다.

그 뒤로 학교는? 안다녔어요. 아파가지고 못다니겠더라고요. 정신장애 2급이에요.

〈사례 2〉

선생님이 장애인이에요? 네 정인지체요. 어렸을 때부터 말이 느려서 책 빨리 읽을 때 몇 급이에요? 3급

〈사례 9〉

불 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어릴 때부터라고 했는데 언제를 말하는거죠? 2006년도 부턴가. 한 17살 그 때부터 정인지체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방화 살인 때문에 들어갔어요. 일부러 그런건 아닌데. 애기한테 불이 붙었고, 아버지가 겁이 나서 그냥 도망갔는데 방화살인죄가 댔어요.

언제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들려요.

언제부터 불 질러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아버지 일부러.

〈사례 21〉

사건을 일으킨 계기가 뭔지 궁금해서요 제가 정신분열증에 좀 시달렸어요.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한 25살인가?

정신분열이 어떤 증상으로 나왔나요? 그냥 앉아있어도 그냥 붕 뜨는 느낌. 그래서 치료해서 다 나있었는데 제가 결혼한 시점부터 환경이 바뀌니깐 다시 발생한거 같아요. ... 직장 생활하니깐 치료 못 하고 혼자 병원 가기 무섭고 해서 그냥 뒀어요. 그리고 술 마시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자꾸 환청이 들리는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던가요? 계속 죽어라 죽어라하는 그런 소리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 본 적도 있고, 그런 소리 들리니깐 죽으려고 올라간거 같아요. 정신없다가 정신 차려보니깐 옥상에 올라가고, 집에서 칼로 배에 갖다댄적도 있고.

환청은 어느 정도 자주 들렸나요? 회사 때문에 일이 많아서 피곤하고 몸이 지쳐있을 때.

그 때 증상은 어땠어요? 사람 날아다니는거 같은. 기분이 있어도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었어요.

붕 떠 있을 땐 어떤 느낌이었어요? 조금 어지럽긴 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 처음엔 기분이 좋았지만 계속 반복되니깐 무서워져서 말씀드렸어요.

〈사례 16〉

〈사례 10〉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었고, 〈사례 12〉는 범행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검거 후 치료감호소에서 '심신불안 순간충동조절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왜 거기 불을 질렀나요? 내가 거기 있어가지구요. 좀.. 내가 정신병원에 좀 오래 있었거든요.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잡혔을 때 정신병원에서 있었나요? 네
 병명이 무엇인가요? 우울증이란 손뜯는 거하구요.

(사례 10)

형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법에 대해 잘 모르니깐 인명피해 없는 상태에선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명피해가 있다면 모르는데 저는 공주치료감호도 받았고 국과수가서도 받았고 경찰대학 표창원 교수님도 와서 상담했고 정신감정 받고 그런게 인정이 되서 징애가 나오더라구요.
 어떤 징애가 나왔나요? 심신불안 순간충동조절장애

(사례 12)

제4절 소결

연쇄방화 범죄자에 대한 면접조사에서 방화 사건들은 대부분 밤에서 새벽 사이의 시간에 집 근처 또는 자주 지나다녀 익숙한 곳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하였다. 이때 많은 범죄자들은 거주지 혹은 술집에서 출발하여 범행 장소까지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동시간은 도보로 약 5분 정도가 가장 많았다. 이것은 방화 범죄자들이 불을 지르는 장소가 범죄자들의 생활반경 안에서 선택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방화 동기를 살펴보면 분노나 화가 동기가 되었던 방화와 충동적인 방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분노의 내용은 구체적 대상을 향한 분노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 등이 있었다. 구체적 대상을 향한 분노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금전적 피해나 정서적 모욕감을 주었다는 생각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으며,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는 평소에 느끼고 있던 추상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충동적인 방화는 정신질환이나 자극을 추구하려는 욕망 등의 이유로 방화의 충동이 생겨 불을 지른 것이다. 그런데 분노와 충동이 서로 무관한 요소는 아닌데, 평소 자기 처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방화 충동을 증가시키는 모습도 발견되었던 것이다.

방화 범죄자들은 평소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이로인해 일상적인 긴장상태에서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은 다양한

경로로 방화와 연결되고 있었다. 방화범죄자들이 겪고 있던 스트레스는 빈곤, 실직 등의 경제적 곤란, 가정불화, 애정문제 등의 정서적 곤란, 기타 관계적인 문제 등이 발견되었다.

이들이 불을 질러야겠다고 결심한 시점은 촉발요인이 될 수 있는 갈등상황이 발생할 당시, 갈등 후 음주 상황, 일상적인 음주상황 등 다양하게 발견되며, 갈등이나 음주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방화 충동을 가지고 있는 사례들도 있었다.

방화 범죄자들의 방화 직전 행적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음주상태였으며, 범행 직후에는 불이 완전히 타는 것을 보고 나서 도피한 사례보다는 불이 붙는 도중에 집이나 다른 장소로 도피하는 사례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범죄자들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CCTV라 할수 있는데, 조사된 사례 중 반 이상이 CCTV에 범행 내용이 찍힌 것이 체포에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방화범죄자들의 경우 CCTV 존재 여부를 살피거나, CCTV의 시야를 피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방화범죄자의 체포에 있어 CCTV에 의존하기 보다는 다양한 수사 기법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그 밖에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에 의해 체포된 사례들도 다수 있었다.

범죄자들 중에는 불을 지른다는 것에 재미 또는 만족을 느끼는 사례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느낀 사례들도 있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범죄자들이 느낀 두려움은 오히려 스릴을 제공해 주는 새로운 자극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방화 범죄자들 중 범행당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체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사례가 많았는데, 이것은 방화가 그리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행위 자체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이후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죄의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자들 가운데에는 ‘술때문’, ‘큰 피해가 있을지 몰랐음’, ‘불을 낼 생각이 아니었음’, ‘당시 상황은 어쩔 수 없었음’ 등의 정당화 기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례도 있었다.

면접 대상이 된 연쇄 방화 범죄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범행 당시 실직상태이거나 일거리가 없어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있었고,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 노무직이나 저임금 비숙련 노동에 종사하고 있어서 어려운 생활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미혼이거나 이혼한 상태였으며, 사회관계에 있어서도 평소 교류 하던 친구가 거의 없거나 표면적인 사회관계만을 유지하고 있어서 사회적 지지체가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주로 ‘술을 마시는 것’이었으며,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혼자 하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다.

범죄자들은 어린 시절에 불우한 경험을 가진 경우가 많았는데, 조손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방임된 환경에서 성장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하였거나, 가출등의 경험으로 인해 가족 내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례들도 있었다.

또한 많은 범죄자들이 학교를 중퇴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못하는 등의 학업 중단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많은 이유는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들 중에는 학창시절에 폭력피해경험 또는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범죄자들도 다수 있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성격 특성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소심한 성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다혈질적인 성격도 내성적인 측면과 결합하여 분노는 표출하지만 자신의 감정은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연쇄 방화 범죄자들 중에는 술을 마실 때도 혼자 마시는 음주 습관이 다수 발견되며, 간혹 술을 먹으면 폭력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사례들도 있었다.

면접 대상자 중에는 정신지체, 정신분열, 우울증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례들도 있었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5장

방화수사체계 개선방안

김재운

방화수사체계 개선방안

제1절 방화범죄의 의의와 특성

1. 방화범죄의 의의

형법상 방화죄는 고의로 불을 놓아 목적물을 태워 없애는 행위를 말한다. 영미의 경우 방화범죄는 개인의 주거의 안전 또는 재산에 대한 침해범으로 분류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져오는 위험범으로 분류하고 있다(박상진, 2010). 우리나라의 형법체계상 방화범죄는 크게 방화죄와 실화죄로 구분하고 불로 태우는 목적물의 용도와 소유권의 소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여부, 과실의 경중 등에 따라 다양한 죄명으로 구분되고 있다. 우리 형법상 방화죄는 기본유형인 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와 가중적 유형인 제164조의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제165조의 공용건조물방화죄가 있다. 제164조 제2항의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와 제168조의 연소죄는 각각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결과적가중범이다. 과실범인 실화의 죄에는 제170조의 단순실화죄, 제171조의 업무상 실화·중실화죄가 있다.

2. 방화사건의 수사절차 개요

가. 화재조사와 방화수사

범죄수사라 함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 그 혐의의 진위를 확인하고 범인을 발견·확보하며 그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사활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수사절차라고 한다(신동운, 2005:35).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방화사건의 수사는 방화범죄의 혐의 유무를 확인하고 방화범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화범을 발견·확보하며 그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발생하는 화재사건의 일부만이 인간의 고의와 과실에 의해 주거나 건조물 등에 불을 놓아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하는 방화범죄가 되기 때문에 방화사건의 수사절차는 필연적으로 모든 화재사건에 대한 그 원인조사절차단계와 방화로 판명된 모든 화재사건에 대한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절차단계로 구분된다.

나. 화재조사 절차

일반적으로 목격자가 있거나 주변에 가연성 액체가 발견되는 등 사건발생 초기부터 방화라고 추정할 수 있는 사건은 곧바로 경찰의 방화사건 수사가 개시되지만,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서 우선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직 범죄의 혐의유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수사절차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화재의 원인을 파악하는 행정기관의 활동을 화재조사라고 하는데, 소방의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과 같은 소방행정상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경찰의 경우에는 범죄혐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활동으로 화재조사를 행하고 있다. 즉 화재조사(fire investigation)란 발화지점과 화인, 화재확산을 결정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의미하고, 소방활동이 종료된 후에 조사관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불이 났는지 또는 무엇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 즉 발화지점과 화인(O&C: origin and cause)을 밝히기 위한 조사라고 불리고 있다(DeHaan & Icove, 2011:2). 소방방재청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조에 의하면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

집, 관계자 등에 대한 질문, 현장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동을 화재조사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화재조사에 있어서 화재현장에 화재조사관이 직접 임장하여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현장 잔유물을 통해 화재의 원인을 찾아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을 화재감식이라고 한다. 화재감식활동은 화재조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다. 방화범죄의 수사절차

범죄의 수사는 법률상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 즉 수사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방화범죄도 형사소송법상 범죄수사권이 있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를 제외하고는 수행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방화범죄의 수사는 전국 경찰관서의 형사과(또는 수사과) 수사형사들이 수행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재사건의 수사절차는 시간적으로 화인조사와 방화사건 수사의 2단계로 구분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사적 감정에 의한 방화사건이나 방화범이 도주하는 등 화재발생의 초기단계부터 방화사건임이 명백한 경우가 많다. 경찰관들이 방화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초기부터 화인조사를 담당하는 의의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방화사건의 수사절차는 화재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고 나면, 경찰서 수사관이 화재 현장에서 화재조사와 감식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증거물을 수집하여 전문감정기관에 의뢰함으로써 화재의 원인을 판명하고, 만약 화인이 방화로 판명된 경우 목격자, CCTV, 기타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당해 피의자를 체포하여 조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의자의 인신을 구금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경찰의 방화사건 수사는 일단락되고, 다시 검사의 보강수사를 거쳐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수사가 종결된다.

3. 화재사건의 특성

가. 화재사건의 조사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일반화재, 전기화재, 유류화재, 금속화재 등 다양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날 수 있다. 따라서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화재조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인기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화재학(fire science), 화재화학(fire chemistry), 열역학(thermodynamics), 건축학(architecture), 전기학(electric science), 법과학(forensic science), 화재패턴, 위험물질, 연료가스체계, 화재관련 인간행동, 형사소송절차, 범죄심리학(criminal psychology)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화재조사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화재현장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다.

나. 화재현장의 증거물은 소훼되어 범인을 특정하기 매우 어렵다

일반 범죄사건의 경우 현장에 유류되어 있는 지문, 족적, 혈흔, DNA 등 신체식별자료를 통해 어렵지 않게 관계자 또는 범인을 특정함으로써 수사를 전개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화재현장에는 모든 증거물이 소훼되어 관계자나 범인을 특정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다른 범죄를 범한 후에 증거물을 인멸할 목적으로 불을 놓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화재감식활동은 과학수사활동 중에서 가장 난해한 활동이다(DeHaan & Icove, 2011:2).

다.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른 사건들보다 피해액이 매우 크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연각 화재사건의 경우와 같이 빌딩 전체를 소실시키는 경우도 있고, 대구지하철 사건의 경우와 같이 수백명의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등 일반 사건들보다 인적·물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피해자, 건물주, 보험회사 등 사건관계자들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은 분명하다. 결국 화재조사의 결과에 따라 불리한 측에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사태의 국면을 전환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화인이나 피해액을 산정하는 화재조사를 매우 신중하게 행하여야 한다.

라. 장기간 화재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어렵다

일반 범죄사건에 있어서는 범죄사건의 수사를 완료하더라도 일정한 시간동안 현장을 보존할 수 있으며, 설령 변경하더라도 범죄장소의 외형적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나 화재현장은 일단 소방관서의 소화활동과 함께 훼손되기 시작하여 화재감식활동을 통해 재차 훼손되는 등 화재현장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가 매우 어렵다. 심지어 화재감식활동 조차도 화재현장을 신속히 복구하여 이익을 피하려는 건물주나 관계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간적 압박을 받기 쉽다.

제2절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및 방화수사체계

1.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체계

화재조사는 수행하는 기관의 목적에 따라 방·실화사건의 입증과 증거물 수집을 위한 경찰의 화재조사,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한 소방의 화재조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평가·결정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화재조사, 전기나 가스사고의 발생 방지와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의 화재조사 등이 있다.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기관별로 화재조사의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경찰의 화재조사

현행 법체계상 범죄의 수사는 경찰기관과 경찰관의 임무이며 하나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경찰법 § 3, 경찰관직무집행법 § 2, 형사소송법 § 196②). 전술한 바와 같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화죄, 실화죄 등 화재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살인, 강도, 강간 등 관련 범죄가 연계되어 있을 개연성이 많다. 따라서 경찰기관의 담당자는 화재현장을 조사하여 원한, 지정, 금전 관련 방화의 혐의를 포착하거나, 실화와 관련된 책임소재 및 화재발생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이 없었는지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관할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으면, 지구대·파출소 경찰관과 형사팀, 과학수사요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와 추가위험의 발생 방지, 화재조사를 위한 현장관찰 활동을 하고, 화재 진압활동이 종료된 후 소방과 경찰,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화재감식을 실시해서 유관기관의 감정서 및 경찰서 과학수사요원의 감식결과를 토대로 형사입건 또는 내사종결로 화재사건을 마무리 한다. 그러나 담당형사는 화재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할 경우에는 경찰서 과학수사요원의 도움을 받거나 중요한 사건이나 화인규명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의 전문 화재감식요원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경찰의 화재조사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조직은 경찰청 과학수사센터가 있으며, 지방조직으로는 16개 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와 각 경찰서 과학수사팀이 있다. 각 경찰서 과학수사요원은 일반 과학수사업무와 겸하여 화재감식을 전담하고 있으나 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의 화재감식 전담요원은 화재감식만을 전담하여 활동하고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중요화재의 경우 거의 빠뜨리지 않고 현장출동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2000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감식 전문과정의 위탁교육을 통해 화재조사요원을 양성해 왔으나 2011년부터 경찰수사연수원에서 10주간의 화재감식 전문과정을 주관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관련 실험과 실습 교육 4주, 지방경찰청 화재감식팀 교육 2주 등 6주간의 위탁교육을 통해 화재감식 능력을 배양하여 화재조사 전문요원을 양성시키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경찰청장이 화재감식 분야의 과학수사요원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화재감식 전문수사관의 인증서를 배부하는 등 전문가의 능력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전국의 과학수사요원은 934명이며, 이 중 화재감식 전문 수사관 자격을 취득한 요원은 68명이 있다.

나. 소방의 화재조사

소방기관의 화재조사는 유사화재의 방지와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 수립 등 소방행정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의 화재조사는 크게 화재원인조사와 화재피해조사로 구분된다. 화재원인조사는 발화원인 조사, 발견·통보 및 초기

소화상황 조사, 연소상황 조사, 피난상황 조사, 소방·방화시설 등 조사를 말하고, 화재피해조사는 소방활동이나 기타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를 조사하는 인명피해조사와 소실편해, 수손(受損)피해, 기타 피해를 조사하는 재산피해조사로 구분된다.⁷³⁾

소방공무원의 화재조사에 관한 근거법률은 소방기본법이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조사의 권한은 소방관서장에게 부여되어 있고, 소방공무원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명령권, 관계 장소 출입권, 관계인 질문권 등을 가진다(소방기본법 § 29, § 30, § 31). 특히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증거물을 압수하여 수사기관에 확보된 피의자나 증거물을 조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소방기본법 § 31). 한편 화재조사에 있어서 경찰관과 소방관은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소방기관의 화재조사관은 화재조사 결과 방·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경찰에 통보하고 범죄수사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소방기본법 § 32).

소방기관의 화재조사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조직으로는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 화재조사팀이 있으며, 지방조직으로는 16개 시·도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화재조사팀과 각 소방서 방호구조과 화재조사팀이 있다. 화재조사 전문교육기관으로는 중앙소방학교 및 6개 지방 소방학교가 있으며, 연구소로는 중앙소방학교 산하 소방과학연구실이 있다. 소방기관에서는 중앙소방학교의 화재조사요원 양성과정(년 1회, 12주), 화재조사관 능력향상과정(년 1회, 1주), 화재폭발조사자격취득과정(년 1회, 2주)을 통해 화재조사요원을 양성하고 있다. 이들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재현 실험 및 원인분석, 흔적 감정, 화재패턴 분석 등 실습위주의 교육은 소방과학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화재조사요원 양성과정 이수하게 되면 화재조사관⁷⁴⁾을 치뤄 조사능력을 검증받고 있다. 화재조사요원으로서의 인사배치는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위주로 배치하도록 소방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다.⁷⁵⁾ 전국적으로 소방기관의 화재조사요원은 736명이고, 이 중 화재조

7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5,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조

74) 2005년 12월 10일 제1회 시험을 치른 후 2012년 9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총 1,334명이 합격하였다.

75)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사관 자격증 소지자는 616명이 근무하고 있다.

다. 화재원인감정 및 연구기관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 과학수사 분야의 기술적 지원 및 감정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공인 과학수사기관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재원인을 감정하고 화재관련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법과학부 물리분석과 화재연구실이다. 2000년 신설된 화재연구실에는 본원 화재연구실에 7명, 3개 분소에 7명 등 총 14명의 전문연구관이 재직하고 있으며, 이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증거물을 감정하고 분석하고, 중요화재의 경우 직접 현장에 출동해 화재감식 활동을 하기도 한다. 또한 경찰수사연수원의 화재조사요원 현장실습교육을 지원하고 화재관련 각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소방학교 소속의 소방과학연구실은 화재현장의 증거물 감정 및 분석, 소방 화재조사관 현장실습 교육, 각종 화재의 재현실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5명의 전문 연구관이 재직하고 있다.

라. 민간기관의 화재조사

민간기관은 다양한 목적으로 화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화재보험협회이다. 화재보험협회는 보험사의 과학적 화재원인 조사 수요가 급증하여 2008년 9월부터 화재원인조사에 관한 업무를 시작했으며, 2010년 6월 화재원인조사에 관한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화재조사센터를 신설하였다.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은 화재원인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연소시험, 화재 재현시험, 컴퓨터 화재 시뮬레이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화재와 소방관련 각종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특히 화재폭발감식과정과 미국화재폭발조사관자격과정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화재조사 교육을 시키고 있다.

화재보험회사에서는 회사의 수익구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화재조사에 대해 민감하다. 화재보험회사에서는 회사내 손해사정부서나 손해사업업체에 위탁하여 보험 청구인의 화재보험금 지급액 산정을 위한 손해액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특별

조사팀(SIU)에서 보험금 편취 목적의 방화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해서 방화의 의심이 있을 경우 경찰서에 수사의뢰하고,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기사업법 제96조의 3에 의거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설비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권한이 있다. 전기안전공사의 화재조사업무는 본사 안전관리처 재난안전부와 지역본부와 지사의 점검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6조에 의거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와 가스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화재사건의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권한이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화재조사업무는 본사 사고점검처 사고조사부와 지역본부와 지사의 점검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방화수사 체계

가. 방화수사의 의의

화재조사가 화재발생의 원인과 피해액 산정에 중점을 두어 반하여 방화범죄의 수사는 방화범의 범죄사실을 밝혀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을 거쳐 종국적으로는 유죄의 판결을 받게 함으로써 형사정의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수사(搜查)라 함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⁷⁶⁾ 그러므로 방화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도 경찰과 검사와 같은 형사소송법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이 주체가 된다.

나. 경찰의 방화수사

방화사건은 대부분 화재의 발생과 더불어 수사기관에 인지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방화사건은 경찰기관에서 담당한다. 경찰에 있어서 방화사건은 살인, 강

76) 대판 1999.12.7, 98도3329

도, 강간 등과 함께 4대 강력범죄에 속한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방화사건이 발생하면 상당히 비중있게 취급하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살인 후 증거인멸 목적의 방화, 주택가 연쇄방화 등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방화사건의 경우 지방경찰청에서 직장하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범인검거에 매진한다.

경찰관은 방화범죄의 수사에 있어서 행위의 주체와 객체, 행위 양태, 결과의 발생, 범죄행위와 결과의 발생간의 인과관계, 범죄행위의 고의와 과실여부를 밝혀야 하고,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소송조건과 처벌조건이 없음을 명백히 하여 일련의 형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방화범죄에 있어서는 다른 일반 범죄사건과 비교하여, 특히 방화범의 범죄행위에 대한 인과관계와 고의·과실여부를 증명하는데 있어서 숙련된 고도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

다. 검찰의 방화수사

현행 형사소송법상 우리나라의 검사는 방화범죄에 있어서도 수사권(제195조), 수사지휘권(제196조 제1항), 수사종결권(제196조 제4항), 기소권(제246조), 형벌 집행권(제460조)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검사 스스로도 방화범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화범죄는 경찰이 수사하여 검찰에 사건일체를 송치하게 된다. 경찰의 수사과정에 있어서 검사는 필요에 의해서 또는 경찰이 압수·수색·검증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각종 영장을 신청할 때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도 직접 피의자를 신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공소제기를 위한 보강수사를 진행한다. 방화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신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다.

제3절 우리나라 화재조사 및 방화수사체계의 문제점

1. 화재조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오늘날과 같이 인구와 건축물이 밀집되어 생활하고 있는 현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화재는 개인의 주거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고스란히 태워 없애는 한편,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작업은 화재에 취약한 제조물을 수거·폐기, 유사화재의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 또는 흉악한 방화범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유사한 화재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의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화재조사활동이 이와 같이 사회적 파장이 있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화재조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편이다. 물론 최근 소방과 경찰을 중심으로 화재조사의 사회적 인식도 제고와 화재조사의 전문화를 위해 상당부분 노력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화재조사요원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나 처우는 중요성에 비해 많이 부족한 편이다.

2. 민간부문의 화재조사 취약

화재의 피해자는 의도하지 않은 화재로 인하여 모든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화재의 원인을 밝혀 그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피해 변상을 받아 재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화재의 피해자는 스스로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화재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감정을 하여 추후 소송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소방이나 경찰기관을 막론하고 피해자의 화재조사를 용인하고 있지 않으며 화재조사는 공공기관에서나 하는 공적인 업무로 치부하고 있는 편이다. 화재현장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설 화재조사관 또는 업체에서 화재조사를 대행할 필요가 있으나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업체의 관련부서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법적 또는 제도적으

로 사설 화재조사업체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사설 화재조사관을 양성할 민간교육기관이나 자격제도가 없다.⁷⁷⁾

3. 화재조사기관간 협조체계 부족

화재조사와 관련한 몇몇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화재조사기관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기관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해 소방기관에 화재조사의 주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박창순, 2003; 김형두, 2007; 고기봉·이시영, 2011). 화재조사는 일반 과학수사와 달리 물리, 화학, 전기, 가스, 화재역학, 행동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조사경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 화재조사권을 집중화시킴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오판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화재조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기관 소속의 화재조사요원들이 다른 기관의 화재조사요원을 배제하거나 정보의 공유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조사행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기화재 진압당시 알게 된 중요한 정보를 경찰에 통보하지 않는 소방관의 행위나 화재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쳐놓고 소방의 조사요원이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경찰관들의 행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정확한 화재조사를 위해서는 소방의 화재진압 상황과 초기 화재조사에 관한 정보, 경찰의 방화범에 관한 범죄기록, 그리고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정보 등을 상호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4. 화재조사요원의 전문성 부족

최근 화재조사를 담당하는 소방과 경찰기관의 화재조사 능력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최초목격자 또는 피해자 등의 관계자 진술에 의거 추정하거나 화재조사 담당자의 주관적인 조사방법에 의해 원인을 추정하는 있는 실정이어서 화

77) 2010년 12월 13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가 개정되어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화재감식 평가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자격시험이 2013년 하반기부터 도입되었다.

재조사에 관한 전문성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화재조사의 전문성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화재조사 전문인력의 확보와 이들의 인사배치, 주기적인 화재조사 전문 교육의 실시, 화재조사능력에 대한 자격검정 제도 등이 필요할 것이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은 소방관서에서는 소속 소방관 중에서 소방교육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12주 이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속기관 내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건축·가스·전기·위험물 등 전문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소방관으로서 화재조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소방관서에 근무하고 있는 화재조사관 중에는 화재조사전문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소방공무원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화재조사팀의 근무여건이 소방관들에게는 인기없는 자리로 인식되어 화재조사전문교육 이수후에도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을 기피하거나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통과한 후에도 화재조사 업무를 기피하고 있다.

경찰의 경우에도 소방의 경우와 유사하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경찰수사연구원의 화재감식전문과정을 통해 화재조사관을 양성하고 있지만, 화재조사 근무에 대한 보직 자격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화재감식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찰관이 과학수사부서를 기피하고 일반부서에 근무하거나 화재감식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찰관이 과학수사계에 근무하는 예가 많다.

일단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한 경험과 노하우는 다른 화재조사요원과 공유하여야 하고, 화재조사요원 스스로도 화재조사에 대한 새로운 기술이나 기법을 주기적으로 습득하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현실은 이러한 정보공유나 보수교육의 기회가 매우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화재조사 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정 제도가 부족하다. 소방기관이나 경찰기관에서는 자체 교육체계와 연동하여 화재조사관 자격검정 시험을 통해 화재조사 능력을 선별하고 있지만, 화재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폐쇄형 자격제도이며, 각 소속기관 내에서의 검정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5. 화재조사관련 연구 및 감정기능 취약

우리나라에서 화재조사 관련 공공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본원과 분원을 포함해서 14명의 연구관이 주로 방·실화와 관련이 있는 증거물의 감정과 현장조사를 담당하고, 화재조사와 관련한 연구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는 방·실화와 관련되지 않은 화재가 상당수이며,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감정요청이 있을 경우에 주로 감정업무를 하기 때문에 수많은 화재사건을 담당하기에는 전문연구인력이 부족하다.

소방에서는 중앙소방학교 산하 소방과학연구실에 5명의 연구관으로 하여금 방염성능실험, 유류성분실험, 화재재연실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시·도 소방본부산하 소방학교에도 소방과학연구센터를 두고 감정·연구 업무를 맡기고 있지만, 필요한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각 시·도 소방본부와 거점 소방서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조사분석실 역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고가의 장비들이 방치되고 있는 등 운영의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6. 화재통계의 부정확

화재조사의 결과는 유사화재의 예방과 화재방호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등 소방행정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화재관련 통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집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화재예방관련 공공기관, 민간기관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일반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방관서의 화재관련 데이터는 합리적이지 못한 화재조사 보고제도, 비현실적인 화재피해액 산정, 화재조사 관련 지식 공유시스템 미약 등 여러 가지 개선점이 지적되어 왔다(김형두, 2007).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과학적인 예측력과 설득력을 가진 국가화재분류체계를 도입하여 유관기관과 화재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⁷⁸⁾을 2007년부터 구축하고

78) <http://www.nfds.go.kr/>, 2012.11.26. 검색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소방관서의 화재통계시스템은 데이터의 부정확성, 미흡한 분석정도 등으로 인하여 유관기관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소방시설·장비 또는 건축 재료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많다.

제4절 주요국가의 방화범죄 수사체계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및 방화수사체계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기관간 협조체계가 구비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대표적인 화재조사 공공기관인 경찰과 소방의 화재조사에 대한 상호협조체제가 아쉬운 실정이다. 이에 선진국의 화재조사체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현행 선진국의 시스템을 통해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먼저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화재조사 시스템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본

가. 일본의 경찰과 소방조직

현재 일본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인 경찰청과 지방경찰인 동경도(東京都) 경시청 및 도부현(道府縣) 경찰본부로 이루어진 이중 체계이고, 경찰관리기관으로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 공안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국가경찰인 경찰청은 내각총리대신의 형식적 감독하에 국가공안위원회가 관리하고, 경찰청장관과 경찰청 소속하의 각 관구경찰국장은 도도부현경찰을 관할 사무에 관하여 지휘·감독한다. 자치체경찰인 도도부현경찰은 지사의 감독하에 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 있어 경시청과 도부현 경찰본부를 관리하고 경시청장과 도부현 경찰본부장은 경찰서를 지휘감독한다. 이와 같이 일본의 경찰은 경찰청 산하에 7개의 관구경찰국과 47개 도도부현 경찰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소방조직은 총무성 산하의 소방청을 중심으로 시정촌(市町村)의 기초자

치단체 중심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 점이 내각총리대신 산하의 경찰청을 중심으로 도도부현의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설치·운영된 일본 경찰조직과 다르다. 국가소방조직인 소방청은 중앙정부, 도도부현 그리고 시정촌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소방행정의 발전을 위한 각종 시험연구, 법규 및 기준연구 입안을 행하고 있다. 도도부현에는 소방방재과에서 시정촌간의 연락 및 협력업무, 지도 및 조언을 주된 사무로 하고 있다. 시정촌의 소방사무는 소방본부장이 총괄하며, 소방본부장 산하의 각 소방서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구급구조 등 소방활동을 제일선에서 행하고 있다. 한편 각자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필요에 따라 소집되어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비상근 소방단원으로 구성된 소방단(消防團)도 있다(이종열 등, 2003:367-370). 현재 일본의 소방조직은 소방청 산하에 807개 소방본부, 1,706개 소방서, 3,218개 출장소, 2,380개 소방단, 23,180개 소방분단으로 구성되어 있다.⁷⁹⁾

나. 일본의 화재조사

일본은 1948년 8월 1일 소방법이 시행되어 지방자치소방제도의 발족과 더불어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소방기관에서 화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본의 소방법에는 제7장에 소방기관의 화재 원인조사권과 관계자 질문권, 피해재산조사권, 자료제출명령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즉 일본 소방법 제31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화활동과 동시에 화재의 원인과 화재 또는 소화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소방의 화재조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 35조 제1항에는 ‘방화 또는 실화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그 화재의 원인 조사의 주된 책임 및 권한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방·실화 사건의 경우에도 소방기관이 화재조사의 주된 기관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적 기반을 가지고 일본의 화재조사 기술은 발달해 왔으며, 특히 일본 대도시 소방기관의 화재조사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고 한다. 동경 소방청의 경우 예방부에 조사과가 있고, 조사과에는 피해조사계(10명), 원인조사계(11명)와

79) <http://www.fdma.go.jp>, 2012.11.6.검색

자료계(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선 소방서에는 예방과 지도조사계가 있으며, 그 인원은 소방서마다 다르나 대략 8명에서 15명 정도이다. 이들은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출화원인, 연소확대 원인, 사상자 발생요인 등을 조사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화재원인을 조사하는 조사요원은 소방대학교 또는 도도부현 소방학교의 전문교육과정을 거쳐 배치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소방과학종합센터에 연수를 받기도 한다(이의평, 2002:107-127).

일본에서는 소방기관이 화재조사의 주된 기관이기는 하지만 범죄수사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일본의 경찰관서에서도 화재조사를 행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 산하의 과학경찰연구소 화재연구실에서 화재관련 연구개발, 감정·검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도도부현 경찰본부 과학수사연구소의 물리과에서 화재관련 감식을 행하고 있으며, 때로는 현장임장을 통해 원인규명을 하기도 한다.

다. 일본의 방화수사

비록 방·실화의 의심이 있는 사건에 있어서도 일본의 소방기관은 주된 화재조사권이 있지만, 범죄수사에 관해서는 권한이 없으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189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기관에 부여되어 있다. 일본의 경찰은 화재사건이 발생한 경우 독자적으로 화재조사를 하거나 소방기관의 화재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실화의 의심이 있는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조사하거나 화재현장을 검증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거나 체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경찰은 사건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공소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보조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뿐이다.

라. 화재조사에 있어서 소방과 경찰의 관계

일본에서는 소방기관이 경찰에서 분리 독립된 이후 경찰관서와 소방관서간의 경찰·소방공조규약과 같은 공동의 규칙을 제정하여 원칙적으로 경찰과 소방은 화재현장에서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화재현장의 파괴나 변경을 필요로 하는 화재원인조사 및 범죄수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경찰, 소방이 상호 입회하

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이의평, 2002:129).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화재현장에서 공동으로 활동하는 소방과 경찰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방의 법적인 우선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로 판명되는 사건은 관한 경찰서에 통보함과 동시에 증거를 보전하여야 하고 소방과 경찰은 방화 및 실화의 억제를 위해 상호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일본 소방법 § 35의 4 ②).

2. 미국

가. 미국의 경찰과 소방조직

미국의 경찰제도는 관할구역, 소속부서, 업무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연방정부에도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알코올·담배·총기·폭발물단속국(ATF) 등 다양한 법집행기관이 있고, 각 주정부별로도 주경찰국(state police)이나 고속도로 순찰대(highway patrol)의 형태로 법집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찰제도의 근간은 시(city), 군(county) 등에서 순찰과 신고출동, 범죄수사, 교통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경찰(local police)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현재 미국의 법집행 기관은 12,766개의 지방경찰과 3,067개의 보안관부서, 49개의 주 경찰기관, 1,481개의 특별경찰기관, 65개의 연방수사기관 등 총 18,000여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Walker & Katz, 2008:59-60).

미국은 소방사무에 관하여 연방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의 법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주마다 다양한 형태의 소방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city)·군(county) 중심의 분권화된 다양한 지방조직에서 소방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 전역의 시나 군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는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 30,665개의 소방관서가 설치·유지되고 있다. 이들은 다시 민·관의 관여정도에 따라 세분하면, 공설소방관서/소방국/카운티소방관서/소방구/방화구/의용소방대(협회) 등 6종으로 대별되며, 이들은 우리나라 일선 소방관서들처럼 지역주민을 위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과 구조·구급 등의 소방행정을 직접 행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소방기관은 연방위기관리청(FEMA) 산하에 설치된 연방소방청(USFA)이다. 연방소방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소방정책과 기능을 조정하고, 화재의 예방과

방화통제계획을 지도하며, 광범위한 소방자료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연방소방청은 연방위기관리청과 협조·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다(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1999:28-29).

나. 연방의 화재사건 수사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연방법 위반 범죄와 관련한 수사권이 연방법집행기관에 있지만 기본적인 화재조사는 주(州)정부의 소관이다. 따라서 연방기관은 주로 연방법죄에 해당하는 방화사건의 수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관이 알코올·담배·총기단속국(ATF: 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이다. 이외에도 미국연방수사국(FBI)이 테러와 관련된 방화사건을 수사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ATF의 방화사건수사는 초창기에는 1968년의 총기단속법(the Gun Control Act of 1968)과 1970년의 폭발물단속법(The Explosive Control Act of 1970)의 해석을 통해 이루어지다가 1982년 미 의회가 대방화법(the Anti-Arson Act)의 폭발물에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여 화재가 수반되는 연방법죄를 단속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동법은 주(州)간의 상행위에 사용되는 모든 재산의 파괴나 손해를 미치는 모든 화재를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⁸⁰⁾ 이러한 수사업무는 연방법죄 뿐만 아니라 지역 대형화재 수사 등에 있어서 지방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수사를 지원하며 주로 공인화재조사관(Certified Fire Investigators, CFIs)을 파견한다.⁸¹⁾ ATF는 애틀란타(Atlanta)등 25개 지역에 지부(Field Division)를 두고 있는데, ATF의 화재수사는 각 지부를 중심으로 방화를 포함한 무기, 폭발물 등 연방법죄와 관련한 모든 수사 권한을 부여받아 영장에 의하거나 영장없는 압수, 수색, 체포의 권한이 인정된다.⁸²⁾

80) <http://www.atf.gov/press/releases/2009/12/121109-historical-arson-business-of-atf.html>, 2012.11.7. 검색

81) <http://www.atf.gov/press/releases/2012/01/011112-kc-libery-hills-country-club-fire-investigation-concluded.html>, 2012.11.7. 검색

82) 18 U.S.C. §3051; <http://www.atf.gov/careers/special-agents/>, 2012.11.7. 검색

다. 지방의 화재사건 수사 : 뉴욕시

미국은 연방제로서 화재사건의 수사에 대한 조직과 운영체제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이 각 주정부의 환경과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화재수사관(fire marshal, fire inspector)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 경우 화재수사관(fire marshal)이 화재사건의 원인조사와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와 같이 소방기관에서 화재조사만 담당하고 방화범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기관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지역도 다수 있다(상희선, 2009). 미국에서 화재수사관(fire marshal)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뉴욕주를 중심으로 화재사건에 대한 조사와 수사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뉴욕소방청 화재수사부(BFI: Bureau of Fire Investigation)

가) 화재수사부의 역사

뉴욕소방청의 화재수사부의 기원은 1854년 뉴욕 헤럴드(New York Herald)의 기자였던 베이커(Alfred E. Baker)가 뉴욕소방국 초대 화재조사관(Metropolitan Fire Marshal)이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오랫동안 화재조사관들은 화재현장에서 화재의 원인조사만 하고 방화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뉴욕경찰에게 주어졌다. 1970년 3월 20일 뉴욕 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화재수사관들에게도 방화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부여되었고 오늘날에는 화재수사관이 소환장발부, 법정에서 증언 등의 수사의 권한을 부여받고 활동하고 있다.⁸³⁾

나) 화재수사부의 임무와 조직

현재의 뉴욕소방청 화재수사부(BFI)는 120명의 화재수사관(fire marshal)이 뉴욕시 전역의 화재원인 조사 및 방화사건 수사를 담당한다. 이들은 화재의 원인조사, 화재현장보존과 관계인 진술, 사진촬영 등 증거수집, 화재 패턴과 추세를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한다.⁸⁴⁾ 화재수사부는 부장과 부부장 아래 중앙수사대(Central

83) <http://www.nyc.gov/html/fdny/html/bfi/history.shtml>, 2012.11.7. 검색

Command), 북부수사대(City North Command), 남부수사대(City South Command)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건을 담당하며, 특별부서로서 시 전역 특별수사대, 지구대단위 특별수사대, 불꽃놀이 관리팀, 합동 방화TF팀, 기술지원팀 등이 있다.

다) 화재수사관의 권한

뉴욕시 헌장(NYC Charter) 488조에는 뉴욕시 소방청장에게 화재의 원인 및 방화수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 권한을 소방청 내 화재수사관이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다.⁸⁵⁾ 한편, 뉴욕주 형사소송법 제1.20조 34(i)는 뉴욕시 소방청 화재수사부 소속 화재수사관(Fire Marshal)을 범죄수사의 권한이 있는 경찰관(Police Officer)으로 규정하고 있다.⁸⁶⁾ 또한 같은 법 제2.10조는 정규 화재조사관은 총기 소지허가를 받는 경우 총기를 휴대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영장없는 압수, 수색, 체포, 무기류의 영치 등의 권한이 있는 치안관(Peace Officer)의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⁸⁷⁾ 이와 같이 뉴욕시 화재수사관은 뉴욕주 형사소송법, 뉴욕시 헌장 및 행정규칙(New York City Administration Code)에 따라 화재의 원인조사, 방화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경찰관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화재수사관은 화재현장에서 증거물을 수집하고, 분석하며, 감정결과서를 해석하며, 목격자와 용의자를 신문할 수 있고 용의자를 체포할 권한을 갖는다. 증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고 증인에게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취득할 수 있으며 감

84) <http://www.nyc.gov/html/fdny/html/bfi/mission.shtml>, 2012.11.7. 검색

85) § 488 Enforcement of fire laws.

The commissioner shall have the power and it shall be his duty to enforce all laws and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board of standards and appeals in respect to:

2.The investigation of the cause, circumstances and origin of fires and the suppression of arson(이하 생략).

86) NY State Criminal Procedure §1.20. 34. "Police officer." The following persons are police officers: (a) A sworn member of the division of state police(중간생략); (i) The chief and deputy fire marshals, the supervising fire marshals and the fire marshals of the bureau of fire investigation of the New York City fire department;

87) NY State Criminal Procedure §2.10. 30. Supervising fire inspectors, fire inspectors, the fire marshal and assistant fire marshals, all of whom are full-time employees of the county of Nassau fire marshal's office.

정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하며 수사보고서를 작성한다.⁸⁸⁾ 화재수사관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면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경찰과 마찬가지로 수사의 종결은 화재수사관이 하며, 기소사건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면 기소여부는 검사가 하게 된다. 물론,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와 화재수사관이 협력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들은 2011년에 발생한 뉴욕시 전체의 화재 25,830건 중 6,814건을 조사하여, 2,239건을 방화사건으로 인지하여 수사하였으며, 556명을 체포하였다.⁸⁹⁾

라) 화재수사관(Fire Marshal)의 자격요건⁹⁰⁾

뉴욕시 화재수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객관식 시험(Multiple-Choice Test)을 치러야 한다. 뉴욕소방청의 1년 이상 근무한 전현직 소방관으로 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객관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객관식시험 내용은 범죄현장수사, 수사절차, 체포절차, 형사법적 책임 등에 대한 질문이 주요 내용이다.

객관식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12개월의 시보근무를 거쳐 화재수사관으로 임용(Appointment)될 수 있는데 임용당시 전현직 소방관으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소방관으로 4년 이상 근무하고 뉴욕시 경찰관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어야 한다. 또한 화재수사관으로 임용되기 전 건강검진과 정신건강테스트, 약물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외에도 화재수사관은 뉴욕 주 형사소송법상 경찰관이므로 무기휴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경찰관의 요건 상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임용되기 전 뉴욕경찰청 경찰학교와 FBI아카데미에서 13주간 범죄수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뉴욕경찰청 화재폭발물계(AES: Arson and Explosion Squads)

1970년 뉴욕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화재수사관들에게 법집행을 할 수 있는 경찰관의 자격을 부여받기 전까지 뉴욕에서도 방화범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의 독

88) <http://www.nyc.gov/html/dcas/downloads/pdf/noes/pfiremarshal.pdf>, 2012.11.7. 검색

89) http://www.nyc.gov/html/fdny/pdf/publications/bfi_annual_rep/2011/011_nnual_final.pdf, 2012.11.7. 검색

90) <http://www.nyc.gov/html/dcas/downloads/pdf/noes/200807525000.pdf>, 2012.11.7. 검색

접적 권한이었다. 뉴욕시의 방화범죄도 살인, 강도 등 일반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들이 담당하다가 1960년대 말 급진 좌익조직의 연쇄폭발사건을 계기로 설치되어 현재까지 계장 1명 등 총10명이 2개조로 나누어 뉴욕시 전체의 방화와 폭발물 사건을 취급하고 있다. 일반 방화사건은 주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 연쇄방화나 연속방화 등 복잡하거나 일정한 패턴이 있어 전문적인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라. 화재사건 연구·감정기관 : 국립화재연구원

(Fire Research Laboratory, FRL)

ATF 산하 국립화재연구원은 미국 메릴랜드(Maryland)주 벨츠빌(Beltsville)에 있는 ATF소속의 화재연구 및 감정기관으로서 2003년에 설립되었다.⁹¹⁾ 국립화재연구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화재연구기관으로서 화재감식 및 공학테스트, 화재속도 등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다. 주 기능은 화재현장을 재연하여 화재수사이론을 뒷받침하며 전국적 화재수사 및 화재와 관련된 범죄를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화재수사현장에 참여하여 화재의 성장속도, 점화, 전기적 화재원인 등을 분석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사기관에 제공한다.

마. 화재관련 통계관리

국가화재사건보고시스템(NFIRS: the National Fire Incident Reporting System)은 FEMA의 부서인 국가화재데이터센터(the National Fire Data Center of the United States, USFA⁹²⁾)가 운영하는 것으로, 1974년 연방화재예방 및 진압법(the Federal Fire Prevention and Control Act)에서 연방소방청(USFA)으로 하여금 미국의 화재정도, 추세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통일된 자료보고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여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게 되었다.

NFIRS는 지방정부로부터 화재에 관한 데이터를 통일된 형식에 맞추어 보고하

91) <http://www.atf.gov/publications/factsheets/factsheet-national-laboratory-center.html>, 2012.11.7. 검색

92) <http://www.usfa.fema.gov/statistics/estimates/index.shtm>, 2012.11.7. 검색

도록 하고 이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NFIRS의 보고양식은 전국화재보험협회(NFPA)에서 제시한 통일된 기준에 따라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다. 현재 2012버전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양식에 따라 지방소방서는 문서 또는 컴퓨터 등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료를 입력하고 이후 피드백된 정보가 보고하는 부처에 전달된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연방소방청은 화재의 원인과 추세 등을 분석하게 된다.⁹³⁾ 일선 소방서에서는 1월, 4월, 7월, 10월 등 최소 분기 1회 보고를 하여야 하며 연방소방청은 7월 1일 이후 자료를 취합하여 연례보고서를 발간한다.

3. 영국

가. 영국의 경찰과 소방조직

영국에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43개, 스코틀랜드에 8개, 북 아일랜드에 1개 등 전국에 걸쳐 총 52개의 지방경찰청(Constabulary)가 있다. 각 지방경찰청은 중앙의 내무부장관(Home Secretary), 지방경찰위원회(Local Police Authority), 지방경찰청장(Chief of Constabulary) 3자간의 권한과 책임의 분담으로 상호 견제하며 경찰조직을 관리·통제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분권화의 증대와 함께 범죄의 광역화·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조직범죄청(SOCA: Serious Organised Crime Agency)을 설치하는 등 전국적으로 효율적인 범죄통제망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과학수사연구소(the Forensic Science Service)가 4개 지역에 연구소를 두고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과학수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12년 3월 재정상의 손실을 이유로 폐지되고, 현재 경찰은 다양한 민간연구소에 외주를 주어 범죄현장에서 수집한 증거의 전문적인 감정을 하고 있다.⁹⁴⁾

영국의 소방조직은 근본적으로 자치소방체제로서 전국적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49개, 스코틀랜드에 8개, 북 아일랜드에 1개 등 총 58개의 지방소방본부(Fire

93) <http://www.nfirs.fema.gov/system/guidelines.shtm>, 2012.11.7. 검색

94) http://en.wikipedia.org/wiki/Forensic_Science_Service, 2012.9.24. 검색

and Rescue Service)를 가지고 있다. 각 지방에는 지방의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지방소방위원회(Fire and Rescue Authority)가 지방 소방본부의 예산 및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2004년 제정된 소방법(Fire and Rescue Act)에 따라 지역사회지방정부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소속 소방자문관(Chief Fire and Rescue Adviser)이 중앙정부를 대표하여 소방행정에 대한 지침과 기준을 정하고 지방정부에 소방에 관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과거 영국의 소방조직에서 긴급구조구난 서비스는 소방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분류되지 않았고, 주로 화재와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하여왔으나 2004년 제정된 소방법에 의해 화재관련 업무 이외에도 교통사고나 홍수, 테러공격시의 구조 등 지역사회의 긴급구조구난 서비스를 소방기관의 업무에 포함하였다.⁹⁵⁾

나. 영국의 화재사건 수사체제⁹⁶⁾

영국의 소방기관에서 화재조사는 화재조사관(Fire Investigation Officer)과 화재검사관(Fire Inspection Officer)이 수행하고 있다. 화재조사관은 증거를 수집하고 현장주변을 조사함으로써 화재의 원인을 찾는 자임에 비해, 화재검사관은 화재의 위험성을 발견하고 소방당국의 화재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검사하는 자이다. 화재조사관은 방화 등 범죄가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직접적인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통보하여 경찰 등에 의해 기소가 된 경우 법정에서 전문가증인(Expert Witness)으로서 증언을 하게 된다. 그러나 화재검사관은 소방당국의 화재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게 되면 직접 사건을 조사하여 경고하거나 기소할 권한을 가진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에서 화재조사는 화재진압을 담당한 현장지휘관에게 맡겨져 있었으나, 화재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1972년에 소방관서에 화재조사관으로 구성된 화재조사팀(Fire Investigation Officer)을

95) http://en.wikipedia.org/wiki/Fire_services_in_the_United_Kingdom#History, 2012.9.24. 검색

96) Arson Fire Investigation Joint Agency Agreement, http://www.merseyfire.gov.uk/aspx/pages/Arson/pdf/joint_agency_agreement.pdf, 2012.10.1.검색.; East of England Regional Fire Investigation Policy, http://www.essex-fire.gov.uk/images/izone/RMB-070110-Item_8-Fire_Investigation_Policy_paper-APP1.pdf, 2012.9.28. 검색.

설치하고 사상자가 발생하였거나 방화의 의심이 있는 화재로서 여러 가지 소방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런던소방본부(London Fire Brigade)에는 5개의 화재조사팀을 두고 2인 1조로 24시간 운영하며 각 팀은 분리된 단위조직으로 단독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화재조사팀은 화재사건 조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일반 소방관의 화재조사를 지원하며, 타부서 및 외부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필요시 법정에 출두하여 증거제시, 경찰주도의 과학수사팀(Forensic Management Team)의 핵심 일원이 되어 화재조사를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영국의 화재사건에서 화재조사는 3가지로 구분하여 전개된다. 먼저 레벨 1(Level 1)은 화재의 원인이 화재현장에 임장한 소방관에 의하여 밝혀지는 경우로 이 경우 화재조사관은 화재조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레벨 2(Level 2)는 화재현장 진압대의 소방인력으로 화재의 원인이 난해하여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화재조사관이 참여하여 화재조사를 실시하고 방화로 추정되면 경찰에 통지한다. 레벨 3(Level 3)은 화재의 원인이 난해하여 보다 과학적인 현장검증이 필요할 때 다기관 공동접근방식이 요구되는데 이 때 경찰의 주도로 과학수사팀(Forensic Management Team)이 구성되어 면밀한 현장감식을 실시하게 된다. 과학수사팀에는 경찰(과학수사전문가), 소방본부의 화재조사관 및 소방견팀, 민간 화재조사관, 보험회사 직원 및 손해사정인 등 기타 관련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

경찰은 사망자가 있는 화재, 부상이나 재산손실을 초래한 고의적 화재, 다른 중대한 범죄의 일부분으로 보이는 고의적 화재사건이 발생한 경우 화재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소방기관은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통지하여 화재사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이 임장할 때까지 소방본부는 현장을 보존하여 증거가 파괴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경찰이 현장에 임장한 후에는 현장보존의 책임이 경찰에 있다. 화재가 진압된 후에는 누구든지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화재현장에 접근할 수 있다. 1996년 경찰법(Police Act)에 의거 경찰은 화재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수사할 법률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현장의 경찰지휘관이 사건의 통제와 수사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기관 과학수사팀을 구성할 수도 있다. 경찰의 화재사건 수사시 소방기관의 임장책임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경찰에 최초 발견증거물과 파악된 사항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하고 사건수사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다. 화재조사관 교육훈련

지역사회지방정부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산하의 소방대학(Fire Service Colleng)에서 소방관 및 기타 유관 응급구조조직에 화재조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대학의 화재조사 교육과정은 국립경찰연수원(National Policing Improvement Agency)과 함께 개발되어 주로 소방기관의 화재조사관 및 경찰기관의 범죄현장 수사관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 과정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20시간의 선수이론과정과 5일간의 화재현장 분석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다.⁹⁷⁾ 소방대학의 화재조사 교육과정 이외에 화재조사관은 형사소송절차와 증거제출에 관한 교육도 받아야 하며, 적절한 화재조사 실무회의⁹⁸⁾ 등의 회원이 되어 세미나와 학회에 참여해야 한다.

4. 독일

가. 독일의 경찰과 소방조직

독일 경찰은 연방경찰과 주경찰로 구분된다. 연방경찰인 연방수사국(BKA: Bundeskriminalamt)은 내무부 소속으로 국제범죄, 조직범죄, 기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과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정부요인에 대한 경호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지방경찰 조직은 각 주 공히 주 내무부에 소속되어 주 내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는데, 이는 주수사경찰국(LKA: Landeskriminalamt)과 도(Regierungsbezirk) 단위의 지방경찰청(PP: Landespolizeipräsidien)이 있다. 주 수사경찰국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보수집과 주 내의 주요 범죄수사, 범죄수사기법의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지방경찰청은 우리나라의 지방경찰청과 유사하게 행정지원,

97) <http://www.fireservicecollege.ac.uk/news/spotlight-on-practical-fire-investigation-training-at-the-fsc.aspx>, 2012.9.27.검색.

98) Council for the Registration of Forensic Practitioners(CRF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rson Investigation(IAAI) 등이 있다.

경비, 교통, 수사, 방법순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수사국과 지방경찰청 산하 수사담당부서 간에는 수사업무의 경중에 따라 업무를 분담한다. 지방경찰청 산하의 수사업무는 다시 지방경찰청 직속 수사기관과 지역으로 구분된 수사지구대(Kriminal Polizeiinspektion)로 세분화된다(강기택 등, 2006:175-255).

경찰조직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는 소방업무도 각 주정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각 주정부별로 다양한 소방법과 소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연방재난관리청(BBK: Bundesamt für Bevölkerungsschutz und Katastrophenhilfe)이 설치되어 영업법 등 소방에 관련된 법령의 제정, 소방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대규모 재해재난시 인력과 장비의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소방조직은 주로 소방관과 자원소방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방관은 약 20만명, 자원소방대원은 약 100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로 인구 10만 이상의 시와 자치시는 관할 소방서(직업 소방대)가 설치되어 있고, 인구 10만 이하 도시에서는 민간조직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며, 주요 업무 처리는 직업소방관이 배치되어 지원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소방행정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며, 각 주정부는 내무부 소방국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한형서, 2010:162-163). 현재 베를린에는 소방청 산하에 3개의 소방서(Direktion), 35개의 소방파출소(Wache)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3,600여명의 소방관이 근무하고 있다. 베를린 소방청장(Landesbranddirektor)은 베를린시의 소방행정을 총괄하면서 직업 소방관뿐만 아니라 58개 자율소방대, 3,600여명의 자원소방대원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도 지고 있다. 주로 인구 10만 이하의 지역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자율소방대는 명예직 소방관과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행정기관이지만, 직업 소방대와는 달리 상시 대기하는 소방부대가 아니다. 직업 소방대(Berufsfeuerwehr)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자율소방대(Freiwillige Feuerwehr)가 직업소방대의 역할을 수행한다.

나. 화재발생시 소방과 경찰의 역할분담

독일에서 소방의 업무는 순수 위험예방업무로 간주되어 화재의 진압은 화재원인을 조사하거나 방·실화 사건을 다루는 범죄수사와는 구분된다. 따라서 화재조사와 방·실화범수사는 경찰의 업무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기능의 구분에 따라

화재가 발생하면, 두기관에 동시에 화재사건에 투입되어 소방관은 화재진압을 하고 경찰관은 화재의 원인 등 화재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화재사건이 발생한 경우 경찰은 응급조치, 교통통제, 소방활동 방해요인 제거, 화재조사, 개인재산의 보호, 피해품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방은 투입장소 확보, 인명 및 동물구조, 화재진압, 환경파괴행위의 제거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통상 화재가 발생하면 예방적인 업무와 사후진압적인 업무가 공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경찰은 경찰법에 근거한 공공의 위협예방, 범죄예방, 신원확인, 보호조치, 대인·대물수색 등의 규정을 활용하여 고유의 예방경찰활동을 수행하거나 소방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다. 화재사건의 수사(Brandurshchenermittlung)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경찰은 관할 검사와 화재감식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와 방화 등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경찰공무원은 범죄사건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독일 형사소송법 제163조의 일반 근거조항 등 형사소송법상의 각종 규정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수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수사경찰은 범죄현장을 보존하거나 화재장소에 대한 압수영장으로 화재현장의 변경을 막기 위해 경찰통제선으로 차단하거나 입구를 봉쇄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재현장에서 소방관의 전적인 도움없이 경찰의 화재수사는 큰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출동일시·장소, 화재 확산경로, 진압경위, 출입문의 개방여부, 화재로 인한 소실상태, 인명피해 등을 기재한 소방일지는 화재수사에 유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소방관의 화재진압과정에 대한 모든 활동과 경험은 경찰에 구체적으로 통보된다. 또한 소방관은 수사경찰에게 소방업무와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소방기술이나 기법을 사용하였는가 그리고 투입현장에서의 변형, 소방호스를 투입함으로써 생겨나는 여러 가지 손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투입현장에서의 촬영한 사진이나 소방활동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은 수사관들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⁹⁹⁾

소방관이 소방일지 작성시 화재조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충실히 기재한다면

경찰의 화재조사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Nordrhein - Westfalen) 주의 경우 2007년 4월 경찰과 소방의 전문가들이 사전에 범죄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추출된 화재사건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여 소방일지 양식의 초안을 완성하였다. 여기에는 소방관들이 추정되는 발화지점, 범죄관련 흔적이나 물건 등을 기록하는 한편 화재현장의 도면을 작성하도록 하여 두 기관이 화재현장에서 다른 임무를 수행하지만 화재수사에 관해서는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화재사건 증거의 전문감정

독일에서 화재수사관련 전문교육기관이나 공공 감정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화재관련 전문감정은 경찰내부의 과학수사센터와 민간 감정기관에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자는 누구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으며, TÜV, Dekra와 같은 일반 감정기관이 국가의 인증을 받아 화재사건까지 담당하고 있다.

5. 프랑스

가. 프랑스의 경찰과 소방조직

프랑스 경찰은 기본적으로 국립경찰, 군인경찰, 자치경찰로 이루어져 있다. 내무부 소속의 국립경찰(Police Nationale)은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1,606개 코뮌(Commune)을 관할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임명한 도지사(Préfet)가 각 도(Département)의 경찰을 지휘하고 있다. 인구 2만 명 미만의 소도시나 농촌지역은 신분이 군인이면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방법순찰과 범죄수사를 하는 군인경찰(Gendarmerie)이 군대식 편제를 통해 경찰활동을 하고 있다. 이밖에 자치단체별로 재정능력에 따라 자치체경찰(Police Municipale)이 설치되어 있다. 2004년 현

99) DER FEUERWEHRMANN, Aufbau der Polizei und polizeiliche Aufgaben beim Feuerwehreinsatz, <http://www.lz-bad-fredeburg.de/aufsatz/poli.pdf>(2003)

재 프랑스의 국립경찰은 14만 명, 군인경찰은 10만 명, 자치체경찰은 1만 3천 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 범죄수사는 국립경찰청 소속의 중앙수사국을 정점으로 전국적으로 수사조직이 편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범죄수사에 있어서 국립경찰과 군인경찰의 임무와 권한에는 큰 차이가 없다(강기택 등, 2006:24-171).

프랑스의 소방조직은 군인소방과 민간소방의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육군 소속의 파리 지역 소방관(sapeurs-pompiers)과 해군 소속의 마르세이유 지역 소방관(marins-pompiers)은 신분이 군인으로 국방부 소속이지만, 소방관으로서 화재의 진압과 예방활동에 있어서는 내무부의 감독하에 있다. 8,550명의 소방관이 근무하여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 소방조직은 파리 소방청(BSPP: Brigade des Sapeurs-Pompiers de Paris)은 수도권 파리와 인근 3개 도(département)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파리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파리 소방청은 각각 8개의 중대(company)와 응급구조단을 가지고 있는 3개의 연대(groupment)로 조직되어 있다. 파리와 마르세이유를 제외한 여타 지역은 내무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민간 소방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현재 프랑스의 소방관은 39,200명의 직업소방관, 197,800명의 자원소방관, 12,100명의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⁰⁰⁾

나. 일반적인 화재조사 및 방화수사체계

독일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화재사건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모두 일반 경찰관이 담당한다. 신분에 따라 국립경찰과 군인경찰이 화재의 원인을 밝히고, 방화사건으로 밝혀진 경우 일반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현행범수사, 촉탁(위임)수사, 예비수사의 구분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수사경찰관은 직급과 수사경력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로 구분되며, 사법경찰관(officier de police judiciaire)의 경우 영장없는 강제유치권(garde vue), 불심검문절차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4시간 동안의 강제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0) http://en.wikipedia.org/wiki/Fire_service_in_France, 2012.11.8. 검색

다. 일부 도(département)의 소방관에 의한 화재조사

일부 도에 있어서는 소방관들이 화재조사팀을 설치하여 화재사건에 대한 확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방관들이 화재조사를 진행하는 대표적인 도가 파리인근의 이블랭(Yvelins)도이다. 이블랭 도에서는 2008년 검사장, 도지사와 소방본부 행정위원장간에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프랑스에서는 획기적으로 소방본부에 화재조사팀을 설치하여, 소방의 화재조사관들이 화재조사를 하여 발화점과 화인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소방교육이나 건축물 안전기준에 반영하는 등 화재예방의 목적으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에 따라 소방관들이 화재조사(RCCI)의 권한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내무부에서는 2011년 3월 23일 훈령으로 소방관서(SIS)의 화재원인 조사에 관한 일반적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소방관의 화재조사는 화재예방과 방화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와 통계를 축적하고 일반 시민을 교육하기 위하여 실시하되, 보충적이고 선택적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소방의 화재조사관은 소정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자로서 고등소방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화재조사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들은 화재현장에서 관계인, 피해자 등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으며, 발화점을 찾기 위한 현장조사, 화재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으며, 화재로 인해 소훼된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방의 화재조사관은 단순화재가 아니라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경찰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화재현상의 상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재현장에서 증거물을 채취와 분석은 경찰의 권한이며, 소방 조사관은 범죄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6. 주요국의 방화수사체계 종합

이상으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화재조사 및 방화수사체계를 살펴보았다. 다양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경찰제도와 소방제도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그에 따라 화재조사와 방화수사 체계도 나라별로 차이가 많았다. 여기에는 소방관서내 경찰관의 자격을 가지고 화재수사를 전담하고 있

는 화재수사관(Fire Marshal)이 있는 미국과 같은 나라도 있었으며, 독일과 같이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조사를 전혀 할 수 없고 경찰이 화재조사와 방화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까지 매우 차이가 많았다. 소방기관을 중심으로 화재조사와 방화사건 수사의 권한이 많은 국가에서 적은 국가를 나열해 보면, 대체로 표와 같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방기관에서 방화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였다.

표 5-4-1 주요국의 방화수사체계

국가	화재조사 및 방화수사체계
미국	일반적으로 소방기관의 화재수사관이 화재조사 및 방화사건 수사 필요시에는 경찰도 화재조사 및 방화사건 수사 실시
일본	방화사건일 경우에도 화재조사의 주도권은 소방기관에서 담당 방·실화사건에 대한 범죄수사는 경찰이 전담
영국	제한된 범위내에서 소방기관의 화재조사권 행사 가능 화재조사와 방화사건 수사는 경찰이 주도적으로 행사
프랑스	제한된 범위내에서 일부 도의 경우 소방기관이 화재조사 담당 화재조사와 방화사건 수사는 국립경찰과 군인경찰이 담당
독일	소방기관에서는 화재조사권 조차도 행사하지 못함 경찰수사관이 화재조사 및 방·실화범 사건 수사 담당

제5절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및 방화수사체계 개선방안

1. 민간의 전문화재조사제도 도입

우리나라 화재조사와 방화사건 수사는 소방기관과 경찰기관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민간 화재조사관과 조직의 취약을 들 수 있다. 공정하고 정확한 화재조사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초로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모순점이 없는 결과를 가지고 화인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화재조사에 있어서 화재보험회사, 제조업자, 피해자 등 민간의 화재조사가 취약하다. 특히 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화재조사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 화재조사 전문교육 활성화

일부 대학의 경우 관련 연구소를 중심으로 비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화재보험협회 산하의 방재시험연구원에서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거의 유일하다. 방재시험연구원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화재조사가이드과정, 화재폭발감식과정, 미국화재폭발조사관자격과정을 운영하며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화재조사관의 조사능력 육성을 위해서는 보다 실험과 실습위주의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입문과정, 육성과정, 전문화과정 등 조사능력에 따른 단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나. 민간화재조사관 자격제도 법제화

현재 화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제도로는 보험업법에 근거를 둔 손해사정사 제도가 있다.¹⁰¹⁾ 손해사정사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보험사고의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 산출을 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손해사정사는 화인조사보다는 피해액 산정에 치중하고 있으며, 화인조사에 대한 기초지식 및 현장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해 화인조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도의 전문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방공무원들에게 화재조사관시험, 경찰공무원들에게 화재감식 전문수사관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화재조사관시험은 소방공무원에게만, 화재감식 전문수사관자격은 경찰공무원에게만 기회가 부여되는 폐쇄형 자격제도이다. 이러한 폐쇄형 자격제도는 조직의 구성원 내부직원들의 인사배치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 다른 기관 심지어 법정에서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제도는 외부에 개방하여 객관적인 요건을 갖춘 일반인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절차

101) 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에 따라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국가 기술자격의 하나로 화재감식평가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¹⁰²⁾

그러나 설령 자격을 가진 화재감식평가기사라 할지라도 변호사법¹⁰³⁾에 저촉되기 때문에 화재의 피해자 등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화재현장에 투입되어 화재원인과 손해액을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들이 화재의 피해확인 및 화재원인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조사관의 탐정활동을 허용하는 법률안이 제정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다. 사설 화재전문감정업의 도입

우리나라에서는 각 보험사의 보험범죄조사반이나 손해사정업체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화재조사 및 감정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문용수 등, 2008). 그러나 이들은 보험사고와 관련된 화재사건의 증거확보가 목적이며,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팀이 화재사건의 피해자나 관계자의 입장에서 화재사건의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고발의 형태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 재판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사설 화재 화재감정업이 도입이 된다면, 현재 경찰기관과 소방기관 중심의 편향된 화재조사업무가 상당부분 개선되어 화재 피해자의 권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국가 전체의 화재 조사능력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 공공·민간기관 화재조사 인력의 인적교류 활성화

민간 화재조사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되면, 미국의 국가화재조사관협회(NAFI)나 국제방화조사관협회(IAAI)와 같은 화재조사관의 교육과 자격검정, 의뢰

10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를 개정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3) 변호사법 제109조에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받고 수사기관 또는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해 감정 또는 대리사무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의 권익보호, 화재조사관련 정책 감시를 담당하는 화재조사관협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화재조사관협회는 화재조사관들의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검정과정을 통해 화재조사관들의 자격을 재검정하며 기관 중심의 화재조사제도를 전문능력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찰과 소방의 화재조사 협력체계 구축

소방에서는 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소방기관에서 화재조사와 방화범죄의 수사를 일원화하는 것이 중첩된 업무를 효율성 있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방관서에 화재수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춘화 등, 2001; 박창순, 2003; 김형두 2007; 고기영·이시영, 2011). 그러나 대부분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특별사법경찰과 달리 방화범죄는 강력범죄로서 압수·수색·검증과 체포·구금 등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들에 고도의 형사소송법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의 동의권 등 건축물의 인허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소방관서에서 화재수사를 담당하게 될 경우 화재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 소방관서의 화재조사관(Fire Marshal)이 방화사건의 수사까지 담당하고 있지만, 화재조사관들이 경찰교육기관을 통해 상당한 기간동안 수사절차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며 형사절차가 공판정 중심으로 운영되어 수사과정에서 신문조서 등 각종 조서작성이 없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 밖에 피의자 도주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과 장비의 설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연동, 피의자 지문날인, 불심검문과 총기사용 등 제반문제에 비추어 방화범죄자에 대한 수사는 범죄수사에 대한 경험과 지식 및 정보망을 갖춘 경찰에 일임하고, 소방기관에서는 화재조사관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화인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의 화재조사관이 소속 기관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만 화재조사를 하고 있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정확한 사실의 규명과 실제적인 진실의 발견을 위해 양 기관의 화재조사관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제반 장치들을 마련되어야 한다. 경찰과 소방의 화재조사관들

이 상호 협력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 화재조사 전문교육 공동실시

화재조사의 상호협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양 기관의 화재조사관들의 인적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현재 화재조사 전문교육은 소방의 경우 중앙소방학교에서 12주간의 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 1주간의 화재조사관능력향상과정, 2주간의 화재폭발조사자격취득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경찰의 경우 경찰수사연수원에서 10주간의 화재감식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화재조사교육과정 중 필요한 화재관련 실험과 실습교육을 위해 소방은 소방과학연구실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각각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다. 현재와 같이 소방 화재조사관은 중앙소방학교의 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 경찰 화재조사관은 경찰수사연수원의 화재감식전문과정을 통해 화재조사관이 양성되는 병렬적 양성구조로는 화재조사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과 소방이 화재조사전문교육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소방은 화재학, 화재피해액 산정 등, 경찰은 방화화재감식, 증거물 수집보존 등, 국립과학수사연수원은 화재감정실습을, 소방과학연구실은 화재실험 등을 각각 담당하게 하면 보다 국가의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양 기관 화재조사관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 화재조사에 관한 세부적 공동규칙 마련

우리나라의 화재조사에 있어서 경찰과 소방의 화재조사관들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상호협력하지 않은 이유는 양 기관 화재조사관들의 업무한계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양 기관의 화재조사관들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지만 사실상 같은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업무활동 중 한계가 설정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충돌의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화재조사에 관한 각 기관의 업무한계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1948년 9월 화재현장에서 공동으로 활동하는 소방과 경찰의 관계에 대하여 동경 경시청과 동경소방청 사이에 경찰·소방

공조규약을 체결하여 상호 업무가 경합하는 경우의 협력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의평, 2002: 129).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경찰업무와 소방업무의 상호 협력과 응원, 화재조사시 각 기관의 상호간의 업무한계를 명시한 공동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공동규칙에는 발생한 화재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화재조사의 처리 절차와 과정을 상세히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현장을 감식할 경우에는 소방과 경찰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감식하여야 하고, 현장의 파괴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각 상대기관의 화재조사관 입회하여 변경하도록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 화재사건의 경중에 따른 합동감식 T/F팀 구성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한 화재사건에 따라 소방과 경찰이외에도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보험회사 조사원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기관에서 화재조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기관이 서로 일시를 달리하여 화재감식을 하게 되면 화재현장의 훼손은 물론 증거물 수집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달리하는 조사관들 상호간의 정보교류에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화재사건을 경중에 따라 1급, 2급, 3급 등으로 구분하여 화인조사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3급화재의 경우에는 화재감식 일정을 조율하여 합동감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라. 화재 및 방화범죄에 관한 자료의 상호연동

우리나라의 소방기관과 경찰기관의 화재조사에 있어서 상호 조사한 자료의 공유가 문제시되고 있다.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을 하고 나서 목격한 발화 지점이나 목격자를 경찰에 알리지 않거나 심지어 발화지점에 있던 유류흔적을 이동시켜 경찰의 화재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관들은 화재현장에 폴리스 라인을 둘러치고 화재현장을 조사하려는 소방 화재조사관들의 출입을 막아 서로 충돌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규칙에 화재조사나 방화범죄 수사 이후 수집한 자료를 양 기관의 화재조사관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컴퓨터 온라인망을 공동으로 구성하여 수집한 자료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시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방기관에서는 화재의 원인을 방화 또는 실화로 규정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반드시 경찰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관련 문건의 일체를 경찰기관에 송부하여야 할 것이다.

마. 학회·세미나 등을 통한 최신 정보교류

현재 한국화재조사학회와 한국화재감식학회를 중심으로 화재조사관들이 세미나를 개최하여 경험한 화재조사사례를 발표하고, 특이한 사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 비교적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학회에 소방과 경찰의 화재조사관뿐만 아니라 민간의 화재조사관까지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세미나를 통해 최신 화재감식 기법을 습득하고, 화재조사관의 능력을 검정하면 우리나라 민간의 화재조사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이다.

3. 화재조사 조직의 광역화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조직은 소방의 경우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화재조사팀, 시·도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또는 현장대응과 화재조사팀, 시·군·구 소방서 방호구조과 화재조사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찰의 경우 방화사건의 수사는 일선경찰서 강력팀에서 담당하지만 별도로 전문 화재감식업무는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시·도 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계, 시·군·구 경찰서 형사과 과학수사팀이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찰과 소방은 중앙단위, 광역단위, 기초단위에 모두 화재조사 업무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선 소방서의 화재조사팀, 경찰서의 과학수사팀, 그리고 지방경찰청의 화재감식반에서 화재조사 및 감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화재조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단위의 화재조사보다는 광역단위의 화재조사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발생한 화재를 단순화재, 중요화재, 심각화재 등으로 구분하여 단순화재의 경우 소방서나 경찰서 단위에 일임하고, 중요화재 이상의 경우에는 광역단위에서 화재조사를 하여 많은 수의 화재사건을 화재조사관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조사관의 조사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방은 시·도 소방본부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경

찰은 지방경찰청의 화재감식반을 더욱 활성화시켜 보다 더 많은 화재사건의 현장 감식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경찰의 화재 및 방화사건 수사 시스템은 일선경찰서에서 담당할 것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에서 전문조사요원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수사체계의 광역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화재감정 및 연구기관의 확충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 많은 민간 감정기관이 화재소실물의 감정 등 과학수사와 관련한 감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의 감정기관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의 사례와 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관이 감정업무까지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 화재감정 및 연구를 담당하는 공공분야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공공분야 화재감정 전문가의 육성은 종국적으로는 민간분야 화재감정 기관의 출현과 발전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화재잔해물의 감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과학연구실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감정활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하고 있다. 위험물 판정, 모의 화재실험, 방염제품 또는 소방설비 성능실험을 주로 담당하는 소방과학연구실에서도 최근 화재현장 증거물 감정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양 기관 공히 제한된 연구 인력으로는 늘어나는 화재잔해물의 감정의뢰건수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연구실은 인력을 증원해 화재분석과로의 확대·개편되어야 하며, 각 분원에도 화재감정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 중앙소방학교 산하의 소방과학연구실은 방염제품의 성능실험, 소방시설과 설비의 성능실험, 위험물의 안전기준 마련, 화재현장 증거물의 감정 등을 담당함으로써 소방행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원을 증원하여 책임운영기관의 형태로 운영되는 소방과학연구소로의 설립이 요청된다.

제6절 소결

우리나라 방화수사체계는 공공 화재조사 중심으로 민간의 화재조사 기능이 취약하며, 공공조사기관 상호간의 협조체계가 부족하고, 화재조사 전문요원의 조사 능력과 과학적 연구가 부족하여 화재조사의 신뢰성이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화재조사체계는 공공 조사체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화재원인과 피해액 산정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 비중이 크고, 민간 화재조사체계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특히 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화재조사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민간의 조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연구기관의 화재조사 전문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민간 화재조사관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국가공인 화재조사관 자격제도는 국가기관에서 주도하는 폐쇄형 자격제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객관적인 개방형 자격제도가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 화재조사관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조사관의 탐정활동을 허용하는 법률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하에서 보험사고 등과 관련된 각종 화재사건의 법률적, 행정적 업무를 대행할 사설 화재전문감정업체가 도입된다면 화재 피해자의 권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화재조사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 화재조사기관의 상호 협조와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마련이 시급하다. 법률적 권능을 부여받아 화재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과 소방의 기관 이기주의에 따른 비협조 문제가 실무에서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소방기관의 화재조사업무의 협조를 위해서는 경찰 화재조사와 소방 화재조사의 업무한계와 상호협력, 업무가 경합하는 경우의 협력관계 등을 상세히 명시한 경찰·소방의 공조규약을 양해각서(MOU)형태로 체결하여 화재조사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화재사건의 경중에 따라 테스크포스팀(T/F팀)을 운영하여 화재현장에 동시에 합동으로 감식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화재조사의 상호협력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화재조사관들의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 화재조사요원전문화과정 등 화재조사와 관련된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경찰수사연수원, 중앙소방학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여 유대감을 넓혀 현장조사에 있어서 상호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화재조사 전문요원의 조사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론위주의 화재조사요원양성단계의 교육훈련을 사례와 실습중심의 교육훈련으로 전환하고, 학회, 세미나 등을 통해 경험한 다양한 화재조사 사례를 발표하고, 특이한 사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 최신 화재감식 기법을 습득할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일선 화재조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단위의 화재조사보다는 시·도 중심의 광역단위 화재조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순화재를 제외한 피해가 심각하거나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등 중요한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지방경찰청 단위의 화재감식반에서 화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화재조사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화재관련 감정 및 연구기관을 확충하고 최신 기자재, 온라인망 등을 통한 과학적 화재조사기법의 발전을 통해 화재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제한된 연구 인력으로 늘어나는 화재잔해물의 감정의뢰건수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연구실은 인원을 증원해 화재분석과로 확대·개편되어야 하며, 각 분원에도 화재감정 인력을 증원하여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중앙소방학교 산하의 소방과학연구실은 방염제품 성능실험, 소방시설과 설비의 성능실험 등과 함께 화재현장의 증거물 감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의 형태로 운영되는 소방과학연구소로의 설립이 요망된다. 한편, 화재조사결과 수집된 자료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전국의 경찰기관과 소방기관이 온라인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화재조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양 기관의 화재조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6장

요약 및 결론

박형민 · 최수형 · 김재운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1. 연쇄성 방화범의 일반적 특성

기록조사를 통해 나타난 연쇄성 방화범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쇄성 방화범은 남성이 절대 다수이고 30대 이하의 비율이 약 60%이상이며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무학에서부터 중졸 이하의 비율이 40%이상을 차지하여 교육 수준이 낮은 편이다. 그리고 연쇄성 방화범은 범행 당시 신체장애와 정신 질환 및 정신장애가 없는 정상인으로 결혼은 하지 않았고 일정한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며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연쇄성 방화범의 어릴 적 경험을 살펴본 결과, 친부모에 의해 양육된 비율이 50%이상이라는 하였지만 가족 간 관계에 있어서는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학대 경험과 가출 경험이 있는 비율이 약 10% 정도였다. 그리고 연쇄성 방화범의 범죄경력을 살펴보면 과거 이종 전과를 가진 경우가 전체의 약 60%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종 전과 4범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연쇄성 방화범 가운데 방화와 같은 동종 전과를 가진 비율은 약 13%에 불과했다.

연쇄성 방화범의 이러한 특징은 면접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났는데, 면접 대상이 된 연쇄 방화 범죄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범행 당시 실직상태이거나 일거리가 없어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있었고,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 노무직이나 저임금 비숙련 노동에 종사하고 있어서 어려운 생활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미혼이거나 이혼한 상태였으며, 사회 관계에 있어서도 평소 교류하던 친구가 거의 없거나 표면적인 사회관계만을 유지하고 있어서 사회적 지지체계가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주로 ‘술을 마시는 것’이었으며,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혼자 하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다. 범죄자들은 어린 시절에 불우한 경험을 가진 경우가 많았는데, 조손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방임된 환경에서 성장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하였거나, 가출등의 경험으로 인해 가족 내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례들도 있었다. 또한 많은 범죄자들이 학교를 중퇴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못하는 등의 학업 중단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많은 이유는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들 중에는 학창시절에 폭력피해경험 또는 폭력가해경험이 있는 범죄자들도 다수 있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성격 특성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소심한 성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다혈질적인 성격도 내성적인 측면과 결합하여 분노는 표출하지만 자신의 감정은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연쇄 방화 범죄자들 중에는 술을 마실 때도 혼자 마시는 음주습관이 다수 발견되며, 간혹 술을 먹으면 폭력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사례들도 있었다.

2. 연쇄성 방화사건의 특징

기록조사를 통해 발견된 연쇄성 방화 사건의 범행관련 내용에서 나타난 특징은, 연쇄성 방화사건은 사전에 범행에 대한 계획 없이 술을 먹고 단독으로 새벽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서 불을 지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범행 대상은 실내인 경우(50.6%)가 실외인 경우(49.4%)보다 약간 많았으며 실외에서 주로 범행 대상이 되는 경우는 쓰레기통이나 버려진 물건이나 자

동차, 거리의 현수막이나 플랜카드 등이었고 실내에서는 주거지와 상가 및 가게, 화장실과 같은 공공시설 등이었다. 그리고 사건 발생장소는 피의자의 주거지로부터 2km이내인 경우가 약 70%였고 범행 장소들 간 거리 역시 2km이내가 약 90%를 차지하여 평소 친밀성이 있는 장소로 범행 당시 걸어서 이동하였고 범행 후에는 방화 도구를 가지고 바로 현장을 빠져나오는 경우가 약 70%를 차지하였다. 한편, 범행의 동기로는 개인적 원함과 자신의 처지 비관, 사회적 열등감 등의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고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로 인한 방화도 15.6%를 차지하였다. 특히, 연쇄성 방화사건과 비연쇄성 방화사건 간의 차이가 사건 발생 시간과 범행 대상이 실내인지 실외인지의 여부, 범행 장소의 친밀성, 범행 장소까지의 이동수단, 가해자 주거지로부터 방화 장소까지의 거리, 범행 시 음주여부, 범행 후 행동, 반성 및 후회 정도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즉, 연쇄성 방화사건에서는 비연쇄성 방화사건에 비해 새벽에 발생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범행 당시 술을 먹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고 범행 장소가 피의자의 주거지로부터 더 가깝고 친밀한 장소로 범행 대상이 실외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범행 당시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범행 후에는 현장에서 바로 벗어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비연쇄성 방화범에 비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

면접조사에서는 연쇄성 방화사건이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는데, 연쇄성 방화 사건들은 대부분 밤에서 새벽 사이의 시간에 집 근처 또는 자주 지나다녀 익숙한 곳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하였다. 이때 많은 범죄들은 거주지 혹은 술집에서 출발하여 범행 장소까지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동시간은 도보로 약 5분 정도가 가장 많았다. 이것은 방화범죄자들이 불을 지르는 장소가 범죄자들의 생활반경 안에서 선택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방화 동기를 살펴보면 분노나 화가 동기가 되었던 방화와 충동적인 방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분노의 내용은 구체적 대상을 향한 분노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 등이 있었다. 구체적 대상을 향한 분노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금전적 피해나 정서적 모욕감을 주었다는 생각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으며,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는 평소에 느끼고 있던 추상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충동적인 방화는 정신질환이나 자극을 추구하려는 욕망 등의 이유로 방화의 충동이 생겨 불을 지른

것이다. 그런데 분노와 충동이 서로 무관한 요소는 아닌데, 평소 자기 처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방화 충동을 증가시키는 모습도 발견되었던 것이다. 방화 범죄자들은 평소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이로인해 일상적인 긴장상태에서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은 다양한 경로로 방화와 연결되고 있었다. 방화범죄자들이 겪고 있던 스트레스는 빈곤, 실직 등의 경제적 곤란, 가정불화, 애정문제 등의 정서적 곤란, 기타 관계적인 문제 등이 발견되었다. 이들이 불을 질러야겠다고 결심한 시점은 촉발요인이 될 수 있는 갈등상황이 발생할 당시, 갈등 후 음주 상황, 일상적인 음주상황 등 다양하게 발견되며, 갈등이나 음주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방화 충동을 가지고 있는 사례들도 있었다. 방화 범죄자들의 방화 직전 행적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음주상태였으며, 범행 직후에는 불이 완전히 타는 것을 보고 나서 도피한 사례보다는 불이 붙는 도중에 집이나 다른 장소로 도피하는 사례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범죄자들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CCTV라 할수 있는데, 조사된 사례중 반 이상이 CCTV에 범행 내용이 찍힌 것이 체포에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방화범죄자들의 경우 CCTV 존재 여부를 살피거나, CCTV의 시야를 피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방화범죄자의 체포에 있어 CCTV에 의존하기 보다는 다양한 수사 기법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그 밖에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에 의해 체포된 사례들도 다수 있었다. 범죄자들 중에는 불을 지른다는 것에 재미 또는 만족을 느끼는 사례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느낀 사례들도 있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범죄자들이 느낀 두려움은 오히려 스릴을 제공해 주는 새로운 자극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방화 범죄자들 중 범행당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체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사례가 많았는데, 이것은 방화가 그리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행위 자체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이후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죄의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3. 연쇄성 방화유형별 특징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2회 이상의 방화가 발생한 경우를 ‘연쇄성 방화’라 규정하고 이를 다시 범행 사이의 심리적 냉각기가 없이 하루 동안 지속적으로 방화가 발생한 경우인 ‘연속방화’와 하루 이상의 심리적 냉각기를 두고 발생하는 방화인 ‘연쇄방화’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연쇄성 방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심리적 냉각기 여부에 따라 방화범과 방화범죄 관련 특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분석 과정은 향후 연쇄범죄 관련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쇄에 대한 표준화된 개념 제안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쇄성 방화유형별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쇄성 방화범의 개인적 특성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방화범의 범행 당시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쇄방화범의 경우는 70%이상을 차지한 반면 연속방화범의 경우는 절반 정도로 연쇄방화범의 연령이 연속방화범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특히, 연쇄방화범의 경우에서 나타난 10대와 20대의 높은 비율은 청소년과 젊은 청년들에 의한 연쇄방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심각성이 더 하다. 그리고 연쇄방화범 가운데 어릴 적 학대경험과 가출경험이 있는 경우가 연속방화범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과 사회 내 경험과 연쇄방화범의 관계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두 번째, 연쇄성 방화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난 특성이다. 연쇄방화사건은 연속방화사건에 비해 범인을 검거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어 연쇄방화가 발생하였을 때 겪는 우리 사회의 불안감과 위기가감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예상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쇄방화사건의 경우 최종 판결이 1심에서 내려지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연속방화사건에 비해 많았다.

세 번째, 연쇄성 방화사건에 대한 범행 내용에서 나타난 특성이다. 연속방화사건의 경우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연쇄방화사건에 비해 많았고 범행 후 행동에 있어서 연속방화의 경우 범행 후 도주한 비율이 연쇄방화에 비해서는 낮았으며 범행에 대한 반성과 후회정도에 있어서 후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즉, 연속방화사건은 술을 먹고 술김에 새벽 내내 불을 지르며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며 후회

하고 있었다.

이처럼 연쇄성 방화유형에 따라 방화범의 개인적 특성이나 범행관련 내용 등에서 특징적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연쇄성 방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심리적 냉각기가 없는 연속방화와 하루 이상의 심리적 냉각기를 둔 연쇄방화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이에 앞으로 연쇄방화 연구에서 심리적 냉각기 측정 기준에 대한 보다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 방화수사체계 개선방안

우리나라 방화수사체계는 민간의 화재조사 기능이 취약하며, 공공조사기관 상호간의 협조체계가 부족하고, 화재조사 전문요원의 조사능력과 과학적 연구가 부족하여 화재조사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화재조사체계는 공공 조사체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화재원인과 피해액 산정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 비중이 크고, 민간 화재조사체계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민간의 조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연구기관의 화재조사 전문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민간 화재조사관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민간 화재조사관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조사관의 탐정활동을 허용하는 법률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하에서 보험사고 등과 관련된 각종 화재사건의 법률적, 행정적 업무를 대행할 사설 화재전문감정업체가 도입된다면 화재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화재조사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 화재조사기관의 상호 협조와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과 소방기관의 화재조사업무의 협조를 위해서는 경찰 화재조사와 소방 화재조사의 업무한계와 상호협력, 업무가 경합하는 경우의 협력관계 등을 상세히 명시한 경찰·소방의 공조규약을 양해각서(MOU)형태로 체결하여 화재조사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화재사건의 경중에 따라 테스크포스팀(T/F팀)을 운영하여 화재현장에 동시에 합동으로 감식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화재조사의 상호협력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화재조사관들의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교류를 활성화

화시킬 필요도 있다. 따라서 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 화재조사요원전문화과정 등 화재조사와 관련된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경찰수사연수원, 중앙소방학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여 유대감을 넓힌다면 현장조사에 있어서 상호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화재조사 전문요원의 조사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론위주의 화재조사요원양성단계의 교육훈련을 사례와 실습중심의 교육훈련으로 전환하고, 학회, 세미나 등을 통해 경험한 다양한 화재조사 사례를 발표하고, 특이한 사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 최신 화재감식 기법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선 화재조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단위의 화재조사보다는 시·도 중심의 광역단위 화재조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순화재를 제외한 피해가 심각하거나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등 중요한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지방경찰청 단위의 화재감식반에서 화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화재조사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화재관련 감정 및 연구기관을 확충하고 최신 기자재, 온라인망 등을 통한 과학적 화재조사기법의 발전을 통해 화재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제한된 연구 인력으로 늘어나는 화재잔해물의 감정의뢰건수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연구실은 인원을 증원해 화재분석과로 확대·개편되어야 하며, 각 분원에도 화재감정 인력을 증원하여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중앙소방학교 산하의 소방과학연구실은 방염제품 성능실험, 소방시설과 설비의 성능실험 등과 함께 화재현장의 증거물 감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의 형태로 운영되는 소방과학연구소로의 설립이 요망된다. 한편, 화재조사결과 수집된 자료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전국의 경찰기관과 소방기관이 온라인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화재조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양 기관의 화재조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절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기록의 조사와 면접조사 등을 수행하여, 우리나라 연쇄성 방화 및 방화 범죄자의 특성과 실태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연쇄방화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한계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연쇄방화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여전히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연구마다 개념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연구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양적으로 많지 않은 연쇄방화 연구결과들 만이라도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는 표준화된 개념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연쇄방화 관련 자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반화된 개념 사용이 가능하다면 자료의 축적만으로도 다양한 관점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연쇄방화 개념 정의와 함께 연쇄방화의 유형구분에 있어서 유형간 배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의 검증 노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연구자마다 연쇄방화 유형을 제안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형에 따른 2차 분석을 통해 유형의 유용성 등과 같이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쇄방화관련 연구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은 연쇄방화범과 연쇄방화 사건의 특징을 살펴보고는 있지만 일반방화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혹은 다른 연쇄범죄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등의 비교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국내연구에서 김경옥과 공은경(2011), 유완석과 황성현(2011)이 단일방화와 연쇄방화를 비교해 가면서 특징을 살펴보고 있지만 방화범이 저지른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다.

셋째, 연쇄방화관련 연구는 특정 사례를 가지고 범죄자와 범행관련 내용을 기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거나, 범죄심리학적 접근과 정신병리학적 접근의 논의가 많다. 이렇게 개인적 차원에서 범행현상을 설명하다보면 한 개인의 문제적 성향이 범죄의 원인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범죄문제가 사회문제가 아니라 범죄자만의 문제로 혹은 범죄피해자만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다. 특히, 방화에 대한 정신병리학적 접근을 살펴보면 방화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정신건강의 문제로 파악하여 방

화범에게 엄한 처벌을 내리기 보다는 카운슬링이나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Taylor, et al., 2002; Siegel, 2008:475에서 재인용). 즉, 방화의 원인을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란 측면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범행의 원인을 개인의 정신이상으로 치부하는 경향은 연쇄방화의 경우 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방화의 상당부분이 이들에 의해 저질러진다면 이들의 공통된 원인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단순히 이들의 정신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방화의 해결책으로 이들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이외의 방법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방화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정신장애로 인한 경우가 많다면 왜 그러한지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필요하고 정신장애를 가진 방화범의 사회적 경험에 대해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즉, 범죄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요인이나 사회구조적 요인을 강조하는 사회학적 수준의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연쇄방화의 특정사례에서 나타난 특정인의 범죄행위를 서술하거나 개인적 차원의 수준에서 개인적 성향 등의 문제에 주목하기 보다는 집단이나 조직, 지역이나 전체 사회적 맥락에서 사회환경적 요인을 찾아 이를 중심으로 한 범죄사회학적인 접근의 분석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연쇄방화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연쇄방화 관련 자료 확보의 문제일 것이다. 즉, 연쇄방화에 해당하는 연구대상 자체가 적기도 하지만 자료의 접근성에 있어서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의 연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연쇄방화의 경우는 연구자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연구내용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연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자료 제공에 있어서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사례를 가지고 범죄자와 범행관련 내용을 기술하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준의 논의들은 연쇄방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쇄방화에 대한 표준화된 개념 정리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연구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구 활동을 위한 자료 공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 축적과정에서부터 연구자의 참여가 가능토록 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수사기관의 범죄통계시스템에서는 범행 횟수에 대한 구체적인 입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식통계를 통해서도 우리 나라의 연쇄범죄 실태를 파악하기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범죄통계입력시 범죄자의 범행횟수에 및 기간에 대한 항목이 추가된다면, 연쇄범죄의 발생 건수, 검거 건수 등의 추세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며, 사례를 추출할 때에도 연쇄범죄사건 및 연쇄범죄자를 보다 쉽게 파악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쇄방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연쇄방화에 대한 기초 연구 자료의 축적이 이라 할 수 있다. 즉, 연쇄방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연쇄성 방화의 특성과 발생 원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 자료가 필요하다. 범죄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은 물론 사회적 차원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발생하는 연쇄성 방화를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쇄성 방화범의 개인적 경험과 가정과 사회 내 경험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연쇄성 방화 범죄를 양산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와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에 향후 연쇄방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 이를 토대로 연쇄방화에 대한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학대 및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어릴 적 학대 경험과 연쇄성 방화간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연쇄성 방화범의 경우 비연쇄성 방화범에 비해 어린 시절 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청소년기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즉, 성장하면서 겪는 학대나 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은 이후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대 및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며, 폭력의 가해자는 물론 폭력의 피해자들도 건강한 사회적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셋째, 연쇄성 방화사건의 특성에 맞는 예방활동 및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먼저 연쇄성 방화의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왕래

가 적은 새벽시간대의 치안의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주변의 무질서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쇄성 방화사건의 수사가 이루어 질 경우 방화사건의 발생장소를 고려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쇄성 방화사건들은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새벽시간대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간대에 발생한 방화사건은 사람들에게 발견될 가능성이 적으며, 잠을 자고 있는 시민들이 무방비상태에서 심각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특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벽시간대에 발생하는 방화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적 감시가 어려운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CCTV 등의 기계적 감시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쇄성 방화사건에서 실외의 범행대상의 대부분이 쓰레기통이나 버려진 물건으로 쓰레기 방치와 같은 무질서적인 주변 환경을 정리·정돈 하는 등의 연쇄방화에 대한 예방활동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연쇄성 방화사건의 경우 모든 사건 발생지역이 피의자의 주거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연쇄성 방화사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네 번째, 화재조사 및 방화수사 시 수사기관, 소방방재기관, 민간부분의 상호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및 방화수사 체계에서 나타나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부분의 화재 조사 제도가 취약하고 화재조사기관간의 정보 공유 등 협조체계가 부족하다. 이에 공공분야에서 독점하고 있는 화재 조사 전문교육을 민간기관에서 활성화시켜 객관적인 제 3의 기관에서 공정하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을 실시함과 동시에 사설 화재 전문 감정업의 제도화를 위해 민간조사관 제도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또한, 경찰과 소방이 공동으로 화재조사 전문교육을 주관하거나 방화 관련 학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인적·학술적 교류를 통해 화재사건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연쇄성 방화범 검거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에 있어서 연쇄성 방화범에 대한 프로파일링 기법을 이용한 경험적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연쇄성 방화범에 대한 학술적 논의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화재 조사에 관한 소방기관과 경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연쇄방화와 같은 주요 화재사건에 있어서는 소방과 경찰의 합동감식팀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등의 공동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연쇄방화에 대한 수사 및 협조 체계

를 위한 실무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쇄방화에 대한 처벌 기준 뿐 아니라 연쇄성 방화의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집중적 홍보와 같은 연쇄방화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불을 붙이는 행위 자체는 개인 행위에 불과하지만 행위로 인한 결과는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의 것이 아니다. 즉, 방화는 불을 붙인 개인은 물론 주변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며 방화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과 긴장은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방화는 범행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감을 극대화시키는데 충분하다. 즉,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쇄방화에 대한 집중적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여 연쇄성 방화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연쇄성 방화에 대한 엄격한 규제체계를 알려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연쇄방화에 대한 경험적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하여 연쇄방화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성과들이 축적되어 방화 예방 및 수사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기택 · 김병권 · 김택수 · 박노섭 · 박현호 · 이동희 · 이성용 · 이영돈 · 이운주 · 조강원 · 최원석 · 한중욱, 2006, 비교경찰론, 서울: 수사연구소.
- 고기봉 · 이시영, 2011, “우리나라 방화원인조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제11권 4호: 115-121.
- 경찰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범죄통계.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심리과 범죄분석실, 2003, “방화범죄의 동기에 따른 분류와 특징에 관하여-Ⅳ”, 수사연구 제21권 4호 통권 234호: 126-128.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심리과 범죄분석실, 2004a, “방화범죄 프로파일링에 관한 연구-Ⅶ”, 수사연구 제22권 10호 통권 252호: 108-111.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심리과 범죄분석실, 2004b, “방화범죄 프로파일링에 관한 연구-Ⅷ”, 수사연구 제22권 11호 통권 253호: 108-110.
-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1999, “재난관리의 일원화를 위한 법제적 검토: 소방청 신설을 중심으로”, 법제현안 제99권 9호(통권 제94호).
- 김경옥, 2009, 방화범죄자의 프로파일링을 위한 연구-범죄현장 행동 특성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경옥 · 공은경, 2011, “연쇄성 방화범과 비연쇄성 방화범의 범죄행동 비교 분석”, 한국심리학회지:법정, 제2권 3호: 237-261.
- 김상균, 2008, 범죄심리학, 청목출판사.
- 김수진, 2010, “방화범죄의 동기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7-230.
- 김형두, 2007, “현행 화재조사 및 수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21권 1호: 37-50.
- 문용수 · 공하성 · 윤명오, 2008, “화재조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조물

- 책임법과 관련하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22권 5호: 105-111.
- 박상진, 2010, “미국에 있어 커먼로상의 방화와 제정법상의 방화죄에 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2권 1호: 357-377.
- 박창순, 2003, “화재조사 및 수사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통권 5호: 37-60.
- 박철현, 2004,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이용한 연쇄방화범의 거주지 추정:동래연쇄방화사건의 사례”, 형사정책 제16권 2호:61-92
- 박형민, 2004, 방화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박형민, 2009, “연쇄살인 범죄자의 유형과 특징”, 한국사회학회 2009 전기사회학대회 발표집: 853-869
- 법원행정처, 2011, 2008년-2010년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
- 상희선, 2009, 화재조사론, 소방방재청.
- 성한기 · 박순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과 피의자의 방화행위에 대한 범죄 · 심리학적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신동운, 2005, 형사소송법, 서울: 법문사.
- 유완석·황성현, 2011, “방화범죄의 경비예방 전략에 관한 비교연구-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의 행위적 특성을 중심으로”, 경호경비연구 제29호: 139-162.
- 이수정, 2010, 최신범죄심리학, 북카페.
- 이의평(2002), “일본의 소방 · 경찰기관에 있어서 화재조사”, 한국법과학회지 제3권 2호: 102-130.
- 이종열 · 박광국 · 주효진 · 김옥일, 2003, “소방행정조직체계의 비교분석: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2호: 357-374.
- 이춘하 · 권오한 · 남상화, 2001, “화재조사 및 수사업무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15권 1호: 116-126.
- 이하섭, 2011, “방화범죄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제7권 제5호: 109-128.
- 임준태, 2009, “연쇄방화범 프로파일링과 이동특성”, 한국공안행정학회 37호: 369-402.
- 한형서, 2010, “독일 소방행정과 소방체계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권

- 1호: 151-175.
- 함근수, 표주연, 강덕지, 장설희, 문환식, 2009, “방화범죄 프로파일링을 위한 범죄 분석 자료의 고찰”, 한국법과학학회지, 제10권 제1호: 1-12.
- 홍성열, 2007, “범죄은폐, 이득동기, 극단주의 & 연쇄방화”, 수사연구 제 25권 11호 통권 289호: 59-66.
- 홍성열, 2009, 연쇄방화, 수사연구 제 27권 1호 통권 303호:, 79-85.
- 홍성열, 2010, 범죄자 프로파일링, 학지사.
- 최수형, 2007, 비행경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반응의 성별 차이,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최승복·최돈묵, 2009, “현장 사례를 통한 연쇄방화범의 특성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 초록집: 185-191.
- 최인섭·진수연, 1993, 방화범죄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Brantley, Alan C. & Robert H. Kosky Jr., 2005, "Serial Murder in the Netherlands A Look at Motivation, Behavior and Characteristics,"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74(1): 26-32
- Brogan, R., 2009, "Serial Crime: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in behavioral profiling", edited by Wayne petherick, second edition, chapter 14 serial arson.
- Canter, D. & Larkin. P, 1993, "the environmental range of serial rapist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3: 63-69.
- Davies, Kimberly A., 2007, Murder Book: Examining Homicide, Pearson Prentice Hall.
- DeHaan, John D. & Icov David J., 2011, Kirk's Fire Investigation, 7th Eds,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 Doley, R., 2003, "making sense of arson through classification",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10: 346-352.
- Douglas J. E., A. W. Burgess, A.G.Burgess,and R. K. Ressler, 1992, Crime Classification Manual, San Francisco:Jossey-Bass Inc.
- Douglas J. E., A. W. Burgess, A. G. Burgess, and R. K. Ressler, 2006,

- Crime Classification Manual,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 Edward, M. J. and GRACE, R. C., 2006, "Analysing the offence locations and residential base of serial arsonists in New Zealand", *Australian Psychologist* 41(3): 219-226.
- Egger, Steven A., 1990, *Serial Murder: An Elusive Phenomenon*, Praeger Publishers.
- Fritzon, K., 2001,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ance Travelled and Motivational Aspects of Firesetting Behaviour",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 45-60.
- Holmes, R. N. & Holmes, S. T., 1996, *Profiling violent crimes: an investigative tool*, Thousand Oaks, CA: Sage.
- Hakkanen, Helina, Puolakka, Pia and Santtila, Pekka, 2004, "Crime scene actions and offender characteristics in arsons",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9: 197-214.
- Kocsis, R. N. and Irwin, H. J., 1997, "An analysis of spatial patterns in serial rape, arson, and burglary: The utility of the circle theory of environmental range for psychological profiling,"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4(2): 195-206.
- Kocsis, R. N. and Cooksey, R. W., 2002, "Criminal Psychological Profiling of Serial Arson Crime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6(6): 631-656.
- Kocsis, R. N., 2004, "Psychological Profiling of Serial Arson Offenses an Assessment of Skills and Accurac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ur* 31(3): 341-361
- Lowenstein, L. F., 2003, "Recent Research into Arson (1992-2000): Incidence, Causes and Associated Features, Predictions, Comparative Studies and Prevention and Treatment", *Psychology and Law* 10(1): 192-198.
- Lundrigan, S. & Canter, D., 2001, "Spatial patterns of serial murders: An

- analysis of disposal site location choice", Behavioral science and the Law 19: 595-610.
- Rossmo, D. K., 2000, Geographic profiling. New York ; London : CRC Press.
- Schlesinger, Louis B., 2000, "Serial offenders: current thought, recent findings", Boca Raton : CRC Press.
- Siegel, Larry J., 2008, Criminology: Theories, Patterns, and Typologies, 이민식, 김상원, 박정선, 신동준, 윤옥경, 이성식, 황성현 역. Cengage Learning Korea: 475-477.
- Stewart, L. A., 1993, "Profile of female firesetters: Implications for treatment",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3: 248-256.
- Wachi, T., Watanabe, K., Yokota, K., Suzuki, M., Hoshino, M., and Fujita, G., 2007, "Offender and Crime Characteristics of Female Serial Arsonists in Japan,"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ing 4: 29-52.
- Walker, Samuel & Katz, Charles M., 2008, The Police in America: An Introduction, NY: McGraw Hill

웹사이트

<http://www.interfire.org>

Research on Serial Felony(I): Serial Arson

Bark, Hyung Min* · Choi, Soo Hyeong** · Kim, Jae Woon***

As violent crimes such as robbery, rape, and arson, which is the factor not only cause serious damage to victims economically, psychologically, and socially but also increase the fear of crime to the ordinary person, continuous, systematic research and the preparation of measure are needed. The measure against violent crimes might be achieved in several ways, but the best solution is to reduce the violent crime occurrence. In Particular, serial violent crimes have more significant criminal policy meaning rather than general violent crimes based on the continuity and intensity of crime.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Superintendent,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 Research method

1. Record investigation

The research data was collected through record investigation and interview survey. The record investigation was conducted by taking ten-year arson record through the cooperation of supreme prosecutor's office, predicting the serial events, and applying for reading the case record to the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On the other hand, as the analysis of nonserial arsonist is simultaneously completed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character of serial arsonist, nonserial arson incident was randomly selected from the other incident list excludes the serial incidents by considering occurrence year,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name of a crime which are regarded as serial case. As a result of record survey, 410 cases records were investigated exempt from the case records are discarded because retention period was passed and transferred to the other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2. Interview survey

The accommodation condition of forty-one prisoners who are regarded as serial arsonist are understood and the possibility of interview is checked with the cooperation of correctional facility. Twenty-two prisoners are agreed with the interview and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Individual interview was carried out at the proper places such as counseling office, reception room, and conference room based on the situation of correctional facility by carrying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Interview was implemented under the attendance of staffs and research assistant entered the interview contents into the computer. The interview

hour is from about one hour to two hours and ten minutes and average hour is approximately one hour and thirty minutes.

B. Research result

1. The general character of serial arsonist

The character of serial arsonist is that male get an absolute majority, the percentage of under 30 years is about over 60%, their education level is low because the percentage of the uneducated to people who are not graduated from middle school is over 40% according to the record survey. Furthermore, they are normal unmarried people who have no physical disability, mental disease, and mental disorder and work as a labor worker who live with their parents. Although the percentage biological parents raise is over 50%, over half of them is their family relationship is bad, and the percentage of child abuse and runaway is approximately 10% according to childhood experience. In addition, the percentage of person who has a different kind of criminal record is over 60% and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previously convicted more than four crimes is highest among them based on their criminal record. In contrast, the percent of people who have the same kind of criminal record like arson among them is just 13%. This character of serial arsonist is shown through interview survey, and they live in poor surroundings. As they are unemployed person, and work as a labor worker or low pay unskilled labor, they are suffered from economic difficulties when committing crimes. Most of they are unmarried, divorced, have no friends, and formal relationship with the other people, and their social supporting system is very weak. Their stress solutions are

drinking and independent activity even if they relieve stress through the other methods. They had deprived childhood and the cases that they are raised by grandparents or single parent and grown up in the neglected family environment were founded. They grew up under strict father and ran away for the lack of love. Moreover, they did not enter a upper school and dropped out of school due to family reason. They are also victim or attacker of violence throughout the school years. The remarkable character of personality is the lack of controlling their feeling and they are introverted or timid. Short-tempered people express their anger by combining introverted side, but they did not express their feeling. They drink alone and violent personality was expressed because of their drinking habits.

2. The Character of serial arson incident

The character of arson incident is that most of they committed crimes by themselves after drinking with the lighter that they carry without any plan at dawn according to record investigation. The target of crime is that indoor case (50.6%) is slightly more than outdoor case (49.4%). For example, outdoor target is wastebasket, thrown thing, vehicle, banner, placard and so on, and indoor is public facility such as dwelling, shopping mall, shop, and toilet. As the distance of occurrence place is within 2km from suspect's house is 70%, and the distance between the occurrence place is 90%, they walk to the familiar places. The case of leaving the place with carrying crime tools after committing crimes is 70%. Over half of crimes is their intent is to express anger such as personal resentment, pessimism of circumstance, social inferiority and the case from mental disease or mental disorder is 15.6%. Especially, the differences between serial and nonserial incidents are clearly shown in the occurrence time,

target is indoor or outdoor, the familiarity of occurrence place, means of transportation, the distance from criminal's house, drinking or not, and action, and level of regret after committing crime. That is to say, the percent of occurring at dawn is much more higher than, the case of not drinking is more than, the case that occurrence place is more close to suspect's house, familiar, outdoor is relatively more than, the case of walking to the place after is more than, and the percent of immediately leaving the place is higher than the nonserial incident in the case of serial incident. The case that serial arsonist regret about their crime is more than nonserial incident.

The detailed approach of serial incident is possible through interview survey and it was mostly occurred near the house or familiar place at time from night to dawn. They walked the places from the bar or the case that moving time is about five minutes is the highest. This means that they select the occurrence place within the living radius. The intent of arson is classified the one caused by anger and by impulse, and the anger is the one is toward specific object as well as their circumstance. The anger toward specific object is caused because the victim causes financial loss and emotional insult and their circumstance is caused by the accumulation of abstract stress. Impulsive arson is occurred by mental disease and desire for stimulation. Anger and impulse are not unrelated factor, but stress about their circumstance trigger the desire for arson. They are under various stress and maintain their life in a state of tension. This stress factors are connected to arson in many ways. The stress that they suffer from is result from economic difficult such as poverty, and unemployment, emotional difficult such as family trouble and love affair, and other difficulty. The deciding time of crime is various situation such as conflict situation that is motivation factor is broken out, drinking after conflicting, everyday drinking, and the case of having a desire for arson

regardless of confliction or drinking is shown. Most of them drank before committing crime, and the case of moving to the house or other place in the middle of catching fire is relatively more than the case of running away from the place after confirming burn down. CCTV is greatly contributes to the arrest of arsonist, and CCTV has the crucial role in over half of cases which are surveyed. However, as some criminals look carefully whether CCTV is installed or not and commit crime by avoiding the surveillance range of CCTV, the development of diverse investigation technique is necessary rather than dependence on CCTV. Also, there are many cases from the report of victim or witness. Some arsonists are interested in or satisfied with catching fire, but feel displeasure or afraid about it. The interesting thing is the fear they feel plays the role as stimulation provides thrill. The case that they are not concerned about the punishment and arrest because they think that arson is not serious crime, but they do not think about subsequent event as they are absorbed in action itself, and they have no sense of guilty.

3. The typical character of serial arson incident

This research define the case of occurring the arson more than second times at different places and classify the 'spree arson' which is continuously occurred for one day without any psychological cooling-down period, and 'serial arson' is broken out with over one day psychological cooling-down period. This is how the relevant character between the arsonist and arson incident is different whether psychological cooling-down period is or not in understanding the serial arson. This analysis process is used as basic data for the suggestion of standardized concept on the serial incident in discussing about serial crime in the future. The typical character of serial arson incident is as follows.

First, this is the result about the personal character of serial arsonist. The age group of arsonist is under thirty group is over 70% in the case of serial arson, and about 50% in spree arson. The age of serial arsonist is lower than spree arsonist. In particular, serial arson by teenager and young people is happened a lot and reach to a serious level according to high percentage of teenage and twenties age group. As serial arsonist had more experience of children abuse and runaway compared to spree arsonist, intensive debate about the relation between the experience in family and society and serial arson is necessary.

Second, the character is shown in the dealing process and result of serial arson. It takes longer time to arrest the suspect in the serial arson incident rather than spree arson, our anxiety and sense of crisis expected to be lasted for a long time. The percent of final decision in the first trial is over 50% and much more than spree arson.

Third, this is the character of serial arson incident. The percent of committing crime after drinking in the spree arson is more than the serial arson, the rate of escaping after committing crime in spree arson is lower and the percent of regretting is relatively higher compared to serial. In other words, most suspect of spree arson commit crime after drinking at dawn and regret about their action.

In conclusion, there is little difference in the person character or crime record based on the type of serial arson, but it is necessary to survey the incident on the classification of spree arson and serial arson whether psychological cooling-down period is or not in order to understand the serial arson. As a result, diverse debate on the measurement standard of psychological cooling-down period will be progressed in the research of serial arson.

4. The improvement plan of arson investigation system

The biggest problem is lack of civil fire investigation system and cooperation system like information sharing between fire investigation agencies. To develop the weak civil fire investigation area compared to the Western countries, fire investigation education which public area monopolize is activated in civil area, fairly conduct the fire investigator qualification examination at the third-party organization, the legislation of civil investigator that is currently at a standstill is urgent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ivil fire investigation business. Fire investigation education will be conducted, the personal exchange is activated through the academy and seminar, and regulation, which both organizations' responsibility sharing such as task force team construction and relevant information sharing is specified, is made and implement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operation system on the fire investigation between the police and fire authorities

Positive attitude of public education institution that fire investigation education is carried out and integration of fire investigation organization is desirable to develop the ability of fire investigator. Furthermore, The raise of Fire Research Laboratory in National Forensic Service to the department and Fire Scientific Laboratory belong to Fire Academy to Fire Scientific Research Center which is managed at the form of the civil organization is worth considering to deal with increasing fire investigation work like the investigation case of fire remnant.

2. 구체적 죄명

1) () 번째 사건

- ___ 1)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형법164조)
- ___ 2) 현존건조물등에의 방화(형법164조)
- ___ 3)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형법165조)
- ___ 4)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형법166조 1항)
- ___ 5) 일반물건에의 방화(형법 167조)
- ___ 6)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 () 번째 사건

- ___ 1)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형법164조)
- ___ 2) 현존건조물등에의 방화(형법164조)
- ___ 3)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형법165조)
- ___ 4)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형법166조 1항)
- ___ 5) 일반물건에의 방화(형법 167조)
- ___ 6) 기타(구체적으로: _____)

3) () 번째 사건

- ___ 1)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형법164조)
- ___ 2) 현존건조물등에의 방화(형법164조)
- ___ 3)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형법165조)
- ___ 4)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형법166조 1항)
- ___ 5) 일반물건에의 방화(형법 167조)
- ___ 6) 기타(구체적으로: _____)

3. 경합범죄 여부

1) () 번째 사건

- ___1) 경합범 아님
 ___2) 동종범죄경합(방화) 범죄명()
 ___3) 이종범죄경합(방화 외) 범죄명()
 ___4) 이종+동종범죄경합 범죄명()

2) () 번째 사건

- ___1) 경합범 아님
 ___2) 동종범죄경합(방화) 범죄명()
 ___3) 이종범죄경합(방화 외) 범죄명()
 ___4) 이종+동종범죄경합 범죄명()

3) () 번째 사건

- ___1) 경합범 아님
 ___2) 동종범죄경합(방화) 범죄명()
 ___3) 이종범죄경합(방화 외) 범죄명()
 ___4) 이종+동종범죄경합 범죄명()

4. 범인 검거 경위

- ___1) 자수 ___2) 현행범 ___3) 피해자신고 ___4) 타인신고
 ___5)고소/고발 ___6)경찰인지(탐문정보) ___7)불심검문
 ___8)기타(_____) ___9) 미상

5. 범행 후 검거까지의 기간 (2회 이상의 범행일 경우 첫 범행 기준)

- ___1)범행 후 24시간 이내 ___2) 3일 이내
 ___3) 10일 이내 ___4) 1개월 이내
 ___5) 3개월 이내 ___6) 6개월 이내
 ___7) 1년 이내 ___8) 1년 초과

6. 구속여부

__1) 불구속 __2) 구속 __3) 미상 __4) 해당사항없음

7. 검찰처리 결과

__1) 구공판 __2) 구약식 __3) 기소중지 __4) 기소유예
 __5) 혐의없음 __6) 공소권없음 __7) 타관송치 __8) 죄안됨
 __9) 기타

8. 최종 판결 심급 : __1) __심 __2) 해당사항없음

9. 구형량(구약식, 구공판의 경우만)

구분	사형	무기 징역	유기 징역	집행 유예	보호 관찰	수감 명령	사회 봉사	치료 감호	벌금	기타
√ 표시	__1)	__2)	__3)	__4)	__5)	__6)	__7)	__8)	__9)	__10)
형량										

10. 항소여부

1) 1심 __1) 항소하지않음 __2) 피고인 항소 __3) 검사 항소
 __4) 쌍방이 항소 __5) 미상 __6) 해당사항없음
 2) 2심 __1) 항소하지않음 __2) 피고인 항소 __3) 검사 항소
 __4) 쌍방이 항소 __5) 미상 __6) 해당사항없음

11. 항소결과

1) 1심에 대한 항소
 __1) 항소기각 __2) 2심 진행 __3) 해당사항없음
 2) 2심에 대한 항소
 __1) 항소기각 __2) 3심 진행 __3) 해당사항없음

12. 변호사 유무 및 종류

1) 1심

__1) 국선변호인 __2) 사선변호인 __3) 없음 __4) 해당사항없음

2) 2심

__1) 국선변호인 __2) 사선변호인 __3) 없음 __4) 해당사항없음

3) 3심

__1) 국선변호인 __2) 사선변호인 __3) 없음 __4) 해당사항없음

B. 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13. 성별 __1) 남 __2) 여

14. 국적 __1) 내국인 __2) 외국인(구체적으로 ; _____)

15. 범행 당시 연령 (첫 범행 당시 연령기준) 만 _____세

16. 범행당시 실거주지

__1) 서울특별시 __2) 부산광역시 __3) 대구광역시

__4) 인천광역시 __5) 광주광역시 __6) 대전광역시

__7) 울산광역시 __8) 경기도 __9) 경상북도

__10) 경상남도 __11) 전라북도 __12) 전라남도

__13) 충청북도 __14) 충청남도 __15) 강원도

__16) 제주도 __17) 미상

16-1. 범행당시 실거주지 상세 주소(직접 기입)

16-2. 범행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와의 일치 여부

- ___1) 일치 ___2) 불일치 ___3) 미상

16-3. 범행당시 범죄자의 주거형태

- ___1) 자가(부모집, 자녀집포함) ___2) 전세 ___3) 보증부월세
___4) 월세/사글세 ___5) 친척집, 친구집 ___6) 하숙, 자취
___7) 숙박업소 ___8) 주거부정
___9) 기타(_____) ___10)미상

※ 별지 직업분류표를 참고하여 기입하기 바람.

17. 범행당시 직업

- ___1) 관리자 ___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___3) 사무종사자
___4) 서비스종사자 ___5) 판매 종사자 ___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___7) 기능 관련 종사자 ___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___9) 단순 노무 종사자 ___10) 무직 ___11) 기타(_____)
___12) 미상 ___13) 학생

17-1. 범행당시 직업의 안정성

- ___1) 직업 없음 ___2) 일용직 ___3) 임시직 ___4) 정규직
___5) 미상

18. 교육정도

- ___1) 무학 ___2) 초졸 이하 ___3) 중졸 이하
___4) 고졸이하 ___5) 대졸이하 ___6) 대학원이상 ___7) 미상

19.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___1) 기초생활수급자 ___2) 아니다

19-1. 범행당시 월평균 수입(개인) : _____만원

19-2. 범행당시 월평균 수입(가구) : _____만원

19-3. 범행당시 채무 여부 및 금액

__1) 채무있음(금액 : _____만원) __2) 채무없음 __3) 미상

19-4. 범행당시 재산(개인) : 동산 _____만원, 부동산 _____만원

19-5. 범행당시 재산(가구) : 동산 _____만원, 부동산 _____만원

20. 범행당시 동거 여부

__1) 동거자 있음(총__명) __2) 동거자 없음 __3) 미상

20-1. 동거인의 유형 (중복허용)

__1) 부모 __2) 형제·자매 __3) 자녀 __4) 배우자

__5) 동료 및 친구 __6) 기타(_____)

20-2. 혼인상태

__1) 미혼 __2) 동거 __3) 기혼(초혼) __4) 재혼이상

__5) 별거 __6) 이혼 __7) 사별 __8) 기타(_____)

__9) 미상

21. 범행 당시 장애여부(중복허용)

__1) 정상 __2) 정신분열 __3) 우울증 __4) 신체장애

__5) (정신분열,우울증이외의)정신장애 __6) 행동장애

__7) 정신지체 __8) 알코올중독 __9) 기타 (_____)

__10) 미상

22. 범죄자의 만성적 질병경력(직접기입) _____

23. 성장시 부모관계

__1) 부모생존 및 동거 __2) 부모 이혼 __3) 부모 중 일방사망

__4) 미상 __5) 부모모두사망 __6) 기타(_____)

23-1. 어릴적 주 양육자

- ___ 1) 친부모 ___ 2) 편모 ___ 3) 편부 ___ 4) 계부
___ 5) 계모 ___ 6) 양부모(입양) ___ 7) 조부모 ___ 8) 형제자매
___ 9) 기타 친척 ___ 10) 시설 ___ 11) 기타(_____)
___ 12) 미상 ___ 13) 편모+계부 ___ 14) 편부+계모

23-2. 성장시 가족 간의 관계

- ___ 1) 원만한 편 ___ 2) 보통 ___ 3) 원만하지 않음 ___ 4) 미상
___ 5) 해당사항없음(고아등)

23-3. 성장시 학대경험

- ___ 1) 없음 ___ 2) 있음(학대자: _____) ___ 3) 미상

23-4. 성장시 가출경험

- ___ 1) 없음 ___ 2) 있음(최초가출연령: __세, 총가출횟수: __) ___ 3) 미상

23-5. 사회생활 적응

- ___ 1) 원만 ___ 2) 원만하지 않음 ___ 3) 미상
___ 4) 해당사항없음(학생 등..)

※ 본건 이전의 전과만을 계산하여 기록할 것

※ 처분결과가 협의 없음, 공소 기각인 경우에는 전과 수에서 제외할 것

24. 범죄경력

- 24-1. 총전과 _____ 건
24-2. 실행전과 _____ 건
24-3. 동종전과(방화) _____ 건
24-4. 이종전과 _____ 건
24-5. 총체포횟수 _____ 회
24-6. 총교도소수감횟수 _____ 회
24-7. 첫체포연령 _____ 세
24-8. 첫실행연령 _____ 세

24-9. 구체적인 범죄경력(향군법, 도교법, 교특법 제외)

구분	처분일자	죄명	처분결과
1			
2			
3			
4			
5			
6			
7			
8			
9			

C. 범죄내용 및 특성

25. 범행지역

1) () 번째 사건

- ___1) 서울특별시 ___2) 부산광역시 ___3) 대구광역시
 ___4) 인천광역시 ___5) 광주광역시 ___6) 대전광역시
 ___7) 울산광역시 ___8) 경기도 ___9) 경상북도
 ___10) 경상남도 ___11) 전라북도 ___12) 전라남도
 ___13) 충청북도 ___14) 충청남도 ___15) 강원도
 ___16) 제주도 ___17) 미상

1)-1. 범행지역 상세 주소(직접 기입)

2) ()번째 사건

- ___1) 서울특별시 ___2) 부산광역시 ___3) 대구광역시
___4) 인천광역시 ___5) 광주광역시 ___6) 대전광역시
___7) 울산광역시 ___8) 경기도 ___9) 경상북도
___10) 경상남도 ___11) 전라북도 ___12) 전라남도
___13) 충청북도 ___14) 충청남도 ___15) 강원도
___16) 제주도 ___17) 미상

2)-1. 범행지역 상세 주소(직접 기입)

3) ()번째 사건

- ___1) 서울특별시 ___2) 부산광역시 ___3) 대구광역시
___4) 인천광역시 ___5) 광주광역시 ___6) 대전광역시
___7) 울산광역시 ___8) 경기도 ___9) 경상북도
___10) 경상남도 ___11) 전라북도 ___12) 전라남도
___13) 충청북도 ___14) 충청남도 ___15) 강원도
___16) 제주도 ___17) 미상

3)-1. 범행지역 상세 주소(직접 기입)

26. 사건발생 일시(24시간기준으로 표시)

- 1) ()번째 사건 ___년 ___월 ___일 ___시 ___분
2) ()번째 사건 ___년 ___월 ___일 ___시 ___분
3) ()번째 사건 ___년 ___월 ___일 ___시 ___분

26-1. (2회 이상의 범행) 범행사이의 시간 간격

- 1) ()번째 사건 ~ ()번째 사건 ___일 ___시간 ___분
2) ()번째 사건 ~ ()번째 사건 ___일 ___시간 ___분
3) ()번째 사건 ~ ()번째 사건 ___일 ___시간 ___분

27. 범행 대상

1) () 번째 사건(중복응답)

구분	항목 체크
___ ① 실외	__① (노상의)쓰레기(통)/버려진 물건 __② (노상의)오토바이/자전거 __③ (노상의)자동차 __④ 야산 및 임야 __⑤ (건물 밖)담벼락 __⑥ 기타 실외 (_____)
___ ② 실내	__⑦ 주거지 __⑧ 상가 및 가게 __⑨ 병원, 학교, 도서관등의 공공시설 __⑩ 교회등 종교건물 __⑪ 시청, 동사무소등의 관공서 __⑫ 지하철등의 대중교통시설 __⑬ 창고 __⑭ 비닐하우스 __⑮ (주차장내)오토바이/자전거 __⑯ (주차장내)자동차 __⑰ (건물내) 버려진 물건 __⑱ 기타실내(_____)

2) () 번째 사건 (중복응답)

구분	항목 체크
___ ① 실외	__① (노상의)쓰레기(통)/버려진 물건 __② (노상의)오토바이/자전거 __③ (노상의)자동차 __④ 야산 및 임야 __⑤ (건물 밖)담벼락 __⑥ 기타 실외 (_____)
___ ② 실내	__⑦ 주거지 __⑧ 상가 및 가게 __⑨ 병원, 학교, 도서관등의 공공시설 __⑩ 교회등 종교건물 __⑪ 시청, 동사무소등의 관공서 __⑫ 지하철등의 대중교통시설 __⑬ 창고 __⑭ 비닐하우스 __⑮ (주차장내)오토바이/자전거 __⑯ (주차장내)자동차 __⑰ (건물내) 버려진 물건 __⑱ 기타실내(_____)

3) () 번째 사건 (중복응답)

구분	항목 체크
___ ① 실외	__① (노상의)쓰레기(통)/버려진 물건 __② (노상의)오토바이/자전거 __③ (노상의)자동차 __④ 야산 및 임야 __⑤ (건물 밖)담벼락 __⑥ 기타 실외 (_____)
___ ② 실내	__⑦ 주거지 __⑧ 상가 및 가게 __⑨ 병원, 학교, 도서관등의 공공시설 __⑩ 교회등 종교건물 __⑪ 시청, 동사무소등의 관공서 __⑫ 지하철등의 대중교통시설 __⑬ 창고 __⑭ 비닐하우스 __⑮ (주차장내)오토바이/자전거 __⑯ (주차장내)자동차 __⑰ (건물내) 버려진 물건 __⑱ 기타실내(_____)

28. 범행대상 특징

1) ()번째 사건

- ___1) 피해자관련 장소 ___2) 가해자관련 장소
- ___3) 피해자가해자관련장소 ___4) 제 3의 장소
- ___5) 기타 (_____) ___6) 미상

2) ()번째 사건

- ___1) 피해자관련 장소 ___2) 가해자관련 장소
- ___3) 피해자가해자관련장소 ___4) 제 3의 장소
- ___5) 기타 (_____) ___6) 미상

3) ()번째 사건

- ___1) 피해자관련 장소 ___2) 가해자관련 장소
- ___3) 피해자가해자관련장소 ___4) 제 3의 장소
- ___5) 기타 (_____) ___6) 미상

28-1. 범행 장소와의 친밀성여부 (가해자기준)

- 1) ()번째 사건 ___1) 상 ___2) 중 ___3) 하 ___4) 미상
- 2) ()번째 사건 ___1) 상 ___2) 중 ___3) 하 ___4) 미상
- 3) ()번째 사건 ___1) 상 ___2) 중 ___3) 하 ___4) 미상

29. 범행 장소까지의 이동수단

- 1) ()번째 사건 ___1)이동안함 ___2)도보 ___3) 본인차량
___4)기타(구체적으로: _____) ___5) 미상 ___6) 대중교통
- 2) ()번째 사건 ___1) 이동안함 ___2) 도보 ___3) 본인차량
___4)기타(구체적으로: _____) ___5) 미상 ___6) 대중교통
- 3) ()번째 사건 ___1) 이동안함 ___2) 도보 ___3) 본인차량
___4)기타(구체적으로: _____) ___5) 미상 ___6) 대중교통

30-1. 범행 장소와 가해자 주거지간 거리

- 1) ()번째 사건 __1) 2Km 이내 __2) 5Km 이내
 __3) 10Km 이내 __4) 10Km 이상 __5) 미상
- 2) ()번째 사건 __1) 2Km 이내 __2) 5Km 이내
 __3) 10Km 이내 __4) 10Km 이상 __5) 미상
- 3) ()번째 사건 __1) 2Km 이내 __2) 5Km 이내
 __3) 10Km 이내 __4) 10Km 이상 __5) 미상

30-2. 범행이 2회이상인 경우 범행 장소들 간의 거리

- 1) ()번째 범행장소 ~ ()번째 범행장소
 __1) 2Km 이내 __2) 5Km 이내
 __3) 10Km 이내 __4) 10Km 이상 __5) 미상
- 2) ()번째 범행장소 ~ ()번째 범행장소
 __1) 2Km 이내 __2) 5Km 이내
 __3) 10Km 이내 __4) 10Km 이상 __5) 미상
- 3) ()번째 범행장소 ~ ()번째 범행장소
 __1) 2Km 이내 __2) 5Km 이내
 __3) 10Km 이내 __4) 10Km 이상 __5) 미상

31. 범행의 계획여부

- 1) ()번째 사건 __1) 있다 __2) 없다 __3) 미상
- 2) ()번째 사건 __1) 있다 __2) 없다 __3) 미상
- 3) ()번째 사건 __1) 있다 __2) 없다 __3) 미상

32. 방화수법(방화도구가 2개인 경우 중복응답 허용)

- 1) ()번째 사건
 __1)현장에 있는 도구 사용__2)소지하고 있는 도구 사용 __3) 미상
- 2) ()번째 사건
 __1)현장에 있는 도구 사용__2)소지하고 있는 도구 사용 __3) 미상

3) ()번째 사건

- ___1)현장에 있는 도구 사용 ___2)소지하고 있는 도구 사용 ___3) 미상

33. 방화도구 (중복응답 허용)

1) ()번째 사건

- ___1)ライター
___2)종이류나 형겅
___3)촉진제(휘발유, 시너)
___4)점화장치(성냥, 양초, 담배, 타이머등 전자장치)
___5)기타(구체적으로:_____)
___6)미상

2) ()번째 사건

- ___1)ライター
___2)종이류나 형겅
___3)촉진제(휘발유, 시너)
___4)점화장치(성냥, 양초, 담배, 타이머등 전자장치)
___5)기타(구체적으로:_____)
___6)미상

3) ()번째 사건

- ___1)ライター
___2)종이류나 형겅
___3)촉진제(휘발유, 시너)
___4)점화장치(성냥, 양초, 담배, 타이머등 전자장치)
___5)기타(구체적으로:_____)
___6)미상

34. 방화 도구 처리 (방화도구가 2개인 경우 중복응답 허용)

1) ()번째 사건

1) 소장 2) 현장방치 3)현장주변투기 4)가져갔으나 은닉
5) 기타() 6) 미상 7)해당사항없음

2) ()번째 사건

1) 소장 2) 현장방치 3)현장주변투기 4)가져갔으나 은닉
5) 기타() 6) 미상 7)해당사항없음

3) ()번째 사건

1) 소장 2) 현장방치 3)현장주변투기 4)가져갔으나 은닉
5) 기타() 6) 미상 7)해당사항없음

35. 범행 시 음주 여부

1) ()번째 사건 1) 그렇다 2) 아니다 3) 미상2) ()번째 사건 1) 그렇다 2) 아니다 3) 미상3) ()번째 사건 1) 그렇다 2) 아니다 3) 미상

36. 범행 시 약물사용 여부

1) ()번째 사건 1) 그렇다 2) 아니다 3) 미상2) ()번째 사건 1) 그렇다 2) 아니다 3) 미상3) ()번째 사건 1) 그렇다 2) 아니다 3) 미상

37. 범행 후 행동

1) ()번째 사건

1) 현장체류 2) 도주 3) 소화 후 도주
4) 신고 후 도주 5) 도주 후 현장방문 6) 도주후 자수
7) 기타() 8) 미상 9)해당사항없음

2) ()번째 사건

1) 현장체류 2) 도주 3) 소화 후 도주
4) 신고 후 도주 5) 도주 후 현장방문 6) 도주후 자수

__7) 기타(_____) __8) 미상 __9) 해당사항없음

3) ()번째 사건

__1) 현장체류 __2) 도주 __3) 소화 후 도주
__4) 신고 후 도주 __5) 도주 후 현장방문 __6) 도주후 자수
__7) 기타(_____) __8) 미상 __9) 해당사항없음

38. 범행의 동기(중복 응답 허용)

1) ()번째 사건

__1) 경제적 이득 __2) 개인적 원한/ 보복/분노
__3) 자신의 처지 비관/사회적 열등감
__4) 사회적·정치적·종교적 불만 __5) 자기 과시
__6) 흥분, 스틸 __7)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__8) 사회부적응
__9) 음주 후 습관 __10) 성욕 __11) 가정불화
__12) 범죄후 은닉 __13) 기타(_____) __14) 미상

2) ()번째 사건

__1) 경제적 이득 __2) 개인적 원한/ 보복/분노
__3) 자신의 처지 비관/사회적 열등감
__4) 사회적·정치적·종교적 불만 __5) 자기 과시
__6) 흥분, 스틸 __7)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__8) 사회부적응
__9) 음주 후 습관 __10) 성욕 __11) 가정불화
__12) 범죄후 은닉 __13) 기타(_____) __14) 미상

3) ()번째 사건

__1) 경제적 이득 __2) 개인적 원한/ 보복/분노
__3) 자신의 처지 비관/사회적 열등감
__4) 사회적·정치적·종교적 불만 __5) 자기 과시
__6) 흥분, 스틸 __7)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__8) 사회부적응
__9) 음주 후 습관 __10) 성욕 __11) 가정불화 __12) 범죄후 은닉
__13) 기타(_____) __14) 미상

39. 범행의 자백여부

1) ()번째 사건

- 39-1. 경찰 ___1) 자백 ___2) 일부 자백 ___3) 전면 부인
 ___4) 미상 ___5) 해당사항없음(피의자 사망 등)
- 39-2. 검찰 ___1) 자백 ___2) 일부 자백 ___3) 전면 부인
 ___4) 미상 ___5) 해당사항없음(피의자 사망 등)
- 39-3. 법원 ___1) 자백 ___2) 일부 자백 ___3) 전면 부인
 ___4) 미상 ___5) 해당사항없음(피의자 사망 등)

2) ()번째 사건

- 39-1. 경찰 ___1) 자백 ___2) 일부 자백 ___3) 전면 부인
 ___4) 미상 ___5) 해당사항없음(피의자 사망 등)
- 39-2. 검찰 ___1) 자백 ___2) 일부 자백 ___3) 전면 부인
 ___4) 미상 ___5) 해당사항없음(피의자 사망 등)
- 39-3. 법원 ___1) 자백 ___2) 일부 자백 ___3) 전면 부인
 ___4) 미상 ___5) 해당사항없음(피의자 사망 등)

3) ()번째 사건

- 39-1. 경찰 ___1) 자백 ___2) 일부 자백 ___3) 전면 부인
 ___4) 미상 ___5) 해당사항없음(피의자 사망 등)
- 39-2. 검찰 ___1) 자백 ___2) 일부 자백 ___3) 전면 부인
 ___4) 미상 ___5) 해당사항없음(피의자 사망 등)
- 39-3. 법원 ___1) 자백 ___2) 일부 자백 ___3) 전면 부인
 ___4) 미상 ___5) 해당사항없음(피의자 사망 등)

40-1. 범행을 자백했다면, 자백의 동기

1) ()번째 사건

- 40-1-1. 경찰 ___1) 증거제시 ___2) 죄책감 ___3) 기타(_____)
 ___4) 미상 ___5) 해당사항없음(자백하지 않음 등)
- 40-1-2. 검찰 ___1) 증거제시 ___2) 죄책감 ___3) 기타(_____)
 ___4) 미상 ___5) 해당사항없음(자백하지 않음 등)

40-1-3. 법원 __1) 증거제시 __2) 죄책감 __3) 기타(_____)
__4) 미상 __5) 해당사항없음(자백하지 않음 등)

2) ()번째 사건

40-1-4. 경찰 __1) 증거제시 __2) 죄책감 __3) 기타(_____)
__4) 미상 __5) 해당사항없음(자백하지 않음 등)

40-1-5. 검찰 __1) 증거제시 __2) 죄책감 __3) 기타(_____)
__4) 미상 __5) 해당사항없음(자백하지 않음 등)

40-1-6. 법원 __1) 증거제시 __2) 죄책감 __3) 기타(_____)
__4) 미상 __5) 해당사항없음(자백하지 않음 등)

3) ()번째 사건

40-1-7. 경찰 __1) 증거제시 __2) 죄책감 __3) 기타(_____)
__4) 미상 __5) 해당사항없음(자백하지 않음 등)

40-1-8. 검찰 __1) 증거제시 __2) 죄책감 __3) 기타(_____)
__4) 미상 __5) 해당사항없음(자백하지 않음 등)

40-1-9. 법원 __1) 증거제시 __2) 죄책감 __3) 기타(_____)
__4) 미상 __5) 해당사항없음(자백하지 않음 등)

40-2. 범행 후 반성/후회 정도

1) ()번째 사건

40-2-1. 경찰 __1) 매우후회 __2) 약간후회 __3) 후회안함
__4) 미상
__5) 해당사항없음(피의자 사망, 자백하지 않음 등)

40-2-2. 검찰 __1) 매우후회 __2) 약간후회 __3) 후회안함
__4) 미상
__5) 해당사항없음(피의자 사망, 자백하지 않음 등)

40-2-3. 법원 __1) 매우후회 __2) 약간후회 __3) 후회안함
__4) 미상
__5) 해당사항없음(피의자 사망, 자백하지 않음 등)

2) ()번째 사건

- 40-2-4. 경찰 __1) 매우후회 __2) 약간후회 __3) 후회안함
__4) 미상
__5) 해당사항없음(피의자 사망, 자백하지 않음 등)
- 40-2-5. 검찰 __1) 매우후회 __2) 약간후회 __3) 후회안함
__4) 미상
__5) 해당사항없음(피의자 사망, 자백하지 않음 등)
- 40-2-6. 법원 __1) 매우후회 __2) 약간후회 __3) 후회안함
__4) 미상
__5) 해당사항없음(피의자 사망, 자백하지 않음 등)

3) ()번째 사건

- 40-2-7. 경찰 __1) 매우후회 __2) 약간후회 __3) 후회안함
__4) 미상
__5) 해당사항없음(피의자 사망, 자백하지 않음 등)
- 40-2-8. 검찰 __1) 매우후회 __2) 약간후회 __3) 후회안함
__4) 미상
__5) 해당사항없음(피의자 사망, 자백하지 않음 등)
- 40-2-9. 법원 __1) 매우후회 __2) 약간후회 __3) 후회안함
__4) 미상
__5) 해당사항없음(피의자 사망, 자백하지 않음 등)

41. 범죄자 수

- 1) ()번째 사건 총 ____명 (남자____명, 여____명)
- 2) ()번째 사건 총 ____명 (남자____명, 여____명)
- 3) ()번째 사건 총 ____명 (남자____명, 여____명)

42. 공범유무(해당 방화사건의 공범)

- 1) ()번째 사건 __1) 공범 없음 __2) 공범 있음(____명)
- 2) ()번째 사건 __1) 공범 없음 __2) 공범 있음(____명)

3)()번째 사건 __1) 공범 없음 __2) 공범 있음(__명)

42-1. 공범자의 성별

1)()번째 사건 __1) 남자 (__명) __2) 여자(__명)

2)()번째 사건 __1) 남자 (__명) __2) 여자(__명)

3)()번째 사건 __1) 남자 (__명) __2) 여자(__명)

42-2. 공범간의 관계

1) ()번째 사건

__1) 모르는 사람 __2) 가족 __3) 친척 __4) 친구 및 선배
__5) 동네 사람 __6) 애인 __7) 안면만 있는 사람
__8) 기타(_____) __9) 미상

2) ()번째 사건

__1) 모르는 사람 __2) 가족 __3) 친척 __4) 친구 및 선배
__5) 동네 사람 __6) 애인 __7) 안면만 있는 사람
__8) 기타(_____) __9) 미상

3) ()번째 사건

__1) 모르는 사람 __2) 가족 __3) 친척 __4) 친구 및 선배
__5) 동네 사람 __6) 애인 __7) 안면만 있는 사람
__8) 기타(_____) __9) 미상

42-3. 공범과의 연령 차이(가해자 기준-세명이상의 공범인 경우는 직접기입)

1) ()번째 사건

1)-1 ()번째 공범

__1) 동갑 __2) 연상 __3) 연하 __4) 미상

1)-2 ()번째 공범

__1) 동갑 __2) 연상 __3) 연하 __4) 미상

2) ()번째 사건

2)-1 ()번째 공범

___1) 동갑 ___2) 연상 ___3) 연하 ___4) 미상

2)-2 ()번째 공범

___1) 동갑 ___2) 연상 ___3) 연하 ___4) 미상

3) ()번째 사건

3)-1 ()번째 공범

___1) 동갑 ___2) 연상 ___3) 연하 ___4) 미상

3)-2 ()번째 공범

___1) 동갑 ___2) 연상 ___3) 연하 ___4) 미상

42-4. 가해자의 역할

1) ()번째 사건

___1) 주도적 역할 ___2)보조적 역할 ___3) 단순가담 ___4) 미상

2) ()번째 사건

___1) 주도적 역할 ___2)보조적 역할 ___3) 단순가담 ___4) 미상

3) ()번째 사건

___1) 주도적 역할 ___2)보조적 역할 ___3) 단순가담 ___4) 미상

D. 피해 내용 및 특성

45.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가해자기준으로 피해자가 2명이상인 경우 중복응답 가능)

1) ()번째 사건

___1) 모르는 사람 ___2) 가족 ___3) 친척 ___4) 친구

___5) 회사동료 ___6) 이웃 ___7) 권력관계 있는 사람(고용주, 직장상사 등)

___8) 안면이 있는 사람 ___9) 기타(_____) ___10) 미상

2) ()번째 사건

- 1) 모르는 사람 2) 가족 3) 친척 4) 친구
- 5) 회사동료 6) 이웃 7) 권력관계 있는 사람(고용주, 직장상사 등)
- 8) 안면이 있는 사람 9) 기타() 10) 미상

3) ()번째 사건

- 1) 모르는 사람 2) 가족 3) 친척 4) 친구
- 5) 회사동료 6) 이웃 7) 권력관계 있는 사람(고용주, 직장상사 등)
- 8) 안면이 있는 사람 9) 기타() 10) 미상

46. 피해금액

- 1) ()번째 사건 1) _____ 원 2) 미상
- 2) ()번째 사건 1) _____ 원 2) 미상
- 3) ()번째 사건 1) _____ 원 2) 미상

47. 해당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 유무

- 1) ()번째 사건 1) 있었음 2) 없었음 3) 미상
- 2) ()번째 사건 1) 있었음 2) 없었음 3) 미상
- 3) ()번째 사건 1) 있었음 2) 없었음 3) 미상

※ 만일, 방화로 인해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기입할 것

47-1. 피해자의 부상정도

- 1) ()번째 사건 1) 부상 _____ 명 2) 사망 _____ 명
- 2) ()번째 사건 1) 부상 _____ 명 2) 사망 _____ 명
- 3) ()번째 사건 1) 부상 _____ 명 2) 사망 _____ 명

47-2. 피해자의 총 수

- 1) ()번째 사건 _____ 명
- 2) ()번째 사건 _____ 명
- 3) ()번째 사건 _____ 명

47-3. 피해자의 성별

- 1) ()번째 사건 남 ___명 여___명
 2) ()번째 사건 남 ___명 여___명
 3) ()번째 사건 남 ___명 여___명

47-4. 피해자의 연령

- 1) ()번째 사건 ①__세 ②__세 ③__세 ④__세 ⑤__세
 2) ()번째 사건 ①__세 ②__세 ③__세 ④__세 ⑤__세
 3) ()번째 사건 ①__세 ②__세 ③__세 ④__세 ⑤__세

47-5.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피해자가 2명이상인 경우에만 기입)

- 1) ()번째 사건
 __① 모르는 사람 __② 가족 __③ 친척 __④ 친구
 __⑤ 회사동료 __⑥ 이웃 __⑦ 애인 __⑧ 안면이 있는 사람
 __⑨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__⑩ 미상
- 2) ()번째 사건
 __① 모르는 사람 __② 가족 __③ 친척 __④ 친구
 __⑤ 회사동료 __⑥ 이웃 __⑦ 애인 __⑧ 안면이 있는 사람
 __⑨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__⑩ 미상
- 3) ()번째 사건
 __① 모르는 사람 __② 가족 __③ 친척 __④ 친구
 __⑤ 회사동료 __⑥ 이웃 __⑦ 애인 __⑧ 안면이 있는 사람
 __⑨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__⑩ 미상

♣ 수고 많으셨습니다 ♣

부록 2

통계청 표준직업분류표

통계청 표준직업분류표

한국표준 직업분류	직업종류	
관리자	공공 및 기업고위직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기업고위임원
	행정 및 경영지원관리직	정부기관부사장, 정부기관관서기관장
		경영지원(총무, 인사, 기획홍보, 광고, 재무 자재 및구매)관리자
		기타관리자(컨설팅, 회계, 신용조사, 상품전시행사대행)
	전문서비스관리직	연구교육 및 법률관련자(연구원, 총장, 교장, 교감, 유치원원장, 로펌 대표, 법률서비스부사장, 지검장, 경찰부서관리자 및 경찰서장, 소방부서관리자 및 소방서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보험 및 금융관리자(보험지점장, 영업소장, 생명보험관리자, 은행 증권, 금융감독기관관리자, 신용조사관리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관리자(병원원장, 보건소장, 간호부장, 사회복지단체관리자, 대규모어린이집관리자)
		문화 및 예술디자인 영상관련관리자(미술관 관장, 도서관관장, 발레 단관장, 디자인관련기업관리자, 텔레비전 편성국장, 신문편집국장)
정보통신관련관리자(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개발부서, 통신회사, 정보처리부서, 전산업무부서)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관리직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관리자(공사현장, 현장부서, 골채취, 전기, 가스수도공급관리자, 식품, 의복, 화학제품, 금속제품, 전자전자제품 공장관리자, 수리 및 정비관련관리자)	
	판매 및 운송, 고객서비스, 환경청소 및 경비관련, 회원단체, 전문기관체(경비업체관리자, 호텔관리자, 뷰티샵관리자, 버스, 택시부서관리자)	

한국표준 직업분류	직업종류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과학전문가 및 관련직	연구원 및 시험원
	정보통신전문가 및 관련직	컴퓨터관련기술자 및 연구원, 유선통신망개발자, 전송기개발자등.
	공학전문가 및 관련직	건축가, 및 건축관련기술자, 석유화학기술자, 석유제품개발원, 화장품 기술자 및 시험원, 항공기조종사, 도선사, 관제사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인마사, 인경사, 사회복지사, 보육교 사, 시민단체활동가, 성직자, 수녀, 수사, 전도사,
전문직 및 관련종사자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	대학교수 및 강사, 학교교사, 유치원교사, 예능강사, 어학, 컴퓨터강 사, 학습자 및 방문교사, 장학관, 대학교육조교, 보조교사
	법률 및 행정전문직	판사 및 검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정부정책집행, 기획전문가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외환딜러, 손해사정인, 광고 및 홍보전문가, 행 사기획자, 감정평가사, 중개인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작가, 큐레이터, 화가, 사진작가, 디자이너, 감독및코치, 심판, 레크레이 션강사, 연예인등매니저, 미술사
사무종사자	경영 및 회계관련사무직	조세행정사무원, 인사사무원, 회계사무원, 비서, 전산자료입력원
	금융 및 보험관련사무직	출납창구, 보험심사, 신용추심, 금융관련
	법률 및 감사사무직	특허사무장, 변호사사무원, 감사사무원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사무직	통계조사사무원, 인구조사원, 통계조사수퍼바이저
서비스종사자	경찰소방 및 보안관련서비스직	경찰관, 소방관, 경호원, 무인경비원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서비스직	간병인, 미용사, 메이크업아티스트, 동물미용사, 코디, 웨딩플래너, 장례 지도사, 점술가, 철학가,
	운송 및 여가서비스직	항공기, 열차, 선박승무원, 통역원, 가이드, 도어맨, 벨보이, 여관등시중원, 치어리더, 응원단장, 카지노딜러, 골프장캐디, 놀이기구조직원, 노래방종 사원,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	주방장 및 조리사, 바텐더, 웨이터
판매종사자	영업직	자동차영업, 제품 및 광고영업, 식품영업, 체인점모집, 보험설계사
	매장판매직	매장판매종사자(의류판매원, 복권판매원, 요금정산원), 상품대여종사 자(도서대여, 스포츠용품대여)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방문판매, 핸드폰가입판매, 텔레마케터, 인터넷판매, 노점상, 신문가두판 매, 홍보행사도우미

연쇄강력범죄 실태조사(I)

한국표준 직업분류	직업종류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농축산숙련직	채소재배, 조경사, 우유생산자, 가축사육, 감별사, 양봉
	임업숙련직	조림, 임산물채취, 벌목
	어업숙련직	김양식, 조개양식, 어부 및 해녀
기능관련종사자	식품가공관련기능직	제빵원, 떡제조원, 정육원, 식품 및 담배등급원, 김치 및 말반찬제조원, 건강원탕제조원종사원
	섬유의복 및 가족관련기능직	재봉사, 재단사, 모자제조, 가발제조, 섬유선별원, 한복, 모피, 제조원 의복가족수선원
	목재가구약기 및 간판관련기능직	목재 약기케이스제조원, 복재검사원, 가구제조원, 가구수리원, 조육사, 간판제작설치원
	금속성형관련기능직	금형수조 및 단조, 판금, 용접
	운송 및 기계관련기능직	자동차정비, 운송장비정비, 보일러설치 및 수리, 승강기설치 및 정비, 냉방기설치 및 설비
	전기 및 전자관련기능직	컴퓨터 및 가전제품설치 및 수리, 카메라, 의료기기설치 및 수리, 전기공(철도차량전기수리원)
	건설 및 채굴관련기능직	철구조조립원, 철골제작원, 철근공, 건축석공, 건축목공, 미장공, 방수공, 도배공, 도장공, 광부, 채석원
	영상 및 통신장비관련기능직	학교방송시설설치 및 수리, 위성방송수신기설치 및 수리, 가자국중계기설치 및 수리
	기타기능관련직	공예원, 귀금속세공원, 배관공,
장치·기계제작 및 조립종사자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제분도정기계조작, 증류장치조작원, 식용유정제기조작원
	섬유 및 신발관련기계조작직	표백 및 염색관련조작원, 신발제조기조작원, 가죽 및 모피가공원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석유 및 천연가스제조관련조작, 분쇄기조작원
	금속 및 비금속관련 기계조작직	용접기조작원, 판금기조작원, 목재기구칠원, 기계도장원, 유리 및 렌즈제조기 조작원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자동차조립라인조작, 자동차조립원, 냉난방기설비조작원
	전기 및 전자관련기계조작직	화력발전장치운전원, 텔레비전조립원, 전기드라이조립원

연구총서 12-B-10

연쇄강력범죄 실태조사(I)
-연쇄방화-

발행 / 2012년 12월

발행인 / 김일수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02)575-5282/5283

등록 / 1990. 3. 20. 제21-143호

인쇄 / 인터미디어 성림디앤피
(02)2263-5931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정가 10,000원

ISBN 978-89-7366-968-4 93330